자주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자주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 **초판발행 :** 2016년 9월

• **발 행 처 :** **지역발전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www.region.go.kr / www.redis.go.kr
Tel. 02)2100-1135, Fax. 02)2100-114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www.keit.re.kr
Tel. 053)718-8114~5, 8283, Fax. 053)718-8593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목 차

Ⅰ. 지역산업과학

1. BK(두뇌한국)21 플러스 ····· 3
2. U턴기업(reshoring)지원제도 ····· 7
3. 경제협력권사업 ····· 9
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16
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 21
6. 기술성숙도/기술준비수준(TRL) ····· 26
7. 도시첨단산업단지 ····· 31
8. 로컬에너지 ····· 34
9. 마이스(MICE)산업 ····· 38
10. 마이스터고 ····· 44
11. 미니복합타운 ····· 49
12. 복합시설 ····· 53
13. 뿌리산업 ····· 56
14. 산업단지 ····· 59
15. 산업단지 캠퍼스 ····· 62
16. (지역)산업생태계 ····· 66
17.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 ····· 69
18.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71
19. 산업클러스터 ····· 78
20. 산학협력 선도대학 ····· 81
21. 산학협력단 ····· 85
22. 연구개발지원단 ····· 89
23. 연구개발특구 ····· 96

24. 일학습병행제 ····· 100
25. 적정기술 ····· 102
26.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108
27. 지방대학특성화 ····· 111
28.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114
29.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 118
30. 지역R&D ····· 122
31. 지역산업기술 로드맵(RTRM) ····· 125
32.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 129
33. 지역산업진흥계획 ····· 132
34. 지역전략산업 ····· 138
35. 지역중견·강소기업(스타기업) ····· 142
36. 지역특화산업 ····· 148
37. 지역혁신센터(RIC) ····· 151
38. 창업보육센터 ····· 154
39. 창조경제혁신센터 ····· 158
40. 첨단의료복합단지 ····· 164
41. 테크노파크 ····· 169
42. 통합 재정사업 평가 ····· 173
43. 특화발전프로젝트 ····· 180
44. 프라임(Prime)사업 ····· 184

목 차

Ⅱ. 지역개발문화관광

1. BID/TOD특정지구,계획지구 ····· 191
2. BRT(간선급행버스체계) ····· 194
3. BTO/BTL ····· 197
4. 경제자유구역 ····· 199
5. 공간정보사업(Spacial Data Project) ····· 203
6. 관광개발기본계획 ····· 211
7. 관광두레 ····· 217
8. 관광특구 ····· 220
9.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 225
10. 국토종합계획 ····· 229
11.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 233
12. 기업도시 ····· 236
13. 녹색건축인증제(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 239
14.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 245
15. 닥터헬기 서비스 ····· 248
16. 도시녹화운동 ····· 251
17.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선도지역) ····· 254
18. 도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CB, community business) ····· 257
19.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260
20. 마을기업 ····· 264
21. 마을리더 ····· 268
22. 마을만들기 ····· 270
23. 마을협정(마을협약) 제도 ····· 274

24. 메가시티(Mega-city) ····· 277
25. 문화관광 축제 ····· 280
26. 문화산업지구 ····· 282
27. 문화영향평가 ····· 286
28.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생활문화센터) ····· 290
29. 사회적기업 ····· 293
30.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 299
31. 생태관광지역 ····· 303
32. 생태도시 ····· 308
33.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nalysis Assessment) ····· 313
34. 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 316
35.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 319
36. 슬로시티(Slow City) ····· 322
37.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325
38. 시·도 자율편성사업 ····· 327
39. 시가화조정구역 ····· 330
40. 아동친화도시 ····· 334
41. 여성친화도시(Women-friendly City) ····· 337
42. 유비쿼터스도시(U-City) ····· 340
43.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 345
4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349
45. 자활기업 ····· 354
46. 작은 도서관 ····· 360
47. 작은 영화관 ····· 364
48. 전통시장 ····· 368

목 차

49. 정주자립권(定住自立圈) 제도 ····· 372
50. 주택바우처 제도(Housing Voucher Program) ····· 375
51. 지방 자주재원 ····· 381
5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 384
53. 지역공동체/공동체복원 ····· 389
54. 지역문화지표 ····· 392
55. 지역문화진흥법 ····· 396
56. 지역브랜드 ····· 400
57. 지역특구 ····· 403
58. 창조경제타운 ····· 406
59. 창조도시 ····· 411
60. 창조지역사업 ····· 414
61.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 420
62. 평생학습도시/행복학습센터 ····· 422
63. 행복주택 ····· 426
64. 혁신도시 ····· 430
65. 협동조합 ····· 438

Ⅲ. 농어촌진흥

1. 경관농업 ····· 445
2. 경관보전직불제(Direct Payment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 450
3. 고향희망심기사업 ····· 453
4.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456

5. 농가소득안정직불제 ····· 460
6. 농공단지 ····· 463
7. 농어촌 6차 산업 ····· 466
8. 농어촌서비스 기준(Rural Services Standard) ····· 469
9. 농어촌 유산(Rural Heritage) ····· 474
10. 농어촌자원복합산업 ····· 478
11. 농어촌특별세 ····· 481
12. 농지관리기금 ····· 484
13. 농지은행 ····· 487
14. 농촌 공동체 회사 ····· 490
15. 도농교류 ····· 494
16. 도시농업 ····· 498
17. 로컬푸드(Local food) ····· 501
18. 산지유통센터(APC) ····· 505
19. 자원순환 도시농업(도시농업 지원센터) ····· 509
20. 자율관리어업 ····· 511
21. 지역농업특성화사업 ····· 515
22. 친환경농산물 인증(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제도 ··· 518
23. 친환경농업직불제 ····· 521

Ⅳ. 지역발전정책/제도

1. HOPE 프로젝트 ····· 527
2. LEADER(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연대) ····· 530

목 차

3.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 535
4. TDPC(지역개발정책위원회) ····· 539
5. 계획계약 ····· 542
6. 광역도시계획/MPO ····· 545
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548
8. 국가지도집 ····· 551
9.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 ····· 556
10. 규제프리존 ····· 559
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564
12. 도시권/다지역협약 ····· 569
13. 보조금, 교부금, 출연금 ····· 572
14.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575
15. 새마을운동 세계화/지구촌 새마을운동 ····· 580
16.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 585
17. 예비타당성조사 ····· 590
18. 자치경찰제 ····· 595
19. 재정자립도(Financial Independence Rate) ····· 598
20. 재정자주도(Financial Autonomy Rate, degree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 602
21. 저성장시대 ····· 606
22. 정부3.0과 지방3.0 ····· 610
23. 주민결연제도 ····· 614
24.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 617
25. 지방소득세 ····· 622
26. 지방소비세 제도 ····· 625

27.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629
28. 지방재정조정제도 ····· 633
29. 지역개발사업구역 ····· 636
30. 지역낙후도 ····· 640
31. 지역발전 5개년계획(부문별계획안, 시도발전계획) ····· 645
32.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 ····· 649
33.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 654
34. 지역발전특별회계 ····· 657
35. 지역발전포털(REDIS) ····· 660
36.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 664
37.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667
38. 지역행복생활권사업 ····· 671
39. 지역화폐 ····· 675
40. 지역희망박람회 ····· 680
41. 창조경제 ····· 684
42.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제도 ····· 687
43. 희망이음 프로젝트 ····· 690

I

지역산업과학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 BK(두뇌한국)21 플러스

생성배경 BK21 플러스는 대학원생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연구기반 강화 및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한 'BK21사업(1단계: 1999~2005, 2단계: 2006~2012)'과, 해외학자 국내 유치를 통한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 풍토 혁신과 해외 인지도 상승에 기여한 'WCU사업(2008~2012)'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여 통합 도출된 후속사업 개념이다.

용어설명 BK21 플러스사업은 21세기 창조경제를 주도할 석박사급 최고급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교육·연구의 창의적 분위기 제고 및 독창적인 성과 창출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BK21 플러스 사업의 기본 방향은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과 연구중심대학 기반강화 및 지역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7년간(2013년~2019년까지) 580개 사업단을 선정, 총 3조 3143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사업유형은 첫째, 융합분야 중심 대학원 국제협력강화 등을 통한 연구경쟁력 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인재양성형, 둘째, 특화분야 고급 실용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특화전문인재양성형, 셋째, 학문 전분야 최우수 대학원 육성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을 목표로 하는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으로 구분된다.

그림 1 BK21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출처 : BK21 플러스 사업 홈페이지(bkplus.nrf.re.kr)

〈표 1〉 분야별 지원방향 및 중점 지원분야

유 형	지원방향	중점 지원분야
글로벌 인재양성형	•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대학 교육 – 연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	•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융합형 R&D 분야 등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 새롭게 부각되는 고부가가치 특화 분야 및 국가전략분야 등의 고급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전분야로 하되, 산업·공업디자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광, 정보보안, 특수장비 등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학원 우선 지원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 학문분야별 창의적 미래 핵심인재 양성	• 사업단과 사업팀은 각각 분리하여 선발

출처 : BK21 플러스 사업 홈페이지(bkplus.nrf.re.kr)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 핵심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이 연간 1만 8,500명(과학기술분야 1만 5,700명, 인문사회분야 2,800명) 이상 육성할 예정이며, 특히 기존 BK21 및 WCU사업에 비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지역산업을 이끌 첨단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실적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강조함으로써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대학원 체제 구축을 완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밀착형 석박사급 인재도 꾸준히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BK21 플러스(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y & Students)사업' 중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2015년 8월, 64개 대학, 195개 사업단, 547개 사업팀), 글로벌인재양성형(2015년 8월, 15개 대학, 21개 사업단), 특화전문인재양성형(2015년 8월, 41개 대학, 54개 사업단) 선정결과를 세부사업 유형별로 사업목적에 맞는 평가지표 및 배점을 차별화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표 2〉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현황

유 형	선정대학(개수)	합 계
글로벌 인재양성형	경희대(1), 고려대(1), 광주과기원(1), 서울대(2), 성균관대(2), 연세대(1), 울산과기대(1), 포항공과대(3), 한국과기원(2), 한양대(1), 고려대(세종)(1), 단국대(천안)(1), 부산대(1), 순천대(1), 전북대(1), 건국대(1)	전국(16), 지역(5)
특화 전문인재 양성형	가톨릭대(1), 강원대(3), 경상대(1), 국민대(3), 금오공대(1),부산대(1), 성균관대(1), 숭실대(3), 연세대원주(1), 울산과기대(1), 을지대(1), 이화여대(1), 전북대(1), 창원대(1), 충남대(1), 한국과기원(1), 한국교통대(1), 한국기술교육대(1), 한국산업기술대(1), 한남대(1)	건강(4), 융복합1(6), 융복합2(6), 융복합3(5), 디자인(3), 정보보호(3)

유 형	선정대학(개수)	합 계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형	경북대(4), 경상대(1), 고려대(5), 부경대(1), 부산대(4), 서울대(5), 성균관대(4), 연세대(3), 울산대(1), 이화여대(1), 중앙대(1), 충남대(2), 포항공과대(3), 한국과기원(4)	물리_전국/지역(6), 물리_지역(3), 생물_전국/지역(7), 생물_지역(3), 화학(9), 수학(6), 지구과학(5)

출처 : BK21 플러스 사업 홈페이지(bkplus.nrf.re.kr)

참고자료·문헌

- 교육부(2013), BK21 플러스 기본계획
- 김성수(2013), 한국 0대학원지원정책의 진화과정 분석; BK21 및 WCU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7(2)
- BK21 플러스 사업 홈페이지(http://bkplus.nrf.re.kr)

작성자 : 이희정 교수(한양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 U턴기업(reshoring)지원제도

생성배경 과거 선진국에 위치한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등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중국·인도 등 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는데, 여기서 오프쇼링(off-shoring)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후 신흥시장국의 임금 상승으로 이전된 곳에서도 비용문제에 직면하자, 다시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링(reshoring)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실업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국내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U턴기업(reshoring)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자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리쇼링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으로 복귀한 기업에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용어설명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으로,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을 뜻하는 오프쇼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한국 정부는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우리나라도 2012년 3월 U턴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5월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U턴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리쇼링을 원스톱

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3년 6월에는「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U턴기업법)」을 제정함으로써 U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U턴기업으로 선정되면, 청산컨설팅 지원,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우선 입주, 국내 입지·설비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해외인력에 대한 비자지원, 자금융자, 신용보증, 수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사례 미국은 한국보다 늦게 유턴지원정책을 마련했으나 애플, 포드, GM, GE 등이 대거 동참하고 있으며, 미국정부의 유턴정책 입안과정과 반대급부(유인)에 대한 대응은 향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유턴정책은 대중국 경제의존 탈피라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고, 대만과 중국의 FTA인 ECFA를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대만의 ECFA 활용성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의 유턴정책이 한·EU/한·미 FTA 체결이라는 수출환경의 변화로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10년 전부터 생산혁신을 통해 이를 준비해 왔으며, 한 예로 NECPC의 중국으로부터의 일본 내 생산거점 이전이다. 이를 위한 생산혁신에 있어 작업자의 소인수, 제품의 다품종, 납기의 단기간 등이 리쇼링 실현의 절대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박문각(2013), 시사상식사전
- 이언경(2013), 미국의 리쇼링 (Reshoring) 추진 동향 분석, 해양수산 vol.3 no.2 (2013 년 여름호) pp.132-149
- 임민경, 여지나(2013),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작성자 : 윤칠석 정책기획단장(경북테크노파크)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 경제협력권사업

생성배경 박근혜정부는 2013년 7월 발표한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행정단위인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실제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14.1) 행복생활권, 경제협력권 등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2월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에도 반영하였다.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역선도사업과 특화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역사업을 '15년부터 경제협력권사업(시·도 연계), 주력산업지원사업(시·도), 지역전통(연고)산업육성사업 (시·군·구, 행복생활권) 등 3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경제협력권사업은 창조경제 기반 구현을 위해 시·도별 육성보다 시·도 간 협력으로 부가가치, 고용성과 등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는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타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17개 산업을 선정(Bottom-Up)하였다(표 3). '14년도 7개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고 '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15년 국비 총 1,608억 규모를 지원하였다.

〈표 3〉 시·도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

협력산업	참여 시·도	협력산업	참여 시·도
①, ② 조선해양플랜트	경남, 전남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부산, 울산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화장품	충북, 제주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친환경자동차부품	전북, 광주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 협력산업별 1개 프로젝트로, 단 조선해양플랜트는 2개 프로젝트로 구성

용어설명 지역의 산업생태계(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시·도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핵심 대표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인위적인 광역경제권을 탈피하는 등 지리적 근접성보다 산업생태계 중심으로 경제협력권을 구성하는데, 그 원칙은 협력산업 관련 타깃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되, 전·후방 연관 기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내용은 협력산업별 중장기 발전전략, 기업특성·수요조사, 관련 지역혁신 기관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기획되었다.

〈표 4〉 17개 협력산업 별 유망품목

협력산업	경제 협력권	유망품목	
①조선해양 플랜트1	경남, 전남	①해양플랜트 LNG 이송저장 시스템 ②Subsea 부품·기자재 ③화재폭발 감시방지 및 부식방지 기자재	④ 해양플랜트 지원선 DECK예인 시스템 ⑤ 조선해양플랜트 생산자동화 설비 ⑥ 조선해양 융·복합 기자재
②조선해양 플랜트2	부산, 울산	①지능형 해양플랜트 시스템 제품 ②LNG연료 공급 모듈 ③오프쇼어 리프팅 시스템 ④오프쇼어 밸브 및 피팅류 모듈	⑤ 해양플랜트 안전진단 모듈 ⑥ 화공 플랜트 코크 드럼 모듈 ⑦ 극저온용 진공단열 파이프 ⑧잭업 리그용 잭킹 모듈
③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①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 자외선) ②천연화장품 ③메디컬화장품	④ 모발화장품 ⑤ 색조화장품 ⑥ 기타 일반화장품
④의료기기	강원, 충북	①의료용 영상진단장치 ②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③치료용 의료기기 ④나노기반 Point-of-Care 진단기기 ⑤미래지능형 응급의료기기	⑥ 의료용경 및 생체분자영상시스템 ⑦ BT생체인터페이스기반 신경조절시스템 ⑧ 치과 및 정형제품 ⑨ 바이오기술기반 체외 진단기기
⑤휴양형MICARE	제주, 강원	①휴양형 전시기획, ②인센티브 투어(산업형) ③헬스테인먼트 ④전시디자인서비스 ⑤의료검진서비스 ⑥헬스케어리조트 클러스터	⑦ 스마트 MICARE 플랫폼 ⑧ 의료관광서비스 ⑨ 웰니스리조트 클러스터 ⑩ 의료·헬스케어관광 인트라/아웃/인바운드 연계 플랫폼 ⑪ Pre-Post Medi Tour형 지원 프로그램
⑥이차전지	충남,	①분리막	④ 양극재료

협력산업	경제 협력권	유망품목	
	충북	②집전체 ③전해액	⑤음극재료 ⑥셀
⑦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①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②반도체용 화학소재 ③에너지·환경소재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⑤생활용품 소재
⑧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①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②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③지능형 수송기계 ④고기능성 농업용기계 ⑤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⑥사출성형기계시스템 ⑦공장기계시스템 ⑧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니트 ⑨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⑩생산공정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⑨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①태양전지 ②심부지열	③이차전지 ④단주기ESS
⑩기계부품	충남, 세종	①유체/유공압 기계부품 ②전동부품	③기능성 금속구조물 ④이송유닛
⑪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①광정보네트워크 ②광정밀시스템 ③신광원조명시스템	④지능형센서 ⑤초정밀전자부품
⑫기능성 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①신기능성신감성의류용소재 및 제품 ②생활자재용소재 및 제품 ③글로벌문화융합형패션잡화 ④방호·보호용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제품 ⑤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⑥해양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⑦자동차용 내장재제품 ⑧자동차용 기능성소재 및 내장재 ⑨전기전자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⑩위생의료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⑪환경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⑫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⑬친환경 자동차부품	전북, 광주	①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②경량고기능 차체 및 샤시부품	③에너지효율향상 구동 및 전동화부품 ④그린전장부품 ⑤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협력산업	경제 협력권	유망품목	
⑭바이오 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①천연물식의약소재 ②뷰티소재	③합성첨가물대체제 ④식자원생산지원소재
⑮자동차 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①지능형운전지원장치 ②차량통신시스템 ③차량감성부품 ④차량경량화융복합부품	⑤샤시제어기기 ⑥전력효율향상모듈 ⑦인간친화형안전융합부품
⑯차량부품	부산, 경남	①내연기관 고효율 부품 ②고감성내장부품 ③차체 경량화 부품 ④충돌안전용 전장부품	⑤xEV 구동형 모터 ⑥Engine free sys ⑦능동형 샤시부품 ⑧철도차량부품
⑰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①나노소재 ②수송기계 친환경 내외장재	③에너지 저장·변환·전달 소재 ④정보전자용 나노융합소재 분야

시·도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경제협력권을 구성하였으며〈표 4〉, 시·도별로는 3건 이내의 협력에 참여하게 된다.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고 협력권별 협의를 통해 주관 시·도를 선정함으로써 지역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술개발(R&D: 비즈니스협력형, 지역협력형) 및 역량강화·시제품제작·디자인·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서비스(비R&D)를 병행 지원한다〈표 5〉.

〈표 5〉 사업유형 및 내용

유형		지원방법	내용	제원
R&D	비즈니스 협력형	산업생태계 조사, 수요조사등을 발굴한 비즈니스협력 커소시엄을 대상으로 유망 품목의 개발·사업화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10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	국비
	지역 주도형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4억원 이내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	지방비
비R&D	경제 협력형	협력산업 관련 타겟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	(지원규모) 기업수요에 따른 합리적 예산규모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지원내용) 기술지원 / 사업화지원 / 인력양성 (지원방식) 지정공모 + 자유공모	국비
	지역 주도형			지방비

현재 용어의 사용 경제협력권사업은 2개의 시·도가 인접한 일반형 협력권 6개, 3개 이상의 시·도가 연속 인접한 밸트형 협력권 3개(예시: 자동차융합부품(대구, 경북, 울산), 조선해양플랜트(울산, 부산, 경남, 전남) 등), 인접하지 않은 원거리 이격 지역간 협력권 7개(예시: 화장품(충북, 제주), 광전자융합(대전, 광주), 하이테크섬유(대구, 경북, 부산) 등)가 추진 중에 있다(그림 2).

그림 2 협력산업 및 경제협력권사업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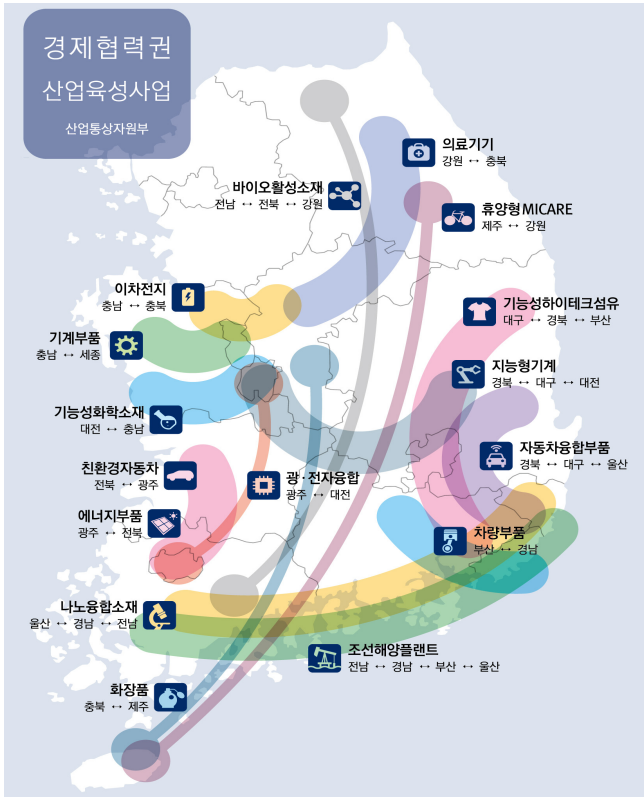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4.3. 31.

참고자료·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3.31), 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6),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이경미 단장(충북지역사업평가단)

정책용어

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생성배경 2000년대 초반 이후 정부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가 R&D 사업이 강화되면서 R&D투자 증대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범부처 R&D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NTIS 구축계획 마련(2004년), 총괄주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선정(2005년), ISP(정보전략계획) 및 ITA(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2005~2006년) 등을 거쳐 2007년부터 부처별(기관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국가R&D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1단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1단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2007~2009년)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 지식인프라로의 도약 필요성 등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2단계(2010~2012년) NTIS 고도화계획을 추진하였고, 3단계(2013~2015년)에서는 정보 공동활용 극대화를 위한 NTIS 창조·공유계획을 추진하였고, 4단계(2016~2020년)부터는 공급자 위주의 정보제공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NTIS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차세대계획을 추진 중 이다.

용어설명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연구개발의 기획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그림 3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발전단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자료(2015)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등에 근거하여 국가R&D를 수행하고 있는 관련 부처·청(16개 대표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가 진행하는 R&D 관련 정보(330개 표준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국가R&D 정보지식포털을 말한다.[1)]

현재 용어의 사용 NTIS는 현재 국가R&D 사업관리서비스[2)], 국가R&D 참여인력 정보서비스, 국가R&D 성과정보서비스,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등을

1) 일본(e-R&D), 미국(NSF), EU(CORDIS) 등 선진국에서도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과제, 인력, 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종합적인 정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포털시스템은 NTIS가 세계 최초이다.

2) 국가R&D 현황에 대한 다양한 조사·분석 결과와 각 부처의 참여제한, R&D공고 및 관련규정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며, 과제기획 시 선행과제와의 유사성을 연구자가 직접 검토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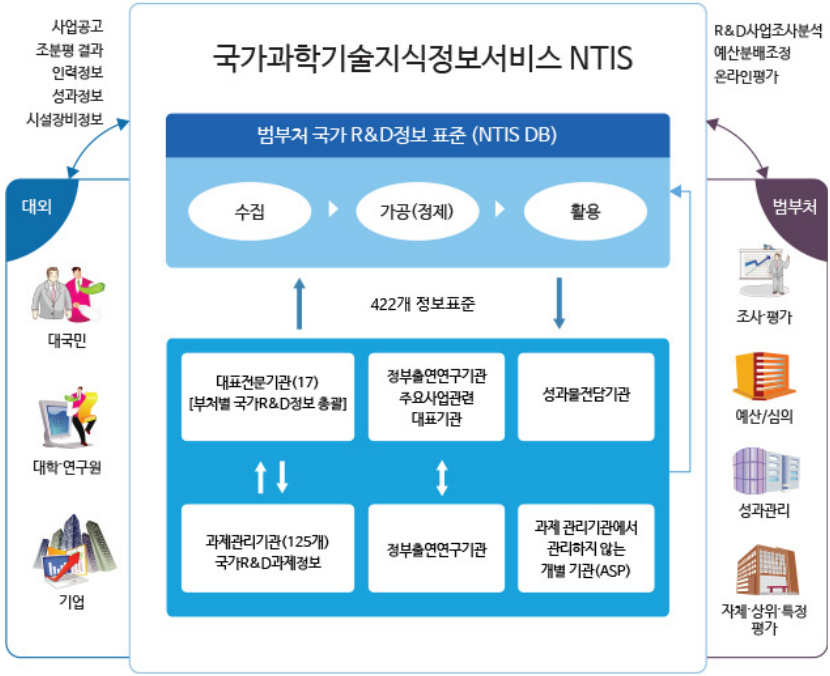

출처 : NTIS, 국가과학시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ThAbout.do)

핵심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 이외에도 국가R&D Board[3], 과학기술통계서비스, 지역R&D 정보서비스, 기술산업 정보서비스, 국가R&D 표준정보관리서비스, 오픈 R&D 지식서비스[4], 과학기술맵[5], 분야별 연구자맵[6]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

3) 사업관리, 인력, 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국가R&D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제공한다.

4) R&D 지식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집단에서 생성된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환경의 지식공유 서비스로서 R&D 백과사전, 지식 Q&A 뿐만 아니라, 장비 사이버 멘토링,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KISTI의 과학향기, 사이언스올 사전 등 협력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림 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주요 서비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 NTIS 4.0 발전계획 중

하고 있다.

NTIS는 2008년 3월 공개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15년 10월 기준 전체 이용자(회원수 25만명)의 77%(약19만명)가 연구자, 이 중 기업연구자는 33%(약 8만명)이며 정부R&D 사업관리, 참여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정보 등 15개 대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현재 포털 서비스로 전환하고 기업활용 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사업·과제·인력·장비·성과 등 구축정보 475만건, 66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는 2014.11월 NTIS 기업활용 서비스

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기술 간의 연관관계 및 기술의 연도별 과제 수, 예산 정보 등을 제공한다.

6) 연구자들의 발표논문 분석을 통해 중점분야 주제와 유사성이 높은 연구자들과 그 연구자들 간의 공동협업관계를 제공한다.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2016년 현재 '정부 3.0'에 따른 개방형 혁신환경을 제공하며 고부가가치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체계로의 재도약을 위해 「NTIS 4.0 발전계획('16~'18)」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참고자료·문헌

- 미래창조과학부(2015), 이용자 중심의 NTIS 서비스 추진계획(내부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3), 2012 과학기술연감
- 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발전정보협력컨퍼런스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3.5.24), 창조·공유의 NTIS 3.0 시대 개막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3.12.5) 2013년 NTIS 성과보고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2013), NTIS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검증 매뉴얼
- 미래창조과학부(2016), NTIS 4.0 발전계획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생성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는 국가R&D 사업의 효율성·생산성[1]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사업별 조사·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하다가, 2005년 「성과평가법」 제정을 계기로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및 국과위 상위평가·특정평가로 운영되는 평가체계[2]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R&D사업 및 출연(연)기관의 평가권한이 기획재정부[3]로 이관되었다가,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평가권한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4]로 다시 이관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의 행정조직 개편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13.3월)에 근거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무총리 소속)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R&D사업 평가 및 예산의 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내 과학기술전략본부에서 국가

1) 국가R&D투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0.1%씩 증가한 결과 2011년 기준 GDP 대비 4.03%(세계 2위)에 달하나, 연구성과의 질적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5년간 논문 피인용 횟수 4.07회로 세계 평균 5.13회에 미달, 기술무역수지는 59억 달러(2011년 기준) 적자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 등)에 머물고 있다.

2) 전체 국가R&D사업에 대해 매년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한 다음 국과위가 상위평가를 수행하고, 주요 사업은 특정평가를 통해 심층적으로 평가하였다.

3) 이 때 자체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상위평가는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4)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제도, 사업간 중복 조정 및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군 단위 평가, 기관 특성을 고려한 절대평가,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였고, 상위평가에 대한 부처의 부담 완화 및 자체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 점검 방식을 도입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용어설명 정부[5]는 R&D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6]에 근거하여 ①R&D사업 평가(중간평가-자체·메타[7]), ②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 등 2개 분야의 평가체계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5) 199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부, 간사: 과학기술부장관)→2004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부 內 과학기술혁신본부, 간사: 과학기술혁신본부장)→200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부, 간사 :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201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부, 간사 :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2013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미래창조과학부, 간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6) 2005년 국가R&D 사업에 대한 성과중심 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예산 조정 및 배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과평가법」을 제정하였다.

7) 2016년도부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 합동으로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을 따라 기존 상위평가 대신 메타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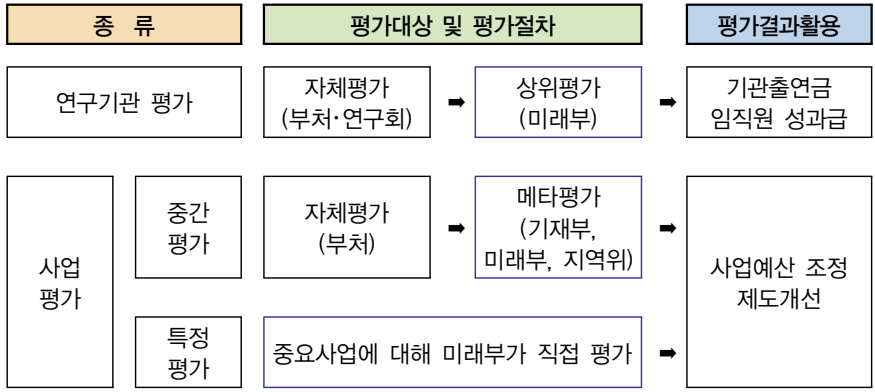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부자료(2015)

R&D사업의 중간평가(자체-메타평가) 및 특정평가,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 등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기본계획(5년 단위)[8]과 성과평가 실시계획(1년 단위)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R&D사업의 중간평가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R&D사업의 성과 등을 당초 3년 주기로 평가하였으나,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체제로 변경되면서 1년 주기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1단계) 중앙부처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2단계) 미래창조과학부가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등 3개 항목 기준으로 점검하고, (3단계) 메타평가협의회(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반재정사업, 지역사업 등 3개 분야별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평가는 R&D사업의 중간평가와 별도로 「성과평가법」 제7조에 근거하여 ①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②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8) 2011년에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과 창의적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다.

사업, ③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④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중에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대상 사업[9]을 선정하여 사업간 유사·중복성, 성과의 효과성과 추진체계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는 출연 연구기관장의 경영실적과 연구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25개) 및 부처 직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임무중심형 평가와 공통기준형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임무중심형 평가는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 주기에 따른 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기관평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통기준형 평가는 연구기관의 경영실적(매년 평가)과 연구성과(3년 주기 평가)를 담당 부처 또는 연구회 주관하에 자체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2016년 상반기에 R&D사업의 중간평가(자체·메타평가)는 17개 부처의 103개 사업(2015년 예산 기준 4조 7,349억 원)을 대상으로, 2015년에 특정평가는 재난재해 사업군(5개 사업), GoldenSeed프로젝트(농식품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미래부·환경부·해수부·기상청),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미래부·산업부),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해수부) 등을 대상으로,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는 20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6년도 R&D사업 중간평가는 통합 재정사업 평가체제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우수성과에 대한 전문가 정성 평가 강화(2단계 평가 절차), 질적 지표 중심의 강화(질적 지표의 가중치 60% 이상 설정) 등 R&D 특성을 나타내는 기존 평가지표 및

9) 특정평가 대상사업을 체계적·합리적으로 발굴·선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일반연구자 대상의 수요조사, 외부지적사항(국회, 감사원) 등에 기초하여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후보사업에 대한 성과조사·분석 결과, 기존 평가결과 등에 근거한 평가전문위원회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 평가대상사업을 도출하고 있다.

평가기준을 유지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시행으로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나, 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 대상을 2016년 50%, 2017년 70%, 2018년 10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문헌

- 미래창조과학부(2015), 2015년 국가연구 개발사업 상위평가 가이드라인
- 미래창조과학부(2015), 2015 국가연구 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
- 미래창조과학부(2014), 국가연구 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 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6. 기술성숙도/기술준비수준(TRL)

생성배경 TRL은 1989년 미국 NASA의 Sadin이 항공·우주 분야 R&D 프로그램의 기술투자 위험도를 관리할 목적으로 처음 도입하였으며[1], 1995년에 J. C. Mankins가 NASA 백서에 "Technology Readiness Levels"를 발표한 이후 미국 국방부(DoD)[2]·에너지부(DOE)[3], 영국 국방부(MoD)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용어설명 기술성숙도/기술준비수준(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은 특정 기술이 제품(System 또는 Subsystem)에 적용되기 전 기술(재료, 부품, 소자 등)의 개발단계 또는 기술성숙 정도를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측정·평가·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한다. TRL은 특정 시점에서 기술성숙도를 기초연구단계부터 양산단계까지를 9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특정 기술의 성숙도를 평가하거나, 이종 기술 간의 성숙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

1) 처음에는 기술성숙도를 7단계로 구분하였으나, 이후 9단계로 확장하였다.

2) 미국 국방부(DoD)는 NASA의 TRL 단계별 정의를 국방무기 개발분야의 특성에 맞게 재정의(H/W와 제조기술의 TRL 정의를 분리, 차이점으로 제조기술 TRL은 1~3단계 없이 4~9단계로만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3) 사업의 위험관리 도구·수단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림 7 TRL 단계별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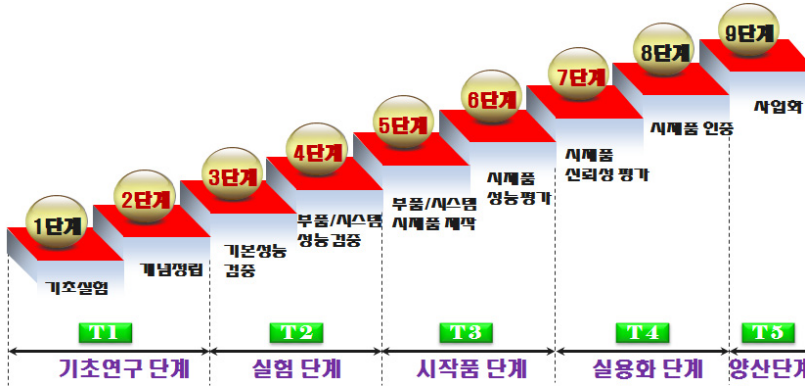

단계	구분	정의	세부 설명
1	기초 연구 단계	기초 이론/실험	•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3	실험 단계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핵심성능 평가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5	시작품 단계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경제성 미고려)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이 1~수개 미만인 단계
6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파일럿 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단계	구분	정의	세부 설명
7	실용화 단계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9	양산 단계	사업화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를 위해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분야별 TRL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2008.12
주 : TRL 단계별 정의는 기술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재 용어의 사용 TRL은 활용 측면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개발기술에 대하여 기술 성숙도를 일관된 척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TRL 기준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할 경우 제품과 시스템 개발의 예산과 개발일정에 대하여 처음에 목표한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4)]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은 2006년부터 미국 국방부의 TRL 기준을 준용하여 국방무기 개발사업의 기술투자 결정 및 위험관리 도구로 TRL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5)]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2007년부터 소재부품개발사업 등 산업분야별로

4) (사례)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이 미성숙 단계라면 그만큼 개발에 따른 위험이 높으며, 그 위험은 개발일정의 지연 및 비용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실 예로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2006년 국방무기 개발사업 52개에 대한 분석결과, 미성숙 기술의 적용을 개발일정의 지연 및 비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함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사업관리상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TRL 6단계 이상에 도달한 성숙기술에 한하여 국방무기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5) 방위사업청은 2006년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R&D과제 제안서 접수 및 개발과정에서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등 개발단계에 따라 TRL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 정부R&D의 효율화 및 축소를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비율 등과 관련하여 TRL 6단계 이상은 민간기업 투자 위주로 추진하고, TRL 4단계 이상에 대해서만 '공동투자', '기존 무기체계 개조·개량을 포함한 경우', '민수전환이나 수출가능성 있는 사업, 군 소요량 많고 개발 성공 가능성 높은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개발과제의 신규·중간평가 시 TRL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을 객관화하려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6] 한편, 'Post 4+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2008~2012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1단계 2009~2011년, 2단계 2012~2014년)', '신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2013년 이후) 등의 지역R&D 사업은 국가R&D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2008년부터 TRL 6~8단계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표 6〉 주요 산업분야의 TRL 단계별 평가지표

<table>
<tr><th rowspan="2">단계</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TRL정의</th><th colspan="9">산업 분야</th></tr>
<tr><th>기계·로봇</th><th>소재</th><th>전기전자</th><th>정보통신</th><th>S/W</th><th>섬유</th><th>고분자화학</th><th>바이오</th></tr>
<tr><td>1</td><td rowspan="2">기초연구단계</td><td>기초실험</td><td colspan="4">과학적 연구단계
(기초논문, 기초연구 수준)</td><td>기초이론/실험</td><td colspan="2">과학적 연구단계
(기초논문, 기초연구 수준)</td><td>응용원리</td></tr>
<tr><td>2</td><td>개념정립</td><td colspan="4">기본원리가 응용기술개발로 전이되는 단계
(응용논문, 특허 수준)</td><td>실용목적의 아이디어, 논문 등 개념 정립</td><td colspan="2">기본원리가 응용기술개발로 전이되는 단계(응용논문, 특허 수준)</td><td>탐색·정제</td></tr>
<tr><td>3</td><td rowspan="2">실험단계</td><td>기본성능검증</td><td>모델링/설계</td><td>소재합성/배양</td><td>모델링/설계</td><td>모델링/설계</td><td>SW 모델링(분석/설계)</td><td>소재합성/배양</td><td>소재합성/배양</td><td>효능연구</td></tr>
<tr><td>4</td><td>부품/시스템 성능검증</td><td>핵심요소기술</td><td>최적의 배합비</td><td>핵심요소기술</td><td>핵심요소기술</td><td>연구시제품 (프로토타입) 구현</td><td>최적의 배합</td><td>최적의 배합비</td><td>핵심요소기술</td></tr>
</table>

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산업기술 분야에 TRL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①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TRL 평가 기준(2007년), ②산업분야별 TRL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2008년) 등을 수행하였다.

단계	구분	TRL정의	산업 분야							
			기계·로봇	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S/W	섬유	고분자화학	바이오
5	시제품 단계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제작 기술 확보	공정 최적화	제작 기술 확보	제작 기술 확보	서브시스템 개발(분석/설계/구현)	공정 최적화	공정 최적화	공정최적화 (분리·배양)
6		시제품 성능평가	시제품 성능	시제품 성능	시제품 성능	시제품 성능	서브시스템 시험/유효성 확인	시제품 성능	시제품 성능	제재화 전임상
7	실용화 단계	시제품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	시스템 통합 /검증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	임상 (1,2상)
8		시제품 인증	KS/ISO 인증	KS/ISO 인증	KS/ISO 인증	KS/ISO 인증	(실제 환경에서의) 시스템 시험/검증	안정성 인허가	KS/ISO 인증	임상 (3상)
9	양산	사업화	–	–	–	–	사업화	–	–	식약청 허가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분야별 TRL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2008.12

참고자료·문헌

- 배윤호, 최석철(2009), 국방시스템 기술전이지원을 위한 기술성숙도 도출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 제26권 제3호, 한국경영과학회
-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8), 산업분야별 TRL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7),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TRL 평가 기준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7. 도시첨단산업단지

생성배경 그간 산업단지가 시장과 인력을 갖춘 도시지역보다는 도시 외곽 위주로 지정되어 도시지역 입지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됨에 따라 도시지역 입지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에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용어설명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 입지의 집적화, 벤처기업 전용단지·문화산업 단지·소프트웨어 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회동·석대도시첨단(부산) △에코델타시티(부산) △모라도시첨단(부산) △IHP도시첨단(인천경제자유구역) △평촌스마트스퀘어도시첨단(경기) △동탄도시첨단(경기) △춘천도시첨단문화(강원) △춘천도시첨단정보(강원) △네이버도시첨단(강원) △청주도시첨단문화(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도시첨단(충북) △태안도시첨단(충남) △내포도시첨단(충남) △전주도시첨단(전북) △창원덴소도시첨단(경남) △대구신서혁신도시 도시첨단(대구) △행복중심도시4-2

생활권 도시첨단 △광주남구도시첨단 △판교창조경제밸리(경기) 등 전국에 19개 단지가 지정되었다.

〈표 7〉 도시첨단산업단지현황

단지명	시·도	지정일	지정면적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	비고
회동 석대도시첨단	부산	2008.08.27	227 (130)	금속가공, 전자부품	
부산에코델타시티	부산	2015.12.24	660 (362)	첨단산업, 지식문화정보통신	
모라도시첨단	부산	2012.04.11	11 (6)	지식산업, 정보통신	
IHP도시첨단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	2011.08.01	1,132 (596)	IT, 자동차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	경기	2012.04.03	255 (108)	전자부품, 컴퓨터	
동탄도시첨단	경기	2014.02.28	149 (106)	–	
춘천도시첨단문화	강원	2008.01.25	187 (48)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춘천도시첨단정보	강원	2010.04.30	25 (42)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네이버도시첨단산업단지	강원	2011.10.14	89 (42)	출판, 컴퓨터프로그래밍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충북	2002.03.25	51 (30)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산업	
충부진천음성혁신도시 도시첨단	충북	2014.12.29	223 (157)	화학, 의료정밀 등	
태안도시첨단	충남	2011.11.21	39 (32)	출판업	
내포도시첨단	충남	2015.06.26	1,260 (925)	통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주도시첨단	전북	2004.09.08	110 (39)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창원덴소도시첨단	경남	2005.11.10	145 (71)	전자부품, 컴퓨터	

출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는 2013년 9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추진계획**
  -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인근에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 전국에 현재 11개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되어 있으며, '14년 3개, '15년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
- **인센티브**
  -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
- **개발계획**
  -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
- **생활 인프라**
  -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조성하는 경우는 인근 생활 인프라를 활용하고, 별도 지구의 형태로 조성하는 경우는 단지계획 수립 시 생활환경계획을 세워 택지지구 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문헌

- 국토교통부(2011), 토지이용 용어사전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2012),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 산업통상자원부(2013),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3차 무역투자활성화회의

작성자 : 류세선 센터장(한국금형산업진흥회)

정책용어

8. 로컬에너지

생성배경 로컬에너지(Local Energy)라 함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에너지원을 자체 조달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고, 그 에너지를 지역 안에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태양광·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조력 등의 재생에너지[1]는 (에너지 고갈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산된 해당 지역에서 소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로컬에너지로 지칭하고 있다.

용어설명 로컬에너지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단순히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한 다음에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점[2]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년전부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에너지를 조달·생산·공급할 수 있는 로컬에너지를 기반을 한 지역분산형

1) 정확한 명칭은 재생가능 에너지이며, 땅속 마그마에 의해 생기는 지열과 달의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조력을 제외하면 (바람, 물의 흐름, 생물체 등은 태양에너지의 변형이나 축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모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임.

2)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은 화석에너지의 고갈 위기, 온실가스 배출, 핵발전소 안전성 우려, 환경적·사회적 갈등(원전 입지, 송전탑 건설 등), 경제적 손실(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손실 및 송전비용 증가)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성에너지시스템(hard energy system)'을 태양광·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조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연성에너지 시스템((soft energy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로컬에너지는 (개념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역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 '분산형 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통용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지역의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확충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주도, 지자체 주도, 민간 주도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는 저탄소녹색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이 있고, 지자체 주도로는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를 비롯하여 지역에너지계획[3] 수립을 통한 '지역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민간 주도로는 지역주민과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에너지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는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여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유형별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최초이다. 당초 2020년까지 600개의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을 목표로, 2010~2012년간 환경부(도시형), 행안부(도농복합형), 농식품부(농촌형), 산림청(산촌형) 등 각 부처별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포기, 사업대상지 변경, 사업내용 변경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2014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현재 13개소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선정한 3개(강원 홍천, 광주 운정, 충북 진천), 2015년에 선정한 10개(충북 청주, 충남 아산, 경북 경주·영

3)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천, 경남 양산·하동·남해, 전남 순천, 경기 안산, 전북 김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하여 주민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자체 주도로는 2012년 4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최초이다. 이어서 2015년 서울, 경기, 충남, 제주 등 4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첫째,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둘째,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셋째,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해 '지역에너지정책 포럼' 정례화를 제안하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주도하려는 지자체의 새로운 움직임은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4]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다수의 지자체에서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서울시)', '에너지농장 지원(전남)', '카본프리 아일랜드(제주)' 등의 사업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

그림 8 지역별 전력자립도(생산/소비)(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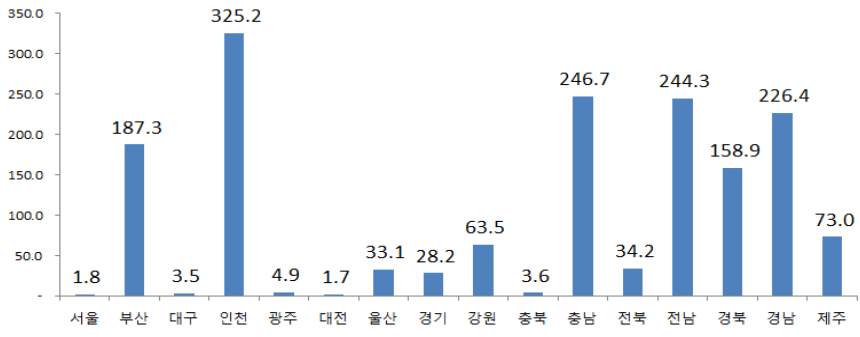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15.12), 2015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4) 서울 노원·성북·강동, 경기 수원·안양·안산,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강원 인제 등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에너지 자립화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민간 주도로 추진한 에너지자립 마을로는 전북 부안군 등용마을과 화정마을,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 경남 산청군 갈전마을, 경남 통영시 연대도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등용마을(27가구 60여명 주민이 살고 있는 농촌마을)의 경우, 2003년 부안 핵 폐기장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참여하여 출자한 시민 햇빛발전소(부안마중물)를 설치하였고, 이후 2008년에는 마중물 1호기, 2호기, 2009년에는 부안나눔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바이오디젤 유채사업,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등을 실시한 결과 가정용 전력의 60%를 자립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참고자료·문헌

- 경남발전연구원(2012), 에너지 분권화와 지역당면과제
- 국무조정실 등(2014),「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기반 구축」연구
- 국회 로컬에너지 정책포럼(2014), 지역분산형 발전과 에너지 민주주의
- 국회입법조사처(2013),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산업통상자원부(201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15), 2015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2), 지역에너지 자립을 모색한다
- 전북발전연구원(2014), 전북형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조성방안 연구
- 충남발전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4), 농촌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
- 환경부 보도자료(2015, 2016)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9.

마이스(MICE)산업

생성배경 MICE산업은 1990년대 후반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가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계기로 경제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MICE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또 정보 및 지식교류 인프라로서 산업 및 무역 발전에 근간을 제공하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 EU 등 세계 각국은 MICE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 각종 지원정책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1996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어서 2009년 MICE산업을 한국의 미래를 이끌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MICE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MICE 방문객이 지출하는 금액이 단순 레저나 관광 목적의 일반 여행자보다 높고, 전후방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1].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14~2018)」에 따르면 MICE산업의 핵심인 국제회의산업의 경우 국제회의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은 2011년 기준 2,585달러로 일반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1,409달러)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 MICE산업은 그 자체의 부가가치 창출보다 전후방 연관산업(예: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COEX·KINTEX(한국), IMEX(독일 프랑크푸르트), EIBTM(스페인 바르셀로나), GIBTM(UAE 두바이), ALBTM(미국 볼티모어), CIBTM(중국 베이징), AIME(호주 멜버른)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MICE시설을 공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이스(MICE)산업은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보 교류에도 크게 기여하여 교역확대와 산업발전을 병행 촉진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용어설명 마이스(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2],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사업(Exhibition) 등 4개 분야를 포괄하는 서비스산업이다.

기업회의(Meeting)는 기업 및 단체가 아이디어 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토론, 정보교환, 사업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포상관광(Incentive Tour)은 기업이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표창과 연수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여행을 의미한다. 컨벤션(Convention)은 아이디어 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토론, 정보교환, 사업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즉 Meeting보다 규모가 큰 회의로서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기준[3]에 부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제단체, 학회 등이 주최하는 총회나 학술회의, G20정상회의, APEC회담 등이 컨벤션의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전시(Exhibition)는 전문 전시시설에서 유통업자, 무역업자, 소비자,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특정 제품·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및 기관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거래 및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는 행사를 의미한다.

---

2) 기업회의와 달리 정부기관, 공공단체, 학술단체와 같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회의(Conference)의 경우 컨벤션(Convention)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3) (Type A) 국제기구(IGO, NGO)가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단, 참가인원 50명 이상), (Type B) 국제기구가 개최하지 않을 경우 국제기구가 속한 국가단위의 조직(지부)가 개최하는 국제적인 성격의 회의(단, 참가자의 40% 이상이 외국 참가자, 참가국가 5개국 이상, 회의기간 3일 이상, 전시회가 병행되거나 참가자가 최소 300명 이상 등의 조건 충족 시에 한함)

그림 9 MICE산업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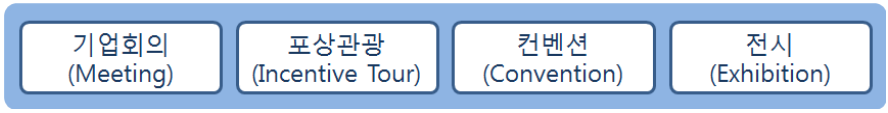

출처 : 저자 작성

이러한 MICE산업은 회의실, 전시시설 등과 같은 대규모 장치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 컨벤션 시설 외에도 관광, 숙박, 이벤트, 공연, 교통, 광고, 통신, 통역·번역 등의 연관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0 MICE산업 중 국제회의 시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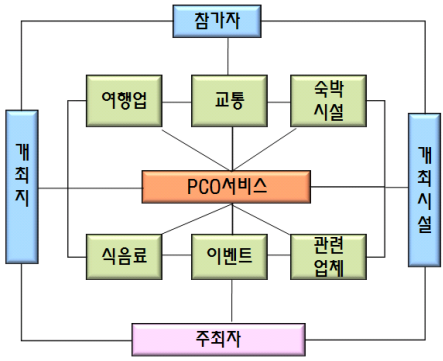

- 주최자, 참가자, 개최지(시설)의 중간 대리인으로서 국제회의기획업(PCO)이 각 지원 요소를 연계하여 행사를 준비, 운영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
- 국제회의 행사운영 및 지원 서비스 : 초청, 등록, 숙박,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광고와 홍보, 관광, 사교행사, 통역, 영접 및 수송, 식음료, 현장 운영, IT 솔루션, 그린 컨벤션 등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3.12),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현재 용어의 사용 국내 MICE산업은 2000년 COEX 신축개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국제회의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국제협회연합(UIA :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기준의 국제회의 건수가 2006년 185건

(세계 15위), 2013년 3위(635건), 2014년 4위(636건)에 이어 2015년 891건으로 급증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201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총 12,350건(2014년 12,212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중 한국은 총 891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시장 점유율도 5.9%에서 7.5%로 상승하였다. 세계 도시별 개최 순위에서는 서울이 싱가포르(1위, 736건)와 브뤼셀(2위, 665건)에 이어 전년 세계 5위에서 2단계 상승한 세계 3위(494건), 아시아 2위를 기록했으며 부산은 세계 11위(150건)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가 1996년「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국제회의 개최 지원서비스 강화,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및 홍보활동 다각화, MICE산업 지역균형 발전 유도,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2013년「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지역의 MICE산업 관련 시설의 복합화·집적화 유도를 통한 MICE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제도[4]를 도입한 것들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4)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의 시설'을 의미함.

〈표 8〉 주요 국가 및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및 순위

국가명	2015년 개최건수	3개년 순위			도시명	2015년 개최건수	3개년 순위		
		'15년	'14년	'13년			'15년	'14년	'13년
미국	930	1	1	2	싱가포르	736	1	1	1
대한민국	891	2	4	3	브뤼셀	665	2	2	2
벨기에	737	3	2	5	서울	494	3	5	4
싱가포르	736	4	3	1	파리	362	4	4	7
일본	634	5	5	4	비엔나	308	5	3	3
프랑스	590	6	6	7	도쿄	249	6	6	5
스페인	480	7	8	5	방콕	242	7	9	29
독일	472	8	9	6	베를린	215	8	11	16
이태리	385	9	12	10	바르셀로나	187	9	8	6
오스트리아	383	10	7	8	제네바	172	10	10	1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6

그림 11 전국 시도별 MICE 개최건수(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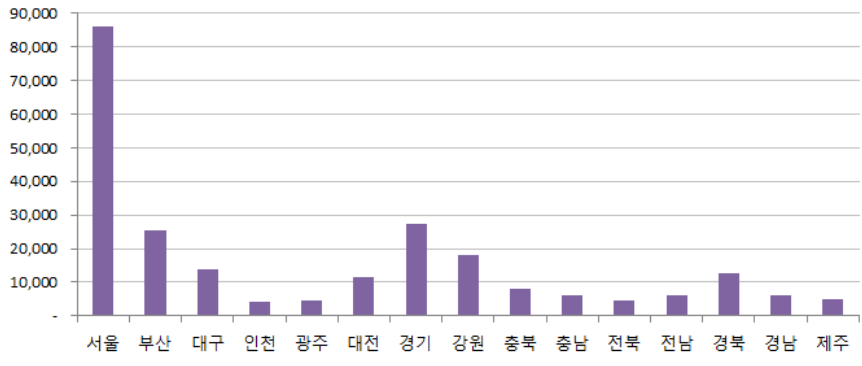

출처 : 한국관광공사, 2014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2015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부터 그간 Incentive Tour, Convention 중심이었던 MICE산업 지원정책을 Meeting 분야까지 확대하고, 해외 저명인사를 활용한 MICE

앰배서더, MICE 동반자 대상 관광프로그램 등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MICE 참가 목적의 외래 관광객의 유치 목표를 2015년 164만명, 2016년 172만명에서 2017년 18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김기홍, 서병로(2011), MICE 산업론, 대왕사
- 문화체육관광부(2013),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6), 보도자료
- 박의서, 오성환(2010), 사례 중심의 MICE 기획과 운영, 세림출판
- 송용주(2016), MICE산업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관광공사(2013), 2013 MICE 참가자조사
- 한국관광공사(2015), 2014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MICE 시설과 인접지역 복합화 추진방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컨벤션 지원정책 개선방안
- 황희곤(2012), 한국MICE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관광투자 뉴스레터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10. 마이스터고

생성배경 저출산 영향 등으로 전문계고 학생이 감소하고 학벌중심 사회구조 등으로 전문계고 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취업률을 역전함에 따라, 전문적인 직업교육 발전 및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스터고가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용어설명 마이스터고는 최고의 기술중심교육으로 예비 마이스터(Meister)를 양성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산업체·지자체와 협력하여 졸업 이후 우수기업에 취업이 가능하고, 취업 확정자는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 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시에도 특기분야에 근무할 수 있고, 3년 이상의 직장 경력을 쌓으면 재직자 특별 전형을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수업료·입학금이 지원되고, 우수학생과 저소득층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숙사제공·산업체·직업전문학교 연수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교육부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기계·에너지·철강·해양 등 지정분야별 산업수요 적합성, 학교개편방향, 지자체·산업체의 육성의지, 교육과정 편성의 적합성, 교원 활용방안 등 산·학 연계가 잘 되어 있고 졸업생의 산업체 연계 채용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마이스터고를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이 전국단위로 모집하며 현재 각 분야 44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고, 학생 선발권의 범위나 선발 방법이 다양하다. 한편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2014년 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부처, 기업,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 Sector Council) 및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RC, Regional Council)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을 연계·지원할 수 있는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도제 시험학교 수(안): 3교('15년 → 10교('16년) → 20교('16년)).

그림 12 마이스터고 학생의 성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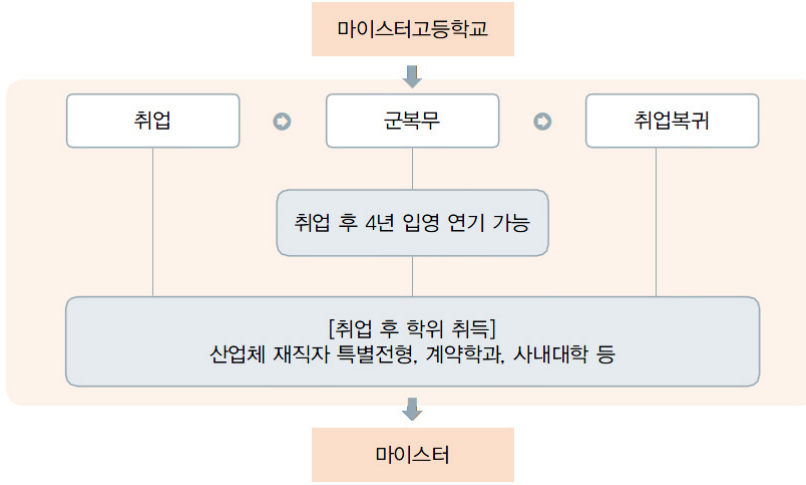

출처 : 마이스터고 2016년 신입생모집요강

〈표 9〉 마이스터고 운영 현황

번호	학교	개교년도	지정분야	소재지	협약기업수
1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2010년	뉴미디어콘텐츠	서울	130
2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2016년	해외건설·플랜트	서울	–
3	서울로봇고등학교	2013년	로봇	서울	118
4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2010년	에너지	서울	170
5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2010년	기계	부산	411
6	부산자동차고등학교	2010년	자동차	부산	125
7	부산해사고등학교	2012년	해양	부산	57
8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2010년	기계·메카트로닉스	대구	194
9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2016년	SW·SW융합	대구	36
10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2015년	자동차	대구	70
11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2017년	도시형 첨단 농업	대구	–
12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2010년	전자·통신	인천	189
13	인천해사고등학교	2012년	해양	인천	43
14	광주경영고등학교	2017년	소프트웨어	광주	–
15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2010년	자동화설비	광주	74
16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2015년	소프트웨어	대전	79
17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2010년	전자·기계	대전	102
18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2010년	기계·자동화	울산	46
19	울산에너지고등학교	2012년	에너지	울산	68
20	현대공업고등학교	2015년	조선해양플랜트	울산	28
21	수원하이텍고등학교	2010년	메카트로닉스	경기	158
22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2010년	자동차·기계	경기	164
23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2013년	발전산업	강원	35
24	원주의료고등학교	2010년	의료기기	강원	152
25	충북반도체고등학교	2010년	반도체장비	충북	47
26	충북에너지고등학교	2013년	차세대 전지	충북	52
27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2012년	바이오	충북	72
28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2012년	SMT장비	충남	53
29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	2012년	자동차부품제조	충남	42
30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2015년	식품	충남	24

번호	학교	개교년도	지정분야	소재지	협약기업수
31	합덕제철고등학교	2010년	철강	충남	30
32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2010년	조선·기계	전북	152
33	김제자영고등학교	2017년	농생명자원 식품	전북	–
34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2010년	기계	전북	233
35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2014년	말 산업	전북	16
36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2013년	석유화학산업	전남	14
37	완도수산고등학교	2014년	어업 및 수산물 가공	전남	42
38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2013년	친환경농축산	전남	86
39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2010년	항만물류	전남	82
40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2010년	전자	경북	115
41	금오공업고등학교	2010년	모바일	경북	163
42	영천상업고등학교	2018년	식품품질관리	경북	–
43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2013년	철강	경북	59
44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2013년	원자력발전설비	경북	76

출처 : 마이스터고 홈페이지(http://www.meister.go.kr) 2016년 02월 29일 기준

해외사례 핀란드 헬싱키 인근 에스프시에 위치한 옴니아(Omnia)는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능인을 양성하는 거대한 직업학교이다(학생 1만여 명, 교직원 700여 명). 라틴어로 '모두'라는 뜻을 가진 '옴니아' 직업학교에서는 모든 직업의 종류를 현장 중심으로 교육하며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 교육부(2014),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제5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교육부(2010),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마이스터고 홈페이지(http://www.meister.go.kr)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포털(http://www.hifive.go.kr)

작성자 : 이희정 교수(한양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1. 미니복합타운

생성배경 중·소규모의 지방산업단지는 그동안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현상에 따라 현지 주민을 고용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임대주택, 보육원, 유치원, 학교, 문화시설 등 근로자 정주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워 외지인을 고용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으로 기업 활동과 투자에 장애가 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방중소규모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용어설명 미니복합타운은 지방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찾아오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단지개발 사업이다.

미니복합타운에는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공급하고, 도서관, 영화관 등 문화시설과 육아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육원 및 유치원을 설치하며,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미니복합타운은 지자체장이 지구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림 13 미니복합타운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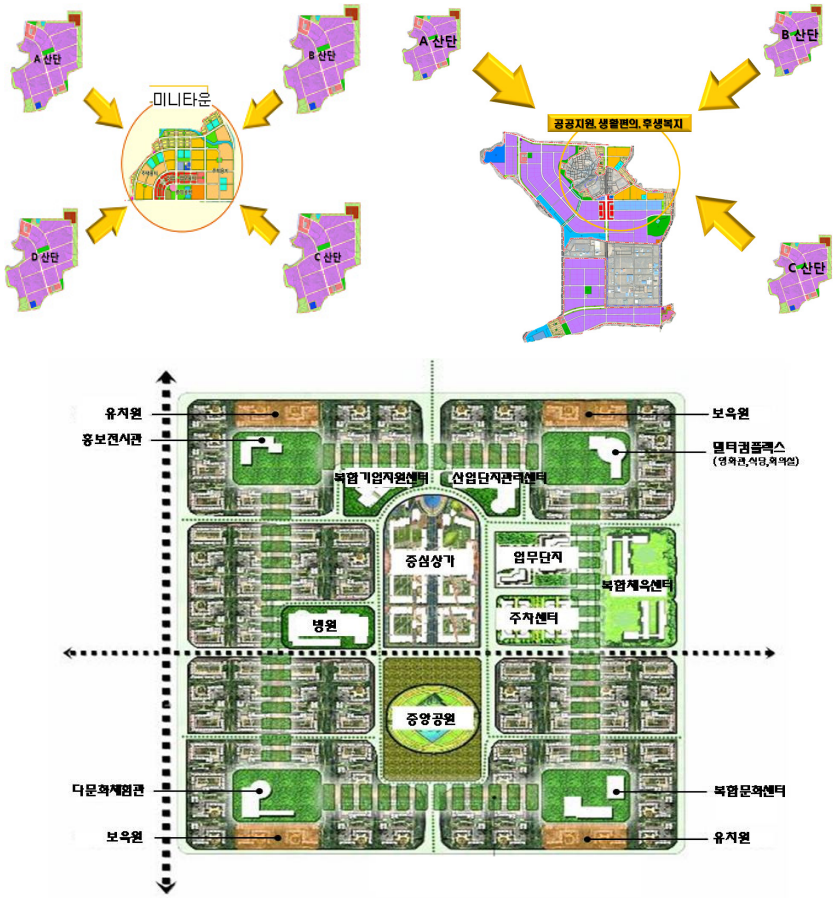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현재 용어의 사용 국토교통부는 미니복합타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월 1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동법 제46조의2(지원

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를 개정하면서,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고,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단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건설량의 5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지방 중소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2월 포천시와 예산군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한데 이어, 10개 지역을 추가하는 등 총 12개 지역에 미니복합타운 사업 추진을 검토하였다. 이중에서 7개 지역이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으나, 기장군 등 나머지 지역은 자금조달, 수요부족, 사업성, 민간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표 10〉 미니복합타운 사업지역 개요

시·도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군	기장	포천	강릉	충주	제천	예산	완주	영광	장흥	고령	창녕	함안
면적 (천㎡)	340	158	70	100	276	48	408	52	190	66	128	150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15.2.5, www.molit.go.kr) 및 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해외사례 미니복합타운은 과학기술도시(technopolis)를 소규모로 집약시킨 변형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강병수, 2004). 테크노폴리스는 산(産)·학(學)·주(住)의 세 기능이 조화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을 바탕으로 고급 노동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의 쓰꾸바 과학도시, 미국의 Route

128, 실리콘밸리, RTP(Research Triangle Park),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 대만 신죽첨단산업단지, 우리나라의 대덕 테크노밸리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테크노폴리스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형의 도시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미니복합타운은 지방 중소도시의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소규모 정주체계를 갖춘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김정홍, 2009).

참고자료·문헌

- 강병수(2004), '테크노폴리스의 형성과 성장의 역사적 과정', 도시행정학보 V.17 n.2: 65~83
- 김정홍(2009), '국내외 대학 중심의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례와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KIET 산업경제 : 48~57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2.5), 정부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2.6.28), 미니복합타운사업 전국 확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2.7.4), 함안칠서, 창녕대합 미니복합타운 사업지에 선정

작성자 : 윤정중 연구기획실장(토지주택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2. 복합시설

생성배경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9조 제2항)

용어설명 특정 기능의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기능의 시설물로 집적하여 설계·건축·운영함으로써 시설비(건축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고 이용자 증가 등으로 시설활용도 제고(운영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복합시설의 종류로는 교육기반 복합시설, 문화기반 복합시설, 체육기반 복합시설 기타 교통기반 복합시설 등 여러 가지 유형을 들 수가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라고 한다) 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자체가 신청한 차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복수의 지특회계사업간 복합시설뿐 아니라 일반회계 등 타 회계 사업과 지특사업 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경우, 신규로 신청하는 지특사업이 기 추진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거나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한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사업,

부지공동이용 등으로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에 복합시설 사업으로 인정하여 우선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단, 사업모델이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 당초 사업자체가 연계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주무부처의 계획·조정등에 따라 지자체간 협력·연계하는 경우, 동종(예시 : 체육관 + 운동장 + 헬스시설) 또는 유사 시설(예시 : 고추장, 된장, 육젓 등 장류 제조시설) 등의 복합시설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편성상의 우대에 해당되는 시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림 14 복합시설의 예

▣ 경상남도 마산 중리초교 복합시설 / BTL사업(2008년 준공)

- 학교 + 문화시설 + 생활체육시설
- 추진주체 : 교육청 + 지자체
- 총사업비 : 지자체 50억 원
- 운 영 권 : 지자체
- 소 유 권 : 지자체 20년간

▣ 서울, 금호초교 복합시설 / 재정사업(2001년 준공)

- 학교 + 주차장 + 체육관 + 수영장 + 헬스장 등
- 추진주체 : 성동교육청+성동구청
- 총사업비 : 교육청 110억 원+구청 114억 원
- 교육청은 체육관, 수영장 등 학생 무료 이용 (년 60억 원 절감), 구청은 학교부지 무상사용 (1,200평, 60억 원 절감)

출처 : 2011년도 BTL 학교복합시설 사업발굴 및 지원계획(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유사개념 지자체간 연계사업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간 협약, 계약, 약정 등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담하고 단일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시설 등의 허브화, 광역화가 촉진되거나 개별적으로 추진하였을 때보다 사업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일컫는다. 개별 지자체마다 중복 추진하지 않고 관련 지자체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단일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별 지자체로서 수행하기 곤란한 대형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의 경우, 지자체간 특화된 자원, 산업, 기능, 인프라를 상호보완 및 연계하기 위한 제반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며 이 역시 예산편성상의 우선 반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에 의하여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 복합시설의 경우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시설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과 주차장을 함께 건립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지역문화 커뮤니티센터의 기능, 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평생교육시설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함으로써 부족한 도시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비용절감 효과 등이 우수하여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금 우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사례 일본 이치가와시의 제7중학교의 '학교+보육시설+문화센터+요양시설'.

참고자료·문헌

- 기획재정부(201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 이성룡 외(201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작성자 : 이여진 책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책용어

13. 뿌리산업

생성배경 뿌리산업은 국내 주력기간산업과 新성장동력산업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 층의 취업기피 대상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고, 첨단화를 통해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011.7),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2014.1)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 뿌리산업을 재조명하고 있다.

용어설명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말한다.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 제품의 형상을 제조하는 공정과 열처리, 표면처리 등 소재에 특수기능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구분된다. 뿌리산업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군이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명품 제조업의 탄생을 견인하고 있다. 스위스의 손목시계, 쌍둥이 칼, 독일의 벤츠 등 세계적인 명품은 모두 튼튼한 뿌리산업의 토대 위에서 탄생하였다.

그림 15 6대 뿌리산업

주 조	금 형	용 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 처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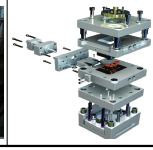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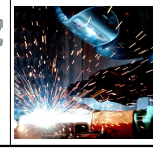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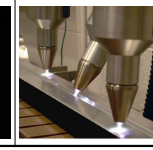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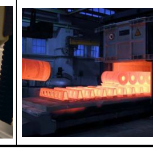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2.3.29, '명품(名品) 제조업 선도를 위한 뿌리산업진흥센터 본격가동'

정부는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고시하였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경기 몰드밸리(금형), 경기 시흥 도금산업 클러스터(표면처리), 광주 금형 특화단지(금형), 전북 군산뿌리산업 특화단지(금형, 소성가공, 용접), 전북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금형, 용접) 등 5곳이다.

해외사례 일본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제조업 강국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노쯔쿠리 국가 전략 비전을 제시하고, 「모노쯔쿠리 기반기술진흥 기본법」('99) 및 「모노쯔쿠리 기반기술 고도화법」('06)을 제정하여 모노쯔쿠리 기반기술에 대한 정부 R&D 자금 집중 투자, 핵심인재 확보 및 육성 등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표 11〉 국내 뿌리기업 분포도('12년)

권 역	지 역	기업수(%)	산업단지 입주수(%)	수요산업
수도권	경인·중부	15,660(62.6)	4,117(26.3%)	전자·통신·자동차
동남권	부산·경남	5,033(20.1)	848(16.9%)	조선·중공업·자동차
대경권	대구·경북	877(13.7)	758(22.1%)	전자·소재·기계
호남권	광주·전라	644(3.5)	540(61.7%)	전기·전자·자동차
합계		24,997(100)	6,263(25.1%)	

출처: 지식경제부(2012.12.04.), 보도자료,(주력산업과 동반성장하는 뿌리산업 생태계 구축)

참고자료·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2), 12년, 뿌리산업의 ACE 산업화 원년으로
- 산업통상자원부(2015), 201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작성자 : 송우경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4. 산업단지

생성배경 세계 최초의 산업단지는 1896년 영국의 맨체스터에 조성된 트래포드(Trafford) 공업단지로 알려져 있는데,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특히, 1950~70년대에 산업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공장입지 공급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산업단지가 확산된 이유는 경기호황에 따라 산업용지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대량생산 방식 도입 이후 생산라인이 수평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울산공업센터 조성을 시작으로 1964년 서울에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산업단지 시대가 개막되었다. 과거에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입지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각종 기업지원 시설과 근로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입주도 가능해졌다.

용어설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란 제조업과 첨단 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과 각종 지원서비스 시설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산업단지는 포괄적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되고 개발 후 단지 인프라 및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업용지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은 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법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및 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산업단지의 유형에 따라 개발주체와 조성 목적이 각기 상이하다. 산업단지 개발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단독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방식에는 공영개발 방식, 민간개발 방식, 절충 방식, 위탁시행 방식 등이 있다. 2016년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는 1,135개인데 국가산업단지 41개, 일반산업단지 608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9개, 농공단지 467개로 일반산업단지의 비중이 가장 높다.

〈표 12〉 산업단지의 유형과 지정 목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 목적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산업의 지방분산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농어민 소득 증대
지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해외 사례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산업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업단지를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도 직·간접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개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1970년대 이

후에는 단순한 생산 중심의 공업단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대학이 주도하는 연구단지, 공업·상업·업무기능이 결합한 업무단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자료·문헌

- 건설부·국토개발연구원(1991), 공업단지 개발편람
- 국토개발연구원(1994), 공업단지 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국토개발연구원(1998), 한국의 공업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2014), 2014 산업입지요람
- 한국산업단지공단(2014), 산업단지 50년의 성과와 발전과제
- 한국산업단지공단(2016), 산업단지 현황통계보고서 16.1분기

작성자 : 홍진기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15. 산업단지 캠퍼스

생성배경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추진만으로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및 고용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여, 대학-기업 간 공간적 융합환경 조성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산학협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공표하고(2011.2)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기준' 등 세부내용을 고시로 제정(2011.6) 및 개정(2012.9)하였다.

용어설명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집적지에 대학·대학원의 일부를 이전하여 교육-R&D-고용이 연계된 대학-기업이 물리적·화학적으로 일체화된 캠퍼스를 의미한다. 기존의 대학 중심 산학협력 모델과 달리 협력 주체 간 접근성 제고를 통한 상시적·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으로 인재 육성의 질과 고용 연계를 제고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캠퍼스는 산학융합연구실, 장비지원센터, Business Lab 등 필수시설과 대학과 기업의 여건 및 산업단지 특색을 고려한 선택시설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림 16 산업단지캠퍼스 개념

출처 :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 설명회 (교육부, 2014)

〈표 13〉 산업단지 캠퍼스 주요시설 및 내용

구분	시 설 명	내 용
필수 시설	• 산학융합연구실	• 대학과 기업이 연구실과 인력(학부 3~4학년, 대학원생)을 공유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는 연구실
	• 장비지원센터	•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실험·연구 장비 등을 구축하여 연구개발·교육·기업지원에 활용
	• 산업체 재직자 교육센터	• 산업체 재직자 교육에 활용
	• Business Lab	• 기업체 수요를 바탕으로 교수, 대학원생, 기업연구원의 협력연구를 통한 창업 및 사업화 공간
	• Business Solution 센터	• 산단 및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기획, 경영, 디자인, 마케팅, 회계 등을 자문·지원 활동
선택 시설	• 산학협력단, 복지시설, 행정시설 등	• 대학, 기업 및 산업단지 특색과 여건을 반영한 자율시설 및 환경 개선시설 등

출처 : 산업단지 캠퍼스 개념 및 구성(교육부, 2013)

현재 용어의 사용 정부는 2011년도부터 산업단지 캠퍼스에 산업계 인력수요를 반영한 현장적합형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융합연구실 등의 기업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R&D-고용'이 연계된 창조경제형 산학융합 모델을 구축하는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까지 총 4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15개 산업단지 캠퍼스를 선정 및 대학별 연간 10억 원 이내를 3년간 지원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2014년 2월).

〈표 14〉 연도별 산업단지 캠퍼스 선정 및 운영 현황

선정 년도	선정 대학
2011	경남정보대, 조선대, 한남대
2012	배재대, 창원대
2013	동서대, 한남대
2014	경기과학기술대, 인천대
2015	남부대, 신안산대
소계	전국 15개 대학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2015)

해외사례 스웨덴 왕립공대(KTH)와 스톡홀롬 대학이 연합하여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내에 'IT 대학'을 설립하였으며, 선진산학협력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http://www.kista.com)

참고자료·문헌

- 교육부(2013, 2014),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추진계획
- 교육부(2012),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 매뉴얼
- 김범식, 정병순, 김묵한(2010), 스웨덴의 IT산업 클러스터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서울연구원
- 김승환 외(2004), 선진국 산업클러스터 재생 성공사례 연구, 정책기획위원회

작성자 : 이희정 교수(한양대학교)

정책용어

16. (지역)산업생태계

생성배경 생태계(ecosystem)는 기본적으로 생태계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의존, 공생, 공진화(co-evolution), 경쟁과 협력, 가치창출과 가치공유 등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핵심 개념들이 경제·산업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은 기업 간 물자 및 에너지의 흐름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산업생산에서 가치사슬의 분화로 기업 간의 상호의존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발전의 주요 트렌드로 산업과 기술의 융합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산업 환경에 대해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산업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는 주된 배경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산업생태계[1]는 특정 산업군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완제품을 제공받는 수요자, 경쟁자 및 보완재를 생산하는 업체들까지 산업 환경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생태계의 유기체들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또는 경제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산업생태계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핵심 기업(keystone player)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 경쟁자 및 보완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포함

1) 유사 용어로서 기업생태계는 가치 창출 및 유통에 영향을 주고받는 공급업자, 유통업자, 외주 기업,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제조업자, 기술 공급업체, 기타 조직들 간의 느슨한 네트워크(loose networks)를 의미함.

하는 확장된 네트워크(extended network), 이외에 제도 기관 및 관련 산업의 기타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개념인 것이다.

그림 17 지역산업생태계의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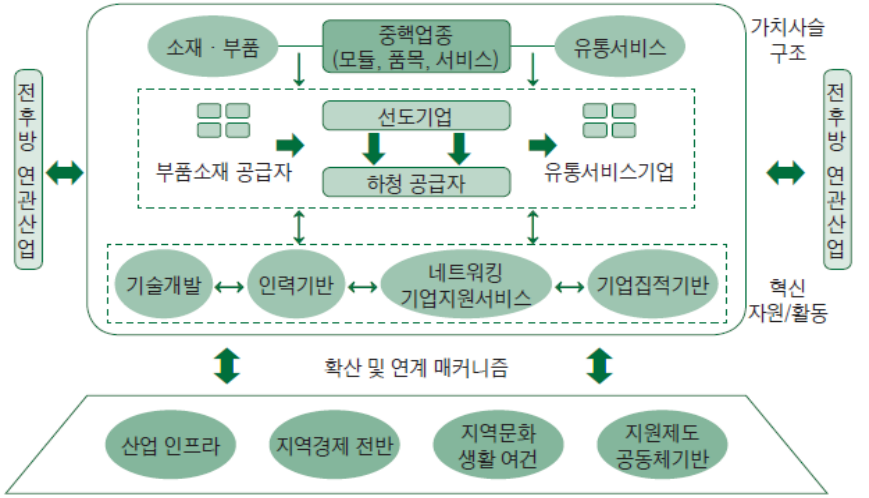

출처 : 김영수·박재곤·정은미, 산업융합시대의 지역산업생태계 육성방안, 산업연구원(2012)

현재 용어의 사용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은 지난 10여 년 간 산업클러스터론의 관점에서 시도별 전략산업,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등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 및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특정 산업의 특화발전을 강조하기보다는 '소재-부품-모듈-완제품-시스템-서비스로 연결되는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 산업클러스터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한 예로 광역선도사업의 후속사업으로서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경우 지역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산업 자체의 시장성과 성장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지역 내 타 산업과의 연관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간 협력산업[2]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협력산업의 생태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구조의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기획을 2014년도 지역산업 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마련하고, 해당 협력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협력형 R&D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이동희, 구진경, 박지혜(2014),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 지식집약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김영수, 박재곤, 정은미(2012), 산업융합시대의 지역산업생태계 육성방안, 산업연구원
- 권오혁(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국토(통권380호)
- 산업연구원(2011), 신성장동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방안 연구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2) 시도별 대표산업 중에서 시도 간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공동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임.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7.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

생성배경 산업단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개발연대에 조성된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6월 제45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7개 시범단지(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를 선정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어설명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 업종별로 산·학·연 협의체(미니 클러스터)를 구성해 활발한 산·학·연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를 혁신적 지식과 기술이 창조되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산·학·연간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산업클러스터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2005년 4월에 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 11월에는 성과 확산을 위해 5개의 산업단지(남동, 성서, 녹산, 대불, 오창)를

추가 지정하였다. 2009년 4월에는 사업 명을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에서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변경하였다. 2010년 2월부터는 광역경제권에 맞추어 193개 산업단지(거점단지 25개, 연계단지 168개)를 사업 대상에 포함하였고 2015년 1월에는 전국 산업단지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사업의 기본모형은 산·학·연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니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협업수요를 R&BD 과제로 지원하는 R&BD 네트워크 운영사업,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수행·관리를 지원하는 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사업, 프로젝트형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지원하는 테마클러스터사업 등이 있다.

해외사례 영국의 트래포드 파크, 스페인의 포블레노우 등의 사례가 있으나 산업단지가 쇠퇴한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재개발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경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자원부(2007), 한국산업클러스터 백서
- 지역발전위원회(2010), 2010년도 중앙부처 지역발전사업 편람
- 산업통상자원부(2012),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 한국산업단지공단(2015),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사업개요

작성자 : 홍진기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8.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생성배경 산업단지 관련 법률체계는 70~8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산업단지 개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관련 법률이 양산되면서 복잡다기한 체계를 이루다가 1991년 1월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양대법 체계로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산업입지와 관련한 법률의 체계는 상위법으로서의 '국토기본법'이 있으며 그 밑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이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의 집적(clustering)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 내용이 2015년 5월 18일 개정(법률 제13312호)되어 8월 19일에 시행하도록 되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그 안에 제1장 총칙 3조에 해당한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은 첨단지식산업의 성장, 융·복합화의 진전 등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도 유관산업 촉진, 산·학·연 연계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계획이다. 이는 동시에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소를 집적하고, 생산·기술·자원배분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 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단위의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창조경제가 新 산업 트렌드로 자리 잡음에 따라 유망산업 발굴, 산업·지역 간 연계 및 협력 방안의 재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3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 계획"('14~'18년)을 수립함으로써 성장유망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방향의 재정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용어설명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성장유망산업 현황, 지역별 성장유망산업 발전전략, 산업의 집적 및 연계 촉진 방안, 산업집적지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수립기간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이다. 수립의 절차는 시도 및 관계부처 협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며, 산업집적 관련, 정부의 최상위 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정책 수립 시 주요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토종합계획,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표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내용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1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4.14., 2013.3.23.〉
1.「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 16〉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관련계획의 비교

구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법적 근거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계획 기간	2011~2020(4차 수정)	2014~2018(3차)	2014~2018(3차)
계획 목표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 ▸품격 있는 매력 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 관계 ▸정책 사각지대 해소	▸성장유망산업의 지역별 특화 ▸산업의 집적 및 산업 간·지역 간 연계 촉진 ▸산업집적지의 경쟁력 제고

구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정책 수단	▸지역특화, 광역적 협력 강화 ▸자연친화적, 안전한 국토공간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등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양성 등	▸시도별 성장유망산업 육성 ▸경제협력권 사업 추진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 인프라 개선
특징	▸국토의 이용·개발·보전, 인구, 산업의 정책방향 제시 ▸장기계획	▸중앙정부와 지자체(시도)의 기존 계획을 모두 포괄 ▸중기계획	▸지역산업발전과 관련된 정책 가이드라인 ▸중기계획
수립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 시·도	▸중앙정부

현재 용어의 사용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서는 산업의 집적 및 연계 촉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성장유망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입지 공급”,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지역투자보조금·외국인투자를 활용한 지역산업 집적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7〉 성장유망산업의 분류

구 분	성장유망산업
기간산업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및 IT제품,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화학, 금속제품 및 가공,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신산업	메카트로닉스(로봇), 바이오소재, 의약, 정밀화학, 차세대 IT, 첨단의료기기, 에너지부품·시스템, 항공
창의서비스 산업	IT서비스(S/W), 디자인, 전문기술서비스, 디지털콘텐츠(문화), 관광, 환경서비스

정부는 성장유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력산업을 도출하였으며, 산업의 집적

도, 특화도, 성장성 및 지자체 육성의지를 감안, 광역선도산업, 新 특화산업의 통합·조정을 통해 시·도별로 5개 이내를 선정하였다.

〈표 18〉 지역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서울	•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
부산	• 초정밀융합부품, 지능형기계부품,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디지털콘텐츠
대구	• 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시스템,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인천	•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광주	•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소재부품,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디자인
대전	• 무선통신융합, 메디 바이오,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지식재산서비스
울산	•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세종	•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경기	• 정보통신, 생명, 문화콘텐츠, 국제물류
강원	• 웰니스 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충북	• 반도체, 바이오의약,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반 기계부품
충남	•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전북	•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소재섬유
전남	•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경북	• 디지털기기부품산업, 모바일융합산업, 에너지소재부품산업, 성형 가공산업, 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경남	•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 바이오
제주	• 청정 헬스 푸드, 물응용, 풍력 전기차, 관광디지털콘텐츠

아울러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은 실질적인 산업생태계 단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 간 협력산업을 선정하였다.

〈표 19〉 지역 간 협력산업

지역		경제협력권산업	발전비전
주관	참여		
부산	울산	조선·해양플랜트1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융·복합 기술도시 육성
	경남	차량부품	차량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R&D역량 강화
대구	경북·부산	하이테크 섬유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창의형 하이테크 섬유산업벨트 조성
대전	충남	기능성화학소재	세계적 수준의 기능성 화학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주	대전	광·전자융합	2023년 광전자융합산업 생산거점도시 건설
	전북	에너지변환·저장용 소재부품	에너지 자유도시를 위한 에너지 변환·저장용 소재부품 산업 육성
울산	경남·전남	나노융합소재	나노융합소재 산업 저변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강원	충북	의료기기	BT·IT 융합 기반 의료기기 기업육성을 통한 가치창조
충북	제주	화장품뷰티	한국형 화장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충남	세종	기계부품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계부품산업의 메카
	충북	이차전지	이차전지 부품 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 육성
전북	광주	친환경자동차부품	Green Car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선도기지 구축
전남	전북·강원	바이오활성소재	첨단 바이오활성소재산업 글로벌 기반구축
경북	대구·울산	자동차융합부품	자동차 융합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창조
	대구·대전	지능형기계	첨단 융·복합 기반 글로벌 지능형 기계 산업 강국
경남	전남	조선·해양플랜트2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융·복합 기술도시 육성
제주	강원	로하스 헬스케어	동북아 최고의 휴양형 MICARE 거점도시 육성

또한, 지역투자보조금을 활용한 지역산업 집적촉진을 위하여 유망산업 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지방투자 여건개선, 낙후지역 내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및 구조고도화사업과의 연계강화), 외국인 투자촉진, 유턴기업 국내투자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내용(2004. 2),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내용(2009. 12),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내용(2014. 12),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2014, 9) 지역산업발전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sedu.or.kr)

작성자 : 이경미 단장(충북지역사업평가단)

정책용어

19. 산업클러스터

생성배경 1980년대 초 이탈리아 북부지역(The Third Italy)의 국지적 산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 간 협력이 기업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높이며, 산업 및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1990년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국가의 경쟁우위(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라는 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소수의 지역클러스터(regional cluster)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가 국가혁신 체제의 주요 주제의 하나로 혁신클러스터를 다루기 시작함으로써 선진국에서 관련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용어설명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OECD(1999년)는 클러스터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사슬에 연계된 독립성이 강한 기업들과 지식생산기관(대학, 연구기관, 지식제공 기업), 연계조직(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 브로커나 컨설턴트 등), 고객의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마이클 포터는 클러스터를 특정 분야의 상호 연관된 기업체, 전문적인 부품 공급자, 서비스 공급업체, 관련 산업의 기업체 그리고 대학, 연구소, 협회 등이 함께 모여 일정 지역 내에서 경쟁 또는 협력하는 집중체로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클러스터란 일정 지역에서 산업발전과 관련된

혁신주체들이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집적을 이룸으로써 산업생산 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체계와 기업지원 체계가 효율적으로 접합된 지리적 집중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클러스터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이 모여서 상호 교류하고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다양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기업들은 각종 혁신주체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시너지와 외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클러스터 바깥의 기업보다 성장속도, 혁신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용어의 사용 클러스터 이론에 입각한 본격적인 정책시행은 2003년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02년에 기획되어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행된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집적지에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2004년 6월에는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이 발표되고 2005년부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사업(현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추진되었다. 2005년에는 연구개발 위주의 대덕연구단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산업 기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2~3개 시·도를 묶은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정책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해외사례 클러스터의 세계적인 성공사례들은 매우 많다. 대표적인 클러스터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루트 128, 리서치트라이앵글 파크, 핀란드의 울루, 스웨덴의 시스타,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영국의 캠브리지사이언스 파크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경제산업성이 기존 산업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를, 문부과학성이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의 '지적클러스터 창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산업연구원·한국산업단지공단(2001), 지역산업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국토연구원(2001),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및 군집체계 연구
- 마이클 포터(200), 경쟁론
- 산업연구원(200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사례 연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5), 선진국의 혁신클러스터

작성자 : 홍진기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0. 산학협력 선도대학

생성배경 기존의 산학협력 사업은 대학과 산업체 및 연구소간의 관점을 달리하고 있었다. 즉, 연구관리 중심 및 활동 교원에 대한 보상과 유인도의 저조 등으로 체계적인 산학협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비밀유출 우려와 정부·대학 주도의 협력 추진으로 자발적 참여가 결여된 기업 그리고 유사중복 문제 및 공과대학 중심의 지원 등으로 산학협력을 대학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이 미흡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지역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여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공과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을 대학 전체로 확산하고 산학협력이 교육·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주류 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 체제 개편을 중점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지역·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 및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 산학협의체 및 기술개발·협력 등 기업 지원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광역경제권) 및 산학협력 유형 등을 고려하여 5대 권역별로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그림 18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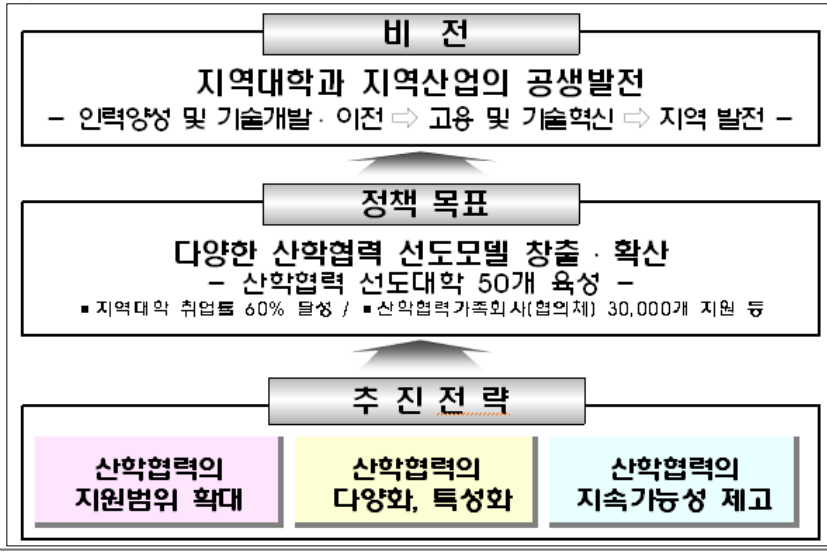

출처 : 2010 대학산학협력백서, 교육부.

〈표 20〉 유형별 수행 내용

구 분	목 표	지원 대상	예산	수행 내용
기술 혁신형	▪ 창의적 기술 인재 및 혁신적 연구인력 양성 ▪ 원천·혁신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학부 + 대학원	30~50억 원	▪ 교수 임용, 승진제도 개선 ▪ 특성화 분야 지원 ▪ 현장실습 학점제 운영 ▪ 캡스톤 디자인 운영 ▪ 취·창업 교육 ▪ 산학협의체, 산학협력가족회사 운영
현장 밀착형	▪ 현장 맞춤형,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 ▪ 현장 애로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학부 중심	20~40억 원	

출처 : 2010 대학산학협력백서, 교육부.

용어설명 정부는 2011년 5월 산학협력 지원을 통한 개방형 혁신역량 제고, 청년 취업 미스매치 해소, 대학의 역할 및 책임 확대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 및 특성화를 추진하고자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온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 사업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과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그리고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2012년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용어의 사용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5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최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1단계 포뮬러 평가, 2단계 사업계획 평가 및 산업체 만족도 설문조사 평가를 통해, 총 51개 대학을 지원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표 21〉 대학별 사업수행내용

구 분		사업내용
System	대학체제 개편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질 개선
	산학협력단 역할 및 위상강화	산학협력단을 대학내 산학협력자원과 네트워크의 허브로 구축
	창업보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창업교육 및 현장실습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산학협력 내실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Component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 운영
	인력양성 및 취업, 창업 지원	지역산업 및 산학협력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취업, 창업교육 및 지원
Link	기업연계강화	지역 및 기업체 수요에 부응하도록 기업지원 강화

출처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참고자료·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참여정부의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
- 교육부(2011), 2010 대학산학협력 백서
- 교육부(2011),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안)
- 강정화(2011),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고찰, 디지털 정책연구 제9권 제3호

작성자 : 류세선 센터장(한국금형산업진흥회)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1. 산학협력단

생성배경 성공적인 산학협력은 새로운 기업 창출과 고용 확대를 넘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귀중한 연구자금이 조달될 수 있고, 대학 연구 성과가 상업적으로 응용될 수 있으며 학생의 성공적인 취업이 촉진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과 공정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방안을 획득할 수 있으며, 미래의 시장 창출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원천기술을 창안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된다. 즉, 산학협력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기술혁신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기인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부 대학에서 산학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본격적으로 국내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었다.

용어설명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이며 하나의 독립된 특수 법인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표 22〉 산학협력단 설립, 운영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출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위 근거에 의거하여 대학은 산학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산학협력단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산학협력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표 23〉 산학협력단의 주요업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2.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 지원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운영 중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 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출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해외사례 스웨덴 정부는 소위 주요 대학 도시에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과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투자, 특허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술가교망(Technology Transfer)'과 대학 내에 기업체와의 계약연구와 연구결과물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우수연구센터(R&D Cent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는 실제 관련 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박사과정 프로그램' 및 기업과 대학의 협력과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HTF(The Danish National Advanced Technology Foundation)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같은 지역과 같은 분야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및 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공공연구 활동과 다른 사회경제 주체, 특히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Carnot 연구회(Instituts Carnot)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김환식, 나승일 (2001),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부(2011), 2010 대학산학협력 백서
- 교육부(2011),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방안(안)

작성자 : 류세선 센터장(한국금형산업진흥회)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2. 연구개발지원단

생성배경 교육과학부가 '지방R&D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2006년 12월)'의 이행을 위한 실천과제의 하나로서 '지역별 R&D전담기구의 설치·운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근거하여 2007년 부산의 연구개발지원단을 최초로 선정·지원하였다. 이후 충북(2008년), 대구·전북(2009년), 경기(2010년), 광주(2012년) 등의 순으로 연구개발지원단의 설치·운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당시에는 지원단별 국비지원 규모가 1억 원 이내에 머물러 R&D전담기구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용어설명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별로 지역R&D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R&D 조사·분석 및 평가, 정책기획, 네트워킹, 성과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R&D전담기구이다. 2016년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1]의 내역사업인 연구개발지원단지원사업을 통해 시도 단위의 지역R&D 관련 기관(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 테크노파크 등) 중에서 연구개발지원단을 선정하여 사업비(지원단별 연간 국비 2억 원 내외 + 국비지원액 100% 이상의 매칭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단별 지원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사업평가 결과를

1) 2012~2015년 기간에는 지역기초연구활성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부터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변경됨.

반영하여 계속지원 및 차등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19 연구개발지원단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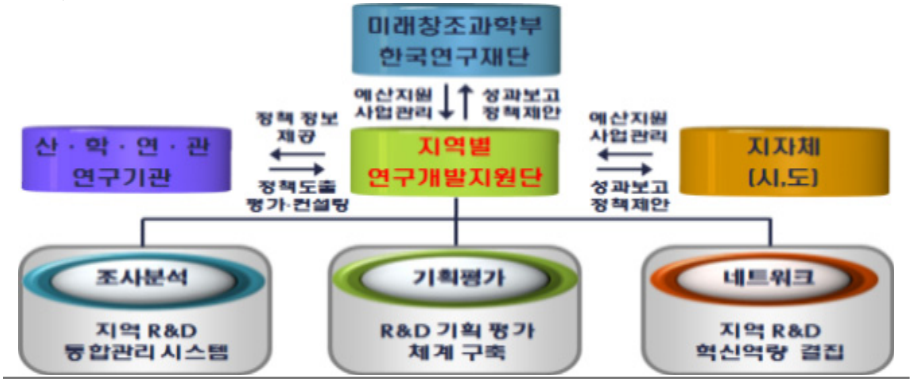

출처 : 한국연구재단 내부자료(2015)

현재 용어의 사용 미래창조과학부는 2012년까지 6개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원(지원단별 1억 원)하였으나, 2013년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인천 등 5개의 지원단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지원단별 지원 금액을 2억 원으로 확대하였다.[2] 2014년에는 대전, 충남, 울산, 제주 등 4개 지역의 지원단을 추가 선정·지원함에 따라 2015년 말 총 15개의 연구개발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2) 연구개발지원단의 국비 지원규모(억 원) : 2011년 3, 2012년 6, 2013년 24, 2014년 32, 2015년 31

〈표 24〉 연구개발지원단 지정·운영 현황(2015년 말 기준)

지역	지정연도	운영주체	지역	지정연도	운영주체
부산	2007	부산테크노파크	경북	2013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충북	2008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경남	2013	경남테크노파크
대구	2009	대구테크노파크	인천	2013	인천테크노파크
전북	2009	전북테크노파크	대전	2014	대전테크노파크
경기	2010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충남	2014	충남테크노파크
광주	2012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울산	2014	울산테크노파크
강원	2013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제주	2014	제주테크노파크
전남	2013	전남테크노파크			

출처 : 한국연구재단 내부자료(2015.3)

2015년 말 총 15개 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은 ①지역R&D사업의 조사·분석, ②지역 수요맞춤형 R&D사업의 발굴 및 기획, ③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④지역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 지원, ⑤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5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25〉 연구개발지원단의 주요 기능

- **지역 내 R&D 사업의 조사·분석**
  - 지역 내 R&D사업의 모니터링 기능 수행 및 조사·분석
- **지역 수요맞춤형 R&D 사업 발굴 및 기획**
  - 지역사업주체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공동 R&D사업 등 프로그램 발굴
  -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 R&D 사업의 기획 및 방향성 제시
-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 R&D기술 발전로드맵 등의 정책수립 지원
  - 지자체 과학기술전담부서 지원
-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지원**
  - 중앙부처 주도, 지자체 대응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선정 및 사후평가 지원
  - 지자체 대응자금에 대한 지역 내 파급성과 분석 및 프로그램 효율성 평가
-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지역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
  - 지역 R&D DB의 중앙(NTIS)와의 연동체계 구축·운영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2016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지역연구개발활성화사업)

현재 연구개발지원단의 조직적 위상을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테크노파크, 시·도 산하기관, 과학기술진흥센터, 다른 조직 내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기술진흥센터의 산하기관 등으로 전국적으로 일관된 조직 위상을 갖지 못하고 시·도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테크노파크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개발지원단이 인천, 대전, 충남, 제주 등 4개이며, 시도 산하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개발지원단이 부산(과거에는 테크노파크), 경기, 충북 등 3개 지역에 있다. 한편, 광주만이 과학기술진흥센터 내에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6〉 연구개발지원단의 위상

지역	지정연도	조례 유무
부산	2007	부산과학기술진흥조례(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내용)
충북	2008	충북과학기술진흥본부 충북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북	2009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전북과학기술진흥조례(전북테크노파크 전담지정)
경기	2010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 과학기술진흥조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정책, 조사, 분석, 평가)
광주	2012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광주과학기술조례
전남	2013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전남과학기술진흥조례
경북	2013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경북과학기술진흥조례

(조례 없음) 대구(2009), 강원·경남·인천(2013), 대전·충남·울산·제주(2014)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2016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지역연구개발활성화사업)

한편,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역별 R&D전담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사·분석 수준을 넘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역 R&D기획 및 사업발굴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15개 지자체 중 경기, 경북, 부산, 전북, 충북 등 5개 지역에서만 지자체 차원에서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역의 R&D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다.

〈표 27〉 지자체별 R&D전담조직 지정 현황

지자체		R&D 전담조직
지정 (5)	경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대구경북연구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3개 기관 지정)
	부산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개발지원단)
	전북	전북테크노파크(연구개발지원단)
	충북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연구개발지원단)
미지정(12개)		강원, 경남, 대구, 대전, 인천, 울산, 광주, 전남, 제주, 충남, 세종, 서울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2016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지역연구개발활성화사업)

연구개발지원단의 주요 활동 및 성과는 지역R&D 지원역량 강화 관련하여 R&D 관련 기획보고서 활용과 연구과제화 건수로 측정할 수 있는데, 2015년 기준 기획보고서를 146건 작성하였고, 이 중에서 활용된 보고서는 38건, 연구과제화는 1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28〉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의 보고서 및 과제화 실적(2015년 기준)

구분	광주	대구	전남	경북	울산	경기	대전	충남	경남	충북	전북	합계
보고서 건수	5	10	10	11	3	17	9	6	3	22	50	146
보고서 활용	–	2	2	3	–	9	–	–	–	7	15	38
과제화 건수	–	4	2	3	–	–	–	–	–	1	5	15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2016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지역연구개발활성화사업)

이러한 연구개발지원단의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①과학기술진흥센터(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주체)를 연구개발지원단사업 수행주체로 일원화, ②지자체 R&D조사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R&D 조사·분석지표 표준화, ③연구개발지원단 전담인력의 교육·양성(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에 위탁) 등을 추진 중이다.

참고자료·문헌

- 과학기술부(2013.2), 2013년도 연구개발지원단 신규사업 공고 (제2013-61호)
- 교육부(2013), 2013년도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시행계획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2016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 (지역연구개발활성화사업)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 한국연구재단(2015) 지역연구개발활성화사업 추진실적(상위평가 자료)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23. 연구개발특구

생성배경 1973년도에 국가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덕연구단지의 기반조성 및 연구소 건설에 착수하였다. 대덕연구단지는 1974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입주를 시작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민간기업 연구소의 입주를 통해 산학연 연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5년도에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였다. 2011년에 광주와 대구를 각각 특구로 추가 지정하였고, 2012년에는 부산을 특구로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2012년에 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명칭변경 하였다.

용어설명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특별법에 정의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산), 대학교(학), 공공연구기관(연) 등이 특구에 입주할 수 있고, 입주한 기관들은 고용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등 많은 행정적 지원을 지원받는다. 특구 내 산학연 기관들은 기관 간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현재 국내에는 4개의 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가 지정되어 있다. 각각의 특구는 특화분야를 가지고 특성화(차별화)를 추구하고, 혁신 주체별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발전형 혁신 클러스터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표 29〉 특구별 주요현황

특구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비전	미래 첨단융합산업 허브(HUB) 구축	광기반 융복합 중심의 개방형 연구 산업화 거점 조성	IT기반 소재부품 융복합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R&D기반 조선해양플랜트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정 년도	1974년	2011년	2011년	2012년
규모	5개 지구 (약 67.8㎢)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북부 그린벨트 지역, 국방과학연구소 일원)	7개 지구 (약 18.7㎢) (첨단 1,2,3지구, 신룡지구, 나노지구, 진곡지구, 대학·기타지구)	7개 지구 (약 22.3㎢) (테크노폴리스 지구, 성서첨단산업 지구, 융합R&D지구 Ⅰ·Ⅱ, 의료R&D지구, 지식서비스 R&D지구 Ⅰ·Ⅱ)	4개 지구 (약 14.1㎢) (R&D융합지구, 생산거점지구, 사업화촉진지구, 첨단복합지구)
특화 분야	IT융복합, 바이오의약, 나노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광기반 융복합, 바이오 소재, 디자인 문화 컨텐츠, 스마트 그리드, 친환경 자동차부품	스마트 IT 융합기기, 의료용 융복합기기·소재,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광기반 융복합, 바이오 소재, 디자인문화 컨텐츠, 스마트 그리드, 친환경 자동차부품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에서 자체 편집

〈표 30〉 해외 주요특구 현황비교

구분	실리콘밸리(미국)	시스타(스웨덴)	소피아 앙티폴리스(프랑스)	중관촌(중국)
주력 분야	IT, BT	이동통신	IT, BT, 의료과학 등	신소재기술, IT, BT
위치	샌프란시스코 인근 10여개 도시로 구성	스톡홀름시 북서쪽 20㎞ 지점	프랑스 남부의 니스, 칸느, 그라스, 앙티브 일원	중국 북경시 서북부
면적	3,885㎢	2.3㎢	23㎢ (녹지비율 65%)	海淀園 340㎢ 외분산위치한 4園 27.5㎢
주요 기관	• 스탠퍼드 대학 • 9,000여개의 IT 및바이오 관련 기업 • 세계 100대 첨단기업 본사의 20% 가 위치	• 왕립공대, IT 공대, 에크레온 연구소 등 • 에릭슨, MS, 컴팩 등770여개 기업	• 유럽통신표준 연구소(ETSI), 국립정보과학 대학(ESSI) 등 70여개 연구교육기관 • IBM 등 68개국의 1,260여개 기업	• 북경대 등73개 대학 및230여개 연구기관 • IBM, MS, 인텔 등 1,400여개 기업
주요 성과	• 현재 '세계 최고의 클러스터'로 각광 • 1인당 부가가치가 세계 클러스터 중 1위 • '01년 지역 총생산은 2,050억불로 한국 GDP의 절반	• 산업구조 고도화, 입주기업 기술력 향상 • 세계 무선 이동통신의 지식공급지로 부상, 유수 연구기관 및세계적 기업유치	• 글로벌 기업의 신기술 기반형성으로 다국적 기업의 유럽본부 유치	• 중국 3대 클러스터 중최고의 기술력, 경쟁력 보유 • '88년 이후 연평균 30%이상의 성장세 • 북경시 전체 공업 생산액의 60% 이상 차지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4).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변경(안)

참고자료·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미래창조과학부(2014),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변경(안)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작성자 : 박태준 선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책용어

24. 일학습병행제

생성배경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은 학교가 주도하는 교과중심으로 진행되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에 차이가 생기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학생들은 실질적인 업무능력보다 기업의 채용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공인어학성적과 수상경력 같은 스펙을 쌓는 반면, 기업은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을 다시 교육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용어설명 일학습병행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또는 학교 등의 교육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이다. 현장교사(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교육하며, 학습근로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이론교육을 받은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

도를 말한다.

일학습병행제는 참여 기업의 특징에 따라 산업계 주도로 진행되는 '자격연계형'과 '대학연계형'으로 나누어진다. '자격연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방식을 말하고, '대학연계형'은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림 20 일학습병행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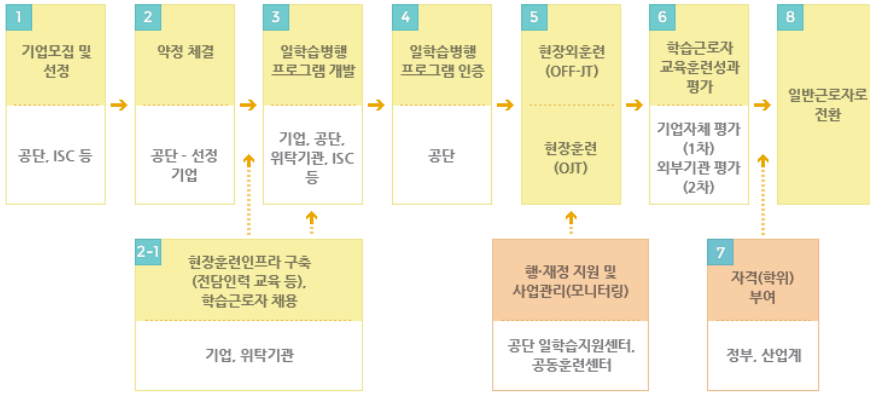

출처 : 기업일학습 홈페이지(www.bizhrd.net)

참고자료·문헌

- 기업일학습 홈페이지(www.bizhrd.net)
- 고용노동부 콘텐츠 홈페이지(moel-contents.co.kr)

작성자 : 전용진 부장(㈜비디)

정책용어

25. 적정기술

생성배경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개념은 영국 경제학자 슈마허(E. F. Schumacher)의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이라는 용어에서 시작되었다. 슈마허는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1973년)에서 소규모 자본과 소박한 기술로 지역 주민의 빈곤을 해결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후 '중간'이라는 용어가 기술적으로 미완의 단계를 의미하거나 첨단 기술보다 열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서 1980년대 들어와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적정기술'로 불리게 되었고, '착한 기술', '대안기술', '따뜻한 기술' 등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정기술이란 용어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전국민 과학화 운동의 일환으로 처음 등장하였고, 2000년대 중반 이후 對개도국 과학기술 ODA정책의 일환으로서 적정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 박 대통령각하께서 제창하신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은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발전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새마을운동**과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 수단으로 병행시킴으로 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새마을운동은 **새마을 현장에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기술을 이식시킴**으로서 새마을운동을 새로운 차원에서 유도하여야 하며 지역 간 기술이전에 역점을 두어 **농촌과 도시의 지역격차와 농업과 공업 및 그 외의 산업과의 격차, 그리고 고소득과 저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여 ...*

출처 : 이도영(2013). 한국 적정기술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4호)

용어설명 적정기술은 당초 1970년대 식민지와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국식 개발 프로젝트의 부작용과 한계에 대한 자성적 비판에서 대두된 개념이다. 자본과 기술을 가진 선진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 저개발국 국민들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적정기술'이다. 이러한 슈마허의 개념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바커 한스(Barkker Hans)는 적정기술을 의, 식, 주, 건강과 교육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술로 정의하고, 하위 20%의 사람들이 혜택 받지 못하는 기술은 적정기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립적정기술센터(NCAT)에서는 적정기술을 '활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과 규모 면에서 적합한 도구 또는 전략'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적정기술의 개념 및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적정기술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현지의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특화된 기술 또는 제품으로서 특정 지역, 특정 환경에서 거주하는 현지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의 필요'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예: 20번 이상의 세탁 후에도 살충효과가 지속되는 Permanet 등).

둘째, 단순히 노동력 대체가 아니라 노동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구의 개발로 복잡한 훈련 없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예: 물 운반을 도와주는 큐드럼,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니 메이커 펌프'등).

〈표 31〉 제3회 전국새마을기술지도 사례발표회 致辭(과학기술처 장관, 1978.8)

제품명	제품 개요	
큐드럼 (Q drum)	• (개발자)P.J.andJ.P.S. Hendrikse • ①쉽게 굴릴 수 있도록 고안된 도넛형(지름 50cm)의 플라스틱 용기, ② 75리터 물의 운반 가능, ③깨끗한 물의 공급처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지역 주민의 수인성 전염병(장티프스, 콜레라) 예방에 도움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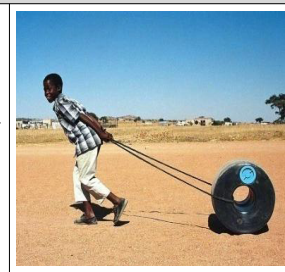
생명빨대 (Life straw)	• (개발자) Torben Vestergaard Frandsen • ①오염된 물에서 박테리아, 기생충 등을 걸러주는 25cm 길이의 휴대용 정수기(활성탄 사용), ②약 1000리터의 오염된 물 정수 가능(가격 3.5달러), ③15마이크론 이상의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수인성 질병(장티프스, 콜레라, 이질, 설사)을 예방에 도움을 줌	
머니 메이커 펌프 (Money Maker Pump)	• (개발자) Robert Hyde, Martin Fisher, Mark Butcher, and Adblikadir Musa • ①무게 약 2kg의 족동식 펌프로서 전기나 연료 없이 순전히 사람이 페달을 밟아 내는 힘만으로 지하 7m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음, ②8시간 동안 2에이커의 농지에 물 공급 가능, ③건기에 야채나 과일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업(연중배재)이 가능하여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	
팟인팟 냉장고 (Pot-in-Pot cooler)	(개발자) Mohammed Bah Abba • ①큰 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를 넣은 뒤 그 사이를 젖은 모래로 채우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작은 항아리 속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는 원리, ②오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보관 문제 해결, ③더운 지방에서 2~3일이면 상하는 토마토를 3주간 신선하게 보관 가능(가격 40센트 수준)	

출처 : 포스코경영연구원(2016), 저성장시대의 맥가이버형 기술개발(POSRI 보고서)

셋째, 현지의 자원 및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므로 자원 및 재료의 지속가능한 획득 및 경제적 운영이 가능하다(예: D-lab[1]).

넷째, 외부로부터의 재정,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성과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예: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빗물을 식수로 바꿔주는 휴대용 정수기(생명빨대), 팟인팟 냉장고, 전기를 생산·저장하는 소켓 축구공, 태양광 충전 휴대용램프 등).

현재 용어의 사용 2000년대 중반 정부에서는 개도국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적정기술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 공적자금을 통한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중 수원국 수준에 맞는 기술을 선별하여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적정기술 ODA는 개도국의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낮은 수준의 기술(low-tech) 공여와 유휴장비 기증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ODA를 통한 과학한류 확산' '사회문제해결 및 국민복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정기술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추진하고 있다.

첫째, 'ODA를 통한 과학한류 확산' 관련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부터 현지화까지 전체 과정을 프로그램하고, 공학기술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이 현지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현지수요의 충분한 수용과 전수된 기술의 안정화, 국내외 다양한 주체의 참여·소통과 지속적 사후관리가 가능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2].

둘째, '사회문제해결 및 국민복지' 관련해서는 국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보급이다. 산업화에 따른 결실의 수혜 배분에서 소외당한 농어촌 주민, 도시 영세민, 장애자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행복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사회

1) 아이티 현지에서 '폐기물' 사탕수수 줄기를 드럼통 가마에 넣고 연소시켜 숯가루를 만든 뒤, 카사바를 갈아 만든 끈적거리는 액체와 혼합한 '숯' 개발함으로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벌채되고 있는 산림자원의 보호가 가능해짐.

2) 교육과학기술부(2013.1), 2013년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시행계획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적정기술의 개념을 적용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최고 가격, 최고 성능'의 제품을 개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재원으로 '저가격, 적정 성능'의 제품을 개발하는 R&D전략(Jugaad 혁신[3], Frugal 혁신[4] 등)에 주목하고 있다.

3) 인도 힌디어(語)로 기존의 것을 독창적으로 활용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극복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의미하는데, 도시 지역의 의사와 오지 지역의 환자를 연결하는 원격의료 솔루션(중국 뉴소프트), 열악한 은행 인프라를 대신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케냐의 M-페사) 등이 있음.

4) Jugaad 혁신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으로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저비용 혁신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저가형 자동차(르노닛산 로건, 인도타타그룹 Nano), 소형저가 심도전기(GE MAC400), 초저가 스마트폰(중국 샤오미) 등이 있음.

참고자료·문헌

- 이도영(2013), 한국 적정기술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4호)
- 포스코경영연구원(2016), 저성장시대의 맥가이버형 기술개발(POSRI 보고서)
- 홍성욱(2011), 적정기술의 의미와 역사(과학기술정책 제21권 제2호)
- 김정태(2011), 위시시대 적정기술의 역할(과학기술정책 제21권 제2호)
- 성경모·임수연(2015), 글로벌 적정기술의 중심지 (사)나눔과기술(과학기술정책 제25권 제9호)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26.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생성배경 국가R&D 투자가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R&D 투자가 부족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인력과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혁신기반 구축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2000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0~2004)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용어설명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관한 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은 그간 1차(2000년-2004년), 2차(2005년-2007년), 3차(2008년-2012년) 종합계획과 2013년에 수립된 4차 종합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토대로 지방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현재 용어의 사용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혁신기반 구축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2000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0~2004)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제2차(2005~2007), 제3차(2008~2012) 계획을 거치면서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사업화 확산, 클러스터 구축 등 지방 과학기술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예를 들면, 지방(대전 제외)에 대한 정부 R&D 투자가 2007년 2조 5,316억 원에서 2011년 3조 9,51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지방의 R&D 성과 사업화 비중도 2007년 43.1%에서 2011년 52.7%로 증가했다. R&D를 통한 지역 산업의 혁신을 위해 각 지역에 테크노파크가 설치됐고, 지역 R&D 관리 및 투자 효율화를 위해 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덕, 광주, 대구, 부산 4곳에 연구개발특구를 두게 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그간 축적된 지역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주도적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동시에 지역에 특성화된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 **지역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
  지역주도형 R&D 사업기반 확충, 지역의 R&D 기획·관리 역량 및 기반 강화, 중앙·지역의 역할분담 및 국제협력 강화, 지역 R&D 추진체계 개선 및 재정비
- **지역 특성화 과학기술 역량 제고 :**
  지역 R&D 투자 특성화·내실화,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인프라 운영 효율화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첫째, 지역의 R&D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적합한 포괄보조 방식의 R&D사업 도입과 지역의 R&D 기획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지원조직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R&D 현안 조정, R&D 방향제시 등에 대한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간의 상호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R&D 혁신 추진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에 특성화된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하여 기술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사회에 부족한 R&D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에서 양성된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과기특성화대학을 기술사업화 전진기지의 선도 모델로 육성하고 출연연 공동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콜센터 구축,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확대 등을 통해 지역의 산학연 협력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작성자 : 정택영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7. 지방대학특성화

생성배경 비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인 지방대학은 경제·사회·문화·복지 인프라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2018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지방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지방대학특성화를 통한 육성방안이 마련되었다.

용어설명 대학의 특성화란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대학특성화란 개별 대학특성, 비교우위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분야(학과, 학부, 프로그램 등)를 육성, 교육·연구기자재 및 실험실습 장비 등 기반조성, 제도개선,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하여 대학 특성화를 견인하고, 지역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014년부터 대학의 강점분야, 지역의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이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설계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대학 경쟁력 제고 및 대학별 특색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원확대'를 선정하여(2013년 2월), 지역과 함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동안(2014년~2018년)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2014년 2월), 2014년에는 사업비 1,945억 원 규모로 80개 지방대학 265개 사업단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대학을 지역 창조경제 조성의 주인공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 감축 및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학사 구조 개편 등 대학의 체질개선을 기대하는 것이다.

〈표 32〉 권역별, 유형별 선정 현황

유형 / 권역		대학자율(Ⅰ) (대학 자율성)	국가지원(Ⅱ) (학문균형 발전)	지역전략(Ⅲ) (지역 동반성장)	계
수도권 대학	서울권	6	6	–	12
	경기·인천권	4	5	–	9
지방 대학	충청권	8	12	1	21
	대경·강원권	5	10	1	16
	호남·제주권	6	7	1	14
	동남권	7	9	1	17
계		36	49	4	89

출처 : 2016년 대학 특성화 사업 재선정결과 발표 (교육부, 2016)

해외 사례 일본 이시카와현에 위치한 가나자와공업대학은 전교생이 7,000명이 넘지 않는 4년제 특성화 지방사립대로서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공학교육기초센터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모르는 것은

언제든지 개인교습을 받을 수 있는 수리공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한다. 2010년 기준 일본 대학랭킹 공학교육부문 1위, 종합 2위, 취업률 99%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http://www.kanazawa-it.ac.jp〉

참고자료·문헌

- 교육부(2014),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 최상덕 외(2008),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병주 외(2010),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특성화 실태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9권 제4호
- 오영재 외(2003), 지방 사립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제1호
- 교육부(2016), 보도자료, 2016년 대학 특성화 사업 재선정평가[신규포함] 최종결과 발표

작성자 : 이희정 교수(한양대학교)

정책용어

28.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생성배경 참여정부는 2004년 수도권의 과밀화 방지를 위한 사업장 신·증설 제한, 공장총량제 등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규제가 오히려 수도권의 난개발을 초래함에 따라 수도권 기능 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방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도입하였다.

보조금이 처음 도입된 2004년에는 입지, 투자, 고용, 교육훈련 등 네 가지 종류의 보조금으로 운영하였으며, 2008년까지는 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매년 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 졌다.

2009년 개정에서는 입지보조금을 부지구입비의 70%(기존 50%)로 확대하고, 일반지역의 국비지원 비율을 70%(기존 50%)로 확대하는 등 지원범위와 국비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다. 2010년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당 보조금 지원예산의 최고 한도를 15%로 설정하여 특정 지역에 보조금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 개정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외에도 신·증설 투자 지방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보조금의 특정 지역 편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2012년 개정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과 지원규모 결정 시 투자규모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규모를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중견기업과 해외진출 국내복귀(U턴)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3년 개정에서는 지역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사·동종업종이나 협력업체 등으로 이루어진 투자기업群과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편하였다. 2014년 개정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편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최근 6년간(2009~2014년) 539개 기업에 6,051억 원을 지원하여, 9조 1,547억 원의 투자와 23,902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용어설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시·도)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2004년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기업 → (확대) 2011년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 (확대) 2012년 해외진출 국내복귀(U턴)기업) → (확대) 2014년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제19조)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2014년 1월 29일 11차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2014년 개정을 통해 첫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투자보조금의 보조비율을 확대(10% → 12%)하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35% → 30%)하였다. 둘째,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개편하였다.

셋째,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별 지역집중유치업종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하였다. 넷째,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진출 국내복귀(U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하여 국내 복귀하는 경우, 구조고도화 대상 산업단지 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표 3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2014년 1월 기준)

분류 (매칭비율)	이전기업·U턴기업·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신증설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신설)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65:35)	입지(–) 투자(6%)	입지(10%) 투자(9%)	입지(30%) 투자(12%)	투자(6%)	투자(9%)	투자(12%)
수도권 인접지역 (45:55)	입지(–) 투자(4%)	입지(–) 투자(6%)	입지(9%) 투자(9%)	투자(4%)	투자(6%)	투자(9%)
지원 우대지역 (75:25)	입지(–) 투자(9%)	입지(20%) 투자(17%)	입지(40%) 투자(22%)	투자(9%)	투자(17%)	투자(2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1.29.)

2014년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19개 업체에 1,042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에 31개사 386억 원(37%), 지방기업 신증설투자에 80개사 602억 원(58%), 국내복귀 기업에 9개사 43억 원(4%),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1개사 11억 원(1%)을 지원하였다.

참고자료·문헌

- 산업통상자원부(2015). 보도자료(산업부, 지난해 지방투자 기업에 1,042억 원 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렇게 활용한다)
- 산업통상자원부(2013), 지역산업정책백서
- COMIS(지방투자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comis.go.kr)
- 박재곤(2010), 지역투자보조금의 개편방향과 세부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29.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생성배경 중소기업진흥공단[1]이 1989년 인천 주안에 지식산업센터를 처음 설립한 이후,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중소 제조업체의 입지확보를 위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 '아파트형공장 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금감면 등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고, 1996년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던 공급주체를 민간업체로 확대한 이후 서울, 인천, 성남, 부천 등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한편, 2003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의 생산시설 외 연구개발업, 지식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지원기능이 집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시설의 경우도 물류,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입주업체가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허용), 문화, 복지(어린이집·기숙사) 관련 시설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의 토지이용을 고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지 형태로서,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도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공장의 집단화와 미관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훼손과 도시기능 저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은 물론 무등록 공장의 합법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1) 1999년까지 전국에 12개의 지식산업센터(총 259,403㎡ 규모)를 공급하였음.

용어설명 지식산업센터는「산집법」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①지상 3층 이상이고, ②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고, ③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991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3년「산집법」으로 개정)에 관련 규정이 처음 마련된 이후 오랜 기간 아파트형공장이란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0년「산집법」개정을 통해 현재의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초기의 지식산업센터는 도시지역 입주가 불가피한 기계, 전자, 봉제 등 중소 제조업체의 단순생산과 관련된 공장들이 집단화·공동화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IT산업, 벤처산업, 서비스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입지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014년 8월 기준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이 주가 되는 서비스업종이 거의 50% 수준에 달하고, 그다음으로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복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산집법」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①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제조업), 지식산업(서비스)[2], 정보통신산업(서비스업)[3],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업,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번역·통역서비스업, 전시·행사대행업 등

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개발·공급업, 자료처리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기통신업 등

시설로서 금융·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4.8월 말 전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총 476개소(입주업체 21,551개)이며, 이 중에서 81.1%(입주업체 수 기준으로는 87.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표 34〉 전국 지식산업센터 현황 (단위 : 개, 명, ㎡)

지역	센터 수	입지구분		입주 업체 수	종업원수	건축연면적
		개별	산단			
전국	672	480개	192개	36,805	400,101	9,440,372
서울	265	140개	125개	18,387	232,063	6,761,708
부산	39	32개	7개	1,537	11,942	77,170
대구	21	21개	–	504	3,187	115,081
인천	41	29개	12개	1,616	15,324	480,068
광주	6	2개	4개	230	2,209	47,501
대전	12	12개	–	138	1,704	19,132
울산	3	1개	2개	36	195	4,305
경기	229	209개	28개	12,992	122,285	3,402,904
강원	8	8개	–	32	294	11,377
충북	5	5개	–	147	1,130	13,532
충남	2	2개	–	23	227	5,504
전북	8	8개	–	7	56	1,194
전남	3	2개	1개	18	108	18,313
경북	4	2개	2개	87	426	14,081
경남	25	14개	11개	1,051	8,951	414,747
세종	–	–	–	–	–	–
제주	1	1개	–	–	–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15.4 기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주체별로는 민간부문에서 전체의 87.8%인 418개를 공급하여 20,24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지식산업센터는 58개, 1,308개 입주업체로 각각 전체의 12.2%, 6.1%에 불과하다.

〈표 35〉 지식산업센터 공급주체별 현황 (단위 : 개, ㎡)

구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민간	418 (87.8)	20,243 (93.9)	3,293,952 (77.6)	15,159,902 (91.3)
공공	58 (12.2)	1,308 (6.1)	953,072 (22.4)	1,439,325 (8.7)
합계	476 (100.0)	21,551 (100.0)	4,247,024 (100.0)	16,599,227 (100.0)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14.8.19.일 기준)
주 : 괄호 안은 비중(%)

참고자료·문헌

- 산업연구원(2014),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타당성, 용역보고서
- 산업연구원(2011), 지식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지역경제
- 한국지역개발학회(2013),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연계효과에 관한 연구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30. 지역R&D

생성배경 지역R&D(또는 지방R&D)는 2000년대 초반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역산업정책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양 부문에서 각기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역산업정책에서 지역R&D는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역발전특별회계(舊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근거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R&D와 차별화하여)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17개 시·도 지자체 주도로 추진 중인 국가R&D 사업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지역과학기술정책에서는 국가R&D 투자가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R&D투자가 부족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인력과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방R&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1차 2000년~2004년, 2차 2005년~2007년, 3차 2008년~2012년, 4차 2013년~2017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토대로 지방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대전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공간에서 추진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 근거한) R&D를 지방R&D로 구분하고 있다.

용어설명 지역R&D는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부 정책 분야 또는 정책 수단으로서 국가R&D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가R&D가 국가정책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의 주도로 R&D 과제를 기획·집행하는 반면에, 지역R&D는 지역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해 R&D 과제의 기획이 지역(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상향식(bottom-up) 기획으로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R&D가 집행되는 공간적 범위보다는 추진 방식, 즉 지역이 R&D 기획에 관여 또는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국가R&D와 지역R&D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이처럼 지역R&D는 수혜 대상이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의 매칭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지역R&D는 추진 방식과 재원특성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근거한 국가R&D 사업(국가과학기술심의회 관리대상 R&D)과 지자체 자체 R&D를 협의의 지역R&D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비 매칭의 일반회계 R&D까지 포함할 경우를 광의의 지역R&D로 구분하기도 한다.

〈표 36〉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R&D사업(2014년 기준)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교육부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 지방대학특성화사업 •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 학교기업지원사업(R&D)	산업통상자원부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R&D) • 지역특화산업육성(R&D) •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지원(R&D) •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R&D) • 동물약품허브조성(R&D)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기술사업화투자지원 • 연구개발특구육성(R&D)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 지역기초연구활성화 •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 고도화(R&D) •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R&D) •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R&D)		• 디자인융합Micro-모빌리티신산업 생태계구축사업(R&D) •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R&D)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신규)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R&D) •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R&D) •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R&D) • 탄소밸리구축(R&D)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국토 교통부	•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		
농촌 진흥청	•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 •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제주계정) •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제주계정)		
중소 기업청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출처 : 저자 작성

참고자료·문헌

- 지역발전위원회(2015), 2015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내부자료)
- 정종석(2012), 지역 R&D 개편방향, 산업연구원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1. 지역산업기술 로드맵(RTRM)

생성배경 2005년 정부는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기술 확보 차원에서 '지역산업기술 로드맵(RTRM)'을 작성토록 하였다.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시(2004년 8월) 16개 시·도별로 각각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였는데, RTRM에는 주로 이들 전략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부실천 방안을 포함한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산업기술 로드맵의 대상기간, 세부기술 분야 등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작성하였다.

〈표 37〉 지역산업기술 로드맵(RTRM)의 역할

- 연구개발(R&D) 기획 및 과제 발굴·선정 지침서 역할
- 지역전략산업의 중장기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이정표 역할
- 미래 수요를 파악하여 요구 제품을 도출하고 타깃 핵심기술을 도출
- 도출된 기술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기술관련 의사결정 자료 제공
- 신규 시장 창출, 기술우위 등 효율적인 제품화 전략을 위한 나침반 역할

출처 : KEIT, 4+9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산업기술지도 발표회, 2006.08.31.

용어설명 RTRM(Regional Technology Road Map)은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기술·부품소재·지역산업·중기혁신·에너지 등 대형

R&D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각 사업별 프로그램 간 유사과제의 중복 지원이 우려되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전략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립된 지역산업 기술지도이다.

16개 시·도별로 선정된 총 64개 전략산업 중 비R&D 분야인 관광·문화 등을 제외한 59개 핵심 산업기술에 대해 작성되었다. 또한, 지역산업 기술개발 과제지원 및 발굴, 지역전략산업의 중장기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이정표 제시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었다.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시나리오에 적합한 단계별 기술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부합하는 연구·기술개발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에 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DB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기술지도(RTRM)를 작성하도록 했다.

현재 용어의 사용 TRM(Technology Road Map)은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 또는 산업 차원에서 향후 개발하여야 할 필요기술과 제품을 예측하여 최선의 기술 대안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유망기술 기획방법이다. 지역산업 측면의 기술 로드맵인 RTRM(Regional Technology Road Map)과 방법론 측면에서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2014년 14개 시·도별로 향후 5년간 해당 지역의 핵심 산업 육성전략을 담은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 '2014-2018 지역산업발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지역산업발전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별 대표산업육성의 발전 비전 및 목표, 세부 실행방안뿐만 아니라, 주력산업과 협력산업 등 대표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한 기술개발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정표 제시를 목적으로 대표산업별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이는 지역 내 대표산업 차원의 로드맵이자 제품·부품기술(Product Technology) 차원의 로드맵이다.

산업기술 로드맵의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기술·정책 관련 거시환경 분석

→ ②해외 및 국내의 기술·시장 동향조사 → ③대표산업의 가치사슬분석(기술개발 영역의 발굴) → ④기술변화 예측(기술변화의 방향 및 트렌드 전망) → ⑤지역 내 보유 기술역량(SWOT) 분석 → ⑥대표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혁신주체(기업, 대학, 연구소 등)가 수행할 수 있는 특화분야·품목 내지 제품·부품기술 목록(또는 기술체계도, 기술트리) 발굴 → ⑦타깃 대상 제품·부품기술에 대한 선행 특허분석을 통해 특화분야·품목의 조정 → ⑧타깃 특화분야·품목(또는 제품·부품기술)의 기술개요, 개발 시기, 개발 목표수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술개발전략의 작성 등이다.

그림 21 대표산업 기술로드맵 작성(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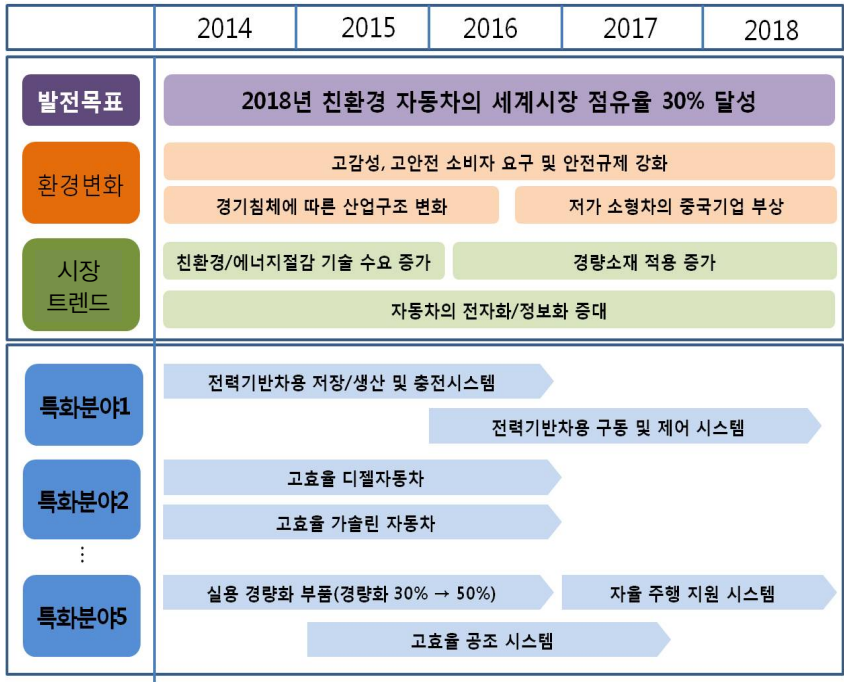

참고자료·문헌

- 윤윤규, 이재호(2004), 지역산업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06), 지역산업기술로드맵 (RTRM)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4), 지역산업발전계획 가이드라인
- 산업통상자원부(2014), 보도자료(14개 시·도 지역산업발전계획(안) 확정)

작성자 : 윤칠석 정책기획단장(경북테크노파크)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2.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생성배경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업은 지역산업 육성에 의한 혁신역량 강화를 마케팅과 연계함으로써 마케팅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수출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現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 이후 지역개발계정(現 생활기반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 사업(시·도 자율편성)으로 추진 중인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포괄보조금사업)'의 내역 사업(표 참고)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크게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으로 구별된다.

해외시장 개척의 경우 세부 프로그램으로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바이어 초청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의 경우는 한국전자전, 한국기계전, 서울모터쇼, 대구국제섬유박람회 등의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 우수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를 제공하여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용어설명 지방 중소기업 및 지역 주력·협력산업(舊 특화·선도산업을 개편하여

2015년부터 명칭 변경)의 마케팅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산업의 전시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과거 시·도별로 각기 다양한 산업육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마케팅 지원 사업이 개별 추진되어 사업간 유사·중복, 효과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2005년부터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 중이다.

〈표 38〉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생활기반계정)의 내역사업(2014년 기준)

마케팅 관련 내역사업	非마케팅 내역사업
• 지역산업 마케팅지원(15개 시도에서 시행) • 해외 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 지원 • 섬유산업 국내판로 개척 • 대구패션 페어개최 • 공동브랜드(쉬메릭) 육성 • 하이서울브랜드사업 지원 • 지역우수기업브랜드화 사업 •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개최	• 패션산업 지원 • 서울인쇄산업 육성 • 지역중소기업디자인산업 육성 •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 주얼리산업활성화 기반 구축 •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 • 원부자재수급센터 건립 •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 거창승강기센터 건립

출처 :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2014.5

현재 용어의 사용 생활기반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에 의해 추진 중인 지역산업마케팅 외에도 경제발전계정으로 추진 중인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역거점기관지원 등의 사업에서도 지역기업의 마케팅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의 경우 비R&D 사업 내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유망 상품의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판로 개척, 마케팅전략 수립, 수출상담회·기업설명회, B2B 구축 등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주력산업육성의 경우도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장조사비, 판로개척을 위한 특허출원·인증지원, 시제품 제작비, 전시회

참가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4), 20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33. 지역산업진흥계획

생성배경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경제 문제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산업의 문제'이고,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인식하에 1999년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경남 기계 및 광주 광산업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기존 4개 지역 이외에 비수도권 9개 지역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도 간의 특색 없는 중복지원, 복잡다기한 사업구조, 나눠주기식 예산배정, 지원기관 간의 연계부족 및 업무영역 중복 등의 문제점이 중앙주도 하향식(Top-down) 분산투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주요 지원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틀(framework)의 사업체계를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2010년부터 매년 시·도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에 기반을 둔 산업육성 계획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역사업을 지역주도 및 주민체감형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광역선도사업과 新 특화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역사업을 경제협력권사업(시·도 간)-주력사업(시·도)-풀뿌리기업육성사업(시·군·구) 3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용어설명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 내 산업육성 전반을 조망하는 중장기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에 기반을 두어 각 지원사업의 통합적 기획 및 추진을 위한 통합계획으로서,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책임 하에 수립하는 자율 계획이다. 본 계획은 1년 단위의 지역산업 육성 예산실행계획이며, 중앙과 지역 간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체계를 가진다.

〈표 39〉 2013~2015 지역산업진흥계획 비교

구 분	2013년 계획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
주요 수립내용	'13~'15년도 종합계획 (재정투자계획 포함)	'14년도 예산실행계획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한 '15년도 시행계획
대상사업 및 지원예산	지역특화사업 2,300억 원 신규(1,561억 원), 계속(739억 원)	지역특화사업2,528억 원 선도사업(산업협력권사업)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지역주력사업2,662억 원, 경제협력권사업2,375억 원 혁신도신연계지원 112억 원, 풀뿌리기업육성사업 798 억 원
대상산업	新특화산업+선도산업	특화산업+선도산업 (협력산업)	협력산업 + 주력산업 + 연고(전통)산업 + 지역자율선정산업
수립주체	14개 광역지자체	14개 광역지자체	14개 광역지자체
지원주체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기업지원단)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기업지원단), 지역사업평가단
수립시기	新특화산업 추진과 연계 ('13.2~4)	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과 연계 ('13.10~'14.2)	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과 연계 ('14.08~'14.12)
지역산업진흥 정책자문단	지역정책, 산업전문가 등 (총 12명)	지역정책, 산업전문가 등 (총 15명 내외)	지역정책, 산업전문가 등 (총 24명 이내)
차등 지원규모	국비 30%	국비 20%	국비 10%~30%

현재 용어의 사용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산업·일자리 관련 정책·사업, 혁신자원에 대한 지역 주도의 통합적 기획·운영·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사업 효과 창출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으며, 지역의 역량(강점·기회) 및 한계(약점·위협) 요인이 충분히 반영된 상향식(Bottom-up) 사업기획을 통해 지역 내 모든 혁신주체들이 참가하는 통합적 사업 추진 체계를 확립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2014년도까지 광역선도사업과 신 특화사업으로 이원화됐지만 2015년부터는 주력사업(14개 광역시도), 경제협력권사업(14개 광역시도 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 전통(연고)사업(시군구) 등 4개 사업으로 재편돼 추진된다.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대표산업 선정기준은 주력산업은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가 선정, 협력산업은 주력산업 선정조건에 부합하는 산업 중 시·도간 협력 선정하였으며, 선정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의 주력산업은 총 63개 예산은 총 2,662억 원(국비 1,907억 원, 지방비 755억 원)이다. 광역시도 별로 최다 5개 이내에서 주력산업을 갖고 있는데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시도가 5개의 주력산업을 두고 있다. 이어 전남과 제주가 4개, 강원이 3개, 세종이 2개의 주력산업을 확보, 육성한다.

산업부는 이들 63개 지역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 정부가 확정한 12개(수도권 제외)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와 연계했다. 12개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는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 조성(부산),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대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광주), 국방 ICT융합 기업생태계 조성(대전), 친환경 전지 융합산업 육성(울산), 건강·생명 클러스터 조성(강원),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충북),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충남), 농생명 허브조성(전북), 서남해안 해양관광육성(전남), IT융·복합 창조생태계 구축(경북),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경남),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제주) 등이다. 경제협력권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시도가 서로 협력 및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유망 품목을 개발 및 사업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표 40〉 시·도별 주력·협력·풀뿌리산업 선정결과

지역	주력산업(63개)					협력산업(16개)			풀뿌리(39개)		
부산 (11)	지능형 기계부품	초정밀 융합부품	금형 열처리	바이오 헬스	디지털 콘텐츠	조선해양 플랜트	차량부품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고령 친화기기	스킨케어 화장품	해양 바이오 헬스
대구 (11)	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시스템	소재기반 바이오 헬스	의료기기	스마트 지식 서비스	자동차 융합부품	지능형 기계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패션의류	안경테/선글라스	주얼리
대전 (11)	무선통신 융합	메디 바이오	로봇 자동화	지식재산 서비스	금속 가공	기능성 화학소재	광·전자 융합	지능형 기계	안경렌즈	대장금 프로젝트	구즉 도토리묵
광주 (11)	스마트 가전	생체의료 소재부품	복합 금형	디자인	초정밀 생산가공 시스템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변환·저장 용소재부품	광·전자 융합	웰니스 CoBe	휴먼케어 산업	인쇄출판
울산 (11)	친환경 가솔린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조선 기자재	에너지 부품	환경	자동차 융합부품	나노융합 소재	조선해양 플랜트	하이 브리드 카시트	품질분석 시스템	3D 프린팅용 소재
세종 (4)	자동차 부품	바이오 소재				기계부품			조치원 복숭아		
강원 (9)	웰니스 식품	세라믹 신소재	스포츠 지식 서비스			바이오 활성소재	의료기기	로하스 헬스케어	목공예품	해양 심층수	강릉커피
충북 (10)	반도체	바이오 의약	전기전자 부품	태양광	동력기반 기계부품	화장품 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슈퍼푸드	밤	
충남 (11)	자동차 부품	인쇄 전자	동물 식의약	디지털 콘텐츠	디스 플레이	이차전지	기계부품	기능성 화학소재	자카드 직물	오메가 리놀렌산	금산인삼
전북 (11)	기계부품	건강기능 식품	해양설비 기자재	경량소재 성형	복합섬유 소재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변환·저장용 소재부품	바이오 활성소재	주얼리	오미자/천마/홍삼	전통 절임류
전남 (10)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 기반 고분자 소재	바이오 식품	에너지 설비		바이오 활성소재	조선해양 플랜트	나노융합 소재	고품질 타월	산수유	다시마
경북 (11)	모바일 융합	디지털 기기 부품	에너지 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 바이오 소재	자동차 융합부품	지능형 기계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국화차	청도반시	붉은대게
경남 (11)	지능형 생산기계	기계소재 부품	항공	풍력 부품	항노화 바이오	조선해양 플랜트	나노 융합 소재	차량부품	실크소재 전통의상	전통 목공예/가구	전통차
제주 (9)	물응용	관광 디지털 콘텐츠	청정 헬스푸드	풍력·전기차 서비스		로하스 헬스케어	화장품 뷰티		제주 무	수산전통 발효식품	제주 전통주

2014년 각 지자체가 기업의 실질 수요와 산업 생태계를 반영해 총 16개 경제협력권 산업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선정했다. 이들 16개 경제협력권 사업에 투입하는 지원액은 총 2,375억 원(국비 1,691억 원, 지방비 684억 원)으로 각 시도는 3개 산업 이내에서 경제협력권 산업에 참여한다. 16개 산업 중 조선해양 플랜트는 주관하는 곳과 참여하는 곳이 각 두 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능형 기계와 바이오 활성소재, 자동차융합 부품, 나노융합 소재,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등 5개 산업은 주관한 곳과 협력이 두 곳이다. 나머지 9개 산업은 주관하는 곳과 협력하는 곳이 각각 한 곳이다.

공공기관연계사업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기업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 국비 90억 원과 지방비 22억 원 등 총 112억 원이 투입된다.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연계 가능 산업은 IT 및 공공서비스(충북혁신도시), 의료 및 신소재(강원혁신도시), 첨단교통 및 농생명(경북혁신도시), 지식서비스(대구 혁신도시), 에너지(울산혁신도시), 해양 및 에너지, 영상(부산혁신도시), 농생명 및 에너지(전북혁신도시), 에너지 및 정보통신(나주 혁신도시), 세라믹 등(경남혁신도시), 문화 및 관광(제주혁신도시) 등이다.

시·군·구 지역전통(연고)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통(연고)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 달리 시·군·구가 대상이며 지원액은 국비 673억 원, 지방비 125억 원 등 총 798억 원이다. 지역혁신센터 조성(RIC), 지역연고산업 육성(RIS) 및 뿌리기업 육성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지역혁신센터 조성(RIC)사업은 올해 예산 111억 1,000만 원으로 지난 1995년 시작하여 오는 2018년에 모두 종료 예정이다. 지역연고산업 육성(RIS)사업은 올해 지원 예산은 342억 6,800만 원이며,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오는 2017년 종료된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시군구 단위의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해 IT, BT,

NT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3개 이내 품목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220억 2,200만 원이며, 신규 사업 지원 예산은 110억 원이다.

참고자료·문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09), 2010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지침(안),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연구원(2011), 지역산업육성 지원제도의 개편방안
- 산업통상자원부(2013,2014),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안)
- 산업통상자원부(2013,2014),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작성자 : 이경미 단장(충북지역사업평가단)

정책용어

34. 지역전략산업

생성배경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심화로,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지방산업이 더욱 위축된 상황에서 1999년부터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별 주력산업 발전, 지방과학기술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별 산업 집적도를 반영하였다. 1999년~2003년 동안 4개 지역(대구, 부산, 광주, 경남)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사업이 진행되었고 2002년~2007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9개 지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2012년까지는 '5+2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과 병행하여 차기 지역전략산업(Post 4+9)으로 추진되었으며, 박근혜정부 출범으로 2013년~2014년에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통합·조정한 신특화산업이 지원되었고, 2015년부터는 63개 시도주력산업과 16개 경제협력권산업 등으로 재편되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기업 지원의 기반이 되는 H/W적 '인프라 구축', R&D 과제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과 같은 패키지 형태의 '기업지원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인적자원이 취약한 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산학연협력 관계 확충을 통하여 지역혁신체계의 강화를 추구한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3조 7,5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으며, 사업유형별 재원비중은 건축 및 장비구축 위주인 인프라 구축 43%, 기술개발 39%, 기업지원 서비스 11%, 기타 7% 등이다. 이명박정부의 지역산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역의 여건 및 특수성에 입각하여 핵심 성과목표를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성과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전략산업에 지역의 가용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형태를 변경, 종래 중앙 주도의 하향식(Top-down)에서 지역의 기획기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용어설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 내 의견수렴 및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16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4대 전략산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지역전략산업'이라 칭하였다.

그림 22 지역전략산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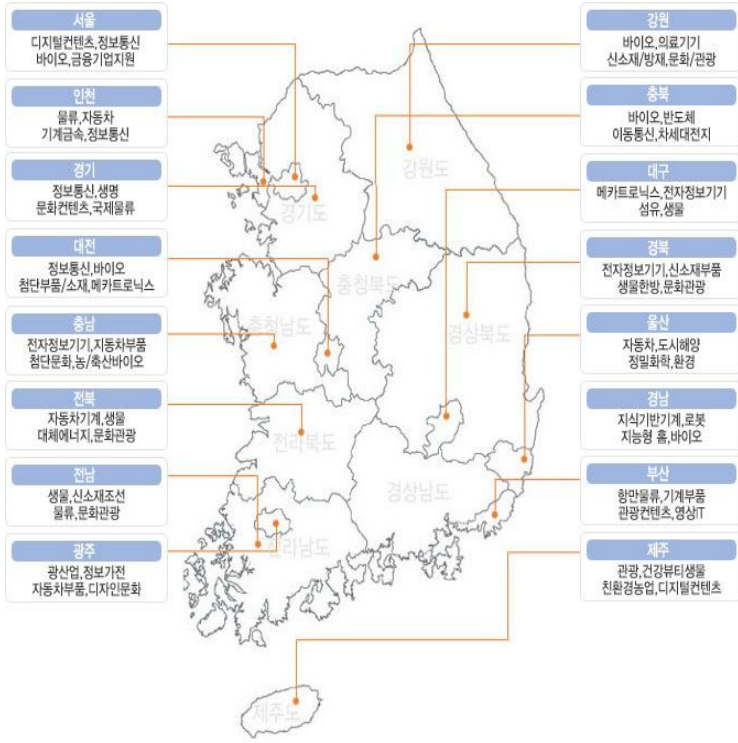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6)

현재 용어의 사용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2년까지 추진한 차기 지역전략산업은 13개 광역시·도별 전략산업으로서 1999년에 시작된 1단계 사업과 유사한 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에 포함되어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사업과 같은 S/W적 사업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2013년부터 시행된 13개 지역별 신특화산업에도 일부 전략산업이 포함되었다.

참고자료·문헌

- 산업통상자원부(2008),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 4+9) 추진계획
- 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산업기술재단(2008), 13개 시·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본 타당성조사 보고서
- KIAT(2009), 201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지침, 산업통상자원부
- KIAT(2010), 2011년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지침,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6)

작성자 : 최재홍 교수(경북대학교)

정책용어

35. 지역중견·강소기업(스타기업)

생성배경 기존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이분법적 분류체계는 중소기업 졸업 후에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영역으로서의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2011년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중견기업의 정의,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2014.1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기존 「산업발전법」상의 관련 근거 규정은 삭제되고 주무부처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변경되었다.

용어설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으로서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기업, ②「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기업, ③「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④「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1)]

그림 23 중견기업의 정의 및 범위

출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ahpek.or.kr)

한편, 강소기업(히든챔피언[2)], 스타기업 등)은 명확한 법적 판정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①R&D투자의 규모 및 매출액 비중이 일반기업보다 높고, ②그에 따른 성장성과 수익성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견·강소기업 중에서 본사 또는 주력 사업장이 비수도권인 14개시도, 즉 지방

1) 「중견기업법」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42호)에 의거하여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2) 강소기업(작지만 강한 기업)은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이 처음으로 사용한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헤르만 지몬은 히든챔피언을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또는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 매출액이 40억 달러 이하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히든챔피언에 속하는 기업들은 평균 60년 이상의 기업수명, 평균 매출액 4,300억 원, 평균 성장률 8.8%, 분야별 세계시장 점유율 33% 이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지역중견·강소기업이라 할 수 있다.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2011년 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2012년에는 중견기업이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국가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합동(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으로 '2조 달러 경제와 희망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중견기업법 제정 이후 2015년에는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추로서, '창조경제'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면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견인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2015~2019)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기본계획에서는 2019년까지 중견기업 5,000개, 중견기업 일자리 155만 개, 수출 970억 달러, 한국형 히든챔피언 100개 육성 등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①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②중견 후보기업군 발굴·육성, ③핵심역량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 ④사회적 책임 확산 및 정책기반 확충 등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4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변화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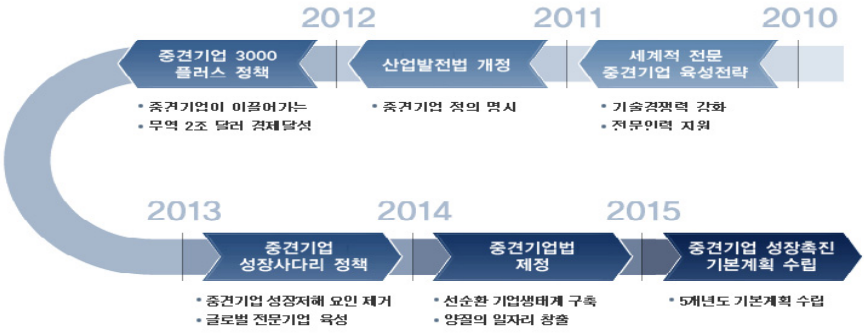

출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

현재 용어의 사용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말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총 2,979개로 2013년(3,846개) 대비 867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범위개편[3]으로 700여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재분류되고, 또 중견기업 제외기준[4] 신설 등의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자산 5조원 이상 외국법인의 자회사 등 약 500개 기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이 같은 제도변경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는 중견기업의 수가 200개 내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5].

그림 25 중견기업 수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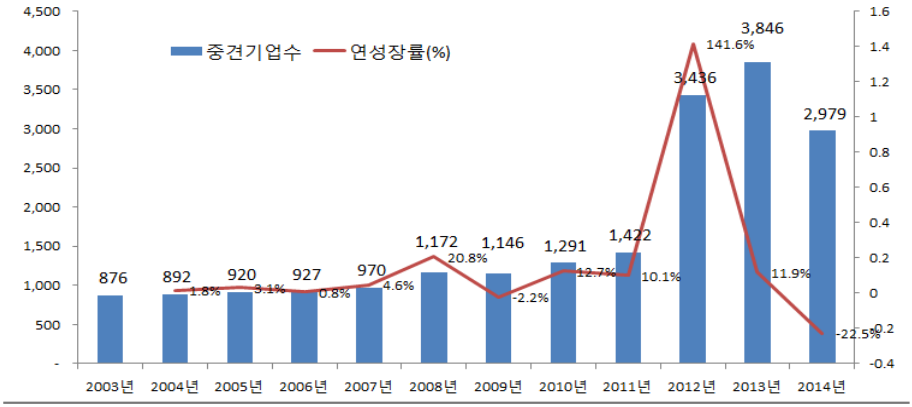

출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ahpek.or.kr)
주 : 2011년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이후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이러한 중견기업 수의 감소로 인해 기업수 비중은 2013년 0.12%(3,846개)에서

3)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4가지 상한기준(자본총액 1,0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중 자산총액 5천억원만을 존치시키고 모두 폐지함.

4) 자산 5조원 이상 외국법인 등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함

5) 제도변경 전의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경우, 2014년 중견기업수는 2013년말 보다 217개가 증가한 4,063개로 추산됨.

2014년 0.08%(2,979개)로, 매출액 비중은 2013년 17.9%(629.4조원)에서 2014년 13.5%(483.6조원)로, 고용 비중은 2013년 9.7%(116.1만명)에서 2014년 7.3%(89.9만명)로 감소하였으나,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2013년 1,732억원 → 2014년 1,821억원), 평균 고용(2013년 333명 → 2014년 344명), R&D집약도(2013년 0.88% → 2014년 1.05%) 등과 같은 질적 지표들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중견기업수를 살펴보면, 서울 1,068개(35.9%), 경기 654개(21.9%) 등 수도권이 6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경남 172개 (5.8%), 부산 152개 (5.1%), 충남 145개(4.9%)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26 시도별 중견기업 현황(2014년 기준)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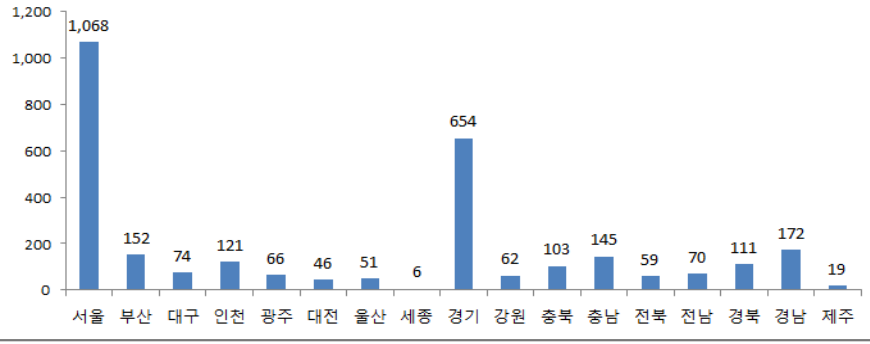

출처 : 중소기업청(2016년),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참고자료·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5), 제1차(2015~2019)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ahpek.or.kr)
- 산업연구원(2012),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요건 및 정책과제
- 산업연구원(2013.11), e-kiet 산업경제정보
-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12.8), 중견기업 3000+프로젝트
- 중소기업청(2016),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36. 지역특화산업

생성배경 IMF 사태 이후 고사위기에 놓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시·도별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육성을 지자체 주도로 시작한 것이 지역특화산업 개념의 생성 배경이다. 정부의 지역산업정책과 관련하여 2003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서 자립형 지방화의 핵심과제로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을 선정하면서 '지역연고산업'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2009년에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연고산업인 경우 2015년부터는 풀뿌리기업육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용어설명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연고산업을 각 지역의 자연자원, 역사 및 문화자원, 축적된 기술 및 숙련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작아 시·도의 주력성장 견인 산업이 될 수는 없으나, 고용 및 소득 창출, 정주체계 안정 및 지역사회의 활력증진을 위해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지역특화산업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전략산업이 13개 광역시·도 단위로 추진되는 반면에 특화산업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선정되어 지역 내 특화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 지원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산·학·연이 중심이 되어 하드웨어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와 소프트웨어(R&D, 인력양성, 네트워킹, 마케팅)를 연계·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립형 지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은 세종시를 포함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과제에서 R&D 및 비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체계로 변경되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성과지향성의 지역 자생적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주도 추진체계 정착화를 위해 중앙과 지역 간 역할 분담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가 개편되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 및 지자체 연구소육성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편입되었다.

그림 2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특징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연고산업육성.

참고자료·문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2011년 지역산업지원사업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2), 지역발전위원회 발표자료(지역연고산업육성)
- 산업통상자원부(2011), 2011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작성자 : 최재홍 교수(경북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7. 지역혁신센터(RIC)

생성배경 1990년대 기초과학 분야에서 우수연구집단에 대한 지원책이 점차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수연구집단 지원 사업은 수월성을 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아직 연구역량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는 우수연구집단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지방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집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산업자원부의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1995년 12월) 및 과학기술부의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계획'(1994년 2월)에 의거, 지역 대학 내 거점 센터로서 지역기술혁신센터(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와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과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 자원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연구센터(RRC, Regional Research Center)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2005년 TIC, RRC 사업의 연계·통합 모델로 지역혁신센터(RIC, Regional Innovation Center) 사업을 발굴하여 2006년부터 RRC와 TIC을 RIC으로 통합하였다.

용어설명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 및 대학 특성화 분야에 대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기술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RIC(지역혁신센터)은 과거 산업자원부의 TIC(지역기술혁신센터)과 과학기술부의

RRC(지역협력연구센터)가 통합된 모델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2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및 제21조)에 의거, 산·학·연간 공공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장소·시설 등의 집합체를 RIC(지역혁신센터)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인근 기업과의 유기적 연계 및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잠재력이 있는 기술 분야의 장비 활용을 통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2010년 102개 센터가 운영되었으나 2016년 8월 현재 98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그림 28 지역혁신센터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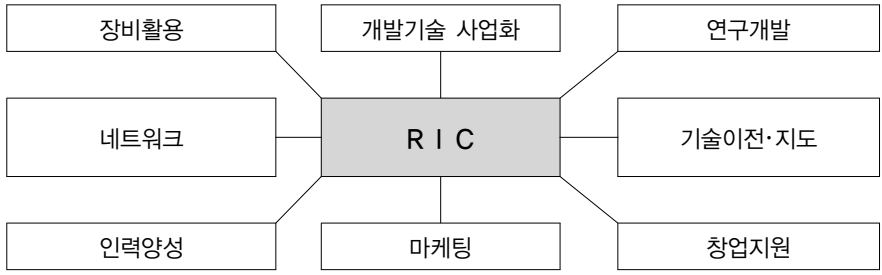

출처: 한국RIC협회 홈페이지(www.ric.re.kr).

〈표 41〉 지역혁신센터 지정현황(2016년)

지 역	지역혁신센터명	지정 개수
서 울	숭실대 분자설계 RIC	1개
인 천	인하대 열플라즈마 환경기술 RIC 등	7개
경 기	경희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RIC 등	8개
강 원	강원대 강원 웰빙 특산물 산업화 RIC 등	7개
대 전	한밭대 화학소재 상용화 RIC 등	6개
충 남	순천향대 고부가 생물소재 산업화 지원 RIC	13개
충 북	건국대 바이오 식의약 RIC 등	8개
광 주	조선대 치과용 정밀장비 부품 RIC	5개
전 남	목포대 IT 기반 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RIC 등	8개
전 북	원광대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RIC 등	6개
대 구	계명대 예측 설계기반 전자화자동차 부품 RIC 등	6개
경 북	영남대 무선 멀티미디어시스템 설계기술 RIC 등	7개
부 산	동의대 블루바이오 소재 개발 및 실용화지원 RIC 등	6개
울 산	울산대 네트워크기반 자동화 RIC 등	2개
경 남	인제대 바이오헬스소재 RIC 등	7개
제 주	제주대 기능성 바이오 첨가제 및 농업·해양 RIC	1개
계		98개

출처 : 한국RIC협회 홈페이지(www.ric.re.kr).

참고자료·문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지역산업지원사업안내서
-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용어사전
- 신동호(2007), 해외 지역혁신체계 우수사례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한국RIC협회 홈페이지(http://www.ric.re.kr)

작성자 : 류세선 센터장(한국금형산업진흥회)

정책용어

38. 창업보육센터

생성배경 1997년 초 정부는 대기업중심 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대안으로 중장기적으로 벤처기업육성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을 제정, 벤처창업 및 성장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후 정부는 1998년부터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BI : Business Incubator) 건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까지 총 3,783억 원(건립 2,764억 원, 운영 842억 원 등)을 투입했고 2006년 이후 260~280개의 BI를 통해 창업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초기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창업지원 정책 및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전국적으로 4,818개 창업기업이 입주하여 연간 약 2조 4,800억 원의 매출과 2만 1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보였다(2010년 말 기준).

용어설명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을 일정 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작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멘토 및 디딤돌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항에서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창업보육센터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1998년 29개의 창업보육센터로 시작해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267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이다. 창업보육센터의 노후시설 개선, 일반건물의 BI전환 등에 소요되는 건립비(리모델링)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부 지원하고 있다. 건립비는 전체 사업비의 70%(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표 42〉 연도별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1998~2011)

구 분	1998	2000	'05	'06	'07	'08	'09	'10	'11.6	'15
지원예산	63	468	163	183	168	189	306	353	380	227
보육센터	29	219	309	265	269	269	279	286	280	278

주 : '05년 타 부처 소관 BI 중기청 이관에 따라 센터 수 증가 → '06년 BI 통·폐합 조치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1)

해외사례 세계 최초의 창업보육센터는 1959년 미국 뉴욕 주에 있는 바타비아(Batavia) 지역의 바타비아 기술센터(Batavia Industrial Center)이다. 미국 창업보육센터의 주요 기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와 내·외부 전문가 연계, 마케팅, 회계/세무, 지적재산권, 자금 및 정부지원금, 개인투자자나 벤처캐피털 연계, 기술상업화나 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주기업도 다양하며 입주 기간은 평균 3년이지만 생명공학 분야처럼 연구개발이 오래 걸리는 업종은 제조업 기업보다 더 오래 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보육센터 대부분은 졸업제도를 두고 있으며,

보육센터 운영주체는 전체의 약 70%가 비영리 기관이다.

핀란드의 테크노폴리스 벤처스(Technopolis Ventures Ltd)는 200여 개의 지식기반 하이테크 창업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핀란드 최대 비즈니스 창업 기관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생존율 86%, 연평균 성장률 50%로 하이테크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데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기술창업보육사업은 1991년에 시작되었으며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이주하는 내국인의 보유기술을 창업으로 연결시키고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기술인 창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이스라엘 창업보육사업의 특징은 기술적인 경험이 많은 신규 이민자들의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림 29 창업보육센터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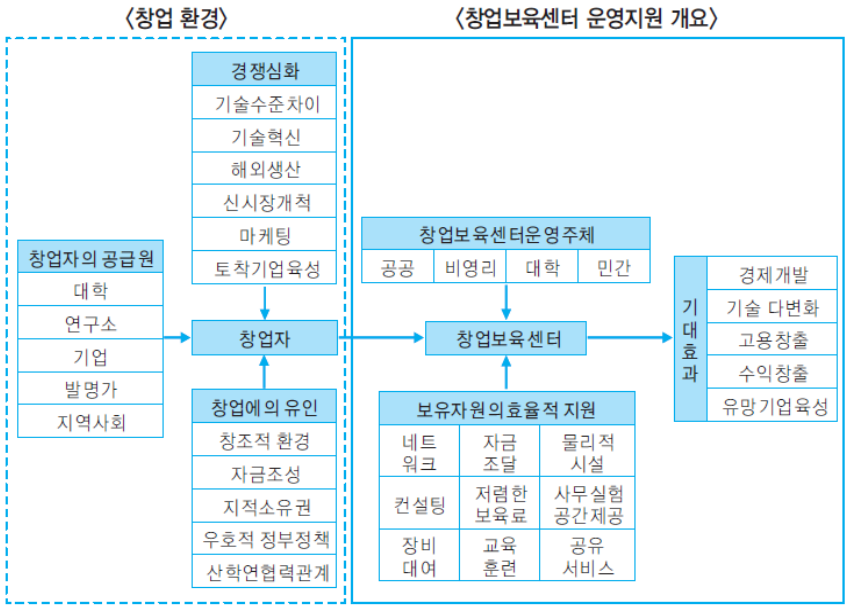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201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사업

참고자료·문헌

- 김주미(2011),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 현황 및 개선 방향
- 중소기업청(201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1. 8. 25), 창업보육센터, 선진형 제3세대 플랫폼으로 재편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bi.go.kr)

작성자 : 오병기 책임연구위원(광주전남연구원)

정책용어

39. 창조경제혁신센터

생성배경 박근혜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창조형으로 전환하고 혁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으로의 창조경제 확산과 실현이 중요하고, 그간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지역별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지역 혁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혁신 주체간 연계·협력할 경우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바,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기존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활용을 통해 지역 주도로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의 발굴·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창업 관련 정책 발표 및 민간의 참여 등을 통해 창업 기반의 확대 및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분위기가 관 주도와 중앙 중심에서 민간 주도 및 지역 자율로 확산될 필요성과 함께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기 위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이 절실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지역 인재의 창업활성화, 기업 경쟁력 제고, 제품·서비스의 세계시장 개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 단위의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이 추진되었다.

용어설명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창의적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 도전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지역 내 관계기관 및 지원사업의 연계 서비스로 시장 진출, 애로기술 해결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국 17개 지역의 18개 혁신센터는 지역별 산업 특성과 지원 대기업의 역량을 특화사업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역 센터는 정부·지자체·지원 대기업이 상호 협업하는 일대일 전담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세터에는 각각 1개의 전담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의 자원,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 대기업은 혁신센터에서 발굴한 사업모델에 대해 상품 개발, 판로 확보,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하여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30 지역별 기업현황

2016년 7월말로 출범 2년차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하는 지역 창조경제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출범 1년동안 1,135개의 창업기업과 1,605개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2,834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혁신센터가 보육한 창업기업에서 약 1,605억원의 매출 증가 및 1,35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서, 주요 역할은 ① 창업지원, ②중소기업 혁신, ③특화산업 육성, ④지역 밀착형 사업, ⑤대·중소기업 상생, ⑥글로벌 진출로 나눌 수 있다.

①창업지원으로는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업을 통해 아이디어 단계부터 기업의 성장 단계까지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을 하는 창업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입주공간, 멘토링, 투자자 연결, 글로벌 진출 등의 종합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률/금융/특허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전문 컨설팅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②중소기업 혁신으로는 전담기업이 가진 사업 노하우와 네크워크,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역內 유망 중소기업에게 상품개발, 판로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③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특성 및 전담기업의 강점 분야를 고려해 선정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 중이다. * 전북(탄소소재), 충남(태양광), 광주(수소차), 충북(뷰티·바이오), 부산(유통·영화) 등

④지역 밀착형 사업은 전통시장 개선, 전통문화 사업화, 관광 상품 발굴 등 주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⑤대·중소기업 상생으로는 혁신센터를 통해 전담기업의 사업 밸류체인에 혁신센터 보육기업이 연계되어 상호 윈윈하는 상생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⑥글로벌 진출로는 다양한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전담대기업 플랫폼, 해외진출 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KIC 연계 해외진출 프로그램(경기), 글로벌투자박람회(경기), 글로벌 벤처스타 프로젝트(대전), GEP 프로그램(충남) 등 (전문화된 지역 특화산업과 프로그램 운영)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원기업의 풍부한 경험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전문화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데, 각 프로젝트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과 전문화된 산업군으로 발전시키고 R&D 및 마케팅 등을 긴밀하게 지원한다.

그림 31 지역별 창조적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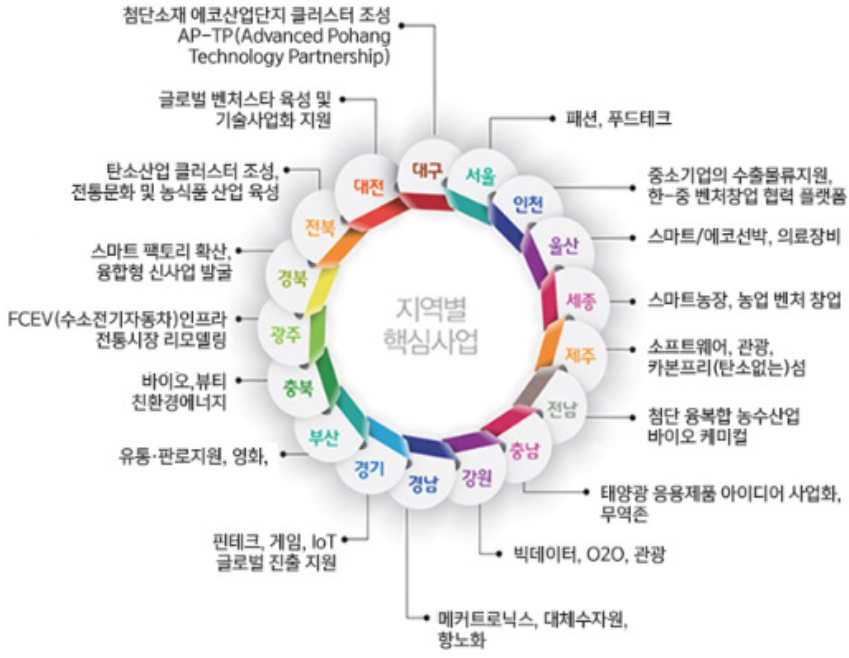

(고용존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일자리를 넘어서 스타트업, 전략 사업의 신규 인력수요를 창출하는 본격적인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센터 내 공간 마련 및 인력배치를 통해 고용존을 운영 중으로, 전담 대기업, 청년희망재단 등과 협력하여 창조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7월 17일에 개소하여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300~400명이 방문하여 1년 누적 75,000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1년 간 서울의 풍부한 창업 네트워크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창업활성화를 주도하고 식문화, 패션 등 도시생활 스타일 분야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문화 확산 거점으로서 경제혁신을 선도하고 있는데, 출범 후 1년간 창업·중소기업 216개사를 발굴·육성 중이며 130억원의 투자유치, 154명 신규 고용창출 및 25억 여원의 매출 증가로 성과 창출을 본격화했다. 5개 대학연계 창업카페 운영(총32회), 대학 창업보육센터 연계 창업교육·워크숍 등 실시(106회, 3,807명 참여), 부산, 경북 등 지역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엔젤양성교육 추진(132명 배출) 등 전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주도했다. 패션·디자인 분야 12개 스타트업 및 푸트테크 분야 50개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도시생활문화(life cycle) 재해석을 통한 신규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사례 세계 각국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예로 들 수 있다. 세계는 개방형 혁신의 흐름 속에서 실리콘밸리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자국 내 혁신 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고자 지역 및 도시 기반의 로컬(local)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미국 뉴욕의 실리콘앨리,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 독일 베를린의 실리콘알레, 이스라엘 텔아비브 스타트업 시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자료·문헌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참고자료, 2014.11.15.,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적인 서비스 제공(http://www.msip.go.kr)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참고자료, 2014.12.18., 경북 창조경제 트라이앵글(대구-경북(구미)-포항) 구축, 경북지역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에 박차! (http://www.msip.go.kr)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참고자료, 2014.3.12, 2014년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 확정, 본격 시행 !!!(http://www.msip.go.kr)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참고자료, 2016.7.19.,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창업생태계와 협업 통해 창업·혁신 주도(http://www.msip.go.kr)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참고자료, 2016.7.28., 2년차 창조경제혁신센터, 빠른 성장과 글로벌 진출 견인(http://www.msip.go.kr)

작성자 : 정택영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용어

40.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성배경 첨단의료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의료 R&D 허브라는 비전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공간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첨단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환경친화적 녹색융합의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조성지역은 대구 경북(신서)과 충북(오송)이 선정되었으며 총 조성면적은 216만㎡(신서 103만㎡, 오송 113만㎡)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핵심인프라(신약개발지원센터/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첨단임상시험센터(병원))와 연구지원시설(실험동물센터(Bio Resource센터 포함)/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및 편의, 벤처연구시설(원스톱행정센터/커뮤니케이션센터/벤처연구센터)이 건립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9년-2038년(단지조성 2009년-2012년)이며 총 8조 6천억 원 내외(2개 지역)가 들어가는데 이 중 시설 및 운영비로 약 3조 7천억 원, R&D투자로 약 4조 9천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 의료인프라로서 기능 정립, 기반기술 구축, 기술 공유체계 확립 등 국가적인 의료 R&D 기반·기술의 거점 및 글로벌 R&D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과부·지경부·복지부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관리 및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했다.

2013년 확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지자체, 민간 합동으로 2016년까지 연구개발비 등 약 1조원을 투입하고 연구인력 확대, 핵심연구지원시설의 활용도 제고, 우수연구기관의 유치 및 산학연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첨단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표 43〉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경과

2005년	▶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결정 '05.10
2007년	▶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 확정 '07.6
2008년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08.3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 '08.11
2009년	▶ 대구 신서지구, 충북 오송지구 2곳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09.8
2010년	▶ 단지별 조성계획 결정 '10.01 – 대구 : 합성신약, IT 기반 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 추진 – 오송 : 바이오신약, BT 기반 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 추진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 첨단의료복합단지 착공
2012년	▶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편의시설 구역 등 단지조성 완료
2013년	▶ 각종 시설·장비 시험가동 및 운영
	▶ 제2차 종합계획 확정
2016년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1차 입주기업 모집

출처 : 보건복지부.

그림 3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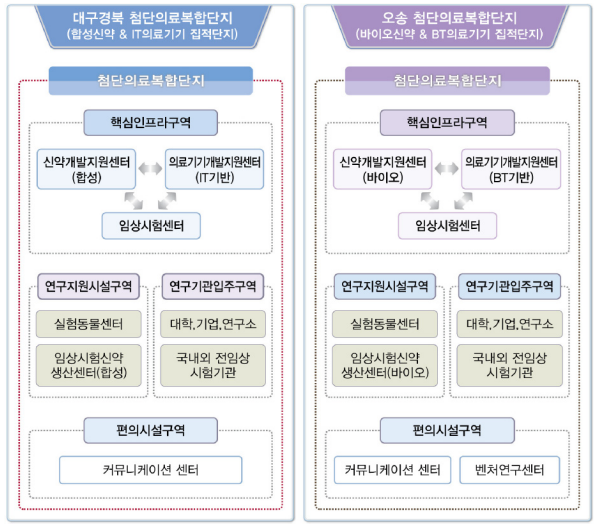

출처 : 2011 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부).

■ **규제특례**

○ 의료법
- 외국 의료인(외국의사, 치과의사)의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허용

○ 건강보험법
-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 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

○ 약사법, 의료기기법
-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시 제조업 허가 및 시설규정 등 미적용
- 연구목적 의약품·의료기기 수입 허가 및 신고 간소화
-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 기준 등에 대한 국제규범 적용

○ 생명윤리법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 별도 심의
- 단지 내 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활용

○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 연장(2년→5년)

○ 특허법
- 단지 내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 인센티브
○세제지원
–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매각 등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매각 등의 수의계약 허용
– 사용·수익·대부기간 : 20년 범위 내(갱신가능)
– 매입 대금의 분할납부 허용(20년)
○임대료 감면(입주지원)
–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
○자금지원
– 숙소,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지원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자금 조성 및 지원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지원
– 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융자지원
○휴·겸직 허용
– 대 상 :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 내 용 :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 의료 연구개발기관의 근무를 위해 휴·겸직 허용(3년 이내)

■ 주요 시설 및 기능
〈핵심인프라〉
○신약개발지원센터
– 신약후보물질 평가·최적화, 산·학·연 공동연구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 첨단의료기기 설계·시제품 제작·성능평가, 산·학·연 공동연구
○첨단임상시험지원센터
– 민간시설로서 첨단제품의 임상시험단계에서 실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조기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초기단계, 소규모 임상시험 인프라시설
– 첨단제품 임상시험 기술 등을 단지 밖 지역 임상시험센터 등에 확산·전파
– 해외 임상연구병원과의 협력 등을 통한 아시아 임상시험 중심기지 역할 수행

〈연구지원 시설〉
○실험동물센터(Bio Resource센터 포함)
– 실험용 동물사육 및 관리, 연구용 세포·시료 보관 및 관리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 임상시험용신약생산시설

〈연구기관 입주 및 편의시설〉
– One-stop 행정서비스 및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

용어설명 국가, 지자체, 산·학·연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국가적 사업화 촉진 연구개발지원단지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분야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국내 의료산업의 취약 부분 해소와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중심기지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해외사례 미국 텍사스 휴스턴 메디컬센터, 덴마크-스웨덴 메디콘밸리,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 중국 푸동의료단지, 상하이 국제의학원 구역, 캐나다 밴쿠버 의료단지, 일본 고베 의료단지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 보건복지부(2013), 2012 보건복지 백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작성자 : 이여진 책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41. 테크노파크

생성배경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역 중심의 자발적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산·학·연을 연계하는 네트워크의 구심체로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역산업정책이란 개념이 태동하였다. 1995년 12월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업단지 확충 중심의 산업정책과 개별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기술혁신의 구심체로서 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7년 4월 구)산업자원부에서 시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자를 공모하였고 1997년 12월 송도, 경기, 충남, 광주, 대구, 경북 테크노파크 등 6개를 시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자로 지정하였다. 1998년 9월에는 법률 제5578호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테크노파크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용어설명 테크노파크는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공간을 의미하는 파크(park)의 합성어로 기술 및 연구개발과 그 주체인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이 모여 활동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계획적 개발이 내포된 개념이다.

미국의 대학연구단지협회와 영국의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의 정의를 종합하면, 테크노파크는 연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사이에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상품과 신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중개 기능 단지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테크노파크의 개념 및 정의를 조작적으로 정의해 보면 '지역의 산·학·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관련조직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기술혁신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공원이자 기술혁신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1997년 6개의 시범 테크노파크 지정을 계기로 포항, 부산의 2개 민간 주도형 테크노파크가 추가로 조성되었다. 2003년, 2004년에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울산 테크노파크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 민간 TP로 경기대진, 서울 테크노파크가 지정되었다. 2008년에는 대전, 2010년 제주를 끝으로 국내에는 현재 18개의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대 초반까지 테크노파크는 모법인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보육 등 6대 목적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 사업평가관리, 인프라구축, 네트워킹' 등 역할이 추가되었다. 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이 해당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테크노파크가 산업정책기획기능을 담당하는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지원단' 및 해당 지역 특화산업 기반의 '특화센터' 등으로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검증된 모델로서 한국형 TP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에 한국형 TP 모델을 수출한 바 있다.

그림 33 국내 테크노파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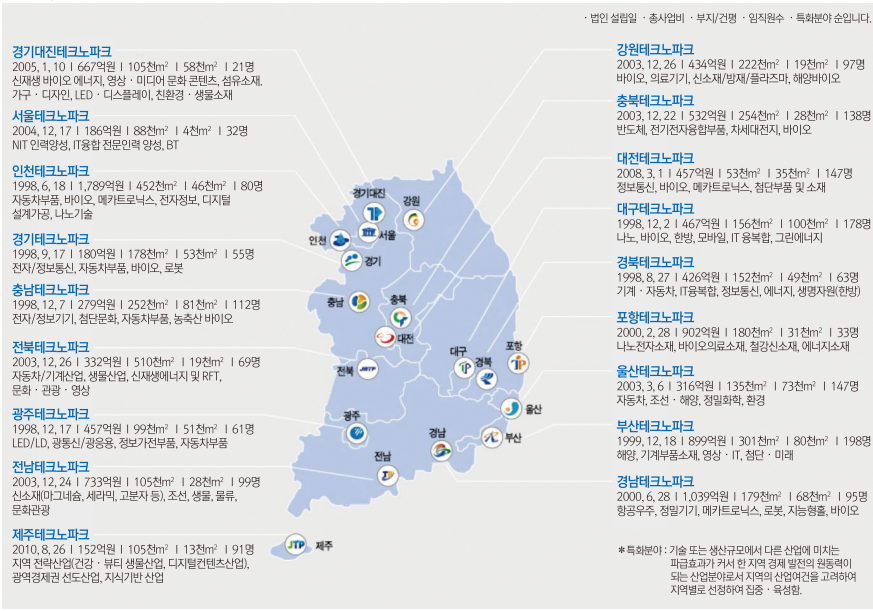

출처 :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홈페이지(www.technopark.kr)

해외사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산업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부터 테크노파크와 같은 단지를 경쟁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2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미국의 리서치파크,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일본의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 김계수(2002), 한국테크노파크의 종합경영관리시스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권영섭, 변세일(2003),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07), 2단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프로그램 기획보고서
-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technopark.kr)

작성자 : 류세선 센터장(한국금형산업진흥회)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42. 통합 재정사업 평가

생성배경 2016년도부터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 합동으로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에 따라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각종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하여 부처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기금사업운영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연구성과평가법 제8조), 지역발전사업평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가 별도로 실시되었으나,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미래부·지역위(이하 메타평가부처)가 확인·점검(메타평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통합·변경되었다.

용어설명 평가대상은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며, 각 부처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분야별·부처별로 메타평가(상위평가)[1]를 실시한다.

1) R&D사업의 경우 연구성과평가법상의 상위평가, 지역발전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종합평가를 메타평가로 지칭한다.

그림 34 통합 재정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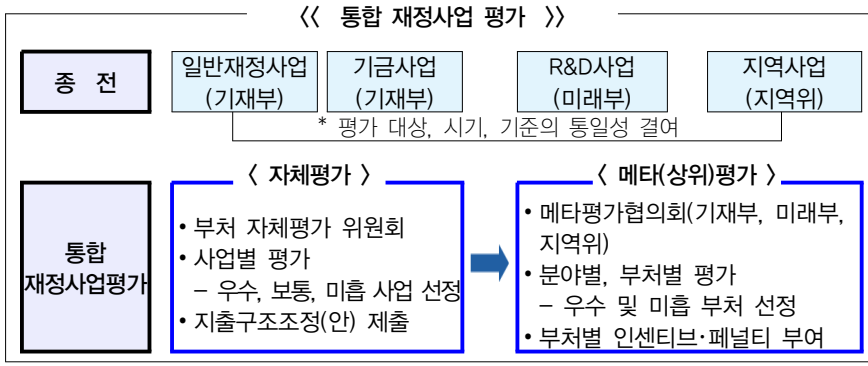

2016년 평가지침의 특징은 세출구조조정 강화를 위하여 평가 대상 사업을 현행 1/3에서 모든 재정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2]하되, 평가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가지표[3] 및 평가절차[4]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또, 사업수행 부처가 중심이 되는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되, 부처의 평가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구조조정 목표를 사전에 부과[5]하였다.

메타평가 부처는 사업별 전수확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메타(상위)평가를 수행하고, 메타(상위)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부처에게 기관포상[6], 다음연도 평가시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및 미흡비율

2) 평가대상은 사업수 기준으로 2016년 50% 수준, 2017년 70% 수준, 2018년 이후 100%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3) 일반 재정사업 기준으로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 단계의 11개 지표로 평가하였다.

4) 관리, 결과 단계의 4개 지표로 간소화하였다.

5) 2016년 세출구조조정 목표는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이다.

6) 재정운용 우수부처에 대한 기관포상금 7.5억원이 2015년 신설되었다.

하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흡 부처에게는 당해연도 총구조조정규모 확대, 부처 기본경비 삭감, 다음연도 총구조조정규모 및 미흡비율 상향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평가사업 단위는 일반재정(정보화)사업은 '단위사업[7]'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특히 R&D·지역사업의 경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R&D 국방분야 사업·지역 SOC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평가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6년도 평가대상은 2015년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관리대상 사업 수 기준 50% 수준으로 선정하였고, 최근 2년(2014~2015년 평가) 내에 평가받지 않은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또 2015년 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의 경우 반드시 포함하였고,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및 소액사업[8] 등 평가의 실익이 적은 경우는 메타평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부처는 총괄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일반재정·정보화, R&D, 지역사업 등)를 구성하는데 R&D분과는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일반재정(정보화) 및 지역사업은 필요시 구성·운영한다. R&D 다부처 사업 평가의 경우에는 참여부처 공동으로 별도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부처 자체평가 지표는 일반재정, R&D, 지역사업의 평가지표를 통합하여 4개의 공통평가 지표를 사용하되,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성화 지표를 가미하였다.

---

7) 2015년 기준, 단위사업은 일반재정(1,771), 정보화(240), R&D(234) 등 총 2,245개이다.

8) 소액사업의 기준은 일반재정 10억원 미만, 정보화사업 5억원 미만이다.

〈표 44〉 부처 자체평가 지표(1)

단 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관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	•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1–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결과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가점	(공통)	• 성과지표를 결과지표(R&D의 경우 질적지표)로 설정한 경우
	(일반재정)	•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지역발전)	• 지역일자리 창출, 연계협력 등 지역발전 성과
	(정 보 화)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연구개발)	• 혁신도약형 사업에 대한 제도 마련·수행 여부
		• 우수성과 100선 선정 여부, 세계적 수준의 우수 성과 창출
		• 과제평가의 질적 지표 활용률

자체평가 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대상사업을 '예산 규모(2015년 예산) 기준'으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화한다. 이 때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대상사업 전체에 대해 '사업 수'가 아닌 '예산 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상대평가 비율은 우수 20%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을 준수해야 하고, 평가사업 수가 8개 미만이거나 사업간 예산규모의 편차가 커서 예산 규모 기준 상대평가를 실시하기 곤란한 부처는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특히, 분야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하여 분야별(일반재정, R&D, 지역사업)로 우수비율은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미흡비율은 최대 30% 초과를 금지하였다.

자체평가 결과, 개별 미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총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의 2016년 총예산의 1%[9] 수준을 반드시

9)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실시 부처의 경우, '미흡' 등급 사업만으로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

준수하여야 하고, 다만 의무지출사업의 예산은 평가대상사업 총예산 규모에서 제외한다.

구조 조정된 예산은 부처의 '우수' 사업, 신규 사업 등을 중심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미흡' 사업 가운데 사업의 특성과 미흡원인 등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메타평가 지표는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등 3개 항목, 6개 평가지표(R&D 사업은 7개 지표)로 아래 표과 같다. 원칙적으로 사업별 확인·점검은 실시하지 않되, R&D '우수'사업 등 예외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한해 사업별·평가지표별로 실시할 수 있다.

〈표 45〉 부처 자체평가 지표(2)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1. 평가과정의 충실도	1-1.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1-2.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2. 평가결과의 적정성	2-1. 성과계획에 따른 평가실시 여부
	2-2. 상대평가 준수여부
	2-3. 우수사업 등급의 타당성 여부(R&D분야만 해당)
3.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3-1. 지출구조 조정규모 달성도
	3-2 지출구조조정 내역의 적정성
(감점)	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메타(상위)평가 방식은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가 부처 자체평가에 대하여 각 분야별(일반재정(정보화), R&D, 지역사업)로 실시하였는데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이 때 지역 R&D 사업은 분야별 메타 평가 시 지역사업에 포함시켜 평가하되, 사업별 평가지표는 미래부의 R&D 지표를 사용하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 경우 '보통' 등급 사업까지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림 35 메타(상위)평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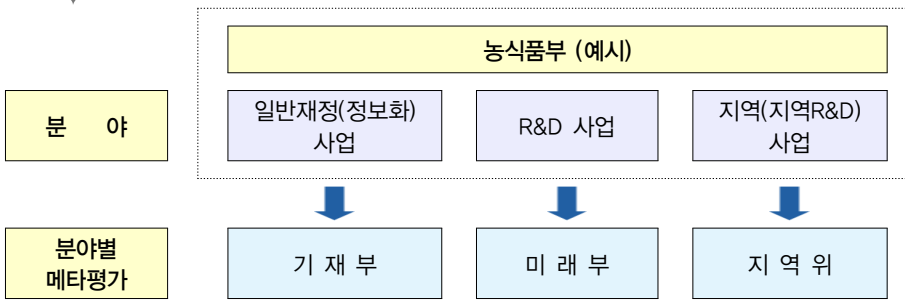

메타(상위)평가 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분야별 메타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메타(상위)평가 지표 중 주요 지표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우수 및 미흡부처 후보군'을 선정한다. 또 분야별 메타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부처별 메타평가를 실시하는데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 등 메타평가 부처와 조세연, 정보화진흥원, KISTEP, KEIT 등 성과평가 지원기관으로 메타(상위)평가협의회 구성하여 분야별 메타(상위)평가 점수를 종합해 각 부처별 메타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우수 및 미흡 후보군' 중 부처별 메타(상위)평가 점수 상·하위 10% 수준에서 우수 및 미흡 부처를 선정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총 47개 부처·청 828개 재정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및 메타(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1월~3월 각 부처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4월에 분야별 메타(상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 부처별 메타(상위)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R&D사업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6월) 및 정평위 보고(7월) 일정으로 추진하였고, 지역발전사업의 경우, 지역발전위원회(5월) 및 대통령 보고(5월말) 일정으로 추진하였다.

자체평가를 통해 168개(20.3%) 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

(21.4%)의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며, 각 기관에서 6,250억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였고, 평가결과는 예산당국으로 통보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었다.

메타평가 결과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이 우수 기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가 미흡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 효율화에 기여하고,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문헌

- 기획재정부·지역발전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2016),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13~'15 회계연도 평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작성자 : 김성훈 센터장(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책용어

43. 특화발전프로젝트

생성배경 박근혜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HOPE 프로젝트)을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방식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자율형 추진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서 시·군 단위의 지역행복생활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와 함께 시·도 단위의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화발전프로젝트는 시·도별로 미래성장동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 비전 및 발전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특화분야와 관련한 각종 세부 사업(기존 사업, 신규 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시책이다. 한편,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의 확정 시, 시·도에서 신청한 프로젝트 중에서 지역공약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우선하여 고려하였다.[1)]

정부는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시·도별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안[2)]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4년 9월에 개최된

1) 지역공약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2013.12.23, 지역공약은 지역에 대한 약속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바, 최대한 지역 입장에서 지역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에 따라 15개 프로젝트 중 지역공약과 연계되는 프로젝트를 11개 선정하였다.

2) 지역 발전전략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지역공약 연계 여부 등의 프로젝트 선정기준에 따라 시·도가 자율적으로 발굴·제시한 프로젝트 중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출하였다.

그림 36 특화발전 프로젝트 선정현황(2014.9월 기준)

부산	글로벌 영상산업특성화 도시 조성
대구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천	일자리 양산형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대전	국방 ICT융합 기업생태계 조성
울산	친환경 전지 융합산업 육성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조성
강원	건강·생명 클러스터 조성
충북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
충남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
전북	농생명 허브 조성
전남	서남해안 해양관광 육성
경북	IT 융복합 창조생태계 구축
경남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주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2014

'지역발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시·도별 발전전략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15개 프로젝트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80개의 세부사업[3]을 확정하였다.

용어설명 특화발전프로젝트는 지방·중앙 간 역할분담,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중앙정부는 총 15개 프로젝트, 80개 세부사업에 5년간(2014~2018년) 총 2조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중앙 간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지자체는 프로젝트의 기획, 입지 지원, 관련 기업 유치활동 등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핵심기반 조성,

3) 프로젝트별 세부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 및 재정 당국과 수차례 협의를 실시(2014.4~6월)하였고, 프로젝트와의 부합성, 지역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되, 각 시·도별 형평성도 최대한 배려하여 선정하였다.

그림 36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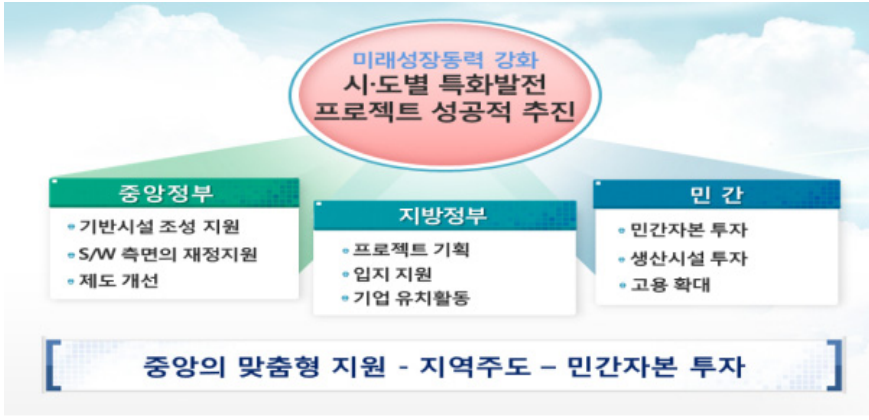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2014

지역기업들의 기술개발, 창업,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지자체가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생산시설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민·관 협업을 주된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지역발전위원회(제10차, 2014.9월)에서 최종 확정된 특화발전프로젝트는 2014년 12월에 확정·공표된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에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인프라 조성, R&D 신규 사업 등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15년에는 3,76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이후 2016년 4,538억 원, 2017년 4,705억 원, 2018년 4,7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5.4월에는 특화발전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내실 있게 실현하기 위해 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였

다. 프로젝트 목표와 세부 사업별 목표 간의 연계,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성과목표의 타당성, 세부 사업 간 협업, 예산집행 실적 등을 중점 점검하였는데, 점검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 및 세부 사업의 차년도 예산배분 및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세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적인 개선·조정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자료·문헌

- 지역발전위원회(2015), 내부자료(지역특화프로젝트 점검결과 보고서)
- 지역발전위원회(2014), 지역행복생활권·특화발전프로젝트(안)
- 관계부처 합동(2014),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의안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44. 프라임(Prime)사업

생성배경 교육부는 2015년에 들어와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을 통해 교육부문의 구조개혁 추진계획[1]을 마련하고,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 5대 교육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 마련(2015.8월), 대학구조개혁 결과 발표(2015.8월), 「대학구조개혁법」 수정안 발의(2015.9월) 등을 추진하였고, 이어서 대학이 산업수요에 맞게 학과개편과 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 즉, 프라임(PRIME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2015.10월에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이 프라임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 자원 급감[2] 청년 실업률 증가, 창조경제 시대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산업구조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의 기능 조정(학과개편 및 정원조정)을 통해 산업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유도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 박근혜정부는 교육, 노동, 금융, 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과제를 추진중임.

2) 2030년 미충원 규모가 약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용어설명 대학은 오랜 기간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산업·사회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양성 기능이 취약하였고, 그 결과로서 대학의 인력 공급과 산업계의 인력 수요 간의 미스매치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프라임사업은 산업수요 중심의 자율적인 대학 체질개선을 통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한 인력 미스매치의 양적 조정과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주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7 프라임사업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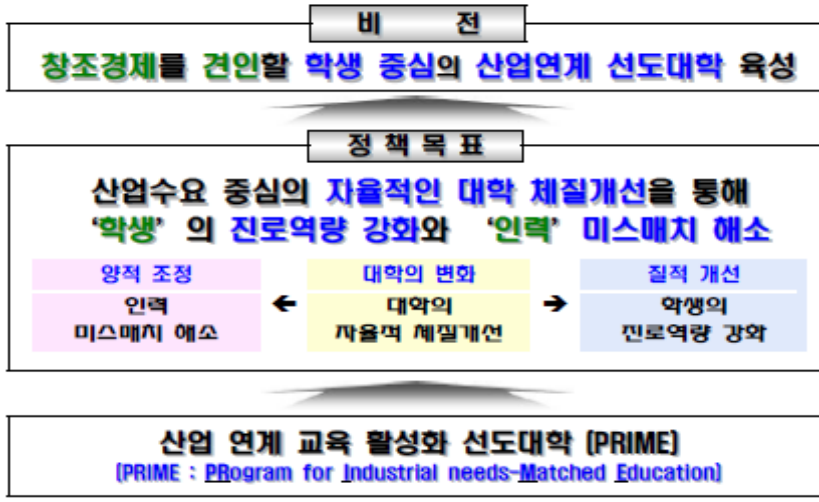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15.9)

프라임사업은 정책목표의 달성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①학생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대학에 부여, ②교원 신분·학생 정원 유지 등 대학 구성원(교직원, 학생)과의 합의, ③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대학의 변화 요구에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 등을 핵심적인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프라임사업은 전국 4년제 대학(과학기술원(대), 원격대, 대학원대학 등 제외)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 간, 대학의 자발적인 양적·질적 구조개혁을 지원(2016년 2,012억원)하며, 재정지원 종료 후 5년 간 사후 성과관리를 진행하여, 구조개혁 노력이 대학의 체질 개선으로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회수요에 맞는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의 두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선도모델 창출과 성과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표 46〉 프라임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사업유형	사업내용	지원규모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 사회 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 선도	◦ 총1,500억원(9개교 내외) ◦ 대학별 평균 150억원 최대300억원(1개교)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 창조경제,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	◦ 총500억원(10개교 내외) ◦ 대학별 평균 50억원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15.9)

프라임사업 추진을 통해 첫째, (양적 조정)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사회·산업수요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등 대학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둘째, (질적 개선)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 창출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의 축과 흐름을 이동하게 하고, 셋째, (지역 연계) 국가 전체적인 미스매치 해소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교육부는 프라임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안) 발표(2015.9월) 이후, 공청회·간담회(2015.10월), 기본계획 확정 공고(2015.12월), 사업계획서 접수

(2016.3.30.~31), 선정평가(2016.4월)[3] 등의 과정을 거쳐 총 21개 대학[4]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지역·권역별로 대형 유형은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6개교 등 총 9개교를, 소형 유형은 5개 권역(수도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제주권)별로 2~3개교씩 총 12개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21개교의 프라임 분야로의 정원이동 규모는 총 5,351명으로 해당 대학의 전체 입학정원(48,805명)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17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된다.

〈표 47〉 프라임사업의 선정 대학 현황

사업유형	대학명	주요 중점 분야	정원이동 규모(명)
사회수요 선도대학 (대형)	건국대	바이오(농수산 6차 산업, 의생명), ICT융합, 미래에너지	521
	경운대	항공(서비스, 기계, 무인기)	262
	동의대	기계·자동차·IT융합, 신소재	485
	숙명여대	ICT 융합공학, S/W, 기계시스템	250
	순천향대	의료 융복합 웰니스, 빅데이터, 문화 콘텐츠	369
	영남대	지능형 로봇, 미래 자동차, 융복합 소재, 화학	317
	원광대	농생명, 스마트 기계, 디지털콘텐츠공학	535
	인제대	의생명 헬스케어, 미래 에너지, 디자인 엔지니어링	420
	한양대 (ERICA)	S/W융합, 나노광전자학, 화학분자공학	247

3)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대면평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하였음.

4) 총 75개 대학(대형 27개교, 소형 48개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중 최종 선정된 대형 유형과 소형 유형의 선도대학에 대해 각각 연간 약 150억원, 50억원을 지원함.

사업유형	대학명	주요 중점 분야	정원이동 규모(명)
창조기반 선도대학 (소형)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 서비스디자인공학, 바이오에너지	265
	이화여대	바이오헬스, S/W, 미래사회공학	193
	경북대	글로벌S/W융합	100
	대구한의대	화장품, 제약공학	170
	한동대	ICT융복합(창업)	70
	동명대	조선해양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계공학	110
	신라대	지능형 자동차, 융합기계	202
	건양대	기업S/W, 의약바이오, 재난안전	170
	상명대(천안)	시스템반도체, 지능형 로봇, 태양광	273
	군산대	해양, 운송, 융합기술창업, 공간디자인	142
	동신대	에너지신산업, 전기차	145
	호남대	미래형 자동차, 전기공학	105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16.6)

참고자료·문헌

- 교육부(2015.6), 보도자료(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 발표)
- 교육부(2015.8), 보도자료(교육부,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위한 로드맵 제시)
- 교육부(2015.10),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기본계획(시안)
- 교육부(2015.11), PRIME 사업 기본계획(시안) 관련 대학 관계자 간담회 자료
- 교육부(2016.5) 보도자료(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21개교 선정)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Ⅱ

지역개발문화관광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 BID/TOD특정지구, 계획지구

생성배경 2차 대전 이후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가 대중화됨에 따라 미국의 도시들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가 도시외곽으로 연결되어 수평적으로 확산되면서 주택지의 교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자동차중심의 교통체계 및 통행패턴으로 인해 교통혼잡의 심화, 대기오염의 악화,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자동차 중심의 사회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환경파괴, 생태계 및 자연보호,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자동차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대중교통중심의 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와 도시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정에서 도시 외곽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대형 쇼핑몰이 대거 등장하게 되면서 도심의 상업지역은 점차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교외의 대형 쇼핑몰은 중산층 소비자들을 흡수해 갔고, 도심의 상업활동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건물과 주택의 자산가치도 점차 하락해감에 따라 세금에 의존하는 지자체의 재정도 부실해져 갔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상업개선지구(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용어설명 TOD는 대중교통지향적인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도시개발 전략으로, 자가용승용차에 의존하는 도시에서 탈피하여 대중교통이용에 중점을 둔 도시개발 방식이다. 이 개념은 1993년 미국 건축가 피터 캘솝(Peter Calthope)이 「The Next American Metropolis」에서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TOD는 도심지역을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진 대중교통지향형 복합용도의 고밀지역으로 정비하고, 외곽지역은 저밀도의 개발과 자연생태환경 보존을 추구한다. 이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와 고밀개발 및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해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성과 쾌적성을 달성하려는 계획이며, 대중교통의 거점지역을 중점 개발하여 통행수요 감소와 보행 및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는 도시개발방식이라 할 수 있다.

TOD의 목적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며 환경오염의 감소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시스템 구축, 정거장을 중심으로 한 도보접근 가능지역에 중심상업지역 배치로 업무·주거·여가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혼합, 자가용 이용의 억제 및 교외의 환승주차장 설치, 고밀개발지에 보행자 위주의 교통시설 건설 및 환승과 접근이 용이한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보행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제고, 자전거 및 도보로 통행이 가능하고 보행에 매력이 있는 환경조성, 자동차의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계획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도심의 상업지역의 경우,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정에서 심각한 쇠퇴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상업개선지구(BID)의 개념이 나타났다. BID는 특정 지역의 건물주나 사업주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추가 자금을 모금하여 정부에서 제공해 왔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조직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서, 도심상업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전체의 효과적인 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BID는 1960년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1980

년대에 미국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영국 등으로 확산되었다. BID는 도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미화, 방범강화, 지역홍보, 직업훈련 등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BID를 설립하고 운영에 지원하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용어의 사용 최근에는 대중교통중심의 개발을 물리적 공간의 개발과 교통에 관련된 이론에서 더 나아가 환경의 문제를 포함한 생활패턴, 사회·문화적 문제를 포함하는 이론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례, 화성동탄, 파주운정 등 신도시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TOD 계획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가지의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곽동화(2012), TOD이론의 발전과 입지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12(3), 한국디지털인테리어학회
- 김미경(2005), 영국의 상업개선지구(BID) 도입, 국토(283호), 국토연구원
- 매일경제, 매일경제용어사전(http://terms.naver.com)
- 서울특별시(2012),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작성자 : 윤정중 연구기획실장(토지주택연구원)

정책용어

2.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생성배경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통행 거리 증대와 수도권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급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과도한 지하철 적자 문제에 대응한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시스템이다. 도심지역의 도로와 교통시설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며 교통체증이 지속되어 필요해진 개념으로서, 2005년 말부터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용어설명 BRT(Bus Rapid Transit)는 기존 버스체계에 철도 운영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주요 기반시설과 운영시스템으로, 버스통행권, 교차로 신호우선처리, 쾌적한 차량, 편리한 환승시설, 효율적 관리시스템, 운영서비스 등을 갖추어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시스템이다.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로 운행한다. 이미 전 세계 45개의 도시(브라질 꾸리찌바, 콜롬비아 보고타, 미국 보스턴, 일본 나고야 등)에서 운행 중이며 지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BRT의 구성요소로는 전용차로(BRT전용차로/도로), 교차로(입체시설, 램프/BRT우선신호), 차량(저공해차량, 수평승하차, 대량수송), 환승시설(쾌적·안전한

정류장, 환승센터), BRT 운행 및 관리시스템, ITS를 통한 운행관리(실시간 운행정보 BMS/BIS), 요금관리 시스템(사전지불, 거리기준 요금방식, 스마트카드 등)이 있다.

그림 1 BRT 구성요소

출처 : 수도권 교통본부(www.mta.go.kr)
주 : 중앙버스전용차로, 입체교차로, 사전지불 가능 정류소, 환승센터, 버스사정실(BMS)

〈표 1〉 BRT와 대중교통수단 간 건설비 및 수송능력 비교

구 분	지하철	경전철	BRT
km당 건설비	405~2,027억 원	100~963억 원	2~44억 원
수송능력	40~80천 명/시간	5~66천 명/시간	15~35천 명/시간

출처 : 수도권 교통본부(www.mta.go.kr)

지역의 도로 및 교통여건, 기능 요구수준에 따라 신교통형 BRT와 일반형 BRT로 구분된다. 신교통형은 전용도로 및 전용차량, 입체교차로 등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경전철에 준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형은 버스전용차로, 일반형버스, 버스 우선신호 등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전국 BRT 확충계획에 의하면 수도권 13개 노선, 부산권 3개 노선 등 총 20개 노선(515.5㎞)을 우선 추진 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스템 구축을 맡고, 세종교통과 대전비알티가 운영한다. 2017년 이후로

는 세종교통이 빠지는 대신 지방공기업인 세종교통공사(2017년 출범 예정)가 세종교통이 운영하던 BRT와 연계 지선버스를 운영하게 된다.

해외사례 콜롬비아 보고타시는 Transmilenio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민투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노선체계는 BRT 노선 보통 및 급행으로 나누고 급행은 2개 또는 3개 정류장마다 정차함으로써 속도를 높였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시는 BRT 인프라 구축을 위해 196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974년부터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단계별로 구축하여 확장했다. 통합 노선망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급행버스와 간선버스, 지역과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지선버스, 그리고 환승센터를 순환하는 순환버스로 구성된다.

일본 나고야 가이드웨이 버스는 통상의 버스 차량을 이용한 궤도계 교통시스템을 말하며 신 교통시스템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BRT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다. 1989년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박람회의 수송수단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2001년 최초로 실용화된 노선으로 개통되었다.

참고자료·문헌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05), BRT 편람
- 모창환 외 1명(2007), 간선급행버스체계(BRT)운영체제의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수도권 교통본부 홈페이지(http://www.mta.go.kr)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15-136호)

작성자 : 김석중 연구위원(강원발전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 BTO/BTL

생성배경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해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법명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정의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BTO(Build-Transfer-Operate),BTL(Build-Transfer-Lease), BOT(Build-Own-Transfer), BOO(Build-Own-Operate)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그림 2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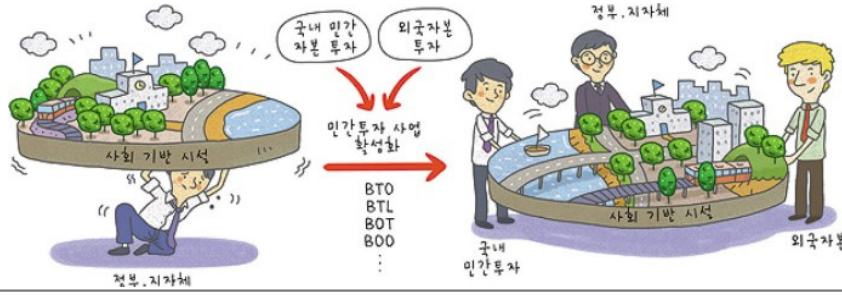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2013),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p133

용어설명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투자회사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기간(통상 30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로·철도·항만 등 운영에 따른 충분한 사용료 수익으로 투자금 회수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투자자는 준공 후 약정된 시설관리 운영기간동안 시설사용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한다. 신분당선(강남-정자)전철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민간투자회사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수익이 충분히 예상되는 BTO사업과 달리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한다.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자료·문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2013),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기획재정부(2010), 시사경제용어사전

작성자 : 김석중 연구위원(강원발전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4. 경제자유구역

생성배경 경제자유구역은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각국이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하여 자국을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2년 대통령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발표 및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마련, 2003년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설치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2002년 12월 제정, 2003년 7월 시행)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제도이다.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 세제,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경제활동에 대하여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 관세 및 조세 감면 등의 예외 조치를 허용해주는 경제특구이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은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국제비즈니스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용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및 산업단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용어설명 경제자유구역은 「경자법」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10년간 기획·초기개발(2002~2007년) 및 본격개발·제도개

선(2008~2012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외국인투자(FDI) 실적이 증가한 결과, 2012년 24.3억 불, 2013년 11.5억 불, 2014년 18.2억 불을 유치하였으며 2014년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투자(189.6억 불)의 9.6%를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림 3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FDI) 유치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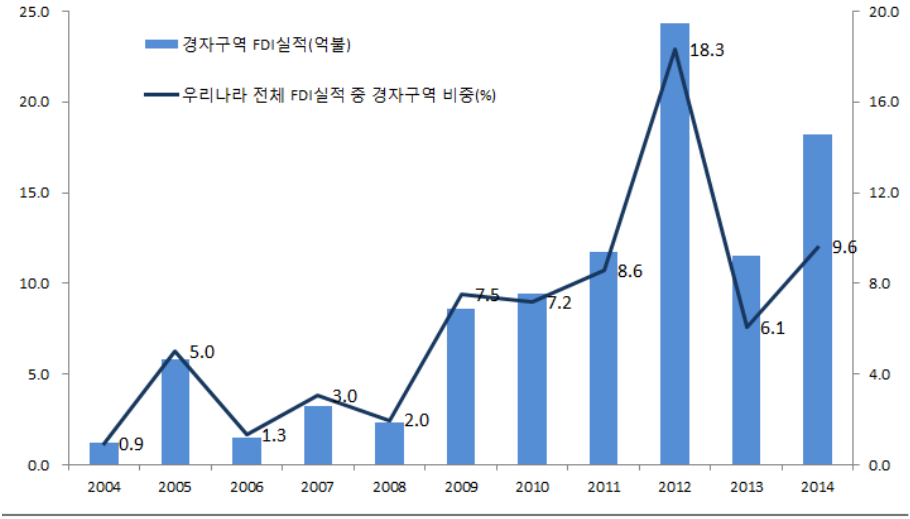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현재 용어의 사용 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말 기준으로 2003년에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에 지정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에 지정된 동해안, 충북 등 8개 구역의 428.37㎢(2011년 구조조정을 통해 당초 571㎢에서 137㎢를 해제, 98개 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었다.

〈표 2〉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2013년 말 기준)

구분		추진기간	면적(㎢)	사업비(조원)
1차지정(2003년)	인천	2003~2020	169.6	89.1
	부산·진해	2003~2020	83.1	11.6
	광양만권	2003~2020	83.7	18.9
2차지정(2008년)	황해	2008~2020	13.8	4.7
	대구·경북	2008~2020	30.0	8.0
	새만금·군산	2008~2020	31.9	4.2
3차지정(2013년)	동해안	2013~2024	8.3	1.3
	충북	2013~2020	9.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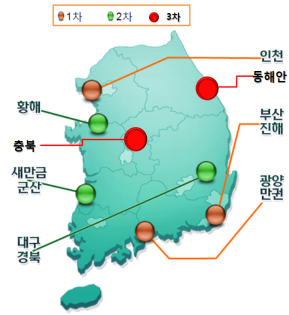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이후 2014.8월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1] 등을 반영하고, 「경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의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해제(전체 면적 해제 지구 - 10개, 일부 면적 해제 지구 - 4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2013년 대비 21.6%가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되었다.[2] 이중 전체 면적이 해제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4개 지구(고군산도 신시1·신시2·선유·무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편입되었다.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20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자법」 개정(2014.11월, 2014.12월) 등을 통해 개발 관련 규제완화 및 실시계획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2010년에 첫 도입된 이후 전년도 성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서 2014년도의 경우 종합순위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1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2위를 각각 차지하였음.

2)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경자법」에 새로이 도입된 '지정 해제의 의제(擬制)' 제도에 따른 결과임.

〈표 3〉 경제자유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단위: ㎢, 개)

경제자유구역	2014.8월 지정해제 前 지정면적(지구 수)	2014.8월 지정해제 後 지정면적(지구 수)
인천	169.60 (26)	132.91 (26)
부산진해	82.28 (20)	52.90 (20)
광양만권	83.58 (23)	77.70 (21)
대구경북	29.88 (10)	22.01 (8)
새만금군산	31.86 (6)	28.60 (2)
황해	13.84 (4)	4.39 (2)
동해안	8.25 (4)	8.25 (4)
충북	9.08 (5)	9.08 (5)
총계	**428.37 (98)**	**335.84 (88)**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참고자료·문헌

- 산업통상자원부(2014, 2015), 보도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한국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 산업통상자원부(2010),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산업통상자원부(2009),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입주촉진방안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5. 공간정보사업(Spacial Data Project)

생성배경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활성화, 유비쿼터스 환경의 콘텐츠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우리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핵심이 되는 스마트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스마트 사회의 핵심 구성요소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컨버전스(Convergenc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이루어진 스마트 정보기술(Smart Information Technology)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지능화 사회'를 의미한다(국토교통부, 2013). 이런 지능화 사회에서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1996년 정부가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본계획(1996～200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간정보사업이 탄생했다.

용어설명 공간정보사업은 국가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이다. 2009년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동법 제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정책과 전략마련을 위해 기존의 이차원적 '지리정보'를 넘어 삼차원적 '공간정보'를 담는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2010～2017)'이 수립되었다. 공간정보사업은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아래 추진되는 사업들을 말한다.

그림 4 공간정보를 활용한 21세기 지도체계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http://www.nsdi.kr/kor/01_nsdiis/sub02_01.do)

공간정보사업은 기본공간정보, 공간정보관련 표준 공간정보, 유통(메타데이터 포함) 공간정보, 기술 공간정보, 인적자원, 파트너십, 법·제도, 조직 등의 요소로 구성된 국가공간정보인프라 (NSDI: National Spacial Data Infrastructure)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민간부문의 활용체계 및 공간정보 산업을 망라한다(김선태, 2010, 국토교통부). 특히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는 전자지도에 지형, 건물, 도로, 지하시설물 등 모든 국토정보를 표준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사이버 국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공간정보사업은 산업·행정·교육·문화 등 모든 영역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간정보를 매개로 제조업과 IT산업이 융합될 때 신산업이 창출된다.

그림 5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menuno=2682)

따라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는 물류, 교통, 환경, 자원 개발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삶과 일터, 쉼터에 대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며, 공간정보를 콘텐츠로 하는 소자본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방, 환경, 방재관리 업무 효율화 등으로 '개발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돕는다. 태풍, 홍수, 산불, 지진 등 재난재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SOC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표 4〉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추진성과

구 분	제1차 국가GIS사업 (1995~2000)	제2차 국가GIS사업 (2001~2005)	제3차 국가GIS사업 (2006~2008)
지리정보 구축	지형도, 지적도 전산화 토지이용현황도 등 주제도 구축	도로, 하천, 건물, 문화재 등 기본지리정보 구축	국가/해양기본도, 국가기준점, 공간영상 등 구축 중
응용시스템 구축	지하시설물도 구축 추진	토지이용, 지하, 환경, 농림, 해양 등 GIS 활용체계 구축사업 추진	3차원 국토공간정보, UPIS, KOPSS, 건물통합 등 활용체계 구축 추진 중
표준화	국가기본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 등 구축에 필요한 표준제정 지리정보 교환, 유통 관련 표준 제정	기본지리정보 1건, 지리정보구축 13건, 유통 5건, 응용시스템 4건의 표준제정	지리정보표준화, GIS국가표준 체계 확립 등 사업 추진 중
기술개발	맵핑기술, DB Tool, GIS S/W 기술개발	3차원 GIS, 고정밀 위성 영상처리 등 기술개발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 중
인력양성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한 인력양성 오프라인 GIS교육 실시	오프라인 및 온라인 GIS교육 실시 교육교재 및 실습프로그램 개발	오프라인 및 온라인 GIS교육 실시 교육교재 및 실습프로그램 업데이트
유통	국가지리정보유통망시범 사업 추진	국가지리정보유통망시범 사업 추진 총 139종 약 70만 건 등록	국가지리정보유통망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중

구 분	제1차 국가GIS사업 (1995~2000)	제2차 국가GIS사업 (2001~2005)	제3차 국가GIS사업 (2006~2008)
지원연구	국가GIS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국가GIS현안과제 및 중장기 정책지원과제 수행	2007년 까지 국가GIS현안과제 수행, 2008년 변화된 정책 환경 지원을 위한 지정과제 수행
집행예산 (억 원)	2,787	4,550	4,438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http://www.mltm.go.kr/USR/policyData/m 34681/dtl.jsp?id=567)

이러한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와 유무선 통신기술, 위치추적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융·복합 서비스 및 지능형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이 기존 단선형 산업에서 네트워크형 산업으로 진화하여 모든 영역에서 핵심요소로 활용될 것이다.

해외사례 선진국은 이미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를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94년부터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에서 공간정보 표준화, DB 구축, 산업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공간정보가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공간정보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공간정보산업은 연평균 35%, 특히 상업부분은 연평균 100%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개인의 고품격 생활, 기업과 정부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가 되어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5〉 외국의 국가지리정보체계 부문별 현황

	일 본	미 국	캐나다	유 럽
기본 공간 정보	• 기본적이며 기반이 되는 3종류(기본 공간데이터, 공간데이터기반, 디지털 화상)를 국토공간데이터기반으로 지정하여 구축	• 다양한 사용자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지리정보인 국가지리정보프레임워크(National Digital Geospatial Data Framework, NDGDF) 구축	• 각종 기관이 소유한 다양한 데이터와의 통합 및 활용 개발, 부가가치 창조가 가능한 캐나다공간정보기반(Canadian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CGDI) 구축	• 독일 : 국가, 연방정부, 민간의 협력 하에 German SDI 구축 • 핀란드 : 중앙·지방정부·산업·유저가 함께 Finnish SDI 구축
표준	• 공간정보 표준으로 국가표준(JIS)과 정부기술기준 운영 • 공간정보 분야 JIS 수는 총 9건(자국 공간정보의 JIS 제정은 3건, ISO 표준의 JIS 제정은 6건), 다수의 기술기준 운영 • 자국 공간정보 교환표준으로 G-XML 운영	• 공간정보 표준으로 국가표준(ANSI), FGDC 기관표준 통합운영 • 공간정보 분야 국제표준 주도국 • 국가표준 총 53건 중 31건이 자국공간정보를 국가표준화한 것 • 자국공간정보 교환표준으로 SDTS 운영	• 공간정보 표준으로 국가표준(CAN/CGSB) 운영 • 미국과 함께 북미지역표준화 공동추진 및 국제표준기구 활동 적극 참여 • 국가표준 5건 중, 4건이 자국공간정보를 국가표준화한 것 • 자국 공간정보 교환표준으로 DIGEST 운영	• 프랑스 등은 유럽표준화기구(CEN) 중심으로 국내외 표준 활동 추진 • 독일 : ISO/OGC를 따른 데이터모델 ALKIS/ATKIS • 영국 : 자국 공간정보 교환표준으로 NTF 운영
유통	• 인터넷을 통한 기본 지리정보의 제공 • 클리어링하우스 확충 등 유통환경 정비	• 연방정부의 모든 지리정보와 서비스가 등록된 GOS (Geospatial One Stop)의 포털사이트 geodata.gov 개설 • 각종 지리정보 검색 및 서비스 제공	• 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경비 분담을 통해 민간도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지리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	• 프랑스 : e-government 서비스를 위한 카탈로그 개발 • 네덜란드 : 클리어링하우스 프로젝트를 민간분야까지 확대 • 핀란드 : 시민을 위한 무료서비스 및 유료의 전문적 서비스, 기업들이 사용자에게 국가지리정보를 공급

	일 본	미 국	캐나다	유 럽
기술 개발	• GIS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창출 및 관련 기술과의 연계 도모	• 민간분야 인식 증대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공간 기술 산업협회(Spatial Technologies Industry Association, SITA)에서 관련 이슈 연구	• 지오매틱스 전문가 양성 및 성장산업 지원, 지오매틱스 교육 홍보로 캐나다의 지오매틱스 부문의 경쟁력 및 능력 강화	
산업	• 산학관민이 g-contents 유통추진협의회를 조직하여 경제산업성이 사업공모		• 고도의 지리정보기술 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산업 협력 체계 프로그램 구성	
협력 체계	• 지방공공단체와의 협력, 지역 지원 • 국제협력의 추진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업계 등의 협력 하에 효율적인 NSDI구축 도모 • 경쟁적 협력협정 프로그램(Competitive Cooperative Agreement Program, CCAP)도입	• 지리정보 공유 촉진을 위한 연방-주·지방 정부의 협력체계 프로그램 구성 • 민간과의 협력 하에 지역 능력 개발에 투자	• 정부, 지방정부, 민간 분야의 폭 넓은 협력체계 구성 • INSPIRE를 통해 유럽 전 지역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성
제도 정비	• 지리정보의 전자화·유통 촉진을 위한 제도·가이드라인 정비		• 폭 넓은 지리정보의 이용설비를 위한 비용, 허가규정 및 기타 제반환경 조성	

출처 : 국토교통부(201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참고자료·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공간정보산업 관리규정」
- 국토교통부(2013),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201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2013), 국가공간정정책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2009), 공간정보사업 현황자료집
- 국토교통부(2011), '2010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 김병국, 배상근(2013), '대한민국 공간정보의 힘, 지능형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 뉴스레터, Vol.61 n.4: 15～23
- 김선태(2010), '국가공간정보 사업에 2015년까지 4조1천억 투입',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국토교통부 : 42～23작성자 : 황지욱(전북대학교 교수)

작성자 : 황지욱 교수(전북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6. 관광개발기본계획

생성배경 우리나라는 80년대 들어서 국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 아시안게임('86)과 올림픽게임('88) 등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관광자원 개발이 확대되었다. 관광개발은 경제·사회는 물론 국토 전반의 정책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분야일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정책이 추진되는 분야로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91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를 계기로 지역단위의 관광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소득 및 생활양식, 가치관 등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수요 및 행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국의 관광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93년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규정하였으며, '89년에 계획이 수립된 전국관광장기종합계획을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1992~2001년)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년)을 거쳐 현재는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년)이 발효 중에 있다.

용어설명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장기계획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관광개발의 효

율적 추진을 유도하는 전략적 기본계획이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범위와 주기를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 관광개발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국가적인 계획의 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49조 1항의 규정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1].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전국의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관광여건 및 동향분석, 수요·공급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6〉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내용 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②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③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④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⑤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출처 : 관광진흥법 제49조

또한 계획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한 줄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다수의 전략과제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계획내용을 수립하고 있으나 보호·개발·이용·관리라는 용어는 포괄적이어서 관광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게 된다. 이에 따라 제

1)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전국이라 함은 동 계획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관광개발은 시장, 자원, 주체적 관점에서 상호작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관광개발의 정책은 관광개발 요소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림 6 관광개발 정책영역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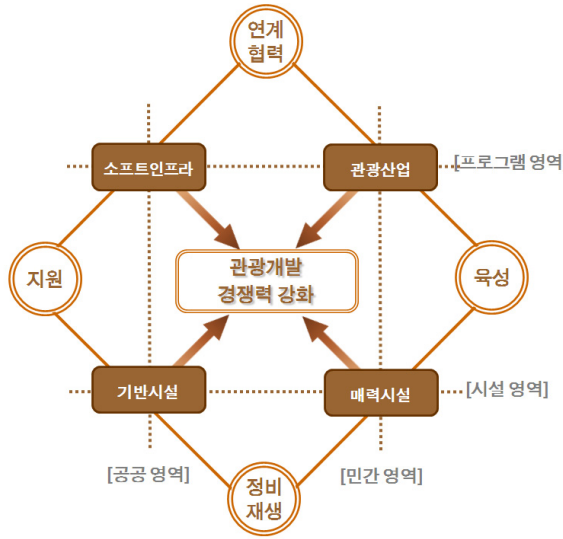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현재 용어의 사용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관광개발의 철학 및 계획 기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 계획 비전을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 관광'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10년은 세계화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사회기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관광개발은 글로벌 녹색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수용하여 개방적 사고와 통합된 힘으로 고품격 선진 미래관광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림 7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각 시·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권역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0조 1항에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동 계획에서는 기존 관광권역 설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초생활권, 16개 시·도,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국토계획의 위계를 반영한 '다층적 지역 관광발전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그림 8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관광권역 계획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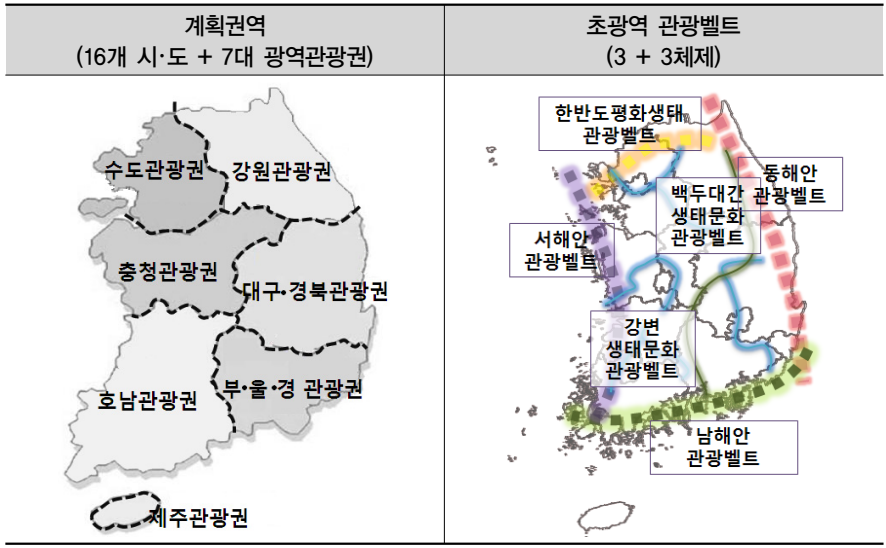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관광권역계획의 방향은 3海3多의 국토 고유 특성을 반영한 관광권역 계획, 국토개발 및 관리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지자체간 협력을 유도하는 계획, 관광자원의 특성 및 관광객이동성을 고려한 계획, 세계로 열리고 남북과 교류하는 '개방형 관광권역'을 지향하고 있다.

동 계획에서 제시된 시·도 관광권역계획의 목표를 보면, 수도 관광권은 '미래를 선도하는 동북아 관광허브', 충청 관광권은 '과학기술과 관광이 결합된 융합관광의 거점', 호남 관광권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중추지역', 대구·경북 관광권은 '3대 문화 역사관광의 거점', 부·울·경 관광권은 '해양레저·크루즈관광 중추지역', 강원 관광권은 '생태·웰빙관광 및 동계스포츠의 메카', 제주 관광권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연유산관광 및 MICE산업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7대 관광권

내에서 각 시·도별 계획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김향자(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제3차 관광기발기본계획
- 한국관광연구원(2000),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 관광진흥법

작성자 : 김향자 선임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7. 관광두레

생성배경 관광두레 사업은 기존의 하드웨어 조성 위주의 관광개발에서 탈피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미 조성한 공공시설(자원)을 활용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사업화 함으로써 지역 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하였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 여행알선, 운송, 오락과 휴양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체를 성공 창업하고 자립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을 담당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홍보,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사업이 이루어지며, 2013년 8월 경기 양평, 강원 양구, 충북 제천, 전북 부안, 경북 청송 등 5개 시·군을 시작으로 매년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용어설명 관광두레는 '관광'과 '두레'를 조합해서 명명한 정책사업 명칭이다. 관광은 비즈니스를 의미하고 두레는 주민공동체를 상징한다. 요컨대 관광두레란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서로 연계해 먹거리, 기념품, 숙박, 체험 등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관광사업 공동체다. 과거 농촌사회의 공동 노동조직과 같이 주민공동체가 협력하여 관광객을 맞이하고, 지역주민에게 관광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시군구 단위의 관광두레 사업은 관광두레 프로듀서(PD)라고 불리는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3개년에 거쳐 현장밀착형으로 추진되며, PD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멘토링과 교육훈련 등 주민맞춤형 지원, 경영 경험과 역량 강화를 위한 파일럿 사업, 지역 내·외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안정 성장과 자립 경영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2013년 5개 지역을 시작으로 2014년 20개 지역, 2015년 11개 지역, 2016년 8개 지역을 신규 선정하였으며, 매년 말 평가를 통해 사업 계속 추진 지역과 당해 년 완료 지역이 결정된다. 2016년 8월 말 기준, 37개 지역에서 155개 주민공동체가 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정량적 성과뿐 아니라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자발성과 인식 전환이 나타나는 등 정성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민공동체 주도의 관광사업체 성공 창업과 자립 경영이 관광두레 사업의 정의이자, 동시에 목표이다.

그림 9 관광두레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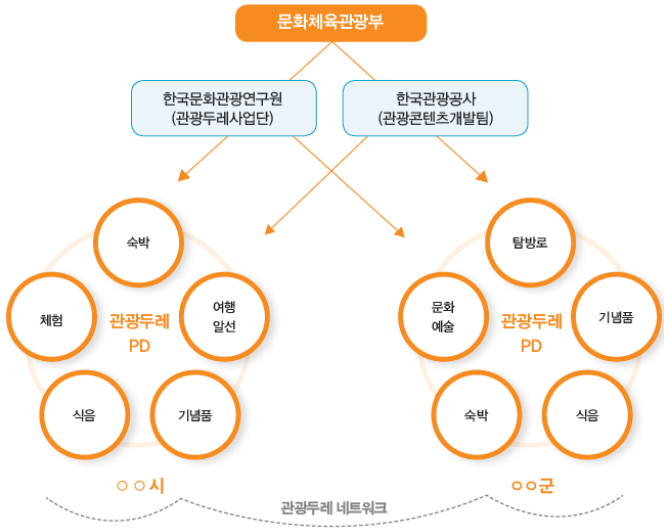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관광두레 주민이 만드는 창업 생생스토리」

현재 용어의 사용 관광두레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먹거리, 숙소, 체험프로그램, 기념품, 여행 일정 등을 개발하고 운영까지 맡는 관광사업 공동체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관광두레 PD 활동 지원과 주민사업체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등 세부 사업 총괄을, 한국관광공사가 홍보와 마케팅을 맡아 지원한다.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만들고 자립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과거 농촌사회의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참고자료·문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관광두레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관광두레 주민이 만드는 창업 생생 스토리
- 관광두레 블로그 (blog.naver.com/tourdure)

작성자 : 박주영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용어 8.

관광특구

생성배경 관광특구 제도는 관광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배제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고자 199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최초 관광특구의 개념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특구 모델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실제 제도 도입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후 관광특구는 지자체 중심으로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의무화 하고, 정부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및 융자를 시행하는 등 관광 여건을 집중 정비·조성하는 지역으로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용어설명 관광진흥법 제2조에는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관광특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특구 지정은 외국인 관광객 연간 10만명 이상(서울특별시는 50만명), 관광안내

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을 것,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 네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평가하여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미흡한 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내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공개공지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필요시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관광특구내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의 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고 있다.

관광특구는 2014년 3월 기준 전국적으로 13개 시·도의 28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1994년 제주도, 경주시, 설악, 유성, 해운대 등 5개소가 처음 지정된 후, 1997년 일시적인 지정요건 완화로 14개소가 신규 지정되어 대폭 증가하였다. 현재, 서울에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7개 시·도에 각 2개소, 경북, 충북은 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관광특구는 자원을 기준으로 도시형과 온천형, 산악형, 해양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6개 관광특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중첩되어 있다.

〈표 7〉 관광특구 지정 현황(2014년 3월)

시·도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	지정일
서울 (5)	명동·남대문·북창	중구 소공동·회현동·명동·무교동 일원	0.87	2000.03.3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원	0.38	1997.09.25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희동·을지로5~7가·신당1동 일원	0.58	2002.05.23
	종로·청계	종로구 종로1가~6가·서린동·관철동·관수동·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광화문 빌딩~숭인동 4거리)	0.54	2006.03.22
	잠실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2.31	2012.03.15
	강남 마이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원	0.17	2014.12.18
부산 (2)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6.22	1994.08.31
	용두산·자갈치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지역	1.08	2008.05.14
인천 (1)	월미	중구 신포동·연안동·신흥동·북성동·동인천동 일원	3.00	2001.06.26
대전 (1)	유성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5.86	1994.08.31
경기 (4)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보산동·소요동 일원	0.39	1997.01.18
	평택시 송탄	평택시 서정동·신장1·2동·지산동·송북동 일원	0.49	1997.05.30
	고양	고양시 일산 서구·동구 일원	3.94	2015.08.06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장안구 일원	1.83	2016.01.15
강원 (2)	설악	속초시·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38.2	1994.08.31
	대관령	강릉시·동해시·평창군·횡성군 일원	428.3	1997.01.18
충북 (3)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	9.22	1997.01.18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상판리·중판리·갈목리 일원	43.75	1997.01.18
	단양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2005.12.30
충남 (2)	아산시온천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3.71	1997.01.18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신흑동, 응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2.52	1997.01.18

시·도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	지정일
전북 (2)	무주 구천동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7.61	1997.01.18
	정읍 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3.45	1997.01.18
전남 (2)	구례	구례군 토지면·마산면·광의면·신동면 일부	78.02	1997.01.18
	목포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갓바위·평화광장 일원(목포해안선 주변 6개 권역)	6.90	2007.09.28
경북 (3)	경주시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32.65	1994.08.31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1.74	1997.01.18
	문경	문경시 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 일원	1.85	2010.01.18
경남 (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사창리 일원	4.82	1997.01.18
	미륵도	통영시 미수1·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32.90	1997.01.18
제주 (1)	제주도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	1,809.56	1994.08.31
13개 시·도 31개소		–	2,636.4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6), 내부자료

해외사례 우리나라 관광특구 제도는 미국의 관광촉진지구(TID: Tourism Improvement District), 일본의 국제관광 테마지구와 성격이 유사하다. 미국의 관광촉진지구는 특정지역의 여행 및 관광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제도로서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게 모금하여 민관이 운영하는 조직을 통해 집행하는 방식이다. 관광촉진지구는 주 단위의 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마케팅기구 또는 관광협회, 주정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관광 테마지구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과 숙박거점 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지정하고 있다. 국가·지자체·민간사업자 등이 협력하여 관광 프로모션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환경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김영준(2007), 관광특구 제도개선 및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3), 관광특구 제도 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2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한범수, 김덕기(1995), 관광특구제도 발전방안, 교통개발연구원

작성자 : 김영준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9.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생성배경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식품산업 수출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식품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를 조성하여 R&D중심·수출지향형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하에 형성되었다.

용어설명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2015년까지 총 5,535억 원(민자 포함)을 투자하여 150여개의 식품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된 R&D·수출지향형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림 10 국가식품클러스터 역할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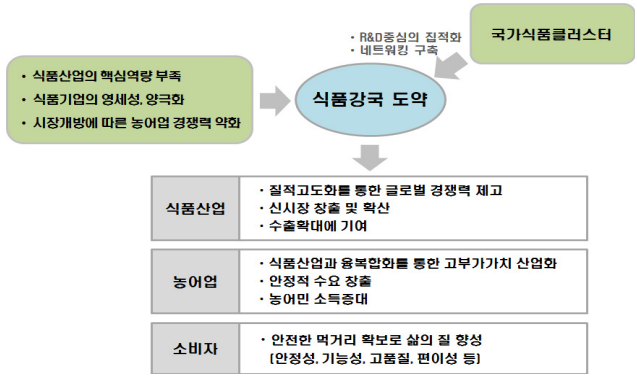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1. 2. 24

현재 용어의 사용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글로벌 식품시장의 新중심'이라는 비전과 '2020년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국형 고부가가치 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이다.

그림 11 국가식품클러스터 현황

○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광암리, 동촌리 및 왕궁리 일원

○ 사업기간 : '12년~'16년
○ 사업내용 :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232만㎡(70만평)
○ 추진경과 : '14.03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14.11 국가시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공고
'15.10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FIZ)지정
'16.07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국토부)
○ 기대효과 : 식품R&D와 생산산업시설이 융합된 이노베이션형 단지 조성

출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http://www.foodpolis.kr/info/info1.php)

해외사례

■ 네덜란드 : Food Valley

- 와게닝겐대학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이 결합된 대표적 식품 수출 클러스터로 2000년 클러스터 로드맵 발표 이후 단기간에 세계적 클러스터로 성장
- 유럽 물류 중심지인 입지를 활용하여 수입 원료를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개발·수출을 주도. 70여개 식품기업, 20여개 연구소, 1,000여개

연관업체가 입주하여 연간 64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달성
- Nestle, Unilever, Danone, Monsanto, Heinz 등의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덴마크&스웨덴** : Öresund Cluster
- Öresund대학과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간 혁신적 R&D 체계 구축
- 14개 대학으로 구성된 Öresund대학과 식품연구기관, 글로벌 기업간 혁신적 R&D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간 980억 달러 정도의 매출과 6만 1천여 명의 고용 달성
- Nestle, ARLA, TetraPak, Danish Crown Beauvais 등의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Proviva 브랜드(건강기능식품)는 기업과 농업인이 win-win하여 상업화한 사례임(연간 6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

■ **미국** : Napa Valley
- 미국 캘리포니아 포도 주산지에 R&D를 결합하여 프리미엄 와인 생산 및 관광객 (연간 1,900만 명 유치)
- 연간 520억 달러 정도의 매출, 고용인원 30만9천명, 글로벌 브랜드(Mondavi 등) 개발

■ **이탈리아** : Emilia-R. Cluster
- 지역의 중소기업과 조합을 중심으로 햄, 치즈, 파스타 등의 전통적 특산품을 생산하고, 대학 중심의 대규모 지방연구기관을 설립함
- 연간 540억 달러 정도의 매출, 고용인원 10만 명, Labelling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 프랑스 : Vitagora

- 프랑스 부르고뉴주 디종(Dijon)시에 위치하고, 식품기업(64개), 연구소(35개), 교육기관(8개), 지자체(7개), 협동조합(8개) 등이 모여 있는 R&D 중심의 식품 클러스터(www.vitagora.com)
- 매주 정부차원의 운영현황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식품기업이 이사회의 이사로 다수 참여하는 등 민관협력체계가 잘 구축된 클러스터
- EU집행위, 중앙 및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약 1,400억 원 규모의 120여개 연구 프로젝트(국가 프로젝트 26개)를 수행함
- 주요 회원사 : Lactalis(유제품), Danone(유제품), Senoble, Unilever(차류 등), Lesieur, Merck Medication, Familiale, SEB 등
- 캐나다, 태국, 포르투갈 정부 등과의 교류협력 체결

참고자료·문헌

- 김정욱 외 2명(2012), 산업클러스터 효과 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박종은, 송채헌(2010),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전문 물류센터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20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2012),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안)

작성자 : 한광식 교수(김포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0. 국토종합계획

생성배경 6.25 전후, 저성장과 낮은 소득수준, 고실업, 높은 인구증가율 등으로 인한 좌절감과 패배의식이 팽배하였다. 이후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국토개발을 포함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에 착수하였다. 또한, 헌법 제120조 제2항과 1963년 10월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근거로 1972년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2000년 수립된 현재의 제4차 계획부터는 개발에 초점을 두던 기존 시각에서 탈피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 및 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용어설명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체계적인 이용·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는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자 국토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도계획, 시·군종합계획 등 다른 법정계획의 지침 역할을 하며, 교통, 수자원, 주택 등 부문계획과 주요 지역계획 수립시에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이 최초로 수립·시행된 이후, 총 4차례 국토계획(3회 수정)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시행 중이다.

〈표 8〉 국토종합계획 수립 경과

국토계획	수정계획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987~199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1999)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그림 12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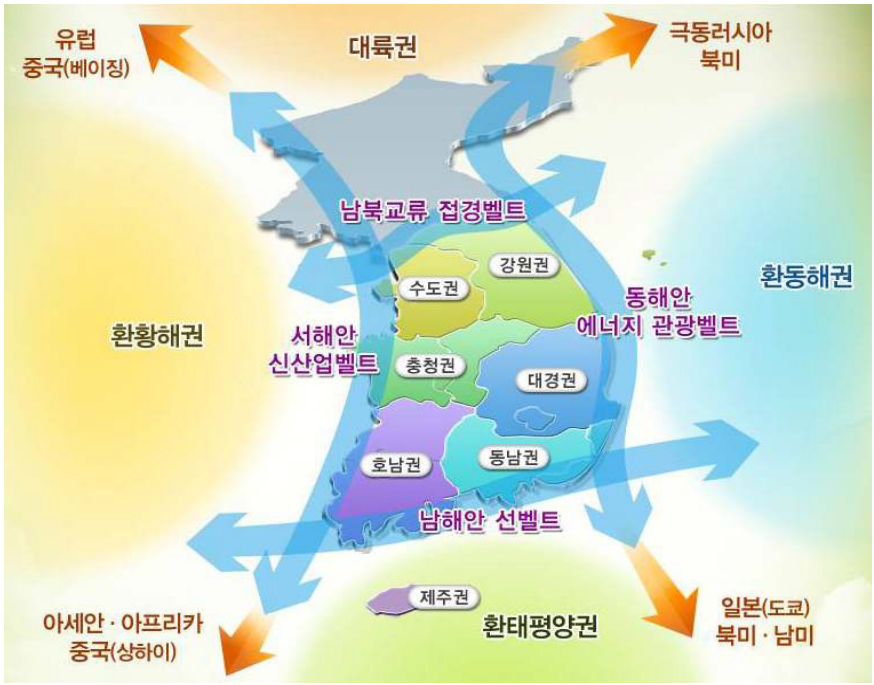

출처 : 대한민국정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현재 용어의 사용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제1차 계획(1972~1981년)부터 제3차 계획(1992~2001년)까지 사용되었고 제4차 계획(2000~2020년)부터는 국토종합계획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으로 바꾼 이유는 첫째, 국토를 '개발'보다는 '관리'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이다. 둘째,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더욱 높아진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수용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과거의 국토계획이 물리적 수단 공급에 주안점을 두어온 데 반해 제도적 측면과 운영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수요자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3 계획의 기본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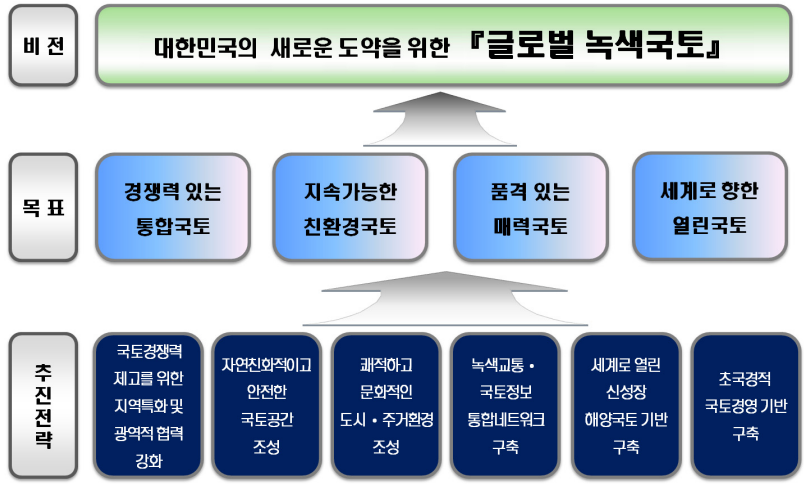

출처 : 대한민국정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해외사례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은 프랑스의 France 2020, Territories 2040 등의 계획, 독일의 연방공간정비계획(Raumordnungsplð ne) 및 일본의 국토형성계획(國土形成計劃)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참고자료·문헌

- 권영섭 외(2015),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 김동주(2012), 대한민국 국토종합계획 40년의 성과와 미래과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수립 40주년 기념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 대한민국정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박양호(2011), 더 큰 대한민국의 국토청사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토 통권 제351호, 국토연구원·독일의 연방공간정비계획
- 국토연구원(2008), 상전벽해 국토 60년: 국토 60년사 정책 편
- 일본의 국토형성계획(国土形成計画)
  (http://www.mlit.go.jp/common/000019219.pdf)

작성자 : 권영섭 센터장(국토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1.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생성배경 성장 및 개발 위주의 국토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수단은 미흡하였다.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에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도입하였다.

용어설명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환경계획 연계근거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다.

현재 용어의 사용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세부과제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간 협업 TF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2013.12)

하였으며 법 개정안도 통과(2014.12)되었다.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토록 하였다.

그림 14 국토계획-환경계획 연동제 체계화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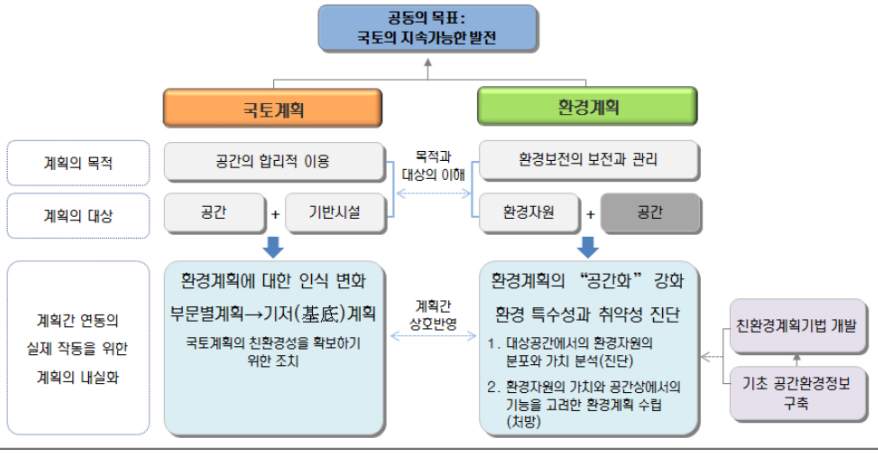

출처 : 환경부(2013), 국토환경정책포럼

해외사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독일의 공간계획(Raumordnungspläne 등)과 경관생태계획(Landschaftsplan)의 연계사례, 미국 워싱턴주의 환경정책법(SEPA)과 성장관리법(GMA) 통합사례 등과 성격이 유사하다.

참고자료·문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협업을 통한 '국토-환경 계획연동제' 도입 본격 추진
- 최영국 외(200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최영국(2013), 환경과 조화된 국토개발을 위한 국토정책과 환경정책 협력방안,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 최희선 외(2008), 도시개발사업에서 환경생태계획의 체계적 도입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독일 건축 도시 및 공간 연방 연구소(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http://www.bbsr.bund.de/nn_23566/BBSR/DE/Veroeffentlichungen/Sonderveroeffentlichungen/2012/ ROB2011.html)
- 워싱턴 행정법 (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 (http://apps.leg.wa.gov/ wac/default.aspx?cite=197-11)

작성자 : 권영섭 센터장(국토연구원)

정책용어

12. 기업도시

생성배경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자립적·혁신적 발전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분산정책의 하나로 기업도시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용어설명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 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 유형에는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지식기반형(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관광·레저형(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이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2005년부터 전국 6곳(원주, 충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해남)에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 중인 기업도시 중 무주(2011.1)와 무안(2013.2)은 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되고 4개 기업도시는 착공되어 본격적으로 개발·분양 중이다. 원주와 충주는 지식기반형, 태안과 영암·해남은 관광·레저형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해외사례 도요타시는, 1938년 고로모시에 도요타 자동차가 공장을 설립한 이후 1959년 지명을 도요타시로 개명하고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자동차 제품과 지역발전이란 눈부신 성과를 실현하였다. 인구 5만 명의 고로모시가 도요타 자동차의 입지로 35만 명의 도요타시로 발전한 사례다.

그림 15 전국 기업도시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블로그, 2013.6.10. '민간정부, 기업도시 활성화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참고자료·문헌

- 지역발전위원회(2012),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 국토교통부(2015), 기업도시사업, 본격 개발·분양 추진 중
- 한국토지공사(2005), '세계의 혁신도시를 가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국토교통부 공식블로그(http://korealand.tistory.com/)

작성자 : 송우경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3. 녹색건축인증제(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생성배경 2002년부터 시행되었던 친환경건축물인증제(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동고시)와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주택성능등급표시제의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됨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시행과 더불어 개정된 제도이다.

용어설명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시행과 더불어 개정된 통합인증제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녹색건축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이다.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지방세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공립학교의 경우, 전체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우수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녹색건축인증 절차는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로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준공도면 및 관련서류, 현장심사를 시행하는 본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6 녹색건축인증마크

녹색건축인증절차는 설계도면 및 관련서류로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준공도면 및 관련서류,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본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3). p.17.

그림 17 예비 인증절차

출처 : 녹색건축인증제 통합운영시스템(http://www.g-seed.or.kr/?sd=1&sc=1_4)

그림 18 본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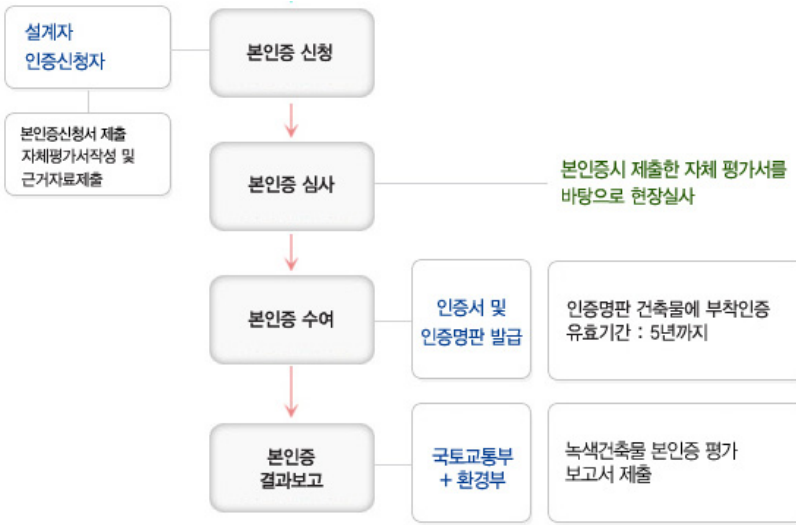

* 총괄기관 : 국토교통부/환경부
*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처 : 녹색건축인증제 통합운영시스템(http://www.g-seed.or.kr/?sd=1&sc=1_4)

현재 용어의 사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녹색건축물의 확대에서 인증과 관련된 내용 및 녹색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외사례 친환경건축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의 BREEM(BRE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미국의 LEED(Leadership in Environmental and Energy Design, 독일의 DGNB(Deutsche Guetersiegel Nachhaltiges Bauen), 일본

CASBEE (Comprehensible Assessment System for Built Environment Efficiency) 등의 인증제도가 있다.

〈표 9〉 녹색건축인증기준 평가체계 비교

구분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BREEAM	BREEAM Communities	LEED BD & C (Building Design + Construction)	LEED ND (Neighborhood Development)	DGNB Building	DGNB Stadtquartiere	CASBEE	CASBEE UD (Urban Development)	녹색건축인증기준 (G-SEED)
개발기관	BRE (영국건축연구소)		USGBC (미국친환경건축물협회)	USGBC (미국친환경건축물협회), CNU (뉴어바니즘 협회), NRDC (천연자원보호협회)	DGNB (독일지속가능건축사협회)	DGNB (독일지속가능건축사협회) BMVBS (독일연방건설,교통 및 도시계획청)	국토교통성, 건축환경·에너지절약기구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발년도	1990년	2008년	1998년	2007년	2007년	2009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13년 개정)
평가항목	관리방식, 건강, 에너지, 교통, 수자원, 재료, 폐기물, 토지이용, 생태, 오염	개발관리방식, 지역경제, 사회복지, 자원·에너지, 토지이용·생태환경, 교통·아동, 디자인혁신	대지계획, 에너지효율, 재료·자원절약, 실내환경의 질, 수자원보호, 디자인·건설과정	입지·연결성, 근린패턴·디자인, 그린인프라·건축, 혁신적 디자인·절차, 지역적 고려	생태특성, 경제특성, 사회·문화·기능특성, 기술특성, 개발과정 특성	생태특성, 경제특성, 사회·문화·기능특성, 기술특성, 개발과정 특성	실내환경, 서비스성능, 실외환경, 에너지, 자원·재료, 대지주변환경	자연환경, 대지내 서비스기능, 지역커뮤니티 기여, 미기후·환경적 영향, 사회인프라시설, 지역환경관리	토지이용, 에너지 및 환경오염방지, 물순환관리, 재료·자원,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평가시점	실시설계 단계	계획승인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실시계획 단계	2단계 (예비· 본인증)	3단계 (예비· 본인증 · 본인증)	4단계 (기획·신축·기존·개수)	-	2단계 (예비· 본인증)
인증대상	오피스, 공장, 주택, 상점, 교육시설, 의료시설, 맞춤형 건물, 복합주거시설 등	건축물 2개 이상 근린개발 구역	신축건물, 기존건물, 상업건물내부, 골조와 외부, 주택, 단지개발, 학교시설, 의료시설, 유통매장	건물 2개 이상 320 Acres (1.3 km2) 이하 근린개발 구역	신축건물, 기존건물	2ha 이상 도시개발구역 (New Urban District)	임시건물, 신축건물,	건물을 제외한 대상지 및 전체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업무용건물, 복합건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소형주택, 그 밖의 건물
인증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3 등급	3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유효기간	5년	5년	5년	5년	예비인증 3년, 본인증 5년	본인증 영구	5년	5년	
공간범위	건축물 단위	근린·지구 단위	건축물 단위	근린·지구 단위	건축물 단위	근린·지구 단위	건축물 단위	근린·지구 단위	건축물 중심, 근린구역 포함

출처 : 권혁삼 외(2013). p.437.

참고자료·문헌

- 국토교통부(2013), 녹색인증건축물의 감정평가기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친환경인증 공동주택 및 업무용 빌딩을 중심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대한설비건설협회(2012), 녹색건축물 효율화 정책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63호, pp.50~57
- 권혁삼, 김지현, 김정곤(2013),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건축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공동주택 외부환경을 중심으로,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4(4), pp.435~447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녹색건축인증제 통합운영시스템(http://greenbuilding.re.kr)
- LEED 홈페이지(http://www.usgbc.org)

작성자 : 오승은 교수(제주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4.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생성배경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동의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에 합의하면서 탄소배출량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적응(adaptation)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들이 무분별한 산업화와 낮은 기술수준을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증가를 확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지금까지 산업화를 주도해 온 선진국들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감축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기금의 조달 및 집행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용어설명 2010년 12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멕시코 칸쿤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고,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1년 12월 더반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설계위원회(선진국 15개국과 개도국 25개국 등 40개국 참여)'가 마련한 기금설계방안이 채택되었다.

현재 용어의 사용 녹색기후기금(GCF)은 범세계적인 문제인 지구 온난화 현상과 기후변화에 전 세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금융기구이다. 녹색기후기금은 지구촌 곳곳에서 개발도상국들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 주로 나타나는 환경파괴와 각종 피해들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즉 환경 관련 국제금융기구인 것이다. 예컨대,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를 녹색기후기금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활동성과는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보고서로 제출한다.

그림 19 녹색기후기금(GCF) 운용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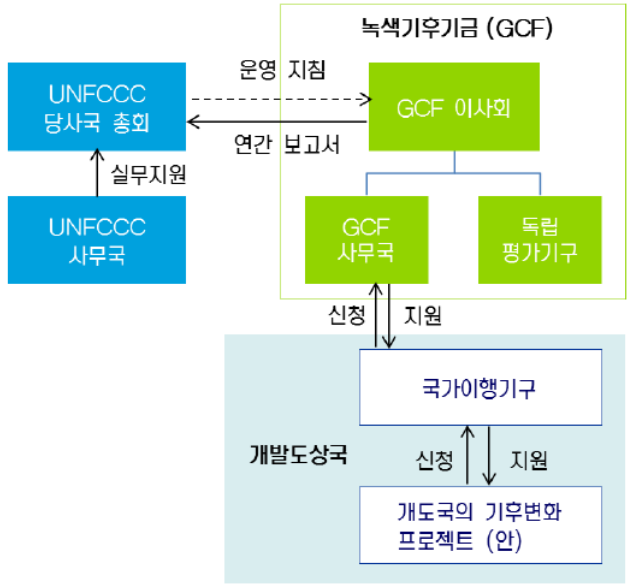

출처 : GCF, 산업통상자원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2012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유치가 결정되었으며, 향후 직원 수만 초기 500여명, 최대 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0 인천 송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

출처: 대한민국 정부 대표블로그 정책공감

참고자료·문헌

- Deloitte(2012), 녹색기후기금 유치의의와 향후 시사점, Weekly Insight
-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 임소영, 강지현(2013), 녹색기후기금(GCF)의 모니터링 방법론 연구, 산업연구원

작성자 : 장효천 원장(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정책용어

15. 닥터헬기 서비스

생성배경 섬마을이나 깊은 산속에 사는 주민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편이 불편하여 응급처치의 어려움 및 곤란,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응급전용 헬기를 도서·산간지역과 근거리 지역에 배치하여 운용하기 위한 장치이다.

용어설명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도서·산간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 장비 등이 구비되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이며, 지자체 혹은 소방서 등의 관공서가 이들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구비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닥터헬기 서비스라고 한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최대 출동거리 600km에 최대 시속 254km로 주변에 섬이 많은 인천과 목포 지역에 2대가 최초로 투입되었으며, 지금은 강원도, 경상북도 등의 지자체에서도 활용 중이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에는 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 약물 주입기, 인공호흡기 등 최첨단 의료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했던 소방헬기와는 달리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헬기는 출동 요청을 받으면 병원에서 의사를 태우고 5분 이내 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보건복지부는 2011년 5월부터 응급의료 취약지(도서지역 등)를 대상으로 의사가 탑승하는 전용헬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보급을 점차적으로 늘려 2016년 현재 국내 5호는 충남, 6호는 전북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림 21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동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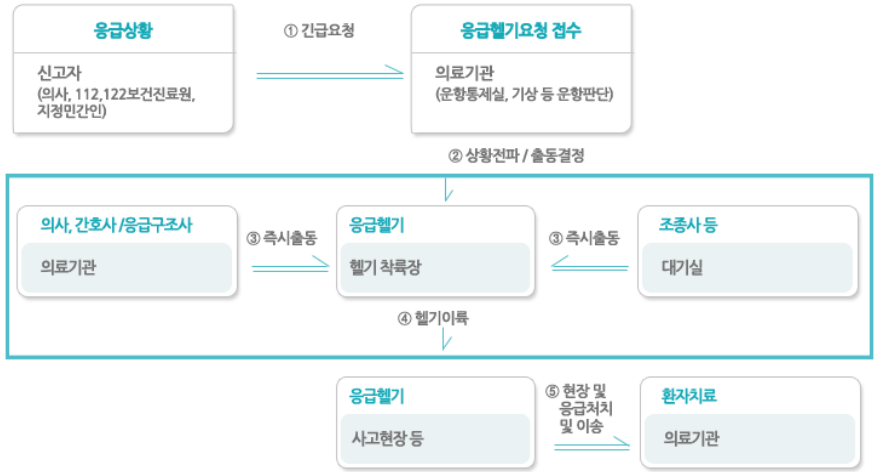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http://www.1339.or.kr/egen/inf.emb81.do)

해외 사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국가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용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1995년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리)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1999년 후생노동성에서 시범사업 진행 후 본격적인 헬기 도입을 추진하여 현재는 일본 전국에서 23대를 운용하고 있다. 닥터헬리 운용 효과는 중증 환자의 신속한 이송으로 사망률 27%, 중증 후유증 45%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치료비 절감 효과(46.1%)와 치료기간

감소효과(16.7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보험회사 또는 구급전용회사 등 민간기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용의 87%는 보험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3%는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으로 외상 사망률 1/3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참고자료·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1.14), 복지부, 의사 탑승 응급전용헬기 5분 이내 뜬다. – 5월부터 도서지역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동서비스 실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4.14), 복지부, 도서 주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띄운다!!! – 의료기관은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항공사는 대한항공 선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8.30), 2012년 닥터헬기 배치지역 강원도, 경상북도로 선정

작성자 : 이재훈 원장(경북테크노파크)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6. 도시녹화운동

생성배경 도시의 환경 악화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주거지, 상업지역, 공장지역 등이 혼재하고, 물류유통이 활발한 도시지역은 토지이용 효율이 매우 높아 기존 산림녹지지역과 하천 등이 개발압력으로 소실되어 동식물은 물론 인간의 정주지로서도 적합하지 못한 환경이 되었다. 특히 도로포장률이 높아지면서 태양복사열에 의한 대기온도 상승으로 여름철 열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1990년대부터는 도시미기후 조절에 효과적인 도시녹화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도시녹화로 조성된 숲(도시숲)은 소음방지, 산소배출, 기후조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춰주고, 평균습도는 9~23% 높여준다. 버즘나무는 하루 평균 에어컨 5대(49㎡ 기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또 도심 가로수로 심어진 큰나무(폭 30m, 높이 15m)는 자동차 소음의 75%를 막아준다. 대기정화 기능도 탁월하여 느티나무 한 그루(연면적 1600㎡)는 연간 이산화탄소 2.5t을 흡수하고, 산소 1.8t을 내뿜는다. 성인 7명이 연간 필요로 하는 산소량이다. 이와 함께 숲을 15분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2.1%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숲 조성은 2000년대에 들어서 기후변화협약 등의 영향으로 매우 활발해진다. 부산의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으로 대표되는 지자체의 활발한 도시녹화사업이 진행되었고, 도시녹화 및 환경보전운동에 관련된 시민단체가 다수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의 사회공헌도 활발해져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녹화기금으로 기부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용어설명 도시녹화운동이란 산림청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도시녹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 대기오염 및 도시열섬현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빈발 등 녹색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생활권 주변에 녹색공간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단체·기업이 도시숲의 조성·이용·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생활권 주변 도시숲에 대한 녹색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22 도시숲 녹색거버넌스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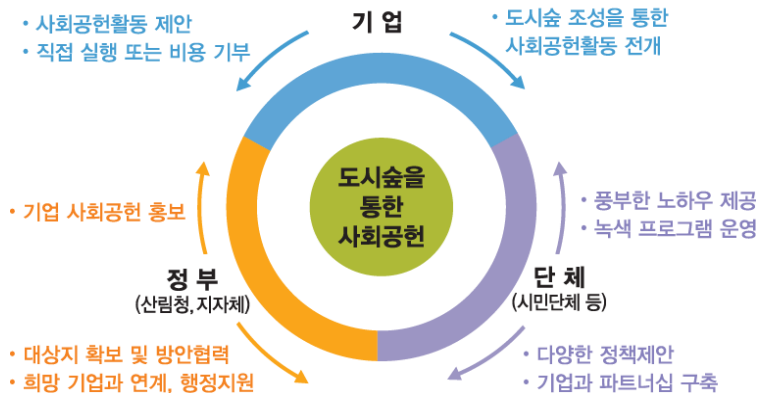

출처 : 산림청 홍보물(2013)

현재 용어의 사용 산림청은 2008년도에 수립된 10년 단위 계획인 「도시림 기본계획」의 전반기 5년 동안 도시숲·학교숲·마을숲·가로수 등의 조성을 통해 도시 내

부족한 녹색공간을 확충해 왔다. 후반기 5년이 시작되는 2013년도에는 전반기 5년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고, 국민적 요구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의 반영과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2013~2017) 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녹색네트워크 구축, 녹색공간 확대, 녹색공간의 질 향상, 도시녹화운동 전개, 기반구축 등 5대 전략 및 19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위한 추진전략 내용은 도시 내 녹색공간 조성 및 관리에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시숲 가꿈이·지킴이'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민·학생·단체 등이 참여하는 '그린오너제'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도시숲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관리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Green Gym Project 등 도시녹화운동을 하는 NGO를 지원하고 민간에서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시숲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도시숲의 조성·이용·관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은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통해 2017년까지 도시숲 902개소, 학교숲 1,249개교, 전통마을숲 복원 131개소, 가로수 2,829km를 조성하여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및 지역주민들이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에 도시숲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유공간으로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 조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참고자료·문헌

- 산림청 보도자료(2013.5.27), 숲 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을 만들어 갑니다.
- 산림청 홍보물(2013), 이야기를 담은 숲, 도시에 스며든 숲, 행복한 초록세상

작성자 : 장미아 전문위원(사단법인 생명의숲)

정책용어

17.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선도지역)

생성배경 1980년대 이후 대규모 계획적 주거용지와 산업용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구도심은 오히려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외곽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인구 감소, 제조업이나 전통시장 등의 쇠퇴, 공공기관의 이전 등 도심 내 경제적 기반상실로 도시기능이 약화된 것이다. 구도심은 건축물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비율도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의 사회공공서비스가 농어촌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립적인 재생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용어설명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 과정으로서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다. 즉,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지원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종합적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종합적 도시재생이란 도시쇠퇴문제가 단순히 주택 노후화가 아닌 실업, 노령화, 보육, 건강, 교육, 범죄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 만큼 그 처방도 물리적 정비 중심에서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포괄하는 종합적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중심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인 생활권의 재생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각 부처

간 특성에 따른 개별적 지원방식이 아니라 부처협업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림 23 개별적·산발적 사업 추진 →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한 종합계획

(As is)
1.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
2. 공간적 연계 없이 개별사업시행
3. 종합적 비전의 부재
4. 낮은 주민 체감도

(To be)
1. 부처 협업 패키지 지원
2. 장소 중심적 시업연계
3. 종합적 비전의 구현
4. 높은 주민 체감도

출처 : 도시재생사업단, 함께하는 희망도시재생

현재 용어의 사용 현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도시재생지역의 지정 난립을 방지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2013년 12월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2014년부터 계획수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9월 도시재생활성화지원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2014년 11월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11곳 사업 본격 착수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 기존의 산업기능·업종 전환을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주변 지역으로 경제회복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경제 활성화와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공동체 유지를 할 수 있는 근린재생형행 도시재생사업이 있다.

'16년도 도시재생사업은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9곳), 일반 근린재생형(19곳)으로 구분하여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외사례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이 실천적인 사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운동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연계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마을 만들기 운동차원의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근린지역 재생운동(New Deal for Community)과 연계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7.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 도시재생사업단(2013), 함께하는 희망 도시재생
- 백원국(2013),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자료실
- 국토교통부(2015), 보도자료(쇠퇴도시를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착수)
- 국토교통부(2016), 보도자료(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 확정 등)

작성자 : 장효천 원장(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8. 도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CB, community business)

생성배경 1994년 일본에서 지역재생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지역 문제해결은 지역 내부의 활동부터 시작하여, '지역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등의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사업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세계 경제위기 이후 지역 재생적 측면보다는 지역산업의 새로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사업성을 추구하는 형태의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향하였으나 최근 도시재생 및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공동보육·공동교육, 마을부엌사업 등과 같이 지역공동체에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형 커뮤니티비스니스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용어설명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생활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지역이 직면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잠재자원을 활용해 비즈니스 방식을 도입하여 해결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금까지 정부나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와 달리 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하여 비즈니스 원리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지역순환경제활동'으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형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사업 대상지에 따라 농어촌형, 도시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관광교류 분야, 환경 분야, 복지·보건·의료분야, 창업취업 지원, 사회적 약자 돌봄 분야, 마을 만들기 분야,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산업자원 연계 분야, 생활지원 분야로 구분 가능하다.

농어촌형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마을 만들기 사업, 농특산물 판매, 관광교류 사업 등이 연계 추진되어 농어촌 일자리 및 소득창출 등을 추구한다. 반면, 도시형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원도심재생, 재래시장 활성화, 저소득층 중심으로 복지 및 의료, 교육, 문화적 수혜 범위 확대, 자원 리사이클 사업 등의 전개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재생 및 경제 활성화,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전남 순천시는 2007년 말부터 녹색실버가게(유용미생물), 순천여성문화봉사단(제과점), 시니어공동체(염색) 등 CB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 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출범하여 전국 10개 지역단체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지역주민이 출자해서 만든 완주커뮤티니비즈니스센터 등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자율형, 기업 연계형 등 3개 유형 16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생산적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자립적 지역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형은 산림부산물 등을 활동한 재생사업, 지역 기업연계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사업',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지원사업' 등이 있이 있으며,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2016년 6월 말 현재 9,63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커뮤니티비스니스 개념과 유사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여러 형태의 하나로 커뮤니티비스니스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역의 인력·기술·지식·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해외사례 일본에서는 1994년부터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시작되었으며, 도시형 커뮤니티비즈니스 형태인 지역상점회와 제휴하여 개설된 요코하마 고난다이 카페를 위탁 운영하는 (주)이타운(E-town) 등 8,000여 개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주민주체의 지역사업을 의미하며 주민주체의 커뮤니티 재생사업,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등을 전개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 스코틀랜드라는 시민단체 등이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홍선(2012), 일본 요코하마의 특별한 카페, 희망제작소
- 호소우치 노부타카(2007),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단(2010),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 매뉴얼
- 이은애(2012),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평가 및 개선과제, 서울경제
- 조달호(2012), 서울형 사회적 기업 성과 및 정책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주영(2013), 도시재생의 해법, 울산발전연구원
-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coop.go.kr)

작성자 : 김효정 대표이사(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정책용어

19.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생성배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는 용어는 2010년부터 추진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과 함께 등장하였다. 당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광역계정, 지역계정, 제주발전계정으로 구분되었다. 광역계정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지역발전사업의 묶음이고, 지역계정은 중앙정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지역발전사업의 묶음이다. 그래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 구분된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하나이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시·도가 자율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사업을 하는데 과소투자의 우려가 있는 시·군·구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소요를 별도로 산정해서 시·군·구별 예산 한도를 배분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기능별 사업 구분의 방식을 취하는 시·도 자율편성사업과는 달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분한다.

지역 특성에 따른 구분은 도시, 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등과 같은 3개의 기본적 구분에 더하여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하여 성장촉진지역을 추가로 설정한다. 그래서 이를 3+1 지역 구분 방식으로 부르기도 하였다.[1] 바로 이때 도시로 구분되는 지역

1) 최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회계의 구조 중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3+1 지역 구분에 더하여 지역행복생활권이 추가되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2개 이상 시·군 및 다부처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역이다.

그림 2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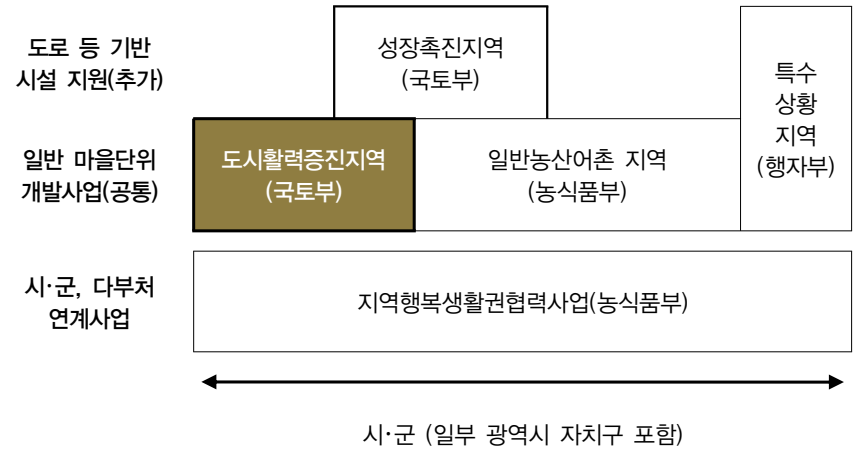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2014.5.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에서 발췌, 수정

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 한다.

용어설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하는 기초 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특별·광역시의 구·군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이다.[2] 다만, 도농복합시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대도시)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한다.

2) 2015년 기준으로 전국 99개 시·군·구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중심시가지재생, 주거지 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으로 사업 내용이 구성된다. 이 중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1000억 원 내외 규모로 지원되며 그 중 150억 원 정도는 신규사업으로 매년 선정한다.[3)]

주거지 재생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등 거주여건이 악화된 주거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중심시가지재생사업은 쇠퇴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경제기반 마련, 경관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은 도시 내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건설,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이다. 4개 세부사업 공히 사업기간은 최대 4년이며, 국고보조율은 50%이다.

예를 들어, 인천시 만석동에 괭이부리마을은 낡고 허름한 무허가 판자촌 마을인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혼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혼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98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하였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포함해 2～3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보증금 4～500만 원과 관리비 2～10만 원 정도를 부담하여 원주민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던 사례가 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2010년에 시작된 이후, 2015년까지 연평균 약 1,01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3) 2015년 기준으로 183개 사업에 대해 1,04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표 10〉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내역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금	사업수	지원금	사업수	지원금	사업수	지원금	사업수	지원금	사업수
계	101,337	101	96,400	115	96,396	116	108,597	120	103,167	157
계속 사업	86,396	72	83,608	83	85,996	92	91,850	83	84,862	91
신규 사업	14,941	29	12,792	32	10,400	24	16,747	37	18,305	66

출처: 국토교통부(2014.3.10.), 지역맞춤형 도시활력증진사업 신규사업 발굴.

참고자료·문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15.1.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3.10.) 지역맞춤형 도시활력증진사업 신규사업 발굴
- 기획재정부(2014.5.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 송미령·권인혜(2011),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홍경구 외(201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현황과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제372호.

작성자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용어

20. 마을기업

생성배경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 초래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다.

용어설명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 혹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총칭한다. 즉,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마을'이란 용어는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이다. '주도적으로'란 용어는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을 의미한다.

'지역 각종 자원'은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10년 향토자원 조사를 통해 발굴된 5만여개의 지역 자원 활용(www.oneclick.or.kr))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이란 명칭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사업을 시작하다가 2011년부터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종래의 '지역공동체사업'은 추진주체를 강조한 명칭이이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지역성(지역밀착성)이 가장 큰 본질적 특성임을 감안하여 사업영역을 강조한 '마을기업'으로 개칭하였다.

사업유형은 지역자원활용형 마을기업(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공공부문 위탁사업)과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생활지원·복지형 마을기업(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다양한 마을기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기반형 강소 마을기업과 유통형 마을기업, 마을기업 다변화로 도시형 마을기업과 농촌형 마을기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구분되는 점은 지역성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즉, 마을기업은 법인으로서 최소 5인 이상이 출자하면 된다는 점에서는 '협동조합'과 유사하지만, 출자자 및 고용인력 70% 이상이 해당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과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지원,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강조한다.

마을기업과 관련한 용어 및 개념은 사회적기업과 농어촌공동체회사, 커뮤니티 비

즈니스를 들 수 있다(사회적기업 관련용어 및 개념 참조).

〈표 11〉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비교

구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업주체	공동출자자(최소 5인 이상, 주민 70%이상)	대부분 대표자 1인	공동출자자 5인 이상
사업대상	지역주민	취약계층	일반시민 및 이익집단
사업목적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공헌, 지역경제발전, 지역커뮤니티활성화	취약계층고용창출(자활 및 고용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공동수익배분중심)
주관기관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해외사례 영국에서 시작하고 일본에서 발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림 25 마을기업

출처 : 사회적기업연구원(http://www.rise.or.kr/03/01.php)

참고자료·문헌

- 김효섭 (2012),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비교,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사회적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ise.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1),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 –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지속가능성 분석
- 행정자치부(2011, 2012, 2015), 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3), KB daily 지식 비타민 :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 및 현황

작성자 : 김봉원 연구위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정책용어

21. 마을리더

생성배경 마을은 일반적으로 도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주로 농림업, 수산업, 목축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의해서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자치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지역주민을 이끌거나 사업의 운영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용어설명 마을리더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편익 증진, 경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도시재생, 경관 등의 분야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직접 이끌거나 협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주로 마을 대표, 이장, 추진위원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마을리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마을단위의 마을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행정자치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공예마을육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리더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수행자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마을리더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리더로서 농어촌마을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 최소화,

포괄보조사업 등 정부사업의 이해를 돕고, 도농교류활동 및 농어촌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지역리더이다.

해외사례 유럽의 대표적인 농촌개발 프로그램인 '리더(LEADER·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연대)'는 유럽 농업인들의 자존심으로 통한다. 농촌현장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농촌주민의 자율성을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받아들인 '혁신적이고 매우 성공적인 농촌개발 전략'이기 때문이다. 리더 프로그램 추진의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영국의 '동부 더럼 리더'를 들 수 있다.

동부 더럼 리더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이 주체다. 유럽연합(EU)이 농촌개발을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1년 도입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자금만 지원하고, 운영은 주민자치단체에 맡긴다. 특히 운영체계를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EU 회원국 및 지자체-LAG(관광·환경·청소년 등 부문별로 주민들이 참여해 만든 조직)'의 3단계로 분리해 지원하는 자금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박광범(2012), 지역적 특성과 리더에 의한 농촌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고찰
- 오승영, 박천오, 진종순(2010), 농촌관광정책사업 마을리더의 핵심역량에 관한 실증연구
- 김남선(2010), 마을평생교육리더 양성과정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 황영모(2010), 농촌리더 역량이 생산자 조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 한광식 교수(김포대학교)

정책용어

22. 마을만들기

생성배경 1970년대 이후 주민운동의 형태로 간헐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나,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요소의 본질에 적합한 활동은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마을만들기 발전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면 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모임 전개시기(1990~1994), 두 번째는 주민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운동 시작시기(1995~1997),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차원의 다양한 시도기(1998~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구 삼덕동, 경기 안산시 등에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그린파킹, 동네벽화 조성 등 마을만들기 형태의 여러 개별사업이 진행되었고 광주 북구, 전북 진안군 등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실행한 것을 계기로 2007년부터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롭게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통칭 '마을만들기 사업' 또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용어설명 마을만들기란 지역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협의의 마을만들기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연대 및 협력하여 주변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마을의 활력과 매력을 높여 생활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지속적인 활동이다. 이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광의의 마을만들기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타 지역과의 교류와 협동에 의한 실천 운동이며, 미래의 도시 및 국가성립의 기본적인 명제로 동이나 구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과 관련하여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목적과 내용, 방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마을 디자인, 마을가꾸기, 마을만들기, 마을 진흥사업, 생태마을 운동, 공동체 운동, 주민자치운동 등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약 14개 사업으로 주로 2000년을 전후로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200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농촌관광을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 영역으로 채택할 것을 명시하고 2002년도부터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을 선정·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유사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는 농촌 전통테마 마을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식품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권역으로 확대되어 2004년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거점면 소재지 개발사업 등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농협에서 추진하던 마을가꾸기 경진대회는 농협과 농수산식품부가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6년부터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1년 마을단위 지원사업인 아름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나 타 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2003년부터 읍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소도읍육성 종합계획, 2006년부터 마을권역대상 지원사업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과 2007년부터 마을단위 지원사업인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밖에 2002년부터 마을단위 농촌 정보 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밖에 산림청에서는 1994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환경부는 2001년부터 공모제 방식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지정사업, 문화관광부에서는 2004년부터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와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해외사례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1960년대 이후 주민, 전문가, 그리고 지자체에 의해 '마찌쯔꾸리'가 태동하면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행정 주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만들기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사회서비스 및 지역 네크워크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마을만들기는, 도시 내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근린 공동체와 커뮤니티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운동의 성격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주요 내용은 도시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도시부(HUD)에서 산하의 커뮤니티를 계획하고 개발청(CPD)을 통하여 지방정부, 주정부, 국가, 지역사회 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커뮤니티 스스로가 경제개발 및 재활성화 전략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마다 경제발전 전문가가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 시 정부조직과

별도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근린공동체 담당 부서와 근린공동체 사업단의 구축, 근린공동체 매칭펀드 조성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커뮤니티를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단위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독일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역사적으로 잘 발달하여 동·서독 통합 이후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단위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한 예가 사회도시 프로그램이다. 이는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사회통합,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서, 1999년 시작되어 2008년 기준 523지구, 326개 커뮤니티에서 실행되었다. 사회도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고용,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자본의 확충, 다양한 집단의 공동체 생활, 공공장소 및 주거지 환경개선 등이다.

참고자료·문헌

- 김선직(2009), 마을만들기의 전략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경배(2010), 마을만들기 사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화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정재희(2012),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마을만들기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대한건축학회지 vol 56, n6
- 이주헌·최찬환(2012), 국내의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제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v.14 n.1

작성자 : 김봉원 연구위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정책용어

23. 마을협정(마을협약) 제도

생성배경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환경의 형성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갈등 사안에 대처하기 어려운 기존 법령 체계에 대한 보완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절차나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용어설명 협정제도는 주민과 주민간의 합의와 자율에 의해 지역의 경관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합리적 관리 및 보전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주도에 의해 기획·성립되고 관리되는 제도를 말한다. 협정제도는 일정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경관법' 등에 의한 용도지역제 및 경관계획 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개인의 발의에 의해 양호한 지역 환경을 조성·보전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선진화된 개념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처음으로 주민주도형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제도인 건축협정제의 도입 방안이 제시되었다. 건축협정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용도(종교시설 등), 주민 합의율, 세입자 참여 등이 쟁

점 문제로 부각되면서 건축협정 도입에 관련된 건축법 개정은 유보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근거법을 가지며 기본적인 형식을 갖춘 협정은 경관협정이다. 경관협정은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경관계획, 경관사업 등과 함께 경관법의 주요 내용으로 도입되었다.

해외사례 일본의 협정제도는 크게 건축협정, 녹지협정, 마치즈쿠리협정, 경관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마치즈쿠리협정(마을만들기)의 경우 그 범위와 목적이 다양하여 목적에 따라 주택 및 주거환경 마치즈쿠리, 경관 마치즈쿠리, 방재 마치즈쿠리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하기도 한다. 시기별로 보면 1950년대 제정된 건축협정을 시작으로 1970년대 녹지협정과 마치즈쿠리협정이 도입되었고, 2005년 경관법 제정으로 경관협정이 도입되었다.

참고자료·문헌

- 성주인(2005), 농촌 경관관리 실태와 정책 방안 :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외(2009), 농어촌 경관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외(2011), 일본의 농어촌 토지이용제도 사례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병대 외(2009), 일본의 경관협정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9(1), 71-81
- 원세용 외(2011),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협정항목의 도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2)
- 장성화 외(2008), 민간주도형 도시디자인 관리 방안 연구 ; 주민협정제도를 중심으로, 전북발전연구원

작성자 : 채종현 부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4. 메가시티(Mega-city)

생성배경 메가시티는 Castells(1996년)에 의해 처음 용어가 제시되었으며 '대규모 인구집적지로서 글로벌 경제의 결절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구정은, 2009년). 유사한 용어로는 1961년 고트만(Jean Gottmann)이 사용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2008년 플로리다(Florida et al.) 등이 정의한 메가리전(Megaregion)이 있다.

용어설명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을 말한다. 경제적 투입요소와 시장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시장 임계규모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기반으로 경쟁이 가능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거대 도시를 가리킨다.

메가시티는 핵심도시와 주변도시와의 집적·연계를 통해 도시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중심도시와 위성도시를 지칭했던 메트로폴리탄과 구별된다.

현재 용어의 사용 UN에서는 GDP 5% 이상 비중을 차지하거나 국내 상위 1, 2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권역, 일일생활권으로는 대중교통(전철) 보급권역, 중심

도시 기준 편도 2시간 내 통행가능 범위 권역, 기능적 또는 문화적으로 일체성을 보유한 권역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메가시티로는 런던권, 파리권, 모스크바권, 뉴욕권, LA권, 시카고권, 오사카권, 베이징권 등이 있다. 국내의 메가시티는 경인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울경권(부산, 울산, 경남)이 여기에 해당한다. 메가시티의 경쟁력으로는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 장소 매력도(Quality of Place), 연계성(Connectivity) 등이 언급되고 있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모니터그룹은 2009년 국가나 단일 도시 기준이 아니라 메가시티 단위의 경쟁력 순위를 최초로 발표했는데 경제적 번영, 장소 매력도, 연계성의 3개 항목을 50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미국·유럽·중국·인도 등 세계 각국의 메가시티 20곳 중 경인권은 종합순위 11위였으며, 1위는 미국 뉴욕권, 2위와 3위는 각각 영국 런던권과 일본 도쿄권이었다.

아시아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가 9개, 500만 이상의 도시가 17개로 26개이며, 고도성장에 이른 도시와 발전 잠재력이 큰 도시가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는 상하이, 카리치, 뭄바이, 베이징, 톈진, 광저우, 델리, 서울, 선전(심천) 순으로 서울은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도시를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메가시티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사례 프랑스 정부는 파리와 주변 일드프랑스주를 통합, 수도권을 만드는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2010년에 발표했다. 영국도 런던권 개발에 국가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대런던 플랜'을 수립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도시권구축을 위한 대대적 투자와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림 26 인구 규모로 구분된 거대 도시(Mega City) 현황(UN,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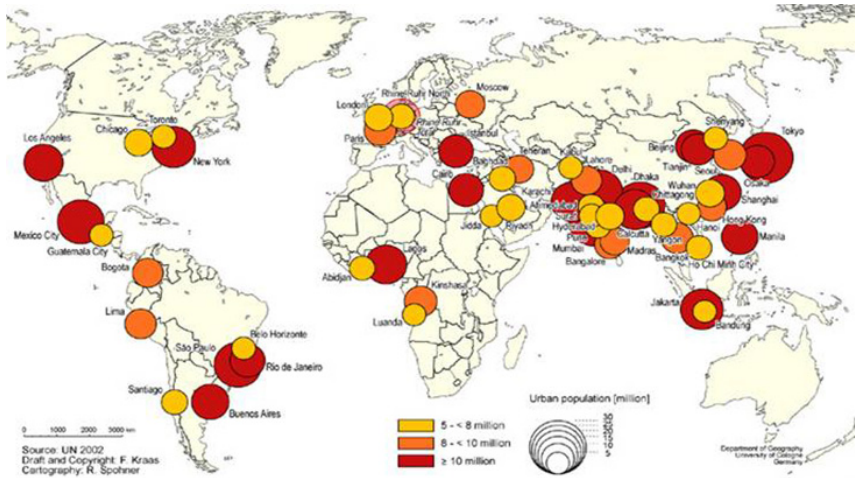

출처 : IGU MegaCity Taskforce(www.megacities.uni-koeln.de/documentation).

참고자료·문헌

- 김원호 외(2009), 메가시티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교통체계 개편 전략
- 염인섭 외(2012.7),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육성 기본구상
- 정재영(2011.1), 글로벌 메가시티의 현황과 전망
- 고준호 외(2014) 아시아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력 체계 구축 연구 및 포럼

작성자 : 강영주 책임연구위원(대전발전연구원)

정책용어

25. 문화관광 축제

생성배경 축제란 축하 의식인 축전(祝典)과 제사 의식인 제전(祭典)이 합해진 용어이다. 과거 축제가 제사 등 의례적 측면이 강했다면, 현재의 축제는 놀이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문화에 기초한 축제를 활발하게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축제는 향토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기여하며 지역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1995년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축제 지원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큰 축제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문화관광 축제는 문화적 측면과 함께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잠재력 있는 문화관광 축제를 선정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해외 홍보 및 축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용어설명 문화관광 축제는 각 특별시·광역시에서 3개 이내, 각 시·도에서 7개 이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이 때, 축제의 콘텐츠, 축제의 운영, 축제의 발전성, 축제의 성과 등을 추천 기준으로 선정한다. 1997년 10개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46개 문화관광 축제를 선정하

였다. 2015년 선정 결과, 김제 지평선축제와 화천 산천어축제가 대표 축제, 광주 7080충장축제 등 9개가 최우수 축제, 10개가 우수 축제, 23개가 유망 축제가 되었다.

현재 용어의 사용 문화관광 축제는 축제 간 경쟁을 유발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2000년부터 등급화 하였다. 현재 문화관광 축제는 4가지로 등급화 되어 있다. 축제 등급에 따라 대표 축제는 각 5억 원, 최우수 축제 각 2.5억 원, 우수 축제 각 1.3억 원, 유망 축제 각 0.89억 원 등 차등 지원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축제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일몰제를 운용하고 있다. 문화관광축제로 등급별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지정된 문화관광축제는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이 종료된 글로벌 육성축제(대표축제를 졸업한 축제)는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와 축제 마케팅 등 간접 지원이 이루어진다.

참고자료·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4), 2015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문화관광부(2006), 문화관광축제 변화와 성과

작성자 : 김영준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용어

26. 문화산업지구

생성배경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성장산업으로서 문화산업 분야가 급부상하면서 문화산업지구는 문화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과 인력 등을 공간적 집적을 통해 문화상품의 지속적 개발과 유연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문화산업 육성에 있어 문화산업지구는 전략적 시스템 혹은 핵심적 기반시설이 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영상 및 소프웨어산업, 영화산업, 디자인 및 공예산업, 출판 및 인쇄산업, 방송 및 광고산업, 공연예술산업지구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어설명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지구는 산업지구 중에서 문화산업으로 특화된 지구를 의미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산업단지는 1999년「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정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이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의미하며, 단지조성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2006년「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을 통해 문화산업진흥지

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콘텐츠 관련 시설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즉, 문화산업단지는 인위적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집적시키는 반면,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이미 유사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므로, 기존 산업시설의 집적화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200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행·시행하고 있다.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문화산업진흥을 위해 3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가능한 문화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거나 갖추어질 예정인 지역,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 문화산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현재 문화산업단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청주 등 8개 지역을 지정하였으나 부산, 대구, 대전, 부천, 전주는 단지지정 협의단계에서 진흥지구로, 광주는 사업 자체를 전환함으로써 청주와 춘천 등 총 2곳만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총 11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부담금 면제(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4종) 및 각종 인허가 혜택(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하천도로 공사시행 및 점용 등 9종), 세제혜택(취득세·등록세 면세, 재산세 50% 면제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는 2010년 광주 CGI센터권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등 3곳을 지정하였다. 투자진흥지구에 3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혜택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 및 국·공유 재산에 대한 각종 혜택과 시설물 지원, 입지, 투자, 고용, 훈련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표 12〉 문화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지정현황(2012년 10월 기준)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역	중점 유치업종	비고	지역지정	중점 유치업종
부산	영상, 게임	지구전환	부산(08.2.29)	영상, 게임
대구	게임, 모바일콘텐츠, 디자인	지구전환	대구(08.2.29)	게임, 모바일콘텐츠, 뉴미디어
광주	디자인, 캐릭터, 공예	사업전환	대전(08.2.29)	첨단영상(영화), 게임
대전	영상(영화 중심), 게임	지구전환	부천(08.2.29)	만화, 애니메이션
부천	출판만화	고시	전주(08.2.29)	한 스타일, 영상
춘천	애니메이션	고시	천안(08.2.29)	문화디자인
청주	에듀테이먼트 콘텐츠산업	지구전환	제주(08.2.29)	디지털영상, 모바일콘텐츠
전주	디지털영상	지구전환	인천(08.12.2)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고양(08.12.2)	방송영상(방송, 영화, 게임, 에니)
			안동(10.1.21)	영상, 공예, 공연/전시산업
			성남(10.2.17)	게임사업 및 IPTV 산업

해외사례 영국의 쉐필드시는 문화 및 미디어,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新)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시내 철강공업지역이었던 곳을 문화산업지구(CIQ, cultural industrial quarter)로 지정하였다. 또한 지구 내에 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최근에는 문화산업지구 중심부에 업무와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더 큐브(the cube) 사업과 디지털산업업무공간개발 사업(CE:SY, Creative

Exchange: South Yorkshire)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문헌

- 정헌일(2011), 지역문화산업정책의 변천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관리전략 연구
- 이창호(2011),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43권
- 권호혁(2000), 지방문화산업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봉만(2013),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작성자 : 김효정 대표이사(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정책용어

27. 문화영향평가

생성배경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는 압축 성장을 달성한 개발연대를 지나 우리의 문화정체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관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에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시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시초는 문화영향평가가 핵심전략에 포함된 2003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다 문화연구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 성과 축적을 토대로 2013년 「문화기본법」에 문화영향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비로소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용어설명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문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강화, 확산시키고 문화적 권리나 문화향유의 저감, 문화의 파괴 등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 **문화기본법 제5조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2014년부터 총 9개의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16은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2014년 시범사업에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성 사업(문체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행복주택 프로젝트(국토부) 4개사업, 2015년에는 새뜰마을(지역위ㆍ농식품부),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중소기업청),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서울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강원도) 5개였다.

평가는, 과제별로 선정된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1단계)와 문광연(문화영향평가센터)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2단계)로 진행된다.

문화기본법 시행령은 평가주체와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는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성되고 평가 전문기관은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정대상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이다. 여기서 전문기관이 개별평가를 담당하며, 상위평가인 종합평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년 3월 문체부장관 지정)이 담당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며, 지표는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며, 주로 문화향유, 문화 다양성, 문화경관 및 문화유산,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표 13〉 개별평가의 평가지표(2015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평가방법 예시
문화기본권	1.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 영향의 양태 • 영향의 경로 • 영향력의 크기 • 영향력의 지속성	• 사업계획서 및 추진현황 자료 분석 • 통계자료를 활용한 추세분석 및 시뮬레이션 • 설문조사 결과 활용 • 심층인터뷰 • 델파이기법 • 초점집단면접(FGI)
	2.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3.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체성	4.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5.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6.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

〈표 14〉 종합평가의 평가지표(2015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1.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접근성 • 문화향유수준
	2.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표현 및 참여 기회 • 생활문화예술 참여
	3.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 종 다양성 •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
문화정체성	4.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에 미치는 영향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의 보호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과의 조화
	5.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6.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 • 문화공동체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

현재 용어의 사용 문화영향평가와 유사한 용어로는 예산사용 재정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균형발전영향평가 등이 있다.

참고자료·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양혜원(2015),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

작성자 : 김현호 연구기획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용어

28.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생활문화센터)

생성배경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백세시대를 대비하여 은퇴 후 여가·문화 활동, 자원봉사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체육 관련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14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 유휴공간 및 시설을 활용한 생활권 단위의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사용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형 공간조성을 목표로 한다.

용어설명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시설로서, 단순히 건물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소통과 공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지역별 동호회 활동을 거점으로 도서관, 문예회관 및 마을회관 등을 리노베이션하고, 전문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자체 등의 운영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활동을 통한 생활밀착형 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할 뿐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이 상주·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민의 문화여가 향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형 커뮤니티센터(공연, 전시, 도서 등) 확보를 위해 2014년 130억 원 예산을 신규 편성

해서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2014년, 125억 원)'이 추진된 바 있다.

유사한 사례로 부산문화재단이 위치한 '창의문화촌@감만'은 폐교가 된 옛 동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이다. 이곳은 부산문화재단의 사무공간과 문화예술인이 상주하며 창작활동을 펼치는 창작공간, 각종 예술교육시설, 커뮤니티 홀 및 주민복지시설인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이 갖춰져 있으며, 예술가의 창작과 주민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복지가 한데 어우러지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2014년 명칭공모를 통해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를 생활문화센터로 변경하였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 욕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지원규모는 20~30개로 총 120억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가능한 유휴시설 또는 기존시설의 부지와 건물(또는 공간)을 확보(지자체 소유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공공시설 장기사용(10년 이상) 시 신청가능)하고 총 조성사업비의 70% 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해외사례 캐나다 토론토의 아트스케이프(Artscape)는 버려진 공간을 재생해 예술가들의 거주 및 작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자산을 형성하는 창조적인 도시개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http://torontoartscape.org/).

참고자료·문헌

-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서수정(2013), 문화예술의 창작소, 도시재생의 중간지원조직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건축과 도시공간
- 류정아(2012), 지역문화 정책 분석 및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이희정 교수(한양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9. 사회적기업

생성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심화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령화와 저출산문제, 전통가족구조의 해체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활동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해법으로 등장하게 된 제도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급확대를 통한 적극적 고용창출전략으로 2003년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연도별 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사회적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럽형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2007년 10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용어설명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증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서비스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 수익 및 이윤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 $\frac{2}{3}$ 이상)이다.

영업활동은 비영리법인단체·조합·상법상 회사 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인정하며,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과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자리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혼합형(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 기타형(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공헌형(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

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이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그림 27 사회적기업의 개념

출처 : 사회적기업연구원(http://www.rise.or.kr/02/01.php)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info.do)

그림 28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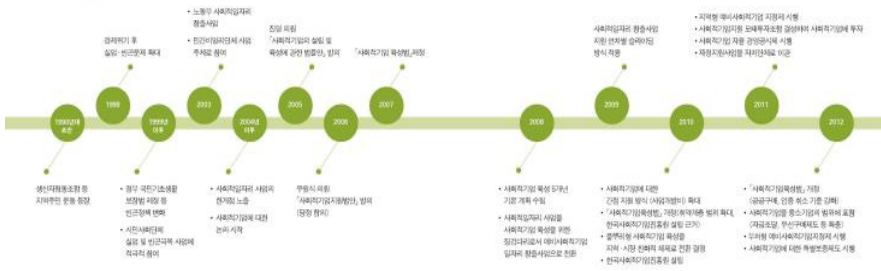

출처 : 고용노동부(2011), 희망의 미래 함께 가는 길 - 쉽게 이해하는 사회적기업 가이드북. p14.

〈표 15〉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없음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필요한 기관에 한함)

출처 : 고용노동부(2012), (예비)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시행지침, p.9

☞ 사회적경제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노동중심의 수익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화폐적·비화폐적 자원을 배분, 생산, 소비, 교환, 분배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영역이다.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경제조직은 각 조직의 고유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구성원과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익 배분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 등의 원칙을 따른다.

설립 목적과 근거에 따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이며,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협동조합은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 결성조직(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 협동조합법), 자활기업은 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해외사례 유럽의 경우 사회적 경제 및 3섹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반면 미국은 비영리조직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 사회적기업의 모태는 1960년대 말 이탈리아의 사회연대협동조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1970년대에 이미 사회적기업 형태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유럽과는 상이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사회적기업보다 사회적기업가라는 용어의 비중이 더 크다.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의 등장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제3섹터의 활동변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탄생한 반면 미국은 비영리단체의 기부나 자선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누적되자 비영리단체에 대한 중단되면서 비영리단체는 재정확보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가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재단에서 사회적기업가에게 자문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0년대에 들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는데, 이는 유럽의 영향도 있지만 유럽과는 달리 제3섹터 및 대안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잠재된 열망이 컸기 때문이다. 아시아권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사회적기업 또는 제3섹터에 적극적 관심을 보여 왔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평생

직장과 종신고용의 허상이 무너지면서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취약한 공적서비스를 확충하는 수단으로 사회적기업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시아국가에서는 유럽 및 미국의 영향으로 두 가지 접근방식이 혼재하는데 민간의 경우 유럽식 접근방법을 정부나 연구자들은 미국식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고용노동부(2012),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
- 고용노동부(2015), 201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매뉴얼
- 김종범(2010), 유럽의 사회적기업 : 성과와 한계, 세계지역연구논총 28집 1호·오내원 외(2010),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와 지원방안 –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1/2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은선(2009),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 영국,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7권 4호
- 사회적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ise.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에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1),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 –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지속가능성 분석

작성자 : 김봉원 연구위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0.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생성배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박근혜정부의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서 위험 잠재지역(건물, 축대 등의 노후붕괴 위험지역, 산사태, 상습 침수 등 자연재해 우려 지역),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지역, 생활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상하수도, 소방도로, 급경사, 재래식 화장실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국 354개의 달동네, 쪽방촌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2013년, 지역발전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결과, 128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은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안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 제고 차원에서 취약지역[1] 지원을 강화·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2014.9월)'에서 지역행복생활권·특화발전프로젝트와 함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동 프로젝트의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

1) 상하수도 등이 미흡한 주거 취약지역은 농어촌에 약 1,200개, 도시에 약 35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용어설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지역행복생활권 내 '취약지역'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제안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가 제안한 지역(농어촌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일정한 선정기준[2]을 적용하여 국고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다.[3]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일정기간(도시지역 4년, 농어촌지역 3년) 지원한다. 취약지역별로 최고 70억 원 이내(사업비의 70%, 지방비 30% 매칭)에서 마을(가구 수)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200가구 이상 지역 최대 70억 원, 100가구 최대 35억 원 등)하고, 사업의 세부 내용별로 지원 한도(예: 농어촌지역의 빈집 철거 시, 일반주택은 동당 1백만 원 이내, 슬레이트 주택은 동당 2.4백만 원)를 적용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9차 위원회를 통해 2016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66곳을 확정하였다.[4]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44곳, 도시 22곳 등 총 66곳으로, 광역시·도별로는 전남 11곳, 강원 10곳, 전북과 경북이 각 9곳, 경남 8곳, 충북 6곳 등이 포함됐다. 2015년에 약 5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에는 신규 대상지를 포함한 151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비 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2) 농어촌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고, 노후주택, 재해·안전·위생 등이 취약하고 수돗물 공급 및 하수도 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도시지역의 경우는 불량도로(4m 미만 도로)에 접한 주택비율 등 3개 항목의 물리적 지표 중 2개 항목 이상이 일정수준 이하로 낙후된 지역을 위주로 선정함.

3) '14.12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배포, '14.12~'15.2 공모

4) 전국 162개 지역(농어촌 90개소, 도시 72개소)에서 사업을 신청하였고, 민·관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 안을 마련하였음.

〈표 1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2015년 사업대상지

시도	대상지역		시도	대상지역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총계	**55개소**	**30개소**	**경기(3)**	파주	포천, 양주
서울(1)	–	종로	**강원(11)**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인제, 정선, 철원	강릉, 태백, 동해, 영월
부산(4)	–	영도, 서구, 사상, 사하	**충북(8)**	괴산, 보은, 옥천, 음성, 증평, 청주, 충주	제천
대구(2)	달성	중구	**충남(6)**	금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논산
인천(3)	강화	동구, 부평	**전북(10)**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정읍, 진안	전주, 익산
광주(2)	–	남구, 서구	**전남(12)**	곡성, 담양, 무안, 보성, 신안, 영암, 완도, 장흥, 해남, 화순	여수, 순천
대전(1)	–	대덕	**경북(9)**	군위, 상주, 안동, 예천, 울진, 의성, 청송, 칠곡	김천
울산(1)	–	남구	**경남(10)**	거창, 남해, 산청,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양산, 창원, 진주
세종(1)	–	조치원	**제주(1)**	–	제주

〈표 17〉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2016년 사업대상지

시도	대상지역	
	농어촌(44개소)	도시(22개소)
부 산 (3)	–	금정구, 남구, 동구
인 천 (2)	강화	동구
광 주 (1)	–	서구
울 산 (2)	–	동구, 북구
경 기 (1)	이천	–
강 원(10)	양구, 영월, 인제, 정선, 평창, 화천, 홍천	동해, 삼척, 태백
충 북 (6)	괴산, 단양, 옥천, 음성, 제천	영동
충 남 (4)	논산, 예산, 태안	부여
전 북 (9)	고창,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진안	군산, 익산, 전주
전 남(11)	광양, 곡성, 구례, 보성, 완도, 장흥, 함평, 해남	목포, 여수, 장성
경 북 (9)	고령, 군위, 상주, 성주, 영천, 예천, 의성	안동, 영주
경 남 (8)	고성, 밀양, 창원, 하동, 함안, 합천	진주, 통영

참고자료·문헌

- 지역발전위원회(2016), 보도자료(지역위, 전국 새뜰마을 66곳 추가지원)
- 지역발전위원회(2015), '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 지역발전위원회(2014), '15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계획
- 지역발전위원회(2014), 지역행복생활권·특화발전프로젝트(안)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1. 생태관광지역

생성배경 인류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야기된 환경오염문제는 단지 대기·수질·토양의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으로 관광수요가 급증하였고, 관광지에도 숙박·식당 등의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었다. 이와 함께 생물서식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생물종 보존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관광형태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그린투어리즘, 녹색관광, 에코뮤지엄 등 환경부하가 적은 관광형태가 나타났고,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신개념의 관광형태가 소개되면서 녹색체험관광, 전통문화체험관광 등이 유행하다가 2000년대부터는 생태관광이 자리잡게 되었다.

생태관광은 2004년 기준으로 세계 관광시장의 7%를 차지하는 등 매년 20~30%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관광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용어설명 생태관광지역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2013년 3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를 도입하였는데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지역과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자원·경관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 전국의 생태관광지역을 차별화하여 균형적인 생태관광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환경부는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첫 대상지로 순천만, 제주 동백동산습지, 울진 왕피천 계곡을 포함한 총 12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은 총 54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환경부 독자적인 지정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한 지정으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지정된 12개소 생태관광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홍보 및 재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표 18〉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역별 개요(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지역명	개 요
1	 부산–낙동강하구	• 연간 17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는 철새도래 지역으로 큰고니, 저어새, 흑기러기 등 16종 6천여마리의 천연기념물과 연간 170여종 철새들이 찾고, 372여종의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도심 내 동·식물의 생태계 보고(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낙동강하구 탐조코스, 하구답사, 수서곤충 관찰, 갈대체험, 야생동물 진료체험교실 등 24개 프로그램 운영 • www.wetland.busan.go.kr
2	 울산–태화강	•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태화강, 야생생물보호구역(백로, 붉은부리 갈매기, 왜가리 등 서식), 태화강 하류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삼호대숲, 십리대밭 등 • 태화강 전망대, 태화강 방문자센터 여울(마을기업) 운영. 울산 생태환경투어, 봄꽃대향연, 여름철 백로생태학교, 가을 연어 회귀 관찰, 겨울철 철새탐방학교 및 태화강 생태문화 한마당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taehwagang.ulsan.go.kr

	지역명	개 요
3	 인제–하늘내린인제	• DMZ,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천연보호구역 등 군면적의 33%가 보호지역이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74종, 한국고유종281종, 천연기념물 21종이 서식하고 있음(비로용담, 장백제비꽃, 대택사초, 대암산집가게거미, 한국좀뱀잠자리는 국내유일자생) • 6개 마을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야기숲길걷기, 우리꽃체험, 오지트레킹, 대암산 용늪 생태체험 등) • http://www.injetour.co.kr
4	 양구–DMZ 원시생태체험투어	• 전구간이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으로 전구간이 보호구역. 평화누리길, 두타연안보관광지, DMZ야생동물생태관, 펀치볼 둘레길, 산양증식장, 생태식물원 등 • DMZ 생태탐방 투어, 안보체험 등 • http://www.ygtour.kr/
5	 평창–동강생태관광지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어름치 서식, 천연기념물 제260호인 백룡동굴이 있음 • 숲해설가,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칠족령트래킹, 백운산 등반, 자연과 숲에 대한 이해, 지역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운영 및 평창아라리보존회를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어류생태를 주제로 한 영재과학 에듀투어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http://maha.or.kr, http://ww.mahari.kr/shop_main/main_body.htm
6	 서산–천수만 철새도래지	•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멸종위기 조류 49종, 천연기념물 조류 37종,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삵과 금개구리 서식 • 서산 버드랜드를 기점으로 천수만 철새탐조투어(10~3월), 갯벌체험교실(4~5월), 곤충체험교실, 철새기행 행사 운영

	지역명	개 요
7	 서천-금강하구 및 유부도	• 유부도와 금강하구갯벌은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이며, EAAFF서식지로 등재 • 도요새와 20일간의 서천 습지여행, 서천습지 청소년 학습여행, 사계절 서천철새여행, 서천 생태체험여행(금강 신성리갈대밭, 국립생태원), 서천 농촌체험관광(수학여행) 운영 • http://bird.seocheon.go.kr, http://blog.naver.com/jsh0677, http://blog.daum.net/seocheon9
8	 순천-순천만	• 국내 연안습지 최초의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명승 제41호, 생태계보존지구인 순천만 일대 • 순천만 생태교실, 해설사 프로그램(천문관측, 공작체험, 갈대열차, 탐조체험) 등 운영 • http://www.suncheonbay.go.kr/
9	 울진-왕피천계곡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 대부분인 우수한 식생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양, 수달, 구렁이,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 18종이 서식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 계곡과 불영사 계곡 문화재 보호구역 • 왕피천 생태경관 트래킹, 유기농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 굴구지마을 피라미축제, 산약초 교실 운영 • http://www.gulgugi.co.kr
10	 남해-앵강만의 달빛여행	• 국립공원, 군립공원 지역(금산, 호구산), 생태우수마을(두모마을, 가천마을), 국가명승(다랭이논) 외 두므게 마을, 해우라지마을, 미국마을 등 특색있는 마을과 생태탐방로 '바랫길', 앵강다숲 • 마을별, 생태환경별 체험프로그램 30여건 보유 • cafe.daum.net/baraeroad, cafe.daum.net/namhaeeco, www.namhae.go.kr, namhaetours.cafe24.com, 보물섬체험.kr, www.sengsengland.com

	지역명	개 요
11	 창녕-우포늪	• 우포늪은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가시연꽃, 마름 등 500여종 식물과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와 큰고니 등 160여종 조류와 다양한 어류, 포유류, 파충류, 곤충이 서식하고 있고, 따오기 복원사업 진행 중 • 우포생태교육원의 우포체험학습(초등생), 우포자연학습원의 수생식물관찰, 철새관찰 등 프로그램, 가시연꽃마을의 각종 체험, 우포늪 반딧불이 탐사 및 달빛기행, 람사르시범마을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 http://www.upo.or.kr/, http://woopo.go2vil.org/, http://upo.educn.kr/, http://www.upoibis.net/
12	 제주-동백동산습지	•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산림유전자원지역 등으로 지정된 선흘1리 동백동산습지 • 국립습지센터와 (주)제주생태관광이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프로그램 연 3회 30명 한정 운영, 상설 동백동산(습지)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쨍하고 해 들 곶”, 토요 어린이 동백동산 체험) • www.ramsar.kr, http://cafe.naver.com/sunhul

참고자료·문헌

- 환경부 보도자료(2013.12.05), 자연과 지역을 살리는 행복한 여행
- 환경부(2009), 생태관광
- 환경부 생태관광 홈페이지(http://www.ecotour.go.kr)

작성자 : 장미아 전문위원(사단법인 생명의숲)

정책용어

32. 생태도시

생성배경 생태도시는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리차드 레스터(Richard Register) 등이 자연과 균형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생태(Urban Ecology)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면서 정립된 도시개념이다. 생태도시는 1902년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이후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전원도시는 산업혁명 이후 영국 런던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로서 도시생활의 쾌적함과 자연환경이 결합된 저밀도의 경관도시·계획도시로서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도시개념이다.

생태도시의 기본원리는 '삼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으로부터 배워 온 것으로, 도시의 자립성과 순환성을 갖춘 생태체제로 기능하는데 있다.

용어설명 생태도시는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시개발·도시계획·환경계획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된 개념으로서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다양한 도시 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의 탄소발생을 저감시키거나 흡수하고자 하는 저탄소 녹색도시가

출현하게 되었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기존의 전원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에 탄소저감과 흡수, 신재생에너지가 결합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9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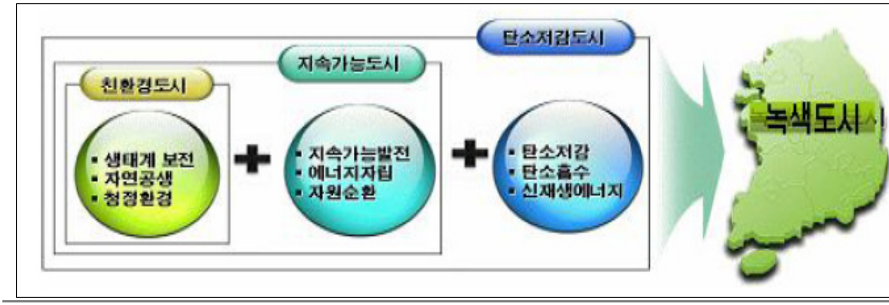

출처 :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2009.11.5.)

〈표 19〉 전원도시, 생태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개요

구분	배경	개념	적용사례
전원도시 (1900년대)	• 1902년 영국 하워드(Ebenezer Howard)에 의해 주창됨 • 산업혁명 후 영국의 도시문제 해소차원	• 도시생활의 쾌적함과 자연환경이 결합된 저밀도의 경관도시·계획도시로서 물리적인 도시시설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유토피아	• 영국 레치워스 • 영국 웰윈 등
생태도시 (1970년대)	•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대두	•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다양한 도시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	• 브라질 꾸리찌바 • 독일 슈트트가르트 • 영국 밀턴 케인즈 • 일본 고베 등
저탄소 녹색도시 (2000년대)	•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 온실가스 배출 중 기회변화에 가장 영향이 큰 탄소완화를 위해 가능한 발생되는 탄소를 저감시키고 발생된 탄소를 최대한 흡수하고자 계획한 도시	• 영국 토트네스 •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 • 일본 키타큐슈

현재 용어의 사용 생태도시 및 저탄소녹색도시 조성방안

생태도시의 조성은 도시 지역 내에서 생태체제가 복원되어 각 요소들 간의 생태순환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도시 조성방안으로는 생태종의 복원과 다원화, 물과 공기의 순환체계의 복원, 인공시설의 친환경적 배열, 친환경적 생활체계의 구축 등이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에는 이를 다시 녹색에너지(Green Energy), 녹색교통(Green Commuting), 물순환(Green Oasis), 자원재활용(Green Recycle), 녹색산업(Green Industry), 녹지회랑(Green Corridor), 녹색시민운동(Green Humanism) 등 7가지 요소로 나누고 도시특성에 맞게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표 20〉 저탄소 녹색도시 7대 추진요소

구분	녹색도시 추진요소
녹색에너지	재생에너지 집단공급시설, 그린건축물, 그린홈, 대기오염 저감, 바람길 등
녹색교통	자전거, BRT, 철도, 저공해 자동차,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카드
물순환	도시하천 생태, 유량 복원, 빗물이용, 중수도 재활용, 친수공간
자원재활용	폐기물 에너지 활용,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감량
녹샌산업	에코투어리즘, 에코타운, 해외협력 및 수출
녹지회랑	광역녹지축, 생태공간, 도시생물다양성 제고, 옥상녹화, 벽면녹화
녹색시민운동	시민생활양식의 변화, 민관협의, 환경교육, 환경체험 프로그램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소비가 최소화되는 에너지 절약형 토지이용과 교통계획, 주거계획, 도시기반 구축 등의 통합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을 위해 세계 주요 도시들은 스마트성장(Smart Growth), 뉴어버니즘(New Urbanism), 압축도시(Compact City) 등의 조성을 국가별·도시별 특색에 맞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통해 '인간·자연·기술이 조화된 세계 인류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1)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 수

립, 2) 자원순환경 도시기반 구축, 3) 생태형 도시공간 창출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흡수하는 도시공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능의 배치와 입지, 교통계획, 공원녹지 및 강관리 등 토지이용과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녹색에너지(Green Energy), 녹색교통그린건축물, 그린홈 등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권장하고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 저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보행자 중심의 녹색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면전차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를 확충 할 필요가 있다.

도시하천의 생태와 유량을 복원하고 자연 정화 능력을 활용한 우수 재이용, 빗물이용 등 물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하다. 폐기물 에너지 활용,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감량 등 자원재이용과 갯벌, 둘레길 등 지역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을 통한 녹색산업 활성화도 필수적이다. 지역내 강과 산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산을 연계한 광역녹지축의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하천·호소 등을 연계한 블루네트워크을 구축하여 도시생물다양성을 제고하고,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생태면적율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전반적인 노력과 참여는 중요하다. 화석연료 정점이후의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주민 개개인이 인식하여 지역주민들이 환경보전 실천에 적극 참여하는 그린휴머니즘 형성과 이를 통한 그린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자료·문헌

- 국토해양부 등, 2009,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 김형국 편저, 2011, 녹색성장 바로 알기, 나남
- 왕광익 등, 2009,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연구–토지이용부문, 국토연구원
- 사) 환경과 자치 연구소 엮음, 2005, 생태도시를 향한 발걸음. 도서출판. 전망
- 시민환경연구소 편, 2001, 생태도시로 가는 길, 도요새
- 전의찬 등, 2012, 2016(개정증보판), 기후변화 27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지오북

작성자 : 김선희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3. 성별영향분석평가 (Gender Impact Analysis Assessment)

생성배경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성 형평성(gender equity)의 개념은 여성과 남성을 처우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처해있는 신체적 환경적 조건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여건에 있을 때는 그 다른 여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 형평성은 '결과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건의 평등'을 의미한다. 즉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이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인 것이다.

용어설명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일반적인 공공정책과 사업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기획 및 집행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정책과 사업, 법제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평등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tool)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정 정책 또는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성과 남성의 삶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자원과 책임 및 권한에 있어서의 성별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자원의 분배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제도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데 활용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보를 체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책의 형성, 시행 및 평가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를 재구성함으로써 각 단계에서 성 관련 쟁점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도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 11046호, 2012. 3. 16)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3656호, 2012. 3. 16)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법상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이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비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립·시행하는 모든 일반정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된다. 즉 제도나 정책, 사업계획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이 성평등 방향으로 기획·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 분석하는 것을 지칭하는 데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은 2004년, 지방은 2005년 시범분석을 시작해 현재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확대·실시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과 같이 여성정책에 있어 선도적 지위에 있는 국가들과 세계은행이나 ILO와 같은 국제기구 등을 주축으로 성 주류화 전략이 추진되어 오다가 현재는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성별분석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등 연방제 국가들에서는 내각에서 성평등(성별) 분

석을 포함할 수 있는 지침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중앙의 여성정책 담당기구와 인적자원개발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의 성별영향분석(gender impact analysis)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여성가족부(2013),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홍미영 외(2011), 부산지역 공원이용 만족도 성별영향평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작성자 : 홍미영 선임연구위원(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용어

34. 성인지 예산 (Gender Responsive Budgeting)

생성배경 정책수행 과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성평등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예산과정에 성인식(gender awareness)및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함으로써 재정자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효과를 시정하여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용어설명 성인지 예산은 모든 예산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정책이 양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더라도 의도하지 않게 성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성별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운용의 전 과정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지원이나 양성평등을 위한 개별 사업단위의 예산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재정 운용 전반에 걸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규범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한다. 먼저 한 측면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성이 평등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은 성인지 예산이 주로 여성

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주의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성인지 예산은 정부의 예산을 “여성의 예산과 남성의 예산으로 이분법적인 구분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여성과 남성이 양적으로 동일한 예산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수요를 잘 반영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만들자는 뜻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국가재정법(제26조, 제57조)」을 개정(2006.10.4)하여 2010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정시 성인지예산제도 근거를 2006년에 마련하여 2010년 회계연도 예·결산서부터 적용되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 및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9년 기회재정부는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국회 제출했다. 이후 2010년에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사업을 기금까지 확대하고 분석 내용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를 명시토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 제53조의2)」을 개정(2011.3.8)하여 2013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각 지방의회에 제출, 심사를 받고 있다.

해외사례 성인지 예산은 현재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 제도는 2000년대 들어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 적극적 도입·시행 중이다. 성인지 예산이 세계적으로 공통성을 갖는 부분은 정부예산이 남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고,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동기, 초

점, 추진(활동) 주체, 운영 방법과 수준, 정부 내의 주도 부문과 수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어서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이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실시 중에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각 대륙과 국가별로 제도의 형태와 운영방식 등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각 국가와 정부, 그리고 지역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 이 제도는 탄력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홍미영 외(2011),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의 도입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5권 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발전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 대한민국국회(2010),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국회(2010), 2011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매뉴얼
- 행정자치부(201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담당공무원 워크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홈페이지(http://gb.kwdi.re.kr)

작성자 : 홍미영 선임연구위원(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5.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생성배경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하에 이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었고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면서 등장하였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광역계정, 지역계정, 제주발전계정으로 구분되었다. 광역계정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업군이고, 지역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업군이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지역계정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 하나의 사업이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시·도가 자율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사업을 하는데 과소투자의 우려가 있는 시·군·구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소요를 별도로 산정해서 시·군·구별 예산 한도를 배분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기능별 사업 구분의 방식을 취하는 시·도 자율편성사업과는 달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분한다.

지역의 특성에 따른 구분은 도시, 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등과 같은 3개의 기본적 구분에 더하여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하여 성장촉진지역을 추가로 설정한다. 그래서 이를 3+1 지역 구분 방식으로 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하

여 선정된 전국 70개 성장촉진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이라 한다.

한편 2015년부터는 국토부는 성장촉진지역 시·군 중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역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용어설명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다.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국토부와 행자부가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지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은 대상 지역 선정은 국토부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하되, 국토부가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이며, 국고보조율은 100%이다. 성장촉진지역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정은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대도시와의 거리 등에 따라 시·군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군이 해당한다. 도입 초기에는 도로 등 하드웨어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특화,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소규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융합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최근에는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림 30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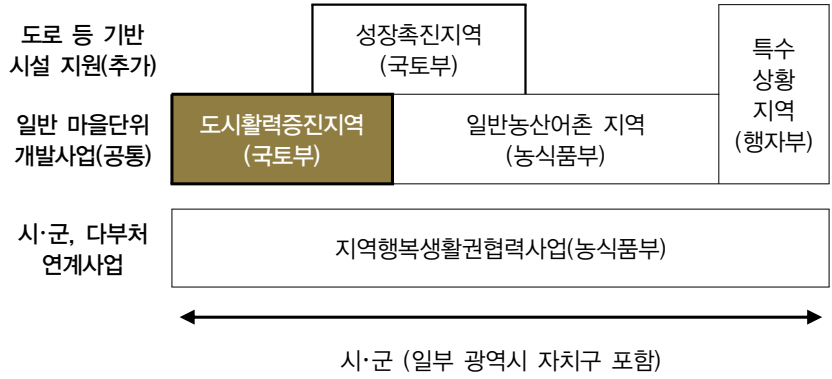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2014.5.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에서 발췌, 수정

가령,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의 경우는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을 위해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지원도 가능하다.

참고자료·문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15.1.1.)
- 국토교통부(2015.3.27.),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 국토교통부(2014.9.25.),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12.18.) 지역개발, 지역주도+맞춤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 기획재정부(2014.5.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 송미령·권인혜(2011),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작성자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용어

36. 슬로시티(Slow City)

생성배경 슬로시티의 출발은 느리게 먹기(slow food)+느리게 살기(slow movement)운동에서 유래되었으며, 1999년 10월 '위협받는 달콤한 인생(la dolce vita)의 미래를 염려'한 이탈리아의 몇몇 시장들이 모인 모임(Citta lenta = Cittaslow = Slowcity)에서 시작되었다.

용어설명 슬로시티란 '느린 도시'라는 뜻으로 '향토인으로 하여금 자연 속에서 살면서 마을의 고유 먹거리와 지역의 고유문화를 느끼며 삶의 질을 향유하는 동시에 도시인(관광객)에게 마음의 고향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을 말한다.

슬로시티는 현대문명을 거부하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이념이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느림의 미학을 강조한 생활의 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간성 회복과 자연의 시간에 대한 인간의 기다림을 표방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인간사회의 진정한 발전과 오래갈 미래(ancient future)를 위한 슬로시티 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자연(nature)과 전통문화(culture)를 잘 보호하고 동시에 경제 살리기를 추진하여 진짜 사람이 사는 따뜻한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국제슬로시티의 모토는 International network of cities where living is easy로 편한 삶, 즉 삶의 질을 위한 국제적인 연결망 구축이다.

슬로시티 운동은 ① 철저한 자연생태보호 ②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③ 제철·제때의 식재료와 유기농법 ④ 지역특산품·공예품 지킴이 ⑤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와 정직한 진정성 유지 등의 다섯 가지 지침을 설정하고 있으며, think globally act locally란 지방의 세계화, 즉 세방화(glocalization)를 표방한다(슬로시티/홈페이지).

그림 31 슬로시티 구성요소

출처 : 황영모(2011), 슬로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전북발전연구원.

해외사례 슬로시티에는 2002년 7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2016년 8월 현재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29개국 189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74곳, 폴란드 17곳, 독일 12곳, 한국 11곳으로 국제슬로시티 중 4번째로 많은 곳이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이탈리아 이외의 나라 중 가장 많은 12곳이 슬로시티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최초의 슬로시티 중 한 곳인 장흥군이 탈락 되어 현재 11곳(신안군 증도, 완도군 청산도, 담양군 창평면 삼지천 마을, 경남 하동군 악양면(차 재배지로서 세계 최초), 충남 예산군 대흥면, 남양주시 조안면, 전주 한옥마을, 상주시 이안면, 청송군 파천면, 영월 김삿갓, 제천시 수산 박달재)이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이탈리아에 국제슬로시티연맹본부가 있으며, 전 세계 슬로시티 지정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매 도시 간 교류협력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슬로시티 홈페이지(http://www.cittaslow.kr)
- 황영모(2011), 슬로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전북발전연구원

작성자 : 강영주 책임연구위원(대전발전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7.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생성배경 기존 특정보조금이 사용 용도와 조건 등에 있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세부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유재량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새롭게 개편하면서 200여 개 지역개발사업을 18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4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통합하고 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지역개발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기획재정부, 2010년 5월). 지자체 자율성 제고 및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5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계정 및 세종계종 총 4개 계정 9개 사업군으로 운영하고 있다.

용어설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성장촉진, 특수상황, 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및 소하천정비 등의 사업으로써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으로 정책수단을 확보한 국토부, 행자부, 농식품부를 소관 부처로 지정하였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 포괄보조금으로 운용됨으로써 각 시·군·구는 포괄보조금 지출한도 내에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지자체 신청 사업에 대한 행자부, 지역발전위의 사전심사 절차도 폐지

되어 예산편성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시·도 자율편성사업(30개)이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가 배분된 재원한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는 데 반해,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시·군·구가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에 신청하되, 시·도지사의 사업 내용 검토 및 예산조정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고, 소관 부처 또한 사업지침과 사후관리 등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기초지자체의 사업기획·추진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계속사업의 경우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소관부처 별도 통보)을 참고하여 예산신청하도록 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신청하고, 담당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소요로 검토하여 요구하도록 하였다. 신규 사업 발굴 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행복생활권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문헌

- 기획재정부(2015),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 기획재정부(2015),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방향
- 기획재정부(2015), 보도자료(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운영 방향 설명)

작성자 : 강영주 책임연구위원(대전발전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8. 시·도 자율편성사업

생성배경 최근 지역발전정책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지역의 분권과 자율성 강화이다. 이는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역발전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기존 특정보조금이 사용 용도와 조건 등에 있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세부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유재량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새롭게 개편하면서 200여 개 지역개발사업을 18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4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통합하고 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기획재정부, 2010년 5월). 현재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면서 30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6개 시군구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괄보조금이란 지자체별 예산편성 한도를 부여하고 지자체가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용어설명 30개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각 시·도가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신청하며,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세부내용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다.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다시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어떤 사업을 시·도가 수행하고, 시·군·구가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시·도가 사업의 광역적 성격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추진 절차는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가 배분된 재원한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고 각 주관 부처는 요구 내용의 적정성, 조정 방향 등을 검토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시·도 자율편성사업 역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소관 부처는 사업지침과 사후관리 등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광역지자체의 사업기획·추진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신규 사업의 경우 대상사업, 투자효율성, 시급성·집행가능성 및 물량, 단가의 적정성 등 철저한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지자체 간 공동연계사업·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체험도가 높고 사업효과가 명확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였다.

해외사례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포괄보조금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영국 RDA의 지역개발보조금(Single Pot 등), 일본의 지역재생기반강화보조금 등과 성격이 유사하다.

참고자료·문헌

- 신두섭(2011), 포괄보조금 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제, 공감코리아 정책기고
- 기획재정부(2014),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 기획재정부(2015), 보도자료(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운영 방향 설명)

작성자 : 강영주 책임연구위원(대전발전연구원)

정책용어

39. 시가화조정구역

생성배경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시·군 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아래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11호).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유통업무 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의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제2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별표 24).

-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 공장의 업종 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 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 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으로 한정함)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혹은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내 벌금)을 부과한다.

용어설명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및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시가

화조정구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 건축물 건축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입된 시가화조정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다.

해외 사례 일본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 및 무질서한 시가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을 정하고 있다. 시가화구역은 약 10년 동안 우선하여 도시 개발을 시행할 구역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시가화조정구역은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외에서의 주거수요 급증과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에 적절히 대응하고, 스프롤 문제에 대응하는 토지이용의 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프랑스의 우선시가화지역(ZUP), 장기정비지역(ZAD), 정비확장지역(ZAC) 등도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 김제국, 중정검유(1998), 각국 시가화 억제 구역제도의 구성 원리와 개발규제에 대한 비교 고찰 : 영국 그린벨트, 일본 시가화조정구역, 미국 오레곤 주 농업전용지역 그리고 한국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33(3). 63-78
- 마상열(2004), 지방도시의 시가화조정구역 내 개발실태를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

법 34조8호3의 활용운용방침 및 방책에 관한 연구 : 토요하시시를 사례, Toyohashi University of Technology 박사학위논문

- 박재길, 이동우, 송미령, 박시현, 이규천, 성주인(2003), 도·농통합형 정주기반형성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 국토연구원
- 손용훈, 윤문영(2011), 근교도시의 녹지경관 유형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관인식, 한국조경학회지 39(5), 101-110
- 이삼수, 와다이사무, 이양재 (2010), 일본의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상 토지이용의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3)
- 황한철(2004), 농촌계획 관점에서 본 국토계획법의 개선방안,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0(2) 통권 23호: 51-60
- Ken NAMBA, Yu SHIBATA, Masanori SAWAKI, Kunihiro NARUMI (2008), An Examination of Planning Process for Non-Agricultural Urban Quarter of the Urbanization Control Area in Hyogo Prefecture (Session03: Urban Spatial Structur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ty Planning 200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 MIKUNI MASAKATSU(ChibaUniv.,Fac.ofEng.)(2004), Thereal stateand problem so fthe changeinl and use in the urbanization control area. A case study in Inage-ward, Chiba-city. Journa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Transactions of AIJ) 524호. 185-190

작성자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용어

40. 아동친화도시

생성배경 1996 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류 거주문제에 대한 UN 국제회의(해비타트Ⅱ)는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적합한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에 결의하였고, 나아가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거버넌스의 궁극적 평가 지표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89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협약 당사국들은 모든 아동의 성장과 안녕을 보호 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특히, 현재 총 196 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도시들에게 시설 및 서비스 확충, 아동의 참여와 의견 반영, 국제연대 등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이와 같은 전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여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사업을 시작했고, 각 지역 정부들과 협력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어설명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는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아동의 권리를 지역의 공공정책, 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적 대책, 또 지역의 예산에 반영한다. 또한, 아동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아동의 요구사항과 의견 및 계획들이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그 권리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업무까지 수행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10 가지 원칙〉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사무국은 지방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9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총 10 개의 원칙을 적용한다.

1. 아동의 참여(Children's Participation):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한다.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A Child friendly Legal Framework):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한다.
3. 아동권리 전략(A City-Wide Children's Rights Strategy):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4. 아동권리 전담기구(A Children's Rights Unit or Coordinating Mechanism):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5. 아동영향평가(Child Impact Assessment and Evaluation):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6. 아동관련 예산 확보(A Children's Budget):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한다.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A Regular State of the City's Children Report):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8. 아동권리홍보(Making Children's Rights Known):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Independent Advocacy for Children):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의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한다.
10.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해외사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996년 개최된 유엔회의에서 최초로 발의되었고, 2000년 이탈리아에 위치한 유니세프 리서치 센터에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사무국을 설립하여 전세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사업은 유니세프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작성자 : 아동친화도시사무국 (http://childfriendlycities.kr/)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41. 여성친화도시(Women-friendly City)

생성배경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 수명과 기대 수명의 증가로 노인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빈곤계층,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화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의 기존 공공시설은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학생 등의 젊은 계층만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거나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래에 친자연적 도시환경이나 공적 시설을 구축, 설계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이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이는 도시의 여성들이 대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이자 이들 약자를 돌보면서 직업 활동과 사회참여도 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역할을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용어설명 여성친화도시의 의미는 “그 도시가 여성만 살기 좋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주축이 된 가족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밑바탕에 깐 인간 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도시의 수많은 공공시설(공원, 도서관, 공공용지, 보행로 등)은 그 지역과 시민 모두의 시설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시설과 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여성친화도시가 갖는 규범적 의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에 있다. 이는 기존의 도시공공재(public good)와 정책(public pllicy),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등에 대해 성별이슈가 제기됨으로써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경제적 제약 혹은 사회·문화적 제약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찾기 시작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도시가 보다 사회적 약자와 여성친화적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사회적 약자, 그 중에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입장에서의 새로운 시각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은 현대 도시여성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안요소를 없애고 직업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게 하는 행복 지향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등의 몇몇 대도시와 지방 도시들에서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을 도시계획과 재개발 분야에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정책과 연동하여 지역의 각종 정책에도 도입되고 있는데, 최근 여성가족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해외 사례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은 유럽의 독일(뮌헨/하노버), 영국(런던), 오스트리아(비엔나), 캐나다(몬트리올) 등지에 유사하게 도입되어 있으며, 여성친화도시의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성친화성, 양성평등도시, 도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용어와 관련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09),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Ⅰ), 연구보고서
- 여성가족부(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연구용역보고서
- 여성가족부(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연구보고서

작성자 : 홍미영 선임연구위원(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용어

42. 유비쿼터스도시(U-City)

생성배경 유비쿼터스도시(U-City)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도시(city)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유비쿼터스는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유비쿼터스란 단어를 IT분야에 처음 사용한 마크 와이저(Mark Weiser) 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일 자체보다는 컴퓨터 조작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모순을 지적하면서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을 구상하였다. 즉 사람이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사람을 이해하고 학습하며 사람이 하는 일에 맞춰 작동하는 인간중심의 컴퓨터 환경이 곧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이 도시에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1995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본격화되고, 국내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개념이 알려지면서 도시의 발전전략을 고심하던 지자체가 이 개념을 도시에 접목하여 U-City의 개념을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U-City가 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용어설명 U-City의 용어 및 개념은 2008년 3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았다. 동 법률에서는 U-City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21〉 유비쿼터스 관련 용어정의

용 어	개 념 정 의
유비쿼터스 도시기술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 도로, 철도, 공원, 녹지,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통신망 •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출처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내용 재정리

U-City는 궁극적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스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능화된 시설 및 정보통신인프라,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통하여 정보를 가공해서 행정, 교통, 보건, 방재 분야 등에 다양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정부는 2008년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은 첨단정보통신기술과 건설기술을 융복합하여 교통, 환경 등 도시관리를 효율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5개년 법정계획이다. 제1차 종합계획(2009~2013년)은 U-City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U-City 계획·건설·관리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U-City 핵심기술개발지원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2013년도에는 2차 종합계획(2014~2018)을 수립하여 1차 계획의 성과를 확산하고 U-City 민간산업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현재 전국에 걸쳐 49개의 U-City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는 U-시범도시사업, U-City 계획수립, U-City 기반조성사업 및 혁신도시사업 등의 U-City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49개 U-City 추진계획 중 수도권 18개 지자체, 지방권 31개 지자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약 65%가 신도시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10~'12년에 U-City 추진을 위해 승인 혹은 승인대기 중인 12개 U-City 분석 결과, U-City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평균 약 19.3개의 서비스를 계획 또는 추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 우리나라 U-City와 유사한 사례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로서 세계 각국에서 국가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약 39개국 125개 도시에서 132개의 프로젝트가 시행 또는 계획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권이 약 33%, 북미권 32%, 유럽권 2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환경·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IT관련 산·학·연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중동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화 움직임이 스마트시티 분야의 투자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현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목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 등의 민간 업체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림 32 유비쿼터스도시 개념도

출처 : 국토교통부(2009),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p.3

참고자료·문헌

- 국토교통부(2009),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09~2013)
- 국토교통부(2013),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14~2018)
- 문창엽외(2012), 유비쿼터스도시정책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 신동빈외(2011),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안승원(2008), Ubiquitous City 이해와 기획, 기다리
- 유럽 북해지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smartcities.info)

작성자 : 윤정중 연구기획실장(토지주택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43.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생성배경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는 길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연생태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상품화하는 사업이다. 최근 도보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여행문화가 창출되면서 문화생태 탐방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는 점적인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 하여 지역간 교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용어설명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를 지역의 관광자원을 특성 있는 주제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는 길로 조성하고 있다.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탐방로 주변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흥미 있는 이야기를 제공하여 문화적이며 친환경적인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주제로 길, 관광자원, 탐방지원 시설을 일체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탐방로를 일정 개소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탐방로의 선정은 자원 및 경관의 우수성과 테마의 대표성 등이 기준이 되며 걷기여행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면 심사와 현지답사를 거쳐 선정

된다. 선정된 문화생태 탐방로는 탐방로 조성 및 안내체계 구축, 홍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2009년에는 7개소, 2010년에는 12개소, 2011년에는 10개소, 2012년에는 10개소, 2013년에는 8개소, 총 47개 탐방로 2,392.4㎞가 지정되어 있다.

〈표 22〉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지정 현황

지정년도	탐방로명(조성구간)	지역(시·군·구)
2009년도 (7개소) 1,194.2㎞	소백산 자락길(99.7㎞)	경북 영주, 충북 단양, 강원 영월
	강화 나들길(132.5㎞)	인천 강화
	정약용의 남도유배길 (삼남대로 강진·영암 구간 : 55㎞)	전남 강진, 영암
	해파랑길(770㎞)	부산 ~ 강원 고성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길(31㎞)	경남 하동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00리길(43㎞)	전북 고창
	여강길(63㎞) * '13년 8㎞ 추가 지정	경기 여주, 강원 원주
2010년도 (12개소) 501.5㎞	땅끝길(삼남대로 해남 구간 : 48㎞)	전남 해남
	새재넘어 소조령길(36㎞) (영남대로 문경·괴산·충주 구간)	충북 괴산,충주, 경북 문경
	대관령 너머길(48㎞)(관동대로 대관령 구간 등)	강원 강릉, 평창
	백의종군로(18㎞)	경남 산청, 하동
	토성산성 어울길(19.6㎞)	경기 광주, 하남, 서울 송파
	쇠둘레평화누리길(27㎞)	강원 철원
	토영 이야~길(25㎞)	경남 통영
	남해 바래길(103㎞)	경남 남해
	청산 슬로길(42.2㎞)	전남 완도(청산도)
	증도 모실길(42.7㎞)	전남 신안(증도)
	유교문화길(47㎞)	경북 안동
	풍류락도 영산가람길(45㎞)	전남 나주

지정년도	탐방로명(조성구간)	지역(시·군·구)
2011년도 (10개소) 275.2㎞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13.3㎞)	서울 광진구
	사비길(10㎞)	충남 부여
	서울 한양도성길(18.6㎞)	서울 종로, 중, 성북, 서대문구
	구불길(31.9㎞)	전북 군산
	갈재길(9.3㎞)	전남 장성, 전북 정읍
	섬진강길(88㎞)	전북 임실·순창, 전남 곡성·구례
	동강길(56㎞)	강원 정선, 영월
	두물머리길(28㎞)	경기 양평, 남양주, 구리
	승부역 가는 길(12㎞)	경북 봉화
	담양 수목길(8.1㎞)	전남 담양
2012년도 (10개소) 295.0㎞	천년여행길(8㎞)	충남 홍성
	선비문화탐방로(11㎞)	경남 함양
	태백산맥 문학기행길(8㎞)	전남 보성
	흥부길(10㎞)	전북 남원
	하남 위례길(64㎞)	경기 하남
	중원문화길(30㎞)	충북 충주
	낙동강 하구 생태길(22㎞)	부산광역시
	무돌길(52㎞)	광주, 화순, 담양
	함라산둘레길(36㎞)	전북 익산
	갯길(54㎞)	전남 무안
2013년도 (8개소) 126.5㎞	마포 난지 생태길(14㎞)	서울 마포구
	백령구경 길 제1~3경길(19㎞)	인천 웅진
	포천 한탄강 어울길(18㎞)	경기 포천
	아름다운 순례길 6~7코스(24.3㎞)	전북 김제
	진도 아리랑 길(17㎞)	전남 진도
	가거도 샛개재 길(10.9㎞)	전남 신안
	성주 가야길(12㎞)	경북 성주
	진주라 비단길(11.3㎞)	경남 진주
합 계	47개 탐방로, 총 연장 2,392.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6),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지정 현황, 보도자료

한편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탐방로를 종합 안내하는 걷기 여행길 종합안내포털(koreatrails.or.kr) 서비스가 2013년 10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김영준, 박경열 (2008),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 천리길 추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6),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지정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09), 문화생태탐방로 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2009),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가이드라인 연구

작성자 : 김영준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4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생성배경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전체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들의 도시이동과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여 마을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하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었고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면서 등장하였다. 농산어촌의 활성화 및 인구유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의 주목적이다.

용어설명 농산어촌의 농촌어메니티(rural amenities)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시의 읍·면 및 특수상황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이다.

그림 33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현황

현재 용어의 사용 2010년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농산어촌지역 122개 시·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 시군역량강화 사업의 4개 유형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위해 국비 지원은 전체 사업비의 70%, 지방비는 30%를 매칭한다.

본 사업의 지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 농어촌정비법[3] 등을 근거로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09.4.22.시행)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15개 사업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시행 중이다.

1)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34조(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2) 제 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 계획의 수립·시행),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3) 제 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표 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원조건
농촌중심지 활성화	읍면을 경제·문화·공동체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 강화, 읍·면소재지-마을간 기초서비스 연계 강화,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추진(선도지구, 일반지구)	5년 이내 자율 사업내용에 따라 60~80억 이하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단위종합개발, 마을단위(종합개발,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신규(전원) 마을)	5년 이내 자율 사업특성에 따라 1.5~40억
기초 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등 시군 여건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시·군 계속사업비 한도 내
시군역량강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을 위한 역량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포럼 운영, 완료지구 활성화 등(시군창의, 역량강화)	1~5년 이내 사업내용에 따라 1.5억~20억

그림 3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출처 : 농촌중심지 육성 및 정비사업의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전략(2014), 충남발전연구원

참고자료·문헌

- 농림축산식품부(2014),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참고자료.
- 송미령·권인혜(2011),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역발전위원회(2014), 지역발전사업 편람.
- 충남발전연구원(2014), 농촌중심지 육성 및 정비사업의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전략.

작성자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용어

45. 자활기업

생성배경 자활기업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이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사업 경로의 최종단계로서 저소득층의 공동 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향하며,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모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회서비스 제공을 중요한 역할로 수행하는 공동체이다.

그림 35 자활사업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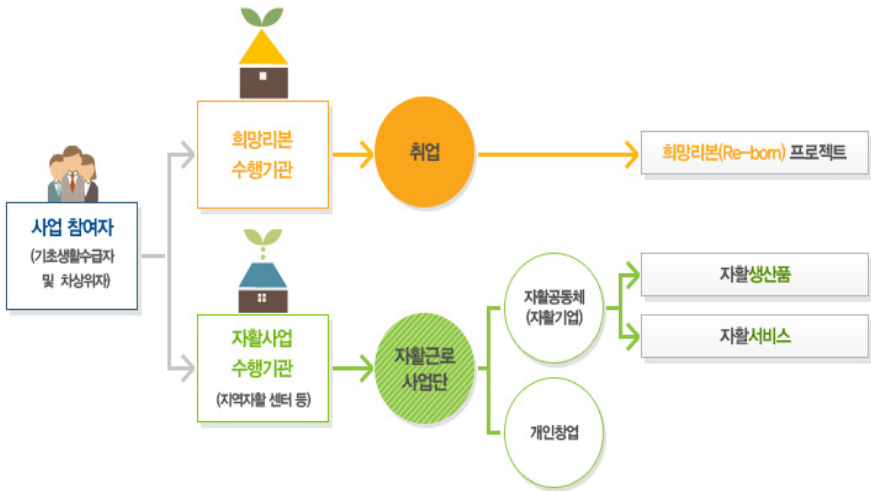

출처 : 중앙자활센터(2015) 홈페이지(www.cssf.or.kr)

그림 36 자활사업을 통한 창업 단계(자활근로사업 → 자활기업)

출처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자활사업안내

기존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익형 기업으로의 육성 및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여 장래 자립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의 추진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함이다.

용어설명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동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차상위자(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1]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기존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공동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설립요건 중 구성원수 요건이 기존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다만, 1인 사업자는 자활기업이 아닌 개인 창업으로 관리)로 완화되었다.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경우 ①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3 이상, ②모든 구성원(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 등의 지원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창업 후 3년 이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5천만 원 이내) 등을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2)]

현재 용어의 사용 자활기업은 2014년 기준 1,339개 업체가 간병, 산모도우미, 청소, 환경정비, 집수리,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 도시락, 외식(음식점), 세차, 세탁, 영농, 장애통합, 배송(유통)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3)] 자활사업의 전국 5대 표준화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에 속하는 자활기업이 전체의 5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활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8,953명으로 기업당 평균 6.7명이지만, 5명 이하 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관리지원기관으로는 2014년까지 중앙자활센터(1개)–광역자활센터(14개)–지역자활센터(247개)가 구성·운영됨.

3) 업종별로는 청소·소독·방역이 301개(25%), 건축이 213개(18%), 돌봄서비스가 183개(15%), 식품제조 및 판매가 180개(15%), 기타(재활용, 택배, 농축산, 세차, 세탁 등)가 327개(27%)임.

그림 37 자활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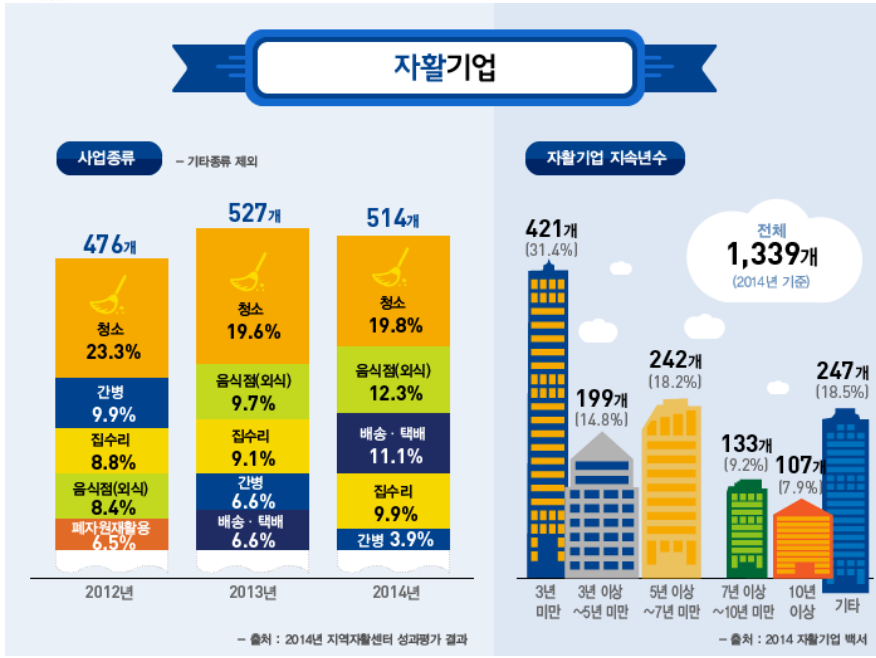

출처 : 중앙자활센터(2016) 홈페이지(www.cssf.or.kr)

보건복지부는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활기업의 규모화·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자활기업 인정'[4], 'Best자활기업(2013년)·우수자활기업(2014년) 선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국단위의 자활기업 규모화·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

4) 자활기업 중에서 사업 규모의 확대로 광역단위로 추진한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광역자활기업(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으로, 전국단위로 추진한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전국자활기업(보건복지부에서 인정)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 중임.

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인정기준 부합여부, 사업계획서 타당성,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며, 2012년 ㈜희망나르미(양곡배송사업, 7개 자활기업과 102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연매출액 108억 원, 고용 835명), 2013년 ㈜한국에너지복지센터(주거복지사업, 15개 사업단 참여), 2014년 ㈜드림클린(전기전자통신 전문청소사업) 등 3개 기업이 전국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5)]

그리고 자활기업 중 일정 규모를 가지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활기업을 'Best자활기업(2013년)·우수자활기업(2014년)'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들 'Best·우수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공공기관)우선구매, 사업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2013년 'Best자활기업'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일과나눔, ㈜휴먼케어, (유)나눔푸드, ㈜두레마을, ㈜푸른우리 등이, 2014년 '우수자활기업'으로는 ㈜희망나르미, ㈜부산광역주거복지센터, 강원주거복지협동조합, ㈜정다운, 행복하계협동조합 등이 선정되었다.

5) 광역자활기업(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구성한 경우)으로는 2014년 기준 사랑보듬이, 크린서비스센터, ㈜반올림, 크린케어, 행복하계협동조합, 고운손간병, 전북광역로컬푸드 등 31개가 인정받고 있음.

참고자료·문헌

- (재)중앙자활센터(2015), 2014 자활기업 백서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자활사업안내
- 자활정책연구소(2014), 자활정책연감
- 보건복지부(2014), 보도자료(2014 전국자활기업대회 개최)
- 복건복지부(2013), 2013 종합자활지원계획(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 자활정책연구소(2012), 사회적경제와 자활기업
- 보건사회연구원(2010),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46. 작은 도서관

생성배경 작은 도서관은 1960년대 문맹퇴치와 농촌계몽을 기치로 출발한 마을문고, 1970년대의 새마을문고, 1980년대의 노동근로자 및 도시빈민을 위한 '노동도서원'과 '지역주민 도서실'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라 문고 설치 권장과 함께 선교목적의 '종교시설 문고'가 확산되었고, 2002년 경기도 부천에서 민관협력으로 시작된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사회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2004년 「문화비전21」에 의거 정부 주도의 "1만개 작은 도서관·이웃도서관 확충 운동"이 추진되었다. 2006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작은 도서관 진흥팀"이 신설되었고 2008년부터 작은 도서관 업무를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영주체·이용자대상·운영장소 등에 따라 작은 도서관의 개념·형태·역할은 다양하였으며, 2009년 3월 「도서관법」 개정 및 2012년 2월 17일 제정된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의거 작은 도서관에 대한 개념 및 역할 등이 비로소 명확해졌다.

용어설명 2009년 3월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하면 작은 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동법 제5조에 명시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된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계

획'에서는 작은 도서관 조성 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작은 도서관은 접근성이 용이한 유휴공간 혹은 노후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독서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문화예술적 문제에 대한 의견과 각종 생활정보를 상호교환·공유하는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24〉「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작은 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시 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m^2	6석 이상	1,000권 이상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12.), 작은 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

〈표 25〉 연도별 작은 도서관의 분포 현황

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 립	669	809	894	888	1,302	1,364
사 립	2,680	2,655	3,057	3,798	3,932	4,231
전 체	3,349	3,464	3,951	4,686	5,234	5,595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6. 5), 2015년도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표 26〉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조례	광역		1		1	1	1	1	1	1	1	1	1	1	1			1	13
	기초	4	9	4	7	5	5	5	19	4	5	6	5	11	7	10			106

출처 :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www.smalllibrary.org/helper/data/)

현재 용어의 사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작은 도서관 수는 2013년 4,686개소(공립 888개소, 사립 3,798개소), 2014년 5,234개소(공립 1,302개소, 사립 3,932개소), 2015년 5,595개소(공립 1,364개소, 사립 4,231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문화, 청소년, 장애인, 종교인 등과 같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의 작은 도서관은 989개소(17.7%)이며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도서관은 4,606개소(82.3%)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 도서관 이용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행사, 소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작은 도서관 운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이 정보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소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www.smalllibrary.org)를 구축·운영 중이다. 한편 작은 도서관(문고·마을문고 포함)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수는 2012년 말 현재 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52곳 등 총 62곳에서 2016년 7월 말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13곳과 기초지방자치단체 106곳 등 총 119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 미국의 경우 인구 25,000명 미만의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을 통틀어서 작은 도서관이라 칭하며, 펜실베이니아 주 Milanof-Schock 도서관, 알래스카 주 Haines Borough 공공도서관 등이 우수한 사례이다. 일본의 경우 가정문고 혹은 지역문고 형태로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정보 및 교육 기회 확대, 청소년의 휴식 공간 및 안전환경 제공을 위해 “지혜의 등대(Farol do Saber)”를 45개소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소 독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농촌 등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나무 상자 형태의 미니도서관인 “문학의 상자(Arca das Letras)”를 2004년 현재 11개 주 41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 평가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2), 작은 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2006), 작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http://www.smalllibrary.org

작성자 : 이봉구 교수(동의대학교)

정책용어

47. 작은 영화관

생성배경 영화 관람은 도시민들의 가족 단위 대표 문화여가활동이지만 CGV나 롯데시네마 등과 같은 영화관 시설이 없는 지방도시나 농·어·산촌 지역 주민들은 영화 관람 기회를 쉽게 얻지 못하고 있다(예: 2014년 현재 전국 평균 4.2회, 서울시민 평균 5.9회, 광주 5.7회, 대전 5.1회, 대구 5.0회, 부산 4.8회 등 대도시 시민 평균 5회 이상, 전라남도 2.0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소외 지역의 여가 향유 기회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은 영화관 1곳당 최대 5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3D 영화까지 상영할 수 있는 대도시의 멀티플렉스 수준의 시설을 건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 38 연간 문화예술 관람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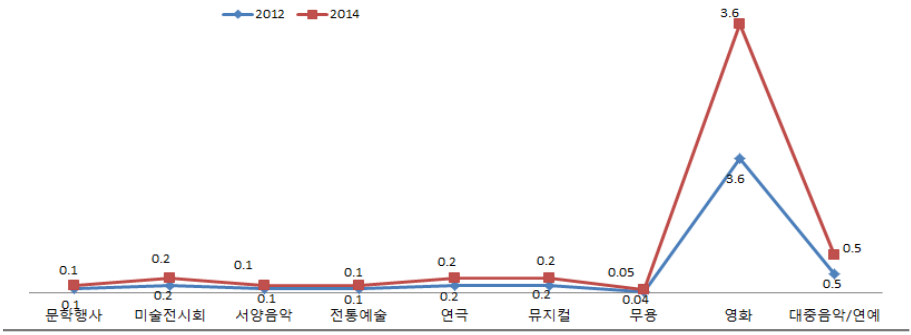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4. 12.), 문화향수실태조사.

용어설명 현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구현을 위해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작은 영화관은 이러한 과제 중 하나로 여가 공간 및 인프라 부족으로 발생하는 소외와 차별이 없는 보편적 문화 복지 환경 조성과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문화 소외 지역주민들을 위해 건립·운영되는 2개 관(각 관 좌석 수 50석 내외) 규모의 상시 상영 영화관을 말한다.

그림 39 문화로 행복한 삶

출처 : 문화관광체육부(2015. 1. 22.), 2015년 문화관광체육부 업무계획.

현재 용어의 사용 현재 김제시(지평선 시네마), 장수군(한누리 시네마), 임실, 고창, 무주, 무안, 완주, 홍천, 강화 등 25개의 기초지자체(문체부 지원 13개소, 지자체 추진 12개소)에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추진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17년까지 총 230개 기초지자체 중 극장이 부재한 109개 기초지자체 전체에 작은 영화관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림 40 전북 장수군 한누리 시네마

출처 :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26319& subMenu=articletotal

해외사례 해외의 경우 소도시 소재 영화관은 지역민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은 정부지원보다는 협동조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에서 '미야코 영화생활협동조합'이 1996년 설립한 '시네마린'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본 유일의 협동조합 영화관으로 85석과 62석 규모이며, 2013년 기준 조합원은 1만 7,670명으로 미야코시 전체 인구의 30%가 조합원이다. 미국 미네소타 주 모리스는 주민 수가 5천여 명밖에 안 되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1940년 설립된 모리스극장을 2010년 '모리스극장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전환, 이전보다 훨씬 더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4천여 명에 불과한 캐나다의 작은 도시 울프빌의 경우 마을에 있던 오랜 영화관이 2000년 문을 닫자 '아카디아영화관 협동조합(Acadia Cinema Cooperative)'을 설립하고 멀티플렉스에서 상영하지 않는 영화를 보고자 하는 마을 주민을 위한 비영리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문화관광체육부(2015), 2015년 문화관광체육부 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서울연구원(2014),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38호

작성자 : 이봉구 교수(동의대학교)

정책용어

48. 전통시장

생성배경 전통시장은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재래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왔는데 2002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음 법률에 등장하였다. 이 법에서 「재래시장」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정의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관련법 제정과 개정[1]을 통해 재래시장이라는 용어가 낙후된 느낌이 강해 이름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명칭이 전통시장으로 변경되었다.

용어설명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전통시장을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해 상인과 소비자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상거래 방식이 유지·계승된다는 의미가 강조되었다. 또한 등록

1)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던 전통시장의 구분을 없앰으로써 기존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곳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등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명품시장은 한국의 맛과 멋, 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시장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활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시장을 말한다. 한국적 문화와 연계된 볼거리·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 개발,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제공으로 편안한 쇼핑환경 조성, 글로벌 홍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최대 3년간 50억원 이내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다.

지역선도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내·외국인 고객 유입촉진을 위한 지역 특화상품을 고도화하고, 상인 조직화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내 거점시장 및 글로벌 명품시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최대 25억원 이내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연계된 볼거리·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 개발, 고객 눈높이를 맞춘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지역 거점시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을 지칭한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전통시장이 보유한 고유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지역문화와 특산물,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 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문화관광 마케팅,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장별로 3년간 최대 18억원 이내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며 시장 규모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시장고유문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체험거리 조성(특성 발굴·개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관광자원 개발), ICT 융합, 동아리육성, 공동브랜드 개발 등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마케팅·교육·컨설팅·홍보 지원(시장 자생력 육성·강화) 등이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은 우리의 삶과 가장 맞닿아있는 곳, 도심과 주택단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각 시장만의 고유의 개성과 특색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즉 각 시장만의 특색있는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가 있는 "1시장 1특색"시장이다. 시장별로 1년간 최대 6억원 이내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며 중대형·중형·소형·초소형 등 시장규모별로 차등 지원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디자인접목[2], ICT융합[3], 핵점포[4], 상품개발[5] 등이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시장 1특색'이라는 이름으로 각 골목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1년간 210억 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장평가와 공단 서류심사를 기반으로 1차로 73개 사업 지원 대상 시장을 선정했다. 2016년 70개 시장, 2017년 57개 시장을 대상으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년간 총 200개 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지원예산의 50%는 국비로,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규모에 따라 예산을 차

2) 시장의 독특한 개성과 특색을 표현하기 위한 브랜드 개발, 상품디자인 및 공간 재설계 등 유기적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사업 지원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이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 취득 및 이용방법을 쉽게 찾고, 소비활동을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4) 상품 및 서비스 등으로 시장의 대표 점포 육성과 주요 TV프로그램, 일간지 기획기사 등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고객 유입 촉진

5) PB상품을 발굴 또는 개발하여 공동브랜화 하거나 전국 확산을 위한 프랜차이즈화,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레시피 개발 등 지원

등 지급받아 특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업종별 맞춤형 교육, 업종 전환자 전문교육, 세무교육 등을 제공해 상인들의 역량 강화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소진공은 상인 스스로가 시장 활성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인 회의와 교육을 지원하는 상인기획단 구성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소진공은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참고자료·문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http://www.sijangtong.or.kr)

작성자 : 채성주 연구위원(충북연구원)

정책용어

49. 정주자립권(定住自立圈) 제도

생성배경 일본은 지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가 예상되자, 지역 단위에서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형성하여 3대 도시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3대 도시권의 주민에게도 각자의 생활 유형에 따라 거주선택지를 제공하고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4월부터 전국에 전개되었다.

용어설명 일본의 시정촌(市町村)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중심시(中心市)의 도시기능과 주변 시정촌의 농림수산업, 자연 환경, 역사, 문화 등 지역적 특성이 가진 각각의 매력적인 자원을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지역 간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즉, NPO와 기업 등 민간과의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협력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며 지역 전체의 필요한 생활기능을 확보하여 지역에 주민이 정주(定住)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이다.

정주자립권의 이미지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1 정주자립권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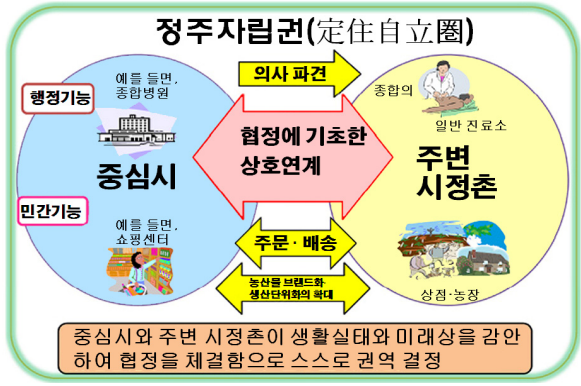

출처 : 일본 총무성(2013)자료로부터 인용

아울러 정주자립권 구상 추진의 개요는 중심시 선언, 주변 시정촌과의 협정체결, 공생비전 제시 등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2 정주자립권 구상 추진의 3단계

출처 : 일본 총무성(2013)자료로부터 인용

현재 용어의 사용 2009년 정주자립권 구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2015.8.1.기준) 94개 권역(순계 420개 시정촌, 총계 443개 시정촌(주변시정촌 중복 포함 시))의 정주자립권이 형성되었으며, 116개 시가 중심시를 선언하였다. 나가노현(長野県) 이이다시(飯田市) 등 중심시 76개 시가 주변 343개 시정촌과 정주자립권형성 협정 체결을 완료한 상황이다. 또한 아키타현(秋田県) 유리혼조시(由利本荘市) 등 24개 시가 정주자립권 형성 방침의 책정을 완료하였으며, 아오모리현(青森県) 하치노에시(八戸市) 등 89개 시가 정주자립권 공생 비전 책정을 완료하였다. 시정촌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약 1,700여 개 시정촌 중 420개 시정촌이 정주자립권 구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사례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상 시 일본의 정주자립권 구상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제도로 영국의 지역기업 협력 제도인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가 있다. 또한,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광역 단위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Oregon주의 Metro가 있으며, 이 기구의 경우 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기구가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문헌

- 신두섭(2013), 일본의 정주자립권 구상 최근 현황과 시사점, 지역발전위원회 토론회 자료
- 일본 총무성(2013), 定住自立圏構想の進捗状況今後の展開について
- 일본 총무성(2015), 全国の定住自立圏の取組状況について

작성자 : 신두섭 수석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50. 주택바우처 제도 (Housing Voucher Program)

생성배경 월세의 증가, 임대료의 상승 등 주택임대시장의 변화는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게 된 계기가 된다. 이는 안정적 주거생활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존재, 가족의 가치 및 국가에 대한 신뢰 등이 추구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개인의 주택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림 43 주거급여 지원절차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용어설명 '주택바우처 제도'란 저소득층의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대표적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으로 원래는 쿠폰, 증서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하나, 넓게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방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독일, 프랑스 및 스웨덴과 같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자가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2008년부터 도입이 제기되어 온 주택바우처 제도는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2~3곳의 1,5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대상 가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앞으로 최소 2년~최대 5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중에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주거급여 개편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4인 가구 189만원) 이하로 확대

○ 초기 행정·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43%로 설정, 제도정착에 따라 상향 검토

〈표 27〉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 지원

②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

○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기준임대료가 아닌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공제

*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

〈표 28〉 주택바우처 제도의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19.5	17.4	14.3	13.3
2인	22.5	19.5	15.4	14.3
3인	26.6	23.6	18.4	17.4
4인	30.7	27.6	21.5	19.5
5인	31.7	28.7	22.5	20.5
6인 이상	36.9	33.8	25.6	23.6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정책마당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49/DTL.jsp)

○ 4급지(1.서울/2.경기·인천/3.광역시·세종/4.그 외), 가구원수별로 구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자기부담분이 없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보조

* 생계급여 기준액 : 중위소득의 29% 이하, 4인가구 127만원

〈표 29〉 임차가구 지원기준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출처 : 마이홈, 주거급여 (https://www.myhome.go.kr)

③ 주거유형별 지원방법 차별화

○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

○ 자가가구에 대한 보조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 원까지 주택수선을 실시

〈표 30〉 개편제도 요약 비교

구 분	개편전 주거급여	개편 후 주거급여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지원 기준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좌동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 주택개량 강화
소요예산	• 7,285억원	• 약 1조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 9만 원	• 약 11만 원
전달 체계	• 지자체	• 좌동(주택조사는 LH에 의뢰)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급여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1)

해외사례

○ 선진 복지국가들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70년~1980년대 재정위기를 겪으며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데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각 나라별 주택 재고량의 부족현상이 점차 해소되고,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보다 민간공급이 더 효율적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다양한 형태로 도입된 것이다.

○ 최초 주택 임차료의 현금 보조정책은 1901년 네덜란드 주택법에 명문화된 것이 시초이며, 이후 본격적인 추진은 오스트리아(1968년), 프랑스(1977년), 독일(1977년) 등의 유럽국가에 이어, 호주(1978년), 영국(1982년), 스웨덴(1991년)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로 확산되었다.

○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에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1984년 시범적으로 임대료 바우처(Rental Voucher)를 도입하며 시작하였으며, 1998년 주택 선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가 소득의 30% 정도를 임대료로 지불하도록 운영 중이다.

※ 현재 지역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 노숙자, 기준 이하의 주택 거주자, 소득의 50%를 임대료로 지불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 전체 주거비 보조 가구는 약 495.2만 가구(전체 가구의 4.4%) 수준이며, 이 중 주택선택 바우처 가구는 208.5만 가구(전체 가구의 1.9%)이나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 주요 국가별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 현황

구 분	프로그램	목 적
미국	주택 선택 바우처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 임대료 부담 능력의 향상 • 빈곤층 밀집지역의 분산유도 • 기존 주택의 품질 향상 유도
영국	주거 급여(Housing Benefit)	• 최저소득의 보장
	지방주택 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 주거비 부담능력의 향상, 소득 보조
독일	주택수당 (Wohngeld)	• 주거비 부담능력의 향상 • 최저 주거기준의 충족
	사회보장의 주거 급여 (Housing Component of Sozialhilfe)	• 소득 보조

구 분	프로그램	목 적
스웨덴	주택 수당 (Housing Allowance)	• 주거비 부담능력의 향상, 소득보조 • 최저주거기준의 충족
	연금수령자 대상 주거 보조 (Housing Supplement for Pensioners)	• 소득 보조

출처 : 이종아(2012), KB daily 지식 비타민: 주택바우처 제도의 이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참고자료·문헌

- 국토교통부(2013), 주택바우처(주거급여), 정책마당, 주택 정책
- 박신영(2013), 주택바우처 도입에 따른 대안과 문제점 검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를 위하여-, 한국감정원, 부동산포커스, Vol.63: 39~48
- 박은철(2012),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정연 2011-PR-53
- 이종아(2012), KB daily 지식 비타민 : 주택 바우처 제도의 이해,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이코노믹 리뷰(2013), '[부동산용어] 주택바우처제도'
- 국토교통부(2015), 보도자료(새로운 주거급여 시행)
-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급여

작성자 : 황지욱 교수(전북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51. 지방 자주재원

생성배경 지방 자주재원에 대한 논의는 1985년 국무총리실 지방자치실시연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고,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재정하면서 지방 자주재원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용어설명 지방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는 의미에서 자주재원(자체재원)이라 부른다. 즉,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이와 대비되는 의존재원에는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이명박 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기존 지방세제의 틀을 대폭 개편하여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를 재원(세원)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세로 설정하고, 그 배분은 권역별 가중치를 고려한 배분지표를 활용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현행 주민세 소득을 그대로 명칭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포함한다. 한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방소비세 수입 중 일부를 지역 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비수도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4 국내 세목별 조세제도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국내 세목별 조세 제도).

참고자료·문헌

- 남황우(2006), 특집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세, No.5
- 이영희, 김대영(2006),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 불균형 완화,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 유태현(2009), 특집 : 이명박 정부 지방재정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발전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과 지방세, Vol. 24
-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pf.re.kr)

작성자 : 이정록 교수(전남대학교)

정책용어

5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생성배경 과거 성장 우선주의 시대의 지역정책은 지역총생산(GRDP)등 거시적 총량지표를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 대규모 산업단지, 대형 인프라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지역발전 사업이 추진되었다.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국민이 삶의 질을 더 중시하게 됨에 따라, 지역정책의 목표도 주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지역정책의 공간적 범위도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등 실체가 불분명하여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공간보다는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권 단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지역 정책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등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인한 지역갈등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어촌 등이 연계하여 상호 협력하는 상생의 지역발전 모델이 필요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확보,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지역 간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여건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연계·협력은 지역발전정책 중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인 지역행복생활권이 도입되었다.

용어설명 지역행복생활권[1] 연계협력사업은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단위로 하여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정책 사업이다. 연계·협력이란 두 개 이상의 주체가 관계를 맺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차원에서의 연계·협력이란 지역 내 연계·협력과 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지역 내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한 추진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지자체 간 협약·계약·약정 등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담하여 **단일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시설 등의 **허브화·광역화가 촉진**되거나 개별적으로 추진하였을 때보다 거래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공동으로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지자체마다 중복 추진하지 않고 관련 지자체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단일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별 지자체로서 수행하기 곤란한 대형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지자체간 특화된 자원·산업·기능·인프라를 **상호보완 및 연계하기 위한 제반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용어의 사용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기존 행정구역단위의 정책관행에서 탈피하여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주민 생활공간을 토대로 구성된 생활권에 기초생활인프라·교육·주민안전 등 주민체감형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연계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32개 신규사업을 선정하였고,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35개 신규사업을 선정했으며, 2015년 주민복지증진과 밀접한 님비해소, 주

1)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묶어서 생활권내 주민들에게 관련 시군구가 연계하여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16년 현재, 전국 63개 생활권 구성)

민안전, 일자리창출,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생활인프라 등 5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등 사업추진방식을 내실화하여 42개 신규사업을 선정하였다. 2016년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 및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지역에서부터 실현시키기 위한 31개 신규사업 선정되었고, '14년, '15년 계속사업에 450억원, '16년 신규사업에 2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림 45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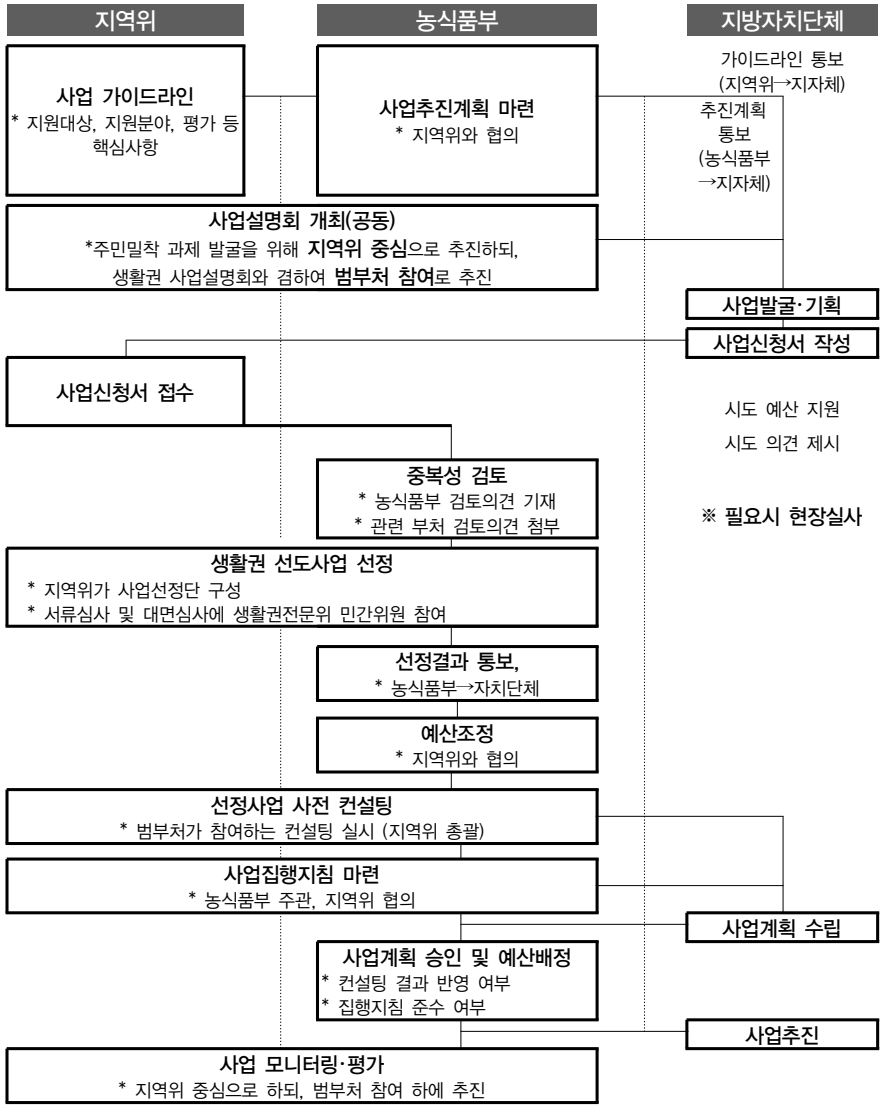

출처 : 2016년 지역발전사업 편람

해외사례 미국의 각 주에서는 지방정부 간 협력법(Interlocal Cooperation Act)을 제정하여 지자체 간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원 및 역량 부족으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접한 지방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시기 보편화 되어 있다.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홍수 통제, 행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건축물 관리, 교육, 보건, 공원·여가, 치안, 소방, 교정, 응급진료, 교통, 하수·폐기물 처리, 경제 개발, 도서관·박물관, 인력·장비·건물의 공동사용, 발전 및 송배전, 용수 공급 등 매우 다양하다.

참고자료·문헌

-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6), 2016년도 지역발전사업 편람
- 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해설집

작성자 : 윤태웅 전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53. 지역공동체/공동체복원

생성배경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취업여건이 악화되어 일자리 창출이 매우 부진하며, 도시화의 진전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의 공동체 터전이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고, 농어촌 지역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어 생활의 기초단위인 마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배경이 되어 지역공동체 복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발전이라는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

용어설명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생활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단위이다. 다의적 개념으로 지리적 영역(지역적 변수), 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변수), 공동유대감(문화적, 심리적 변수)이라는 세 가지 기본 개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함께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과 가치를 같이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현재 용어의 사용 지역공동체 관련사업의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마을 단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1970년대 이후부터 행정자치부와 농림

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도읍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만들기 사업 등이며, 작목반과 사업단, 영농(어)조합 등의 공동체 조직이 주체가 되어 정부와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해당한다.

둘째,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변화를 꾀하려는 활동이다. 자생적으로 조직화된 마을공동체 또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빈곤층 자활, 주거복지, 환경개선, 테마형 마을만들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조와 공조의 비영리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셋째, 기업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에 기초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말하며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해당된다.

넷째, 협동조합형 지역공동체로서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체 가치에 기초하여 공동 혹은 협동활동을 수행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이다. 전통적으로 '60년대 이후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자조합과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소비자를 위한 생활협동조합 등이 운영되어 왔으며, 개별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작지만 가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제를 발굴, 국민행복 정책 공감도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08년 취약주민 주거지역 내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시작, '10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년부터는 시설조성사업과 병행하여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조성사업을 추가하였다.

해외사례 일본의 지역공동체는 활동단체에 의한 NPO법과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설립에 대한 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의하여 시민기업가형, 7인 유지형, 지역공동체형, 실업자형으로 구분된다. 이탈리아와 영국, 핀란드 등 유럽의 지역공동체 사업은 환경형(자동차 렌트, 자전거 재활용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연계시스템의 강화)과 마을만들기형(지역식품의 유통망 확보를 통한 판매량 증가로 지역식품산업의 발전과 신선한 식품의 제공)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윤소영(2009), 공동체 활동 관련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승범(2008), Community 재생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주민학습 체계의 미래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 염돈민(2010), 지역공동체사업(CB)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브리프 제81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주민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KRILA Newsletter 제37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행정자치부(2015), 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공모지침

작성자 : 김봉원 연구위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정책용어

54. 지역문화지표

생성배경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진흥, 문화복지 등의 단계를 거쳐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를 거쳐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하면서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소프트 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체계적 자원개발 추진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의 대중적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역문화 개발·육성·발전 정책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문화 진흥정책 및 지역문화 사업수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수준 진단 및 성과 평가, 나아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용어설명 지역문화지표는 지역문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준거를 의미한다. 즉 지역의 문화적 지향과 가치에 근거하여 각종 문화현황과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수요의 흐름과 동향 등을 수리적(數理的)으로 판별하기 위한 항목의 체계적인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우리나라는 1983년 UNESCO의 권고에 따라 문화지표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1995년 민간차원의 문화예술 활동도 포함한 문화지표를 도출하였다.

〈표 32〉 지역문화지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자료 출처
지역문화 정책	정책수립	지역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유무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문화분야 발전을 위한 보고서 발행 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정책실행	기초자치단체 출현 지역문화진흥기관 설립 유무	재단진흥원연합회 제출자료
		외부 문화전문인력 고용건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지역문화관련 조례제정 및 입안 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정책예산	기초자치단체 예산 대비 문화정책 예산 비율	각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예산자료
		인구 천 명 당 문화정책 예산 규모	각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예산자료
지역문화 자원	문화유산	2012년 시도지정문화재 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2012년 등록문화재 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문화기반 시설	작은도서관 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인구 십만 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2012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면적 당 문화기반시설 수	2012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인구 천 명 당 서점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영화스크린수	영화진흥위원회 제출자료 2012 전국 극장 현황
		대표 공연장 및 전시장 어린이시설 유무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대표 공연장 및 전시장 장애인좌석 유무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문화시설 활용	대표 공연장 가동일 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대표 전시장 가동일 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문화자원	인구 천 명 당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지역축제 수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
		일인 당 장서수 증가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 관련 특성화지구 유무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자료 출처
		일인 당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경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
지역문화 활동	활동지원	문화원 총액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공모사업 총액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활동현황	전문예술법인 예술단체수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DB
		일인당 도서대여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예술프로그램수 증감률	안전행정부 2012 합동평가
	활동인력	학예사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안전행정부 2012 합동평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노동부 지정 공예분야 명인 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자료
		문화재 관리 인력 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문화관광해설사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지역문화 향유	문화향유	문화향유를 위한 무료공연 진행 건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문화예술교육강좌 개설 및 운영 건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문화복지	문화이용권 예산대비 집행률	안전행정부 2012 합동평가
		소외계층 대상 문화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다문화지원센터 설립유무	여성가족부 다누리 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자료
4개 대분류	12개 중분류	37개 세부지표	

2005년에는 문화환경 조응, 수용자 중심의 확보, 문화정책과의 연결, 국가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문화영역의 확장을 고려하여 새로운 문화지표를 도출하였다. 한편 2012년에 실시한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통해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의 대분류 이하 총 37개의

지역문화지표를 선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특별·광역시의 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도시 포함, 세종시(연기군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했다. 시·군·구 통합 전체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수원시였으며, 군 지역에서는 전라남도 강진군, 구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 일본 이시가와 현 가나자와시의 경우 창조적 활동, 도시생활, 창조적 도시 인프라, 역사유산·도시환경·쾌적성, 균형 잡힌 경제적 기반, 시민활동, 공공행정 등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문화지표를 개발하였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는 문화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발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표로서 문화영역(문화교육, 투자, 리더십), 문화자산(도시의 미적특징, 공간), 지역민의 참여정도와 성과(창의력, 연계성) 등 3개 측면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Americans for the Arts는 2012년 미국 내 모든 카운티(county)들의 문화예술생활의 폭, 깊이 그리고 특성에 대한 이해와 비교를 돕기 위해 예술 활동, 자원, 경쟁력, 그리고 지역의 문화 특징 등 4개 영역을 포함한 지역예술지표(Local Arts Index)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문화관광체육부(2013),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 적용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지역문화 정책 분석 및 발전 방안
- 아츠인덱스 홈페이지(http://www.artsindexusa.org)

작성자 : 이봉구 교수(동의대학교)

정책용어

55. 지역문화진흥법

생성배경 2000년대 들어서 '문화의 세기'가 주창되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 분권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관심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요구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체계와 법률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커졌다. 한편 다양한 지역문화의 가치를 계승하여 발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문화행정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문화진흥법은 2004년 12월 초안이 마련되고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통하여 의원발의로 법 제정이 추진되던 중 폐기되기도 하고 재발의(再 發議) 과정을 거쳐 9년이 흐른 2014년 1월 28일 법이 제정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동 법은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문화도시 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림 46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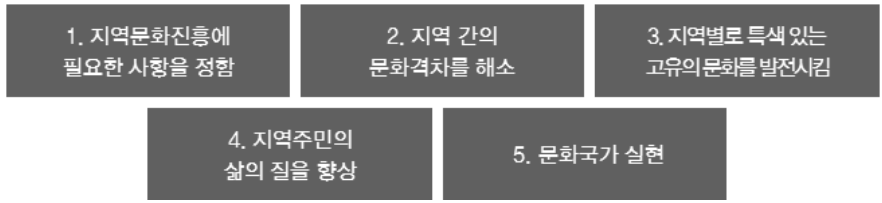

출처 : 조광호(201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용어설명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법 제2조).

동 법의 취지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6조 1항에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5년 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지역문화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은 첫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과 기준 제시, 둘째, 중앙정부와 지역의 정책 거버넌스 형성과 매개를 위한 기본 매체, 셋째, 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을 발생시키는 정책수단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1항 8번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

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림 47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1항

또한 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국가에 의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 법정 계획으로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률에 국가에서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계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 육성을 꾀하기 위함이다. 동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령 제4조 7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및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장).

또한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 활동 지원,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다(법 제3장). 법 제4장은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문화도시의 지정 및 취소,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지구의 지정·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대한 규정으로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 조광호(201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09),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발전방안

작성자 : 김향자 선임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용어

56. 지역브랜드

생성배경 서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딱딱한 이미지와 경직된 조직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식과 함께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기존의 행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수출·투자·관광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원산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용어설명 지역브랜드는 지역 그 자체의 브랜드와 지역의 특징을 살린 상품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브랜드의 가치를 함께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활동으로 지역브랜드의 개념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8 지역브랜드

출처 : 저자 작성

현재 용어의 사용 1991년부터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각 시·도에서는 지역홍보를 위한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특산품 브랜드 구축, 홍보 광고, 관광개발, 지역축제 운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홍보 및 발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시대부터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균형사회의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브랜드는 지역 PR(Public Relations) 및 마케팅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게 되었다.

해외사례 뉴욕, I♥NY

1966년 파업으로 뉴욕시 경제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John Lindsay 시장이 착안하여 Herald Tribune지의 한 기자는 'funny city'라는 표현을 만들어 냈다. 시장은 이 표현을 이용하여, 뉴욕시가 극장과 박물관이 풍부하고 문화적인 많은 일들이 생기는 도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캠페인으로 연결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뉴욕시 브랜딩 시도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1970년대 재정위기의 막바지에 전개되었다. 당시 시내에서 범죄는 창궐하였고, 금고는 비었다. 기업과 종업원들은 도시를 떠났다. 공포가 도시를 엄습하였고 관광은 쇠퇴일로에 있었다. 도시는 과거의 영화와 위용을 잃어버렸다. 1975년 뉴욕 주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광고회사와 연계하여,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I Love New York(I♥NY)'의 초안을 탄생시켰다. 1976년 뉴욕 출신의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 Milton Glaser가 현재의 'I♥NY' 로고를 완성하였다. 그 이후 'I♥N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 캠페인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다양한 기념품에 연계되어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한광식 외(2012), 농업 4.0 시대의 지역브랜드 성공전략, 백산출판사
- 이소영(2012),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지역브랜드 육성 전략, 지역발전위원회
- 한충민(2012), 지역브랜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역발전위원회
- 박준수(2011), 행정프로세스 관점에서 본 지역브랜드 활성화 방안 – 광주, 전남 지자체 브랜드 관리실태를 중심으로
- 신순철 외(2010), 지역브랜드가 살아야 지자체가 산다, 디지털북스
- 한국지역진흥재단(2010),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한국지역진흥재단
- 염명배(2010), 지역브랜드 가치와 지방재정 : 7대 도시를 중심으로
- 강형기(2010), 지역브랜드의 개발과 경영
- 김미희, 박덕병, 노경희, 손은호(2010),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개발

작성자 : 한광식 교수(김포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57. 지역특구

생성배경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발전을 제도적으로 하고자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2004년 3월「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정을 통하여 도입하였다.

용어설명 지역특구 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여, 각 지역이 특색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03.6월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낙후지역 대책수립, 공공기관 지방이전, R&D 지방지원 비율확대 등)중 하나로 시작되었으며 '04.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타법개정 포함)을 통해 현재 58개의 법률에 대한 129개 규제특례가 법제화되었다.

지역특구 제도의 주요 특징 지역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

로운 모멘텀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특례 이외 재정·세제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 타 유사제도와 차별화된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개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부처의 예산사업에 참여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고유의 특화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특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특구지정은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 공청회·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기업청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특례 관련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지역특구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지역특구를 지정·고시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역특구제도의 실효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매년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를 활용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특구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16. 7월 현재 134개 지자체에 178개 지역특구가 지정·운영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04년 12월 최초 지정 이후 '09년부터 연평균 10여 개 내외의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해왔다.

〈표 33〉 지역특구 신규 지정 현황

년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7월 현재	합계
특구 수	6개	30개	28개	25개	21개	14개	11개	8개	3개	5개	8개	11개	8개	178개

※ '05년 35개 지정 5개 해제, '06년 31개 지정 3개 해제, '08년 22개 지정 1개 해제

초기 농수산, 특산물 등 1차 산업 중심에서 최근에는 2·3차 산업(제조업, 에너지, 관광 등)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는 추세이다.

* 향토자원 85개(47.8%), 관광레포츠 43개(24.2%), 교육 28개(15.7%), 산업연구(의료(4개) 포함) 22개(12.3%)

시도별로 보면 전남(35개), 경북(27개), 충남(18개), 전북(16개), 충북(14개), 강원(14개),경남(13개), 경기(12개), 등 전국 지자체에서 고루 활용하고 있다. 현행 129개 규제특례 중 74개 규제가 총 833회 적용되어 지역특구 당 평균 4.7개의 특례가 적용되었으며 규제특례별로는 옥외광고, 도로통행, 농지의 임대 등 일반특례, 농지의 전용,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이용 특례, 식품표시기준 등 권한이양 특례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해외사례 1980년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에 도입된 프리코뮌(Free Commune),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 등이 있다.

참고자료·문헌

- 국회 예산정책처(2010),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평가
- (사)한국기업평가원(2012), 지역특구 성과평가를 통한 지역특구제도 발전전략
- 한광식, 광역경제권 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정책, 월간「국토」
- 산업통상자원부(2011), 지역특구연례보고서
- 중소기업청(2016),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현황

작성자 : 이여진 책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책용어

58. 창조경제타운

생성배경 최근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John Howkins가 2001년에 발간한 '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조경제를 처음 언급하였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및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 등장하였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의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종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성장,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재도전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염원과 함께 국민 아이디어가 마음껏 사업화될 수 있는 창조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안내되어 온 창업·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민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을 지향하는 창조경제타운이 2013년 9월 30일에 신설되었다.

용어설명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가치화하는 대한민국 사업 아이디어 플랫폼'을 기치로 내걸고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 주도의 아이디어 플랫폼이다.

그림 49 창조경제타운 메인화면

출처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지원 프로세스는 아이디어 제안, 멘토링, 사업화 지원으로 구분된다. 창업 혹은 사업화에 관심 있는 국민이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창조경제타운에 등록되어 있는 멘토로부터 전문적인 멘토링을 받

을 수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발된 유망 아이템의 경우 창조경제타운과 연계되어 있는 민간, 공공 창조경제 지원 사업에 추천하여 실질적인 사업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조경제타운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회원의 아이디어를 접수받기 때문에 아이디어 제안에 제한이 없다. 아이디어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태생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에 기회를 주고자 문턱을 대폭 낮추어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조경제타운 역시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 지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회원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멘토링, 온라인 동영상 교육 등 많은 회원에게 창조경제타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유망한 특정 아이디어에만 국한된 지원이 아니라 보다 많은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수요자 전체의 창업, 사업화 역량 강화 목적을 띈 복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 창조경제타운이다.

창조경제타운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지식기부를 통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한다. 사업화, 창업 단계별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자, 투자자, 경영 및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 다양성을 통한 창의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 및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된 다양한 성공사례 체험 및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창의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세 번째, 국민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의 혁신이 가능하다.

현재 용어의 사용 (현황)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3년 동안 회원 수 11만 8천여 명, 아이디어 3만 7천여 건, 방문자 수 340만여 명, 페이지뷰 2천 4백만여 건, 사업화

지원 아이디어 1만 1천여 건으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로 선발이 될 경우 인큐베이팅 아이디어로 구분하여 창업 및 사업화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계획) 2016년 9월 말부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읽을거리 강화 및 연관 콘텐츠 서비스, 타운 자체 공모전 진행 확대, 멘토링과 평가를 분리한 아이디어 지원 프로세스, 아이디어 공개멘토링 및 평가, 모의투자 등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활용하여 창조경제 혁신 활동을 확산해 왔다.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는 아이디어와 자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한 회원들에게는 투자 금액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금전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꿈 공장으로 알려졌던 쿼키(Qurky)는 2015년 9월 22일 파산했다. 쿼키는 개인의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로 냉장고 안에 계란이 몇 개 남아있는지를 스마트 폰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장치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제품을 판매했었다. 한때 GE 등에서 1억 8천 달러 투자를 받고 1억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으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들어간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게 파산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후 플렉스(Flex)에 인수되어 새롭게 오픈하였으며, 현재는 커뮤니티 주도의 발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Y 콤비네이터(www.ycombinator.com)는 아이디어 제안자의 창업 역량을 육성해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아이디어와 자금을 연결하는 측면에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유사하지만, 시드 자금을 제공하고 자문, 네트워크 등의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자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큰 차별점이 있다.

또한 이노센티브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플랫폼으로 외부 전문가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다.
이외에도 캐글(www.kaggle.com), 나인시그마(www.ninesigma.com), 테크숍(www.techshop.ws) 등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 존재한다.

〈표 34〉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현황

구분	자본주의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창조경제타운)	글로벌 혁신 플랫폼
설립 주제	민간 주도	정부 주도	국제기구 주도
지원 대상	우수한 아이디어 제안자	모든 아이디어 제안자	모든 개발도상국의 아이디어 제안자
운영 방향	우수한 아이디어의 선별 지원	모든 아이디어의 발전 및 구체화 아이디어 제안자의 역량 강화	모든 아이디어의 발전 및 구체화 아이디어 제안자의 역량 강화
아이디어 멘토링	VC 전문가	재능기부 형태의 전문가	재능기부 형태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전문가
사업화 지원	직접 제작 및 벤처캐피탈(VC) 연계	시제품 제작, 자금, 유통판로,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부/민간 연계	시제품 제작, 자금, 유통판로,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지원 연계
수입 분배	아이디어 제안자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플랫폼 참여자	아이디어 제안자	아이디어 제안자 (개발을 선진국에서 하는 경우 일부 수익 배분 가능)
핵심 가치	수익 창출	창의도전 문화 확산	개발도상국 혁신 문화 확산 및 현안 해결

참고자료·문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년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5.11.20., 제2의 새마을운동 창조경제의 현황과 미래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www.creativekorea.or.kr)

작성자 : 송용준 팀장(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59. 창조도시

생성배경 창조도시는 유럽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부터 지속된 각종 도시문제(산업 공동화, 실업, 범죄, 공동체 해체, 도시 재정위기 등)에 대해 전통적인 도시 관리 방식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용어설명 창조도시(Creative City)에 대해 학자마다 다소 다른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며 지속적인 영감을 주는 재화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산·유통·향유·학습하는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임상오). 리차드 플로리다(R. Florida)는 창조계층이 원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갖춘 도시를 창조도시라 정의하고 창조도시의 요건으로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정부는 창조도시 대신에 창조지역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창조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지역이란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비교우위의 사업 아이템을 통해 지역의 잠재능력과 정체성을 찾고,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창조지역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사업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2011년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매년 50억 원 내외의 규모로 20여 개 창조지역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해외사례 창조도시의 대표적 사례로 이탈리아의 볼로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을 들 수 있으며 일본의 마치즈쿠리(마을 만들기)로 유명한 가나자와, 오사키 등도 창조도시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35〉 창조지역 선정사업(2015년)

부처	지자체	사 업 명
행정자치부	경기(파주시)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강원(영월군)	영월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
	충북(영동군)	금강 따라 걷는 삼도 삼미 삼락 사업
	충북(증평군)	도깨비 이야기 학당(學堂) 만들기
	충북(괴산군)	한국형 창조농업 개발사업
	충남(서산시)	문화예술 향기를 머금은 솔마당 창조마을 만들기
	전북(정읍시)	전통문화 재생산 플랫폼 구축
	전북(순창군)	동네목수 양성소 마을건축학교
	전남(강진군)	음악으로 하나되는 '하모니 강진' 만들기
	전남(구례군)	야화(野花)의 베일을 벗기다. 야생화 오감만족 프로젝트
	전남(완도군)	섬, 주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주민공동체 '완도 섬 여행등대'
	경북(안동시)	벽화마을 재생 프로젝트(날아라! 달동네)
	경북(상주시)	느림의 미학 국제슬로시티-상주명가 전승 및 명품화사업
	경북(봉화군)	천년의 숨결을 되살린다-춘양목 나무사랑 학교
	경남(고성군)	공룡 콘텐츠 활용 활력 넘치는 공룡나라 만들기
	경남(합천군)	전국 유일의 "대평 군물" 농촌전통문화 콘텐츠 사업
	제주(서귀포시)	Archtrail – 아름다운 서귀포 건축기행
국토교통부	대전(서구)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행복 갑천 만들기
	전남(순천시)	생태창조체험의 메카, 유유낙락(遊遊樂樂) 향림골 만들기

참고자료·문헌

- 임상오(2008), 창조도시, 월간「국토」8월호
- 지역발전위원회(2010), 창조지역 가이드북
- 지역발전위원회(2010), 지역과 발전 창간호
- 지역발전위원회(2015),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자 : 송우경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60. 창조지역사업

생성배경 창조지역사업의 주요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발전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발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그동안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온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지역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비교의 비극'을 탈피하여 지역마다 고유의 정체성을 찾고 차별화된 잠재력을 살려 스스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설물 건립, SOC 등 하드웨어 위주의 지역개발사업보다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지역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연자원, 역사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새롭고, 특색 있는 사업을 설계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고양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려면 감성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발전과 관련한 지자체의 자구적·창조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등을 통한 민간의 참여 확대가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시대적 상황에서 창조지역사업은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 협력적·융복합적 지역개발에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그림 50 창조지역사업의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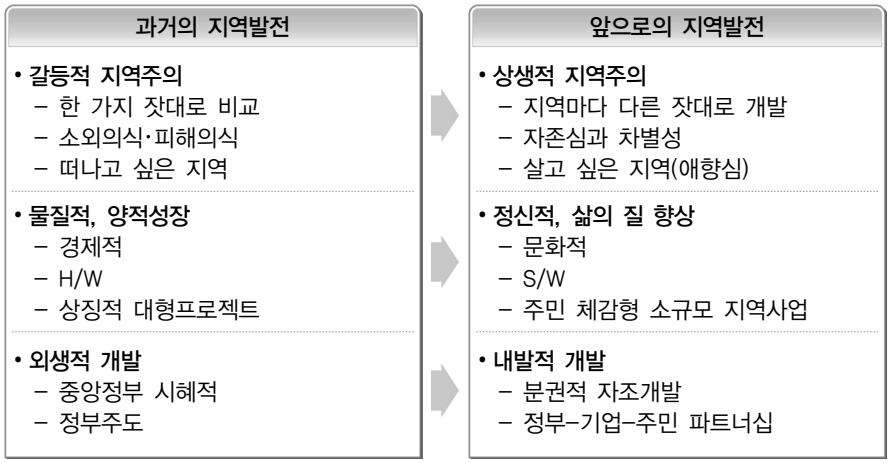

출처 :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대회(2010.4.21)

용어설명 창조지역사업은 2011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역별로 차별적인 사업(Only-one)을 발굴하여 지역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①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②창의적 발상으로 ③지역 주민의 참여하에 ④일차적으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이루어지는 ⑤중장기적 관점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창조적 발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각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콘텐츠 만들기에 집중하여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살고 싶은 내 지역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특징이자 핵심 내용이다.

〈표 36〉 창조지역사업의 주요유형

유 형	내 용	비 고 (키워드)
창조 산업형	• 개인 및 단체의 창조적 보유자원(저작권, 특허권, 무형문화재 등) 및 역량에 기초한 창조산업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지식+산업
지역 재생형	• 유휴시설 활용, 경관/미관의 창조적 조성 등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역이미지 및 인프라 개선	관광, 주민복지
자원 창조형	• 지역의 전통자원이나 전통산업 등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 창의적 인재 및 예술가 등이 밀집되어 있거나 그와 같은 자원을 창조적으로 개발·육성	전통문화/생태 자원, 창조계층
인재 육성형	• 문화예술, 정보화, 첨단지식 교육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창조성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킴	창조계층

출처 : 2016년 지역발전사업 편람(2016.9.13.)

현재 용어의 사용 지역발전위원회는 창조지역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9년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창조지역 개념화, 관련 사례 수집, 사업구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0년에는 「창조지역 가이드북」을 제작,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여 창조지역사업 기획·집행에 참고토록 하였다.

그림 51 창조지역사업의 선정 및 예산 반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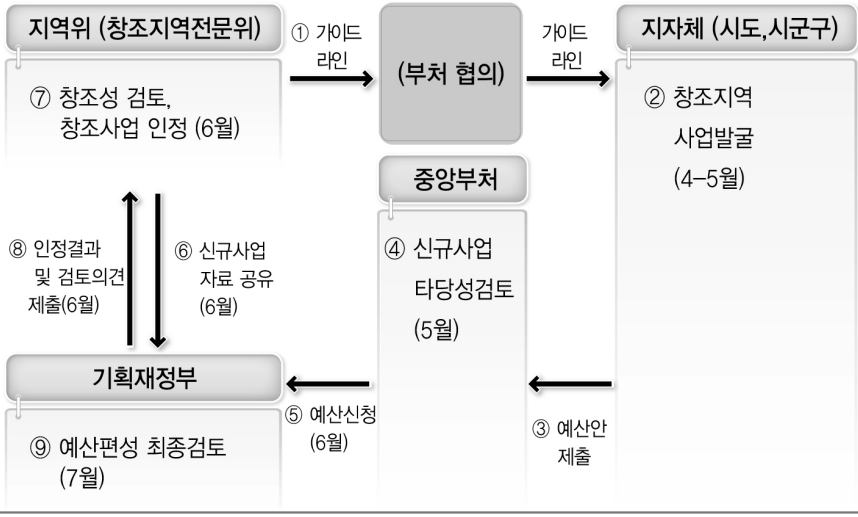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2013.2)

창조지역사업의 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활용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시군구에서 신규 사업으로 생활권 사업의 해당 부처(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부처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창조지역사업으로 2011년 13개, 2012년 13개, 2013년 19개(녹색성장사업 4개 포함)이 선정되었고, 2014년 27개, 2015년 21개, 2016년에는 신규 지원대상사업으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19개를 기선정하였다. 지원현황('11~'16년)을 살펴보면 특수상황지역개발 분야(행정자치부 소관) : 총 5건, 도시활력증진 분야(국토교통부 소관) : 총 13건,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총 96건으로 총 114건이다.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당 1~3년간에 걸쳐 매년 10억 원 내외의 예산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포괄보조금 신규 사업 예산으로 추가될 뿐 아니

라, 국고보조율도 기존 사업보다 10%p 추가 적용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1)]

창조지역사업이 창의적 발상으로 지역자원의 활용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므로, 사업내용도 문화예술(정선군 '아리랑의 고향 정선 조성(2011년)', 강진군 '시가 꽃피는 마을(2014년)' 등) 외에도 지역특화자원(전주시 '막프로젝트(2011년)', 남원군 '남원미꾸리 특화자원화(2013년)' 등), 지역재생(대구중구 '대구 읍성 상징거리 조성(2012년)', 진천군 '농다리를 지켜낸 천년의 생태마을 만들기(2014년)' 등), 평생학습(대덕구 '배달강좌제 50(2011년)', '칠곡군 인문학도시 조성(2012년)' 등), 관광자원(홍천군 'Time Odyssey in 홍성(2013년)', 산청군 '가야시대로 떠나는 꽃잔디 여행(2014년)' 등), 농업·식품(순천시 '문화로 가꾸는 경관농업(2011년)', 장수군 '강소농 맞춤지원 3농 재생 프로젝트(2012년)', 칠곡군 '무탄소유기농 마을성공모형개발사업(2013년)' 등), 생태환경(합천군 '탄소제로 그린파크 교육콘텐츠 개발(2014년)' 등) 등과 같이 지역별 특화자원 및 장점을 살려 다양한 내용들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창조지역 사업별·지역별 컨설팅을 통하여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74개 사업에 대해 국비 544억 원을 지원하였음.

〈표 37〉 창조지역사업 성공사례 예시(2014년 말 기준)

완주군 두레농장 상생네트워크	장수군 축산분뇨 활용 3농 재생
• 10개 마을의 개별 운영 농장을 네트워크화 → 농작물의 독자브랜드화 실현 • 공동포장재 및 CI 개발, 공동마케팅 등 • 139개의 일자리와 6억 원의 소득증대	• 버려지던 축산분뇨의 퇴비화 성공 • 농가별 특성에 맞는 작목방식 보급 → 농업생산비 절감 • 전북평균보다 25.8% 높은 농가소득 실현
인제군 산나물 육성	**예천군 꿀벌 종봉단지 조성**
• 인터넷 직거래, 축제, 채취 체험행사 등을 통한 산나물 정보 제공 • 산나물의 '생산-가공-마케팅-외식-관광' 6차 산업화 육성 • 200종 산나물DB → 모바일 앱서비스	• 우수 품질의 꿀벌 품종개발 → 전국 2만 양봉농가에 대량보급체계 구축 * 꿀벌육종연구센터를 통해 개발 • 꿀 수집능력 31% 향상 꿀벌 개발 • 양봉농가의 소득증대(700억 원) 기대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14.11-12월, 4회)

참고자료·문헌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4.11~12), 창조지역사업 성공사례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3.9.27), 2014년 신규 창조지역사업 선정
- 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 지역발전위원회(2013), 창조지역사업 현장을 가다
- 지역발전위원회(2010), 창조지역 가이드북
-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6), 2016년 지역발전사업 편람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61.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생성배경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작한 개발 사업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하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었고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15개 시·군 및 도서지역 19개 시·군·구의 185개 도서를 사업 대상 범위로 한다.

용어설명 특수상황지역이란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이러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반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접경 15개 시군과 186개 개발대상 도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현재 용어의 사용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을 기준으로 자치단체 자본을 보조받아 지원을 받았으며,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가 주관하여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2010년부터 통합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신규사업선정, 사업추진관리, 지자체공무원과 지역주민 역

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신청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기존에 진행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한도액을 배정하여 한도 내에서 계속사업을 신청(시군구 → 행정자치부)하면 된다. 현재 매년 약 1조 9,000억원 규모를 지원해 왔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표 38〉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주요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예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도로, 상하수도, 주택, 통신 인프라 구축, 개발대상도서(연육·연도교) 접근성 제고
지역소득증대	유통·가공시설,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 등 체험관광 시설 등
지역경관개선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마을보호수 정비, 경관주택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훈련, 홍보 및 브랜드 제고, 기본계획수립비 등 S/W사업

참고자료·문헌

- 행정자치부 공식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 지역발전사업 편람(2016), 지역발전위원회

작성자 : 은희창 이사(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정책용어

62. 평생학습도시/행복학습센터

생성배경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센터는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동까지 이어지는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 완성을 통한 모든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평생교육진흥원(시·도), 평생학습도시(시·군·구), 행복학습센터(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추진체제 일환으로 구축되었다.

용어설명 평생학습도시는 시·군·구 시책과 연계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해 학습공동체 형성 및 학습형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첫째,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 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 운동을 추진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에 대한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를 통해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 교육운동을 전개한다. 셋째, 지역별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재능기부 등 사회환원 활동으로 연계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넷째, 정책개발,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기관 연계체제 구축, 박람회 개최 등 평생교육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

으로 기 지정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한 평생교육 특화사업 개발·운영 촉진을 위한 특성화 평생교육 사업을 지원한다.

그림 52 평생학습도시 전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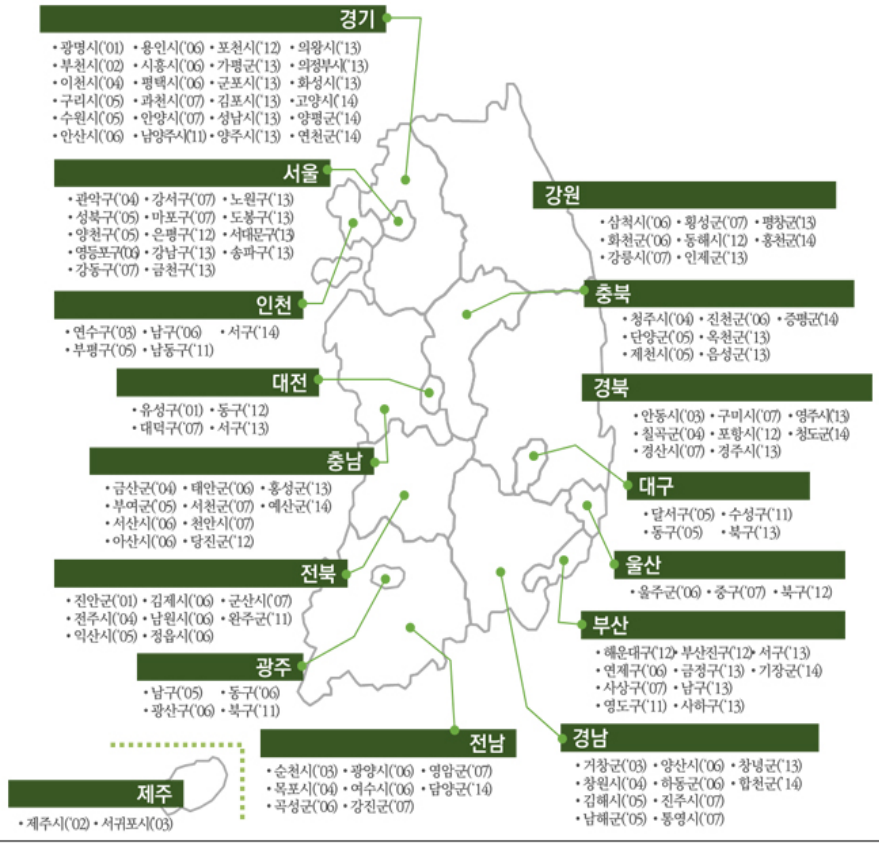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행복학습센터) 행복학습센터는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하여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첫째,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며, 세부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통한 시설·공간 확보, 행복학습센터 공통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마을단위 창조학습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 둘째, 평생교육 전문인력 및 행복학습매니저를 확보 및 배치한다. 전담인력 배치로 읍·면·동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각 센터간 연계·협력을 추진하며, 거점센터인 평생학습도시는 전문인력 필수, 읍·면·동 센터는 행복학습매니저를 양성 후 배치한다. 주민 대상으로 평생학습과 사회실천에 참여하도록 돕는 학습 및 취업상담을 하며, 이때 학습메니저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 주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그림 53 행복학습센터 전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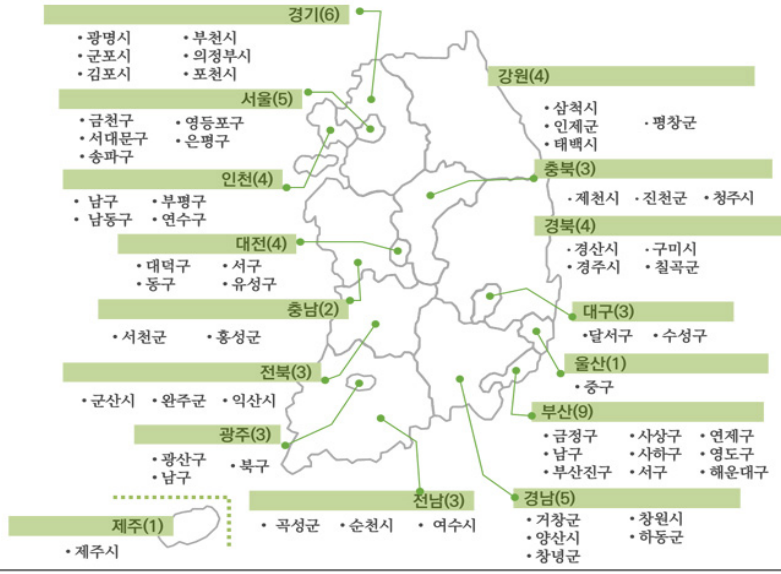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현재 용어의 사용 200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평생학습도시는 '15년 신규 지정 7개를 포함, 현재 총 136개가 운영 중이다.

(행복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14.1.)으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 92개 시·군·구에 1개의 거점센터 및 3개 내외의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참고자료·문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le.or.kr)

작성자 : 정택영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용어

63. 행복주택

생성배경 철도나 유수지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도심공동화와 함께 문화지체현상 등 사회적 아노미현상이 점차 만연하고 있는 시점에서 2013년 4월 1일 정부에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행복주택 시범사업 지구지정을 제안하였다.

용어설명 행복주택은 도심 내 낙후지역에 건설되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물량의 60%를 젊은 사회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므로, 문화적 이용 및 경제적 소비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아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철도로 단절되어 있던 공간을 연결하고, 공공문화복합공간을 개발하여 기존 거주자들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하며, 단지 내 복합상가 단지와 함께 소규모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창업·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짐으로서 입주민 기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행복주택 선정기준은 개념에 부합하는 도심 내 철도부지 및 유휴 국·공유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 가운데 임대수요가 충분한 수도권 도심지를 우선 선정하되,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배치한다. 한편,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의 효과가 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그리고 도심재생효과, 입체개발 및 복합주거타운 조성여건이 양호한 낙후지역 및 유휴 토지를 우선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3월 현재 서울·부산시 등 11개 시·도에서 제안한 49곳(1만8천호) 사업을 선정하여, 정부목표(14만호)의 80%수준인 11만호에 대한 입지를 확정하였다. 특히 지자체 공모를 추진하면서 국공유지 활용형, 도시재생형, 산업단지 직주근접형 등 사업모델을 다양하게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54 2015년 행복주택 추진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는 ’14년 5천호 → ‘15년 9천호 → ’16년(상반기) 1만6천여호 등으로 늘어나면서 젊은층 유입을 원하는 지자체들의 염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 취지가 부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산시의 경우 젊은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청 앞 중심지역에 행복주택 2천호를 추진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사례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행복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철로상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다. 특히 프랑스 리브고슈(Rive Gauche)가 대표적이다. 선로로 단절된 센 강 변과 인접 13구역을 폭 100m, 길이 3㎞, 면적 약 200만㎡의 인공대지로 연결하여, 주거기능 30%, 업무·상업기능 35%, 교육기능 10%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1985년 시작하여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참고자료·문헌

- 국토교통부 공식블로그 토통이네(2013.11), 행복주택 현장 (가좌지구) 방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
- 동아일보(2013.9.27), 행복주택 11월 2차 선정
- 한국토지주택공사(2013), 행복주택 사업안내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3. 1), 행복주택, 이제는 지자체가 앞장선다
-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www.molit.go.kr/happyhouse/info.jsp)

작성자 : 장효천 원장(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정책용어

64. 혁신도시

생성배경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非)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자립적·혁신적 발전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용어설명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의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며, 개발규모는 자연경관 보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250인~350인/㏊ 수준의 중·저밀도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애초 157개였으나 '공공기관 선진화'(2008년. 8월)에 따른 기관 통폐합 이후 혁신도시로의 이전기관은 115개로 조정되었으며, 2016년 7월 현재 13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전국 10곳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의 부지조성사업은 2016년 7월 현재 공정률이 100.0%

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해외사례 우리나라의 혁신도시와 유사하게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의 촉매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로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를 들 수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프랑스 분산정책과 연계하여 남부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토대로 세계 10대 지식기반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 39〉 공공기관별 이전 현황 ('16. 4.30준)

이전 지역	종전 지역	소관 부처	기 관 명	이전 예정일	비 고
총 계			154개 기관		
부산 혁신 도시 (13)	안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7.12	
	마포구	국무조정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3	이전완료
	인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12.12	이전완료
	영등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14.12	이전완료
	강남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14.12	이전완료
	중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14.12	이전완료
	여의도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14.12	이전완료
	동대문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13.10	이전완료
	마포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13. 9	이전완료
	서대문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13.10	이전완료
	중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4. 9	이전완료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부발전(주)	'14.10	이전완료
	고양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5. 3	이전완료
대구 혁신 도시 (11)	서초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15.11	이전완료
	중구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10	이전완료
	서초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14. 3	이전완료
	서초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15.10	이전완료

이전 지역	종전 지역	소관 부처	기 관 명	이전 예정일	비 고
	강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13. 8	이전완료
	마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14.12	이전완료
	영등포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12.12	이전완료
	성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14. 9	이전완료
	구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14. 1	이전완료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10	이전완료
	중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15. 7	이전완료
광주 전남 혁신 도시 (16)	영등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4.12	이전완료
	동대문	국무조정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7	이전완료
	의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14. 9	이전완료
	수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13.12	이전완료
	서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10	이전완료
	종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4. 4	이전완료
	마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14. 5	이전완료
	송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 2	이전완료
	용산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14. 6	이전완료
	서초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17.12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14.11	이전완료
	성동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KDN㈜	'14.12	이전완료
	성남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KPS(주)	'14.11	이전완료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	'14.10	이전완료
	광진구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정보센터**	'13. 3	이전완료
	안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17.12	
울산 혁신 도시 (9)	의왕	국무조정실	에너지경제연구원	'14.12	이전완료
	영등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4. 3	이전완료
	안양	고용노동부	**노동부고객상담센터**	'12.12	이전완료
	마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4. 5	이전완료
	인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 2	이전완료

이전 지역	종전 지역	소관 부처	기 관 명	이전 예정일	비 고
	마포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5.12	이전완료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동서발전㈜	'14. 6	이전완료
	안양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14.11	이전완료
	용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17.12	
강원 혁신 도시 (12)	중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5.12	이전완료
	서초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3.12	이전완료
	중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14.12	이전완료
	서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12	이전완료
	마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5.12	이전완료
	화성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14. 5	이전완료
	의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14.12	이전완료
	동작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15. 6	이전완료
	종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	'15. 8	이전완료
	양천구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3.11	이전완료
	서초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6.12	
	마포구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17. 3	
충북 혁신 도시 (11)	서초	공정거래위	한국소비자원	'14. 8	이전완료
	서초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12	
	과천	국무조정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 6	이전완료
	서초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개발원	'17.12	
	강남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7.12	
	영등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14. 9	이전완료
	용인	법무부	**법무연수원**	'15. 3	이전완료
	과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4. 5	이전완료
	시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13.12	이전완료
	송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 6	이전완료
	과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6.10	
전북 혁신	영등포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13.11	이전완료
	수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4. 7	이전완료

이전 지역	종전 지역	소관 부처	기 관 명	이전 예정일	비 고
도시 (12)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4. 8	이전완료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5. 3	이전완료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15. 3	이전완료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15. 4	이전완료
	화성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15. 2	이전완료
	강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5. 7	이전완료
	송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15. 6	이전완료
	강동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14. 6	이전완료
	성남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식품연구원	‘17.12	
	수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13. 8	이전완료
경북 혁신 도시 (12)	성남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14.11	이전완료
	안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14. 4	이전완료
	강남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관리공사	‘15.12	이전완료
	강서	기상청	**기상통신소**	‘13. 6	이전완료
	안양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12	이전완료
	안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15.12	이전완료
	안양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14. 7	이전완료
	서초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14. 4	이전완료
	양천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 3	이전완료
	용인	조달청	**조달청품질관리단**	‘13.12	이전완료
	광진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13. 4	이전완료
	용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기술(주)	‘15. 8	이전완료
경남 혁신 도시 (11)	강남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13. 2	이전완료
	수원	국토교통부	주택관리공단	‘15.12	이전완료
	안산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15.12	이전완료
	성남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15. 4	이전완료
	강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15. 7	이전완료
	동대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14. 5	이전완료
	영등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14. 7	이전완료

이전 지역	종전 지역	소관 부처	기 관 명	이전 예정일	비 고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동발전㈜	‘14. 3	이전완료
	금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세라믹기술원	‘15. 3	이전완료
	구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5. 3	이전완료
	서초	국민안전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6.12	
제주 혁신 도시 (8)	수원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15. 9	이전완료
	강남	국세청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5. 9	이전완료
	마포	국세청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15.10	이전완료
	수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2.12	이전완료
	영등포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13. 5	이전완료
	서초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16.12	
	서초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16.12	
	강남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15. 9	이전완료
세종 (20)	서초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기술연구회	‘14.12	이전완료
	안양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15.12	이전완료
	서초	국무조정실	한국법제연구원	‘14. 1	이전완료
	송파	국무조정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10	이전완료
	서초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4.12	이전완료
	동작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12	이전완료
	서초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12	이전완료
	동대문	국무조정실	산업연구원	‘14.12	이전완료
	동대문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13.12	이전완료
	고양	국무조정실	한국교통연구원	‘14.12	이전완료
	영등포	국무조정실	한국노동연구원	‘14.12	이전완료
	은평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12	이전완료
	강남	국무조정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12	이전완료
	서초	국무조정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12	이전완료
	은평구	국무조정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12	이전완료
	서초	미래창조과학부	산업기술연구회	‘14.12	이전완료
	안양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15. 9	이전완료

이전 지역	종전 지역	소관 부처	기 관 명	이전 예정일	비 고
			교육문화정보원		
	군포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15. 8	이전완료
	안양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5. 9	이전완료
	인천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	'15. 2	이전완료
아산	인천	경찰청	**경찰교육원**	'09.11	이전완료
아산	용인	경찰청	**경찰대학**	'16. 2	이전완료
아산	동대문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13. 8	이전완료
천안	수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08. 2	이전완료
아산	안산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10.10	이전완료
논산	고양	국방부	**국방대학교**	'17. 6	
오송	은평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0.12	이전완료
오송	동작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12	이전완료
오송	은평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12	이전완료
오송	은평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0.12	이전완료
오송	은평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0.12	이전완료
원주	강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13.10	이전완료
대구	남양주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14.11	이전완료
경주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15.12	이전완료
보령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부발전㈜	'15. 5	이전완료
태안	강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서부발전㈜	'15. 8	이전완료
경주	용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08. 2	이전완료
여수	인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13.11	이전완료
전북	수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6. 7	

* 혁신도시 관련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에서 제공.

참고자료·문헌

- 국토교통부(2015),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균형발전위원회(2005), 동북아시대의 한반도 공간구상과 균형발전전략국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작성자 : 송우경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65. 협동조합

생성배경 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경제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협동조합 기업이 물가인상을 막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튼튼한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생산자협동조합은 경제위기에서도 지역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협동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UN은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모인 자율적이고 자발적 조직인 협동조합이 공동소유와 민주적 관리 기업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 방식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존 시장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의 자생력을 강화할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설명 협동조합은 투자자 소유회사(영리회사)와 대비되는 '이용자 소유회사'이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association)'로 정의하고 있다.

〈표 40〉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상장회사)
소유 제도	소유자	조합원	주주(주식소유자)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출자 제한 없음
	지분거래	없음	지분거래 가능
	가치변동	출자가격의 변동이 없음	주식시장에서 수시 변동
	투자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통제 제도	의결권	– 1인 1표 – 다수의 평등한 지배	– 1주 1표(주식 수에 비례) – 소수 대주주의 지배
	경영기구	–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대주주의 자체 경영
수익 처분 제도	내부유보	–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 유보	– 내부유보는 제한적
	이용배당	–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 출자배당에 선행함	– 없음
	출자배당	–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 – 배당률의 제한, 일부 미실시	–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 – 제한 없음

출처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2013), 협동조합 이해하기

현재 용어의 사용 「협동조합기본법」은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 자율적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 개별 법률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1957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1년;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1963년; 신용협동조합법, 1972년; 산림조합법, 1980년; 새마을금고법, 1982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9년)에 대해

서는 기본법 적용을 배제(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은 2012. 12. 1)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일반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41〉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목적	조합원의 필요	공익적 목적
법인격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감독	없음	있음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보험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공공위탁사업, 공익증진사업 등
부수사업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	잉여금의 30% 이상
배당	가능	금지
정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출처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2013), 협동조합 이해하기

일반적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영리법인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인으로 명시(비영리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명시, 기타 협동조합 설립목적과 기본원칙은 그대로 적용한다.

설립절차는 일반적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 모집 → 정관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의결 → 관할 시·도지사 설립신고 → 이사장에게 사무인계 →

출자금납입(현물출자 가능) → 설립등기이고, 인가절차 없이 등기 할 수 있으며, 최소자본금 규정도 없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 모집 → 정관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 신청(60일 이내 인가) → 이사장에게 사무인계 → 출자금 납입(현물출자 가능) → 설립등기로 이루어진다.

주요사업으로 일반적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교육, 훈련,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은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용 및 공제 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①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③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기타 공익증진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전체 사업량의 40%)으로 해야 한다. 신용 및 공제 사업은 허용하지 않지만, 조합원 대상 납입출자금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는 가능하다.

〈표 42〉 협동조합의 유형

<table>
<tr><th>협동조합의 주 목적</th><th>조합원의 참여동기</th><th>주된 사업의 성격</th><th>다양한 협동조합 모델</th></tr>
<tr><td rowspan="5">조합원의 필요충족
(호혜적 동기)</td><td rowspan="2">생활·소비</td><td>구매대행</td><td>구매협동조합</td></tr>
<tr><td>서비스나 자산공유</td><td>이용협동조합</td></tr>
<tr><td rowspan="2">사업·경영</td><td>일자리 제공</td><td>직원협동조합</td></tr>
<tr><td>공동업무 대행</td><td>사업자협동조합</td></tr>
<tr><td colspan="2">상호제공·상호이용</td><td>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td></tr>
<tr><td colspan="2" rowspan="2">사회적 목적의 실현
(공익적 동기)</td><td></td><td>사회적 협동조합</td></tr>
<tr><td>보건의료</td><td>의료사회적 협동조합</td></tr>
</table>

출처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2013), 협동조합 이해하기

협동조합의 유형은 소비구매협동조합, 소비이용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7가지가 있다.

해외사례

☞ 협동조합과 관련한 용어 및 개념은 사회적기업 관련용어 및 개념 참조.

참고자료·문헌

- 기획재정부(201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2013), 협동조합 이해하기
- 황영모(2012),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준비와 실천,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Vol 74.

작성자 : 김봉원 연구위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Ⅲ

농어촌진흥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 경관농업

생성배경 농어촌 경관이 갖는 잠재적 가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경관을 잘 가꾸는 것이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농어촌 경관은 축제 개최 및 도농교류를 통해 소득 증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창군의 메밀밭을 활용한 효석문화제, 고창군의 청보리밭 축제, 하동군의 메밀·코스모스 축제, 남해군의 다랑이논 등이 좋은 사례이다. 농어촌 경관은 그 잠재력이 높은 동시에 난개발의 영향에 취약하여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어촌 경관을 보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산, 하천, 숲 등 자연적 요소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농업적 요소, 주택들로 구성된 마을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농어촌 경관을 형성한다. 경관농업이란 농어촌 경관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 중 특히 농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어설명 경관농업이란 농산물을 이용한 농촌경관을 지역관광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하는 농업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경관농업은 농촌의 자연스러운 특징을 살리는 농업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경관농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 판매 증대, 관광 수입 증대, 주민 취업 기회 확대 등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그림 1 경관농업과 지역 축제

출처 : chungbori.gochang.go.kr

그림 2 경관농업 사례 : 고창군 청보리밭

용어설명 농어촌 경관 및 경관농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 사업은 경관보전직불제이다. 경관보전직불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전국의 읍, 면 지역 및 준농촌지역 내의 농지로, 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경관작물의 식재면적이 경관작물은 2㏊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되어 있어야 한다. 경관작물은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10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표 1〉 경관직불금 대상 작물(예시)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등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최근에는 경관작물 재배 중심으로 진행된 그동안의 경관관리 사업을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경관관리 활동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경관농업을 농어촌 경관관리라는 큰 틀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의 경관관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경관관리 분야를 농촌정책의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농어촌 경관에 대한 보전·관리의 법적 근거를 본격적으로 마련하였고, 2006년 12월「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촌 경관 관련 각종 시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 시행된 제2차 삶의질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을 7대 부문별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마을 경관 개선활동 확대와 농어촌경

관계획 수립 유도 등의 추진과제를 명시하였다.

해외사례 영국에서는 1987년에 농촌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환경민감지역사업(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ESAs)을 도입하였고, 1991년에 농촌경관 보전과 함께 레크리에이션(그린투어리즘)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로 전원관리사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을 시행하였다. 2005년부터는 농촌환경 및 경관을 통합적 맥락에서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ESAs와 CSS를 합쳐 환경관리사업(Environmental Stewardship: ES)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다. 환경관리사업은 농민과의 일종의 협약제도로, 농민들은 농촌환경 여건과 질적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는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받게 된다.

2004년 제정된 일본의 경관법은 경관이 국민 공통의 자산임을 강조하고 규제와 동시에 지자체 자주 조례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경관법은 크게 '경관계획'과 '경관지구'의 2단 체계로 구성되는데, 경관계획이 신고·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완만한 규제인 반면, 경관지구는 이보다 규제가 엄격하다. 또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이 포함된 '경관정비기구'를 구성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여타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민 합의에 의해 상세한 경관 규칙을 만드는 '경관협정', 행정·주민·공공시설 관리자 협의에 의해 경관 규칙을 만드는 '경관협의회' 등이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성주인(2005), 농촌 경관관리 실태와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외(2007), 농촌경관 관리 및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외(2009), 농어촌 경관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외(2010), 농어촌 경관관리정책의 추진동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정철모 외(2004), 녹색농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0(1) pp57-64

작성자 : 채종현 부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정책용어

2. 경관보전직불제(Direct Payment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생성배경 최근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고, 이를 농촌관광 등에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을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촌경관자원은 농촌관광을 위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도시민들에게 심미적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공공재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경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하느냐에 따라 역할을 달리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농촌지역에 농업외적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촌다움(rurality), 주변환경 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관훼손사례가 증가하고, 농업·농촌 내부적으로도 생산·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각종 경관 저해시설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자 2005년부터 농어촌 경관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관보전직불제를 시범 실시하고, 2008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용어설명 경관작물 식재에 대해 지원하는 농식품부의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의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즉, 농촌경

관의 형성·유지를 통하여 농촌의 어메니티를 증진시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를 농민 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농촌 환경계획인 동시에 농촌지역개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선택하여 집단적으로 재배함으로써 농촌다운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농촌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적인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경관보전직불제를 농가단위 경관작물 위주에서 작물 재배를 포함하는 마을경관 영역으로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의 형성과 보전 기능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경관보전직불제는 시장·군수와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에 대한 협약 체결 후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마을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이를 지역축제,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외소득창출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원조건으로는 농지를 대상으로 마을단위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집단화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시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사례 우리나라 경관보전 직불제도는 영국의 ES(Environment Schemes), 프랑스의 CAD(Le Contrat d'Agriculture Durable), 일본의 농촌경관·자연환경보전재생지원사업 등과 성격이 유사하다.

참고자료·문헌

- 김광남(2010), 농촌경관 보조금 정책에 관한 연구
- 박진현(2012),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이해집단간 의식 비교연구
- 성주인(2005), 농촌 경관관리 실태와 정책 방안, 농촌경제연구원
- 엄대호(2005), 경관조전직불제의 현황과 과제
- 송미령, 박경철(2005),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정책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작성자 : 은희창 이사(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 고향희망심기사업

생성배경 2016년 현재 전국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65세의 노인인구 비율이 33%를 넘어선 지역이 6개에 이르고 있으며,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더구나 2048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48%를 차지하고, 노인인구가 50%를 넘는 기초 지자체가 62곳으로 전망되어 상당수 지역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매개체로 '고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착안한 시책이다.

용어설명 고향희망심기사업("고향희망심기" 혹은 "고향희망심기운동"이라고 함)은 태어나거나 살았거나 하는 등으로 개인의 정서에 특별한 인연과 애착이 있는 고향을 매개로 방문, 봉사, 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은 주체간의 협업,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출향 향우회, 봉사단체, 행자부 및 지역위 등의 중앙부처, 언론 등 고향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협업으로 추진하며, 초기에는 지자체 등 시범 마중물 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민간주도의 지역활성화 사업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현재 사업은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시범사업 추진인데, 기존의 지역별 고향사랑 사례를 벤치마킹한 고향시장방문, 가족고향방문, 고향봉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실시하고 행정자치부 등은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고향

희망심기의 모범사례'를 육성하는 단계이다.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거쳐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약 10억원) 등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및 홍보활동을 연계한다. '17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3단계는 모범사례가 국민운동을 승화,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6년 5월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위원회, KBS,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6년 9월 고향희망심기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범사례를 육성할 예정이다.

그림 3 고향희망심기사업의 단계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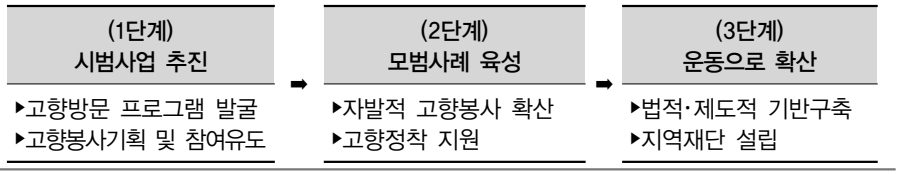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고향희망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산청군은 산청군향토장학회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의 산청군 향우들이 동참하여 2016년 8월 말 현재까지 800여명이 넘는 소액기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강원도 철원을 고향(본적지, 태어난 곳, 돌봐준 곳, 도와주고 싶은 곳)으로 미수복강원도중앙청년회가 고향희망심기운동의 하나로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해외사례 일본은 고향세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고향 등 돕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의 10% 한도에서 소득세인 국세와 주민세인 지방세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물 등을 선물하여 보다 많은 기부금을 유도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행정자치부 정책자료, 보도자료
-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작성자 : 김현호 연구기획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용어

4.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생성배경 유럽연합은 1962년 로마조약에 따라서 농산물시장을 규제하고 국내 상품가격 지지를 위하여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도입하였다. 공동농업정책 도입 이후 유럽연합으로서의 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개별 회원국별로 농산물 가격보조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과잉 농산물 처리 문제가 나타났다.

1980년대 초반까지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는 직접지불과 농촌정책을 강화했으며, 최근 공동농업정책의 축도 농촌정책과 환경정책 등으로 정책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직접지불을 중요한 보조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2003년에는 소비자의 관심, 환경보전의 중요성, 정책의 단순화, WTO규정과의 합치성 등으로 고려해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였다. 직접지불을 생산비 연계와 상호준수의무를 부과한 단일직불로 전환하였다. 특히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틀을 제1기둥(시장 및 농업소득)과 제2기둥(농촌개발)으로 확립하여 시행하였다.

유럽연합의 농업예산은 유럽 농업지도보증기금(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에서 운영된다. 보증기금(Guarantee Fund, Pillar 1)은 직접지불금을 포함한 시장개입정책에 사용되며 회원국들의 공동재정부담 책임이 없는 반면 집행이 의무적이고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보증기금 제2축(Pillar 2)은 구조

조정지원에 사용되며 회원국들도 공동재정부담 책임을 진다.

선택 가능한 정책도구, 관련 유럽연합 예산, 7년 단위의 국가/지역 공동자금조달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농촌발전계획은 농촌발전규정의 정책도구를 집행하기 위한 기초이며, 현재는 2007-2013년의 계획기간을 마치고 2014-2020에 돌입하였다.

용어설명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의 농업보조를 위한 시스템이다. 공동농업정책은 농산물의 최소가격 보장, 유럽연합 밖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세 등을 포함하여 가격 보조 계획을 통해 곡물과 경작지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제공한다.[1] 공동농업정책의 추진 목적은 농가에게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동농업정책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식품의 안전이나 환경 보호, 채산성, 대체 연료 등의 중요성에 꾸준히 관심을 더해가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2014년부터 새로운 계획기간에 돌입하는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식량자급(Viable Food Production), 자연자원 및 기후변화에 대응, 균형 있는 농촌지역 발전 도모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직접지불, 시장조치, 농촌개발을 들 수 있다.

직접지불은 소득 재분배의 기능 강화, 생산 비연계, 지불액 한도 설정, 소농지원 조건불리지역 지원의 방향으로 제도 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조치는 시장 지향성을 보다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는 간소화·단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Food Chain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공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농촌개발은 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한 기술혁신, 다른 유럽연

1) 좋은 품질의 경작 조건을 유지하고, 농업경영의 다각화 및 생산자 조합 설립 유도를 통해 농촌 발전에 기여하며, 환경에 기여하는 농업 시스템을 유도한다.

그림 4 유럽연합 농정 추진의 중점과 과제

생산성 ---------->					
경쟁력 ---------->					
지속가능성 ---------->					
초기	위기	1992년 개혁	Agenda 2000	2003년 개혁	2008년'건강체크'
식료안보 생산성증대 시장안정화 소득지지	과잉생산 지출폭증 국제마찰 구조수단	과잉감소 환경 소득안정 재정안정	개혁심화 경쟁력 농촌발전	시장지향성 소비자관심 환경 단순화 WTO합치성	2003개혁 강화 새로운 도전 위험관리

출처: 송미령 외(2013)에서 재인용.

합 회원국들의 지역정책과 연계성 강화, 더욱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위험관리 강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림 5 공동농업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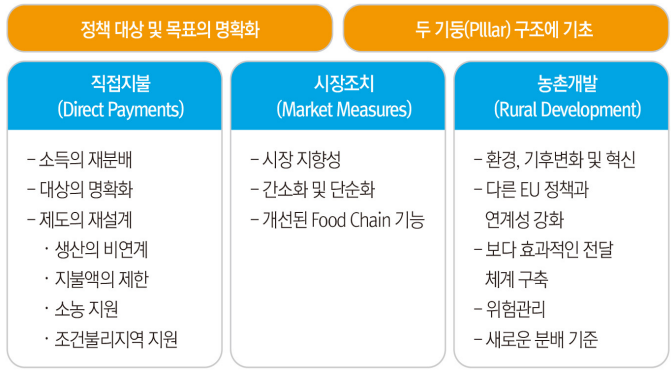

출처: 송미령 외(2013)에서 재인용.

참고자료·문헌

- 박성재 외(2008), 〈선진국형 농정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외(2013), 〈농업·농촌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만(2012.7), EU 공동농업정책 개혁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제143호.
- 정호근(2012.3), EU 공동농업정책과 농정개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제138호.
- 최정섭 외(2004),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uropean Commission(2009) Agricultural Policy Briefs no.1
- OECD, 2011,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the European Union.

작성자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용어

5.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생성배경 WTO/FTA에 의한 개방 확대와 더불어 농가소득 및 농가경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의 활력을 유지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시장개방이나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나 수량변동이 큰 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리스크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용어설명 한·미 FTA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주업농의 당해 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격차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나 수량의 변화에 의해 경영 위험이 큰 일정규모 이상인 전업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우리나라에서 현행 운영되고 있는 직불제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이 있다.

해외사례

■ 미국의 소득안정직불제

미국의 소득안정직불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농가소득을 지지하거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소득정책의 핵심은 품목별 생산비 기준의 목표가격(생산비 기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직불제로서 이를 보장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소득안정형직불제는 ① 융자제도, ② 고정직불, ③ CCP(또는 ACRE), 그리고 ④ 각종 수입보험 등 복수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일정 수준의 농업소득을 보장하며, 소득안정망으로서 효과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6 미국의 소득안정직불제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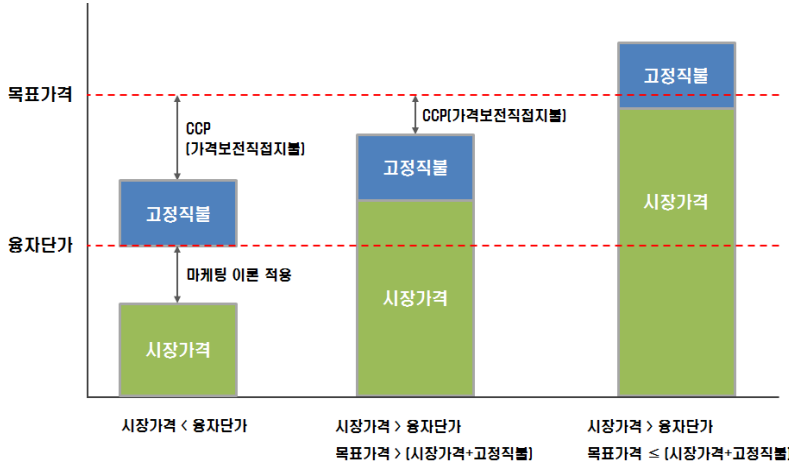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1), 선진국 소득안정제의 최근동향과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의 쟁점분석에서 인용

■ 캐나다의 농업 소득안정 프로그램(AgriStability)

농가의 대규모 소득감소에 대한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농업소득이 기준소득의 85% 이하 감소 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농가소득 감소, 쌀 과잉문제 해소, 논·밭농업 활성화, 자급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0년 쌀을 대상으로 한 모델사업을 거쳐 2011년 전면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쌀을 감산하는' 동시에 '전략작물을 증산하여'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문헌

- 농림축산식품부(2011), 선진국 소득안정제의 최근동향과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쟁점 분석
- 남숙경(2009),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개선방안
- 이광규(2007), WTO 쌀협상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방안에 관한 연구
- 김태곤(2010), 농가소득 안정과 직접지불제 개편
- 전농 정책실(2004), 소득안정 직불제의 문제점과 목표소득지지 정책 도입의 필요성
- 장상환(2002), 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 농업회생의 정책방향

작성자 : 한광식 교수(김포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6. 농공단지

생성배경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수도권과 일부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시행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정책은 경제 선진국의 기틀 마련이라는 성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물리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이 급격히 쇠락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농어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공단지 조성이 부상하였다.

1980년대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지역주민의 고용 확대, 도농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발전 속도가 느린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1983년부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4년 전국 7개 시범농공단지를 시작으로 1990년 지자체로의 지정·승인권 이양, 1997년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발표, 2007년 구조고도화 추진 등의 과정을 거치며, 2016년 현재 427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었다.

용어설명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의 한 종류이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이다.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1984년 전국 7개 농공단지를 지정·추진하였고, 1991년부터 농공단지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며, 1997년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완화 및 자금지원 개선 등 지원정책을 확대하였다. 2000년대 초반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어촌 환경 변화로 인해 농공단지가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2007년에는 농공단지 내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단지 조성, 농공단지 관리 효율성 제고, 향토산업육성 및 이와 연계한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농공단지의 노후화 진전, 농공단지 운영의 내실화 노력 미흡 등으로 인해 2011년 농공단지 환경변화에 따른 종합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농공단지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공단지 관련 중앙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국토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2013년부터는 더 이상 신규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지역특화농공단지에 한해 중앙정부가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강원발전연구원(2015), 농공단지 고도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정책메모 450호
- 대구경북연구원(2011), 지역농공단지 리모델링으로 특화발전 꾀하자, 대경 CEO Briefing 제312호
- 충북발전연구원(2011), 충북지역 농공단지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농산업육성을 위한 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

작성자 : 김봉원 연구위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정책용어

7. 농어촌 6차 산업

생성배경 도시화로 인해 약해진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로 농업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참여정부 이래 최근에는 창조 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정부정책에서의 비중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용어설명 농어촌 6차 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 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1차 산업인 농수산업,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형태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때 농업(어업)의 생산, 가공, 서비스의 단순한 결합(1차+2차+3차 산업=6차 산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보다 발전된 개념으로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융합(1차×2차×3차 산업=6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예컨대 지역농업(농산물), 농가가공, 산지직판, 향토음식, 체험관광 등 영역 간 복합화가 중요하다.

현재 용어의 사용 현 정부에서는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6차산업화를 통해 2017년까지 매

출액 100억원 이상의 6차산업화 주체를 1,000개 육성하고, 현재 연평균 4.6%씩 증가하고 있는 농외소득 증가율을 7.5%로 끌어올리는 한편 고령농 및 여성 등을 위한 농촌지역 일자리도 매년 5천개씩 창출할 계획이다.

그림 7 농산어촌에서 퍼져가는 6차 산업화

출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 R&D 해외동향 제 2013-6호

그림 8 청양 칠갑산 알프스마을의 6차 산업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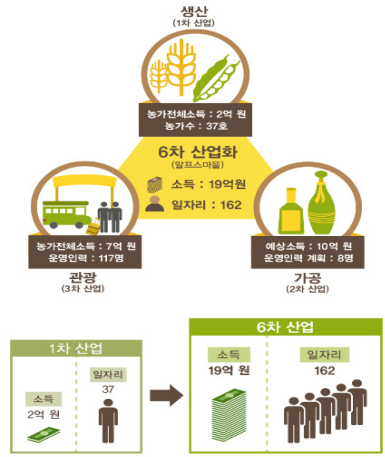

출처 : 청양 칠갑산 알프스마을

청양 칠갑산 알프스마을은 6차 산업화에 성공하여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한 사례이다.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 농림업의 '6차산업화'는 농산물 시장개방,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 기상이변, 유통구조의 비효율 등으로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급부상하였다.

참고자료·문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과 산업동향
- 강원발전연구원(2013), 강원도 농어업의 6차산업 활성화방안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3), 일본의 6차산업화 R&D 동향, 농림수산식품 R&D 해외동향 제2013-6호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3), 농업·농촌에 창조를 담는 6차산업화 본격 추진

작성자 : 장효천 원장(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8.

농어촌서비스 기준 (Rural Services Standard)

생성배경 2000년대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어촌 주민들에게 적절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농어촌에서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범부처적인 투자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삶의 질이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도농간 격차 그리고 선진국 농어촌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상태이다.

농어촌 삶의 질이 낙후한 이유 중 하나로 그간의 정책성과 목표가 하드웨어 중심의 투입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더해 2010년부터 삶의 질 향상 대책에 포함되는 단위 사업 상당수가 기초생활권 정책에 의해 통폐합 및 포괄보조화 됨에 따라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준거로 삼을 만한 새로운 정책목표의 기준 제시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도'를 도입한 후 2011년 1월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용어설명 농어촌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항목과 수준'을 의미한다.

여기서 최소한의 항목과 수준이란 어떤 농어촌 지역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향상에 있어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을 의미한다.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나아가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선진적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의미한다. 동법의 시행령에서는 별표를 통해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고시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1-5호).

〈표 2〉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부문	항목	세부내용
1.주거	가. 주택	최소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나.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라.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마.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부문	항목	세부내용
2.교통	가.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나.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다. 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교육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나.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 방과 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마. 의견 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바.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4.보건의료	가.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나.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다.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5.복지	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라.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마.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문	항목	세부내용
6.응급	가.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나.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다.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라.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마.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7.문화	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8.정보통신	가.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출처 : 김광선 외(2011), 2011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시·군은 아직 없다. 하지만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한 2011년 이후 기준 이행실태가 점차 향상되고 있다. 2013년에는 2011년과 비교하여 21개 항목의 이행실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 영국에서는 2000년『농어촌 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를 발간하여 농어촌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고 공표하였다. 2000년『농어촌 백서』에 공표된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14개 부문에 대해 36개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그

러나 2004년부터는 핵심적인 기준만을 선정하여 8개 부문 13개 서비스 기준으로 개편되었고, 2007년부터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기존의 국가 기준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에서는 농어촌정책컨퍼런스(독일 쾰른, 2008년 4월)와 농어촌지역정책워킹그룹회의(프랑스 파리, 2008년 11월)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서비스 전달'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10년에 농어촌 정책 리뷰 '농어촌서비스 전달 개선을 위한 전략'을 내놓으며 관련 논의를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였다.

참고자료·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송미령 외(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외(201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 외(2010),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김광선 외(2011),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 외(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병석(2012),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작성자 : 채종현 부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정책용어 9.

농어촌 유산(Rural Heritage)

생성배경 인류가 소중하게 보전해야 할 가치 있는 자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세계문화유산이 주로 독특한 지형지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형성하는 산업 활동, 문화 활동 등과 생물·경관·지식체계 등이 폭넓게 결합된 총체적 자원으로서 다른 차원의 유산 제도가 논의되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점차 사라져 가는 농어업·농어촌 자원 중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후대에도 지속 가능한 형태와 정신으로 유지·보전시키는 동시에 그 가치를 확대 창출할 필요가 있는 자원들은 농어업 유산 또는 더욱 확대된 개념의 농어촌 유산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용어설명 농어업 유산자원은 어떤 국가나 민족 또는 산업주체가 지역사회나 자연환경에 적응, 극복하면서 수 세기 동안 구축하고 발전시켜 온 문화나 전통 및 경관 중 농경 활동이나 어로 활동 등과 결합된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그러므로 농어촌 유산은 농어업이라는 산업적 성격의 유산 자원을 포함하여 농어촌의 생활, 역사, 전통, 경관, 문화 등과 연관되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통칭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주민이 지역사회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해 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업 유산제도를 2012년에 도입하였다. 농촌 자원의 보존·관리·가치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4년에는 농촌자원 보전관리 방안을 담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공통으로 제정한 바 있다.

농어촌 유산의 대상은 전통적 농어업 활동 시스템의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범위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대상으로 삼으며, 지정 기준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지정 절차는 시·도나 시·군에서 유산자원을 조사·발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면 농어업유산자원지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거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면 국가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FAO에 등재하고 있다.

유산자원으로 지정되면 1단계로 멸실, 훼손, 변형자원은 복원하여 유산자원의 가치, 품격, 전통성 등을 갖추도록 하고, 2단계로 유산자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방문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3단계로 유산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농어촌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FAO의 GIAHS에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4월 1일에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 등 2개소가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 FAO에 등재되었다.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은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3호와 4호로 지정되었다. 2022년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 25개소, 세계농업유산 10개소를 등재할 예정이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경우는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을 활용하여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구

체적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 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받게 된다. 지역당 3년간 10.5억 원 규모이다.

해외사례 FAO에서는 세계환경자금(Global Environment Fund)의 지원을 받아 차세대에 계승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이나 생물 다양성 등을 가진 농업유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2002년에 GIAHS를 도입하였다. GIAHS에서 지정되는 대상은 독창적인 농업제도 및 생태경관 지역, 농업생물 다양성의 보전지역, 고유한 농사지식 체계의 적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 남부의 계단식 레몬밭, 사하라사막의 오아시스농장, 이란의 고대 지하 관개수로, 일본의 전통적 따오기 공생농법 등 총 19종이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 돌담이 국가농업유산이자 FAO에 세계농업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참고자료·문헌

- 강승진(2012),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GIAHS) 등록을 위한 제주지역 과제와 추진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JDIFOCUS 136호
- 김경두(2012), 농어업 유산제도의 도입, 지역과 발전 제8호
- 김정희(2013), 미래를 이끄는 과거, '농어업유산', 나라경제 2013 3월호.
-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1), 농업·농촌 유산 (遺産)제도 도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2), 농어업 유산제도 본격 도입
- 윤원근, 최식인(2012), 한국 농어업·농어촌 유산 발굴과 보전, 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다랑이논연구회(2011), 청산도 구들장논의 분포와 물리적 구조에 관한 연구, 송미령, 권인혜, '농어촌의 자원을말한다 (제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자료집)' 5-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Yehong Sun, Myriam Jansen-Verbeke, Qingwen Min, Shengkui Cheng(2011), Tourism Potential of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Tourism Geographies

작성자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용어

10. 농어촌자원복합산업

생성배경 지역별 특화 향토자원의 발굴, 6차 산업을 위한 융·복합산업의 집중 육성 방안 등은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복합산업에 대한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농어촌지역의 향토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및 지역 혁신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 향토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R&D 기반 구축, 농수산업·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어촌 체험휴양서비스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용어설명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어촌산업의 1·2·3차 복합 산업화를 통해 창출된 산업을 일컫는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으로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생산, 유통, 제조, 가공, R&D, 마케팅 기반구축,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농어촌 체험, 휴양 서비스 제공 등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201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도 자율편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산업화를 위한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농어촌 산업화를 위한 R&D 및 정보화 기반 강화,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 조성,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등이다.

• 사업개요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을 결정.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액지원
  농촌테마공원조성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25%로, 차량(탑차 등)·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는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지원
- 사업기간 :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 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해외사례 미국 미네소타(Minnesota)주의 굴버섯 사례를 들 수 있다. 케빈 도일(Kevin Doyle)은 미네소타대학에서 바이오연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폐기물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자료를 보고, 버섯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Forest Mushrooms Inc.'를 설립하였다. 그는 식용특화버섯으로 굴버섯(Oyster mushroom) 재배를 위하여 야생이 아닌 자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직접 퇴비를 만들어 재배, 수확 후 포장하여 자체 로고를 붙여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굴버섯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기 위하여, 짚을 증기로 살균한 퇴비를 사용하였고, 고품질의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콩, 오트(oat), 밀 등을 활용하여 퇴비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굴버섯은 도·소매업자들, 슈퍼마켓, 레스토랑, 특산물 판매점, 해외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가장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회사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농장에서 재배된 상품을 있는 그대로 판매,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것이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농장시장(St. Joseph Farmers' Market)에서는 버섯 재배자와 버섯 관계자들과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판매는 물론 새로운 버섯재배법과 버섯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며, 보다 질 좋은 상품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문헌

- 농림축산식품부(2012),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2013년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 농림축산식품부(2012),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2008),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작성자 : 한광식 교수(김포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1. 농어촌특별세

생성배경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 및 WTO체제 출범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현실로 닥치자,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농어촌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4년 7월 농어촌특별세를 도입하였다. 200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농어촌특별세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2003년 한·칠레 FTA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10년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과세 시한은 당초보다 연장되어 2014년 6월까지가 되었다. 2014년 기획재정부는 농특세 적용기한을 또다시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각종 FTA가 체결되는 상황에서 농림·어업 분야의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10년 더 유지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용어설명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한 목적세이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법인세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증권거래소 및 장외 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 결제하는 회사,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감면세액과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0.15~30%의 세율로 과세하는 부가세적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용어의 사용 정부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1994년부터 도입, 운용하였다. 2003년 「농어촌특별세법」을 필두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6년 「국가재정법」 등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확보하는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간 농특세는 2008년 3조 7549억 원, 2010년 3조 9019억 원, 2011년 4조 8948억 원, 2012년 3조 9000억 원, 2013년 4조 4000억 원을 세수로 걷어왔다. 농업농촌발전계획(1999년~2003년)에 의한 42조 원, 농업농촌종합대책(2004년~2013년)에 의한 119조 원, FTA 국내보완대책(2014년~2017년)에 의한 22조 원 등의 상당 부분을 농어촌특별세가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는 2024년 6월까지로 10년 더 연장되었다. 더불어 농어촌특별세가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만큼,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절차를 기존의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세 기본법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문헌

- 국세청(2012), 개정세법 해설
- 김상겸(2009), 조세체계 단순화를 위한 목적세제 개편 방안 : 교육,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산업연구, 제33권 제1호(2009년 3월) pp.21-41
- 김용택(1994), 농어촌특별세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윤권, 윤두섭(2007), 정치적·행정적 맥락 하의 예산집행 낭비 요인 분석 :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어촌특별세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2호

- 김준영(2003), 농어촌특별세와 농업재정
- 김준오(1999), 농어촌특별세에 의한 농업 부문 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농협 조사월보
- 단국대학교 협동문화경제연구소(2000), 15조원 농어촌특별세 사업 추진상황 중간평가
- 박현석, 이희범(2009),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 기획재정부
- 임형백, 조중구(2004),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6권 제3호, 147-166
- 장원석, 김호, 허승욱, 김성철(2000),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농업경영·정책연구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정책실(2003), 농특세법 개정에 대하여, 농민의 길, 통권3호, 19-25
- 전동흔(2007), 지방세 해설 : 지방세 가산세와 농어촌 특별세가산세의 적용범위, 지방세, 제2호 통권 100호. 73-102
- 한국세무학회 편집부(2012), 농어촌특별세법
- 한국조세연구원(2010), 재정통계 : 전화세 예산 및 징수/인지세 예산 및 징수/방위세 예산 및 징수/농어촌 특별세 예산 및 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작성자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용어

12. 농지관리기금

생성배경 농지관리기금은 대규모 영농을 육성시켜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되 새로운 농지를 조성·개발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용어설명 농지관리기금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조성 및 효율적 관리,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농지은행, 새만금, 시화호 등이 농지관리기금에 뿌리를 두고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농지관리기금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대부분 농지보전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것이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이 부담금은 2002년 농지전용사업자에 대해 국민식량의 공급기반인 농지의 대체조성 비용으로 부과한 농지조성비(1975년)와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

된 농지전용부담금(1992년)을 통합한 것이다.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농지이용관리사업, 농지보전사업, 농지조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

- **농지이용관리사업 :**
  - 영농규모화사업, 농지종합정보화사업, 쌀전업농교육훈련사업 등
- **농지보전사업 :**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 **농지조성사업 :**
  - 농지조성사업, 담수호수질개선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등이다.

해외사례

■ 프랑스 SAFER(토지정비농사창설회사)

SAFER의 설립목적은 농업기본법(농업의 방향정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구조개선에 있다. 즉, SAFER의 운영사례는 농업경영체의 육성 등을 위해 농지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선매권을 활용하여 전업경영체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이다. 선진국에서 농지선매권 등을 활용하면서 농지시장에 강하게 개입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프랑스 SAFER의 사례는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프랑스 SAFER의 핵심 7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3〉 프랑스 SAFER의 주요 기능

기 능	주 요 내 용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체 육성	• 청년 영농정착(가족농, 회사형태) • 점진적 형태, 겸업적 형태, 기타 형태 • 영농 재정착 • 정착단위의 규모화
농림업의	• 농지정비

기 능	주 요 내 용
생산조건 개선을 위한 필지정비 및 농지방치 예방	• 필지정비(필지 교환, 규모화) • 임차농의 유지, 발전 • 농업자본 참여자를 위한 토지전매
농업경영체 간의 균형발전 및 생산분야별 균형발전	• 경영규모화 • 유휴한계농지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
환경보호	• 토지시장 감독, 정부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소유방향의 유도 • 국립공원 등과 연계한 토지자원
농촌경제개발	• 농촌개발계획(관광, 레저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제공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농촌 및 도시근교 지역의 토지정비	• 단지화, 농업경영체 보호 및 재정착 유도 • 도시화지역의 농업구조의 재조정 • 환경보호 및 도시근교지역에서의 농업 공간보호, 환경 및 경관 보호 • 지방자체단체의 관련 활동 지원
농촌토지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조절	• 토지시장 정보의 배포 • 토지시장 동향 감독 • 토지시장 관련 컨설팅

비고 :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홍상/김경덕,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재구성함

참고자료·문헌

- 최인호(2013),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연구
- 전태목(2007), 농지은행사업의 효율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권영진(200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업생산'에서 도시와 연계된 '농촌종합개발' 전략으로
- 김홍상, 김경덕(2004),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훈(2011), 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자 : 한광식 교수(김포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3. 농지은행

생성배경 한국농어촌공사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타결된 10년간의 쌀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내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농지은행은 농지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최소화하고 농지시장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며, 비농민의 농지소유 허용이 농지투기문제로 전환되지 않고 전업농 육성 및 농업구조 개선을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관리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체계이다.

용어설명 농지은행은 농지 매매와 장기 임대차, 교환, 분합 등을 통해 영농규모의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 영농규모화 사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주요사업으로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농지교환·분합사업, 과원규모화 매매사업, 과원규모화 임대차사업, 농지연금, 2030세대 지원 등이 있다.

• **농지임대수탁 :**
농지법(6조와 22조)을 근거로 하여 2005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소유자로부터 임대위탁을 받아 농가나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지은행은 임차료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 **농지매도수탁 :**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농지를 팔려고 하지만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소유자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로부터 매도위탁을 받아 매입자를 물색하여, 농지를 대신 매도해 주는 방식이다.
-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
  자연재해나 부채의 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와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게 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에 우선매입권을 보장해 준다.
- **농지매입비축 :**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만 시행한다.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한 뒤, 전업농이나 신규 창업농 등의 수요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우리나라에서 현재 농지은행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사이트(www.fbo.or.kr)를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외사례 일본의 농지은행은 시정촌농업위원회가 농지의 임대차 및 매매 등 소위 농지유동화와 구조정책을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조직이다. 이는 농지보유합리화사업, 특히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지유동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980년에 농용지이용증진법 제정, 농지법 및 농업위원회법 개정 이후 농지은행활동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주체로서 '농지은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일본의 농지은행은 기본적으로 시정촌농업위원회가 농지유동화와 구조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기관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주요업무는 시정촌 내에서 농지의 권리 이동, 주로 농지의 이용권 이동의 콘트롤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 김홍상, 김경덕(2004),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래정책연구실(2010), 농지은행 활성화
- 김수석, 황의식, 허주녕(2007), 농지은행 활성화 및 유휴농지 관리방안 연구
- 임세화(2011),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옵션가치 추정

작성자 : 한광식 교수(김포대학교)

정책용어

14. 농촌 공동체 회사

생성배경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통적 산업기반인 농·어업 비중 축소와 관련 일자리 감소, 교육·복지·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수급 불균형 등은 농촌이 당면한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경제적 투자매력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활동이 부족하다 보니 축소된 농업을 상쇄할만한 일자리가 충분치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 9월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년)'에 농촌 경제활동 다각화 부문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농촌 공동체 회사 발굴·육성'을 포함하였다. 2010년 7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3년 10월에 수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2,600개인 마을 단위 공동 경영체를 2017년까지 4,000개로 증가시킨다는 목표가 마련되었다.

용어설명 농촌 공동체 회사란 '농촌 주민과 귀농·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의 경영 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말한다. 즉,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성, 공익성,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농촌형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농촌 활성화를 위한 내생적 발전 수단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농촌 공동체 회사 유형은 활동 목적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농·식품 산업형은 마을 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 푸드,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 농가 레스토랑 운영, 친환경 농자재 생산, 지역공동 마케팅 등을 포함한다. 둘째, 도·농 교류형은 도시민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 유지·보전사업, 마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운영 등을 포함한다. 셋째, 지역 개발형은 읍·면 재래시장 활성화 법인, 시·군 지역개발 컨설팅센터, 지역경제 디자인센터 운영 등이 해당한다. 넷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형은 주거복지센터 운영, 통합·거동 불편자 교통서비스 제공, 반찬 배달, 노인복지센터, 방과 후 공부방 운영, 결혼이민 여성의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등이 해당한다. 다만, 2015년도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침에서는 기존 유형을 변경해 사회 서비스 제공형, 복합형, 소득사업형으로 개념화하였다.

현재 용어의 사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에 잠재해 있는 공동체 조직을 발굴하기 위해 2010년 5월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공동체 회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19개 조직이 농·어촌 공동체 회사로 육성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들녘경영체' 등을 포함할 경우 1,084개소에 달하였으며, 이 중 도·농 교류형이 33%로 가장 많았다. 2010년 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두 부처는 2012년까지 100개의 농어촌 공동체 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농촌에 1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2012년 농촌의 일자리는 482만 개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농촌 공동체 회사를 통한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농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를 위해 2011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54개소의 우수 사

업을 선정, 5천만 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범위 내에서 농촌 공동체 회사 활동 추진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경영체를 공동체 회사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동경영체를 농·식품형 예비사업기업으로 지정하였고,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였다. 2016에도 계속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지침을 마련해 지원 중이다. 관련 예산은 농특회계 지자체 경상보조 형태로 매년 30억 원 규모이며 개소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 서비스 제공형과 복합형은 최대 3년간 지원하며 1차 연도 성과가 우수한 회사는 차년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외사례 선진국에서는 농촌 공동체 회사와 유사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활성화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지 오래다. 영국은 5만 5천 개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조직이 활동 중이며 시장 규모가 5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일본도 8천 개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조직이 활동 중이며 시장 규모가 3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김제완, 정태길, 양동수(201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2009),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계획(안)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0), 농어촌공동체회사 사례집1·농어촌 일자리 창

출, 사회적기업이 앞장선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0), 농어촌활력의 중심, 농어촌공동체회사가 뜬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1), 농어촌 활력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시작하다 : 2011년도 신규사업 54개소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2011), 2011 농어촌공동체회사 사례집
• 농림축산식품부(2009), (2010-2014)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박병홍(2010),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정책의 주요내용', (재)지역재단 제15차 지역리더포럼 '농어촌 공동체 회사와 순환공생의 지역만들기 : 현황과 과제'
• 박진서(2011), '농어촌공동체회사 정책의 현황과 향후과제', 농정연구 통권 37호(2011년 봄), 농정연구센터
• 배호열(201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정책과 과제', (재)지역재단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오내원 외(2010),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2의 1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완주군(2011), 완주군일자리종합추진계획
• 유정규(201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정책의 개요와 발전과제, 지역과 발전 제6호(2011년 겨울)
• 이정배(2012), 농어촌형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 : 농어촌공동체회사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덕기(2012), 전남지역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작성자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용어

15. 도농교류

생성배경 근대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은 분열과 대립의 과정을 겪어 왔다. 공업의 발전은 농업으로부터 축적된 잉여의 이전을 토대로 했으며, 도시의 발전은 농촌으로부터의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전제로 하였고, 공업과 도시의 발전은 농업과 농촌의 상대적인 저발전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에 대한 종속론 또는 갈등론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9 도농교류의 구성 요소

출처 : 임상봉 외(2004), 14면에서 재인용.

하지만 최근 이러한 갈등론적 시각에 대한 대안으로 양자를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존속하는 공생적 관계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나타났다. 도시는 녹지 공간의 축소, 인구 집중,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농촌은 과소화, 경제적 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도시와 농촌은 상대적인 면에서 각자의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교류를 하면 도농 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타난 것이다.

〈표 4〉 도농교류의 종류

인적교류	물적 교류	교육·생활·문화체험	휴양·여가 활동
• 자매결연 • 1사1촌 운동 • 연수, 강좌 개최 • 고향 방문 행사 • 자원봉사, 일손 돕기 •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류 • 귀농, 외지인 거주 • 제2고향 갖기	• 산지 직거래 • 인터넷 농특산물 판매 • 농특산품, 공예품 판매 • 농업위탁경영, 계약재배 • 휴양단지, 별장 분양 • 농작물, 과수, 가축 분양 • 땅, 주택 매매 • 외지인 사업 경영 및 투자	• 환경농업 교육 • 농사·수확, 농장 체험 • 농촌자연학습, 체험학교 • 바른 식생활 캠프 • 역사문화탐방, 전통체험 • 농촌생활·문화 체험 • 농업·지역산업 현장 견학 • 지역·마을축제, 행사 개최 •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 농촌관광 • 관광농원 • 주말농원 • 실버농장 • 농촌지역테마관광 • 민박, 펜션 운영 • 낚시, 등산, 야영 • MTB, ATV

출처 : 임상봉 외(2004).

용어설명 도농교류란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품·정보·자본·서비스 등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거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농촌관광, 그린투어리즘, 녹색관광 등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거나 비슷하게 이해되기도 하지만, 도농교류는 자연에 대한 이해와 농촌의 활성화와 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람의 교류에서부터 농산물·특산물과 같은 상품, 관광·휴양·체험 서비스, 정보, 문화, 자본 등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므로 녹색관광이나 농촌관광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도농교류가 강조되는 이유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해 농촌의 공동화를 치유하고 지역 활성화를 가능케 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도농교류와 관련된 정책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도농교류센터 운영, 1사1촌 운동, 도농교류협력사업을 비롯하여 관광농원사업, 농어촌휴양단지사업, 주말농원 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등 다양한 농촌관광 육성 관련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2007년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해외 사례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에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농촌관광이 시작되어 상당히 일찍 시작된 나라에 속한다. 일반 도시민이 값이 비싼 바캉스를 대체하여 농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독일은 1960년대 후반에 농촌관광이 시작되었는데, 농외소득 향상과 이농 억제가 주목적이었다. 영국은 1970년대에 본격화되었으며, 농촌의 자연·경관 유지 보전과 농가의 경영 다각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일본은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으며, 전 국민에게 농촌에서 즐기는 여유 있는 휴가를 보급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참고자료·문헌

- 김병률 외(2000),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 외(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상봉 외(2004),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분석 및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농식품부·농어촌연구원
- 유정규 외(2006), '도농교류·정주지원기구' 설립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규천 외(2012), 일사일촌 농촌사랑 운동의 추진 실태와 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작성자 : 채종현 부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정책용어

16. 도시농업

생성배경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소규모 도시텃밭(City Farm)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소득과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딸기 따기, 벼 베기 등 체험형 농업을 통해 흙을 만지고 자연을 접하면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도심 열섬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도시공간에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도시민에게 쾌적한 녹색 공간(Green space) 제공, 소일거리 제공, 정서순화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텃밭을 보급하는 등 도시농업이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서함양, 원예치료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용어설명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산림, 조경 제외)로 농업(農業)이 아닌 취미와 여가 또는 학습과 체험 등의 농사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유형은 공간적 범위와 목적에 따라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 도시형,

농장형·공원형, 학교 교육형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도시민이 도시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농사활동을 말하며, 고층건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빌딩형 식물농장, LED·지열·태양광 등을 이용한 식물공장, 주말농장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도시농업의 시작은 1994년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 휴양사업의 일환인 관광농업과 도시 주변의 주말농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03년 도시주민의 주말농원 수요가 증가하여 1,000㎡에 한정하여 도시주민의 텃밭용 농지소유를 허용하게 되었다. 2011년 6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500만 명) 이상을 도시농업에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은 '도시 농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도시텃밭 확대(40 → 7,200개소), 주말농장 확대(200 → 800개소), 도시농업공원 조성(지자체별 1개소 이상 설치), 도시빌딩 녹화, 식물생산공장 산업화,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추진 등이다.

2011년 11월에 제정되고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도시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의 도시농업 육성계획, 도시농업 지원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공영 및 민영 도시농업 농장의 개설 및 지원 등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201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육성계획은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농 상생 및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2017년까지 도시텃밭 면적 1,500ha와 도시농업 참여자 200만 명 달성, 도시농업 참여만족도 개선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도시농업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관내 15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 이외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해외사례 외국 도시농업의 주요 동향은 먼저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먹을거리 생산형 도시농업'이다.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인한 쿠바(1990)의 도시농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 소련붕괴로 인한 모스크바 시민의 60%가 도시농업에 참여, 세계 1,2차 대전(1899-1920)에도 영국, 독일, 미국에서 도시농업의 보편화, 싱가포르의 도시국가 한계 극복을 위한 가금류 사육이나 채소 재배 일상화, 아프리카의 많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빈민 구제를 위한 도시농업이 해당한다. 또한, 도시민의 여가활동으로 활용되는 '여가형 도시농업'이 있다. 독일 클라인가르텐, 일본의 시민농장, 우리나라의 주말농장 등이다. 여가형 도시농업은 서구의 '가드닝 활동'으로 집안에서 앞뜰과 뒤뜰,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루어지는 텃밭과 정원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생활형 도시농업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공동체형 도시농업'을 들 수 있다. 영국 랜드셰어(Land share), 독일의 클라인가르텐도 사회복지적 성격을 담고 있다. 특히, 밴쿠버와 시애틀과 같은 북미의 도시농업은 40여 년간 공동체 운동과 결합하여 '커뮤니티 가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왔다(1960-70년대).

참고자료·문헌

- 경기개발연구원(2012),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방안
- 서울연구원(2012),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 서울경제 6월
- 서울도시농업(2013),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도시농업의 비전과 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2. 6. 25 Vol.26

작성자 : 김봉원 연구위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7. 로컬푸드(Local food)

생성배경 로컬푸드(지역먹거리)에 대한 논의는 광우병(MCD), 소해면상뇌병증(BSE), 구제역 등의 피해로 인해 나타나게 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와 지역농업에 대한 위기로 시작되었고, 1990년대부터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기존의 식량체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가족농들은 생존전략으로 새롭고 더 건강한 농산품의 생산과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지역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생산과 유통여건의 악화, 소비자들의 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기존의 식량 체계에서 탈피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전환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로컬푸드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용어설명 로컬푸드는 일반적으로 특정지역 내에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가능한 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먹거리를 매개로 관계를 맺어주는 활동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을 보장하면서도 최대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방법을 사용하여 일정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것으로 직거래나 공급체인의 단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유통되는 농산물 및 식품을 의미한다. 특히,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POS-Mall 활성화 및 농수산물·중기 전용 홈쇼핑을 개국하는 등 ICT 활용 직거래를 활성화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5) 100개(농협 75) → (‘16) 140개), 꾸러미사업 확대, 상생 직거래 장터 개설 지원, 농산물 택배시스템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 설립한 (사)로컬푸드운동본부(http://www.lfk.or.kr)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으로,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즉,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먹거리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더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여나가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는 건강밥상 꾸러미를 주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쇼핑몰을 통한 판매, 직거래 장터 운영, 아동결식 지원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김포시 로컬푸드는 신선하고 저렴한 지역농산물 공급하고, 로컬푸드체험단을 구성과 ‘얼굴 있는 먹거리’를 실천하고 있다. 이 밖에 세종시 로컬푸드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건식가공품·습식가공품·반찬류 등 각종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할 방침이다.

그림 10 로컬푸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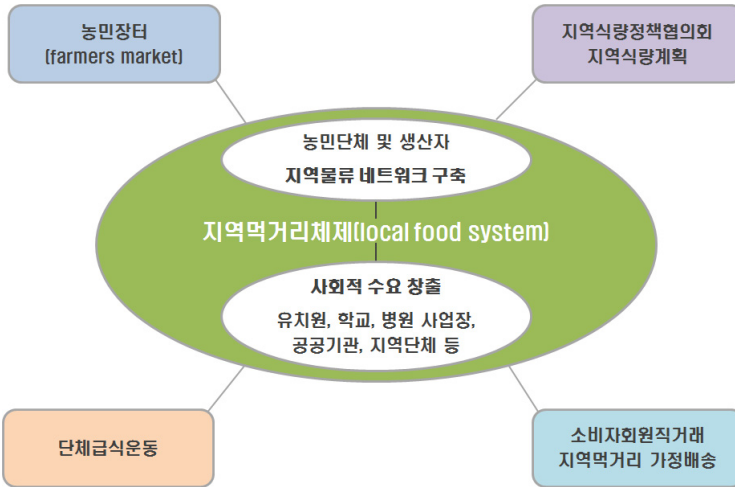

출처 : Halweil, B.(2004), Eat Here(김종덕·허남혁·구준모 역(2006), 「로컬푸드: 먹거리-농업-환경, 공존의 미학

해외사례

■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취지로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에서 뿌리를 둔 食(먹을거리)과 農(농업생산)의 재생'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토불이(身土不二)와 맥을 같이하는 일본의 지산지소운동은 직매소 활동, 농산가공 활동, 학교급식 등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초·중·고교는 지역농산물을 90%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지산지소는 단순한 지역농산물의 생산·소비에서 벗어나 지역농산물을 연계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의 하나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윤장원 외 1명(2016), 로컬푸드의 성장요인 분석
- 주상현(2015), 로컬푸드 성공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
- 김영란(2014),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연구
- 윤종상(2013), 생산자·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발전방안 : 텃밭꾸러미 사례를 중심으로
- 서장원(2013),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김자경(2013), 로컬푸드 지원조례와 공동자원(commons)의 운영원리-지원조례를 둘러싼 쟁점과 함의
- 장현욱 외 2명(2013),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연구
- 김미숙(2012), 건강욕구와 로컬푸드 운동 : 전북 익산시의 로컬 푸드 판매를 중심으로
- 위클리공감 블로그(http://koreablog.korea.kr/)

작성자 : 한광식 교수(김포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8. 산지유통센터(APC)

생성배경 1991년 이전에는 산지유통시설이 저온저장고와 소규모 선별시설 정도로 매우 미미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소비지에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면서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대형유통업체는 농산물 상품화 개념뿐만 아니라 효용적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 시설도 단순한 부가가치 창출에서 소비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원물조달 체계가 도매시장 및 벤더업체 중심에서 산지유통조직으로 확대되면서 산지유통조직과 대형유통업체 간의 직거래 개념이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에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은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의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건립되었고 산지유통시설의 명칭도 포장센터, 청과물 종합 처리장 등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APC)로 재편되었다.

2004년 한국과 칠레의 FTA타결을 계기로 산지유통시설이 규모화·전문화 체계로 변화되었다. 세계 각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체결에 따라 산지유통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과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거점 APC)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 거점 APC를 지원한 것은 국내 농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국내외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지유통조직 및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용어설명 산지유통센터(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APC)는 '산지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이 운영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상품화, 저장, 출하기능 등을 단일 부지에서 수행하는 복합적 시설'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근거하여 지원된 시설 및 보완된 시설'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거점 APC는 FTA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근거하여 설립된 산지유통센터로 한정된다. 정부는 정책적 범위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을 분류하고 있지만 현실적 기능과 운영주체를 전제로 분류하게 되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해진다는 주장이 있다. 과거부터 산지유통시설을 운영한 주체가 기존 집하장에 자부담으로 선별시설과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장한 경우가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APC지원 사업이 아닌 여타 정책 사업으로 건립되거나 시설이 보완된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 산지유통센터 중에 거점 APC규모에 달하는 산지유통조직이 있지만 거점 APC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산지유통시설 관련 기능과 주체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산지유통시설의 개념 및 역할 구분이 명확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 일본에서는 농협 유통사업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산지유통주체로서 최근 VFS(vegetable fruit station)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매입과 계약생산, 배송시스템을 융합한 유통센터가 판매채널을 관리하는 체계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바리끼현 전농본부의 VFS인데 1995년에 결성하여 2000년 39억 엔인 사업실적이 2003년에는 85억 엔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VFS는 전통적 농협 공동판매사업이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확대라는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부회의 조직이 전업적 대농을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표 5〉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기능

구 분	기 능
마케팅 경영 전략	• 시장지향형 마케팅 전략 수립 • 표적시장, 표적고객에 대한 시장 정보 조사 • 시장세분화, 포지셔닝 • 상품차별화(상표 도입, 브랜드화) • 위험과 불확실성 관리
원료 농산물 조달	•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생산 계약, 인도 계약) – 품종, 파종, 수확, 재배(사육) 조건 및 물량 인도 시기 등이 명시된 계약 추진 • 생산자의 계약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pooling)
처리 및 생산 관리	• 선별(등급), 규격, 포장(표준규격상품) • 가공처리(세척, 박피, 절단 등) • 예냉 등 수확 후 처리 • 저온저장 • 저온수송 • 품질관리(식품안정성 관리 등)
제품 판매 및 촉진	• 유통경로 및 판매방식 선택(시장 판매, 계약 약정 판매) • 인도상품 규격, 수량 • 인도시기, 판매시기 • 가격수준, 가격결정 방식 • 계약조건에 대한 교섭력 확보 • 광고·홍보 및 판매 촉진
수확 후 관리기술 및 가공처리설비	• 적정 기술 도입(선별기, 예냉기, 저장 가공시설 등) • 시설 및 설치 관리의 효율화 • 시설배치(layout)의 합리화

출처 : 김동환 외(2005),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방안 및 운영지침 연구; 운영지침 부문,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참고자료·문헌

- 최지현 외(2005),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방안 및 운영지침 연구 : 최적배치부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환 외(2005),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방안 및 운영지침 연구 : 운영지침 부문,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최병옥 외(2010),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권용덕(2007), 경남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 방안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 황의식 외(2004),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공동마케팅조직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승용 외(2011),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작성자 : 채종현 부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9. 자원순환 도시농업(도시농업 지원센터)

생성배경 도시민이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따라 도시생활 주변에서의 도시농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 나오는 빗물, 음식물쓰레기, 다양한 재활용 물질 등이 자연에 방치되거나 소각, 매립됨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러한 유효한 자원들을 가공하여 농업활동에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농업방식을 활용하게 되었다.

용어설명 도시농업은 도시민이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원예를 비롯하여 텃밭농원을 활용한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은 유기농업이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도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다양한 재활용 물질 등이 대량으로 버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퇴비 등을 개발하여 농업에 활용하는 도시농업을 자원순환 도시농업이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현재 용어의 사용 도시어메니티 증진, 농업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갖추기 위해 자원

순환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민과 협동조합, 지자체로 구성된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주체가 되어 자치센터 중심으로 파트너십형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자원순환 도시농업의 가장 큰 전략은 환경보전을 위한 유휴자원의 재활용으로 이를 통해 도시의 환경성, 생태적 감수성,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도시에서 농업을 통해 신선 농산물 지급 및 지역 내 주민들 간의 교환으로 커뮤니티 조성을 추구한다.

〈표 6〉 자원순환 도시농업의 기본체계

구분	주요 내용
목표	도시어메니티 증진, 농업의 다원적 가치 인식
주체	도시농업네트워크(도시민–협동조합–지자체)
커뮤니티	자치센터 중심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
전략	환경보전을 위한 유휴자원 재활용 도시의 환경성, 생태적 감수성, 공동체의식 제고 신선 농산물 자급 및 지역 내 교환
장소	녹지: 녹지보전지역 도심지: 공원에 도시농업 시범농장 겸 환경교육장 개설
품목	유기 야채, 과수
자원	유휴자원의 재활용(음식물쓰레기, 유기자원, 노인 장애인, 실업자)
생산물 활용	자급, 참여자들 간의 직거래
퇴비화 방법	가정 : 흙 상자, 옥상 화단, 가정용 처리기, 지렁이 상자(화분) 마을 : 소규모 공동시설 설치 지자체 : 동, 구별시설 설치(협동조합과 협력)

참고자료·문헌

- 도시농업을 통한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2012), 경기복지재단
-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보고서(2013), 서울시

작성자 : 은희창 이사(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0. 자율관리어업

생성배경 자율관리어업은 어촌계나 업종별로 구성된 어선어업협회, 단체, 조합 등이 그 구성원들 간 협의에 의해 스스로 수산자원 조성 관리, 불법 어업 예방, 어장 환경개선, 공동생산판매 등에 관한 자율 규약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궁극적으로는 소속된 어업인 모두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주로 어업인 의식 개혁 및 실천을 통한 '새어촌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용어설명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하는 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수도 2001년 시작 당시 63개소(5천 명)에서 지난 2015년에는 1129개소(약 70천 명)로 확산되어 약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용어의 사용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체계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협의회, 추진지원단, 지도자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서는 자율관리위원회 구성, 규약 제정 및 심의, 사업 시행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도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에서는 공동체 선정, 사업 평가, 기술지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추진지원단은 해양수산부이며, 주로 행정, 예산, 제도적 지원을

맡고 있다. 그리고 지도자협의회는 자율관리어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그림 11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출처 : 수산정보포털(2015), 「자율관리어업 홍보책자」(http://www.fips.go.kr)

〈표 7〉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역할 및 기능

구 분	수행기관	내 용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어촌계, 공동체	• 자율관리위원회 구성 • 자율관리 규약제정 • 자율관리규약 심의 및 지원 요청(지역협의회) • 자율관리사업 실시
지역협의회	시도	• 자율관리 참여 공동체 선정 • 자율관리규약 심의 • 사업실태 평가, 개선방안 협의, 기술지도 • 자율관리추진 문제점 개선 건의(추진지원단)
추진지원단	수산자원정책과	• 추진협의회 건의사항 검토 •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 방안 자문 • 행정·예산·제도적 지원방안협의
지도자 협의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	• 시·도별 자율관리어업 정보 교환 • 자율관리 지원방안 및 문제점 개선·건의 • 자율관리어업의 안정적 정착유도

출처 : 수산정보포털(2015), 「자율관리어업 홍보책자」(http://www.fips.go.kr)

자율관리어업은 수산 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지역별 어업별 분쟁해소,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하고 있다.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일본의 자율관리어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자원수준을 초과한 과잉 어획노력량의 문제가 현실화되었으며, 일본 수산업계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원양어업보다 비교적 유리한 여건에 있는 연안어업의 장점을 살려 자원의 보전 및 어업경영의 개선을 꾀하고자 자원관리형 어업을 주창하게 되었다.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오모리현 三澤市漁協의 북방대합관리
- 와카야마현 勝浦漁協의 공동어업관리
- 미야자끼현 日向市日向漁協의 기건망어업 윤번제
- 북해도의 常呂漁協의 큰가리비 생산관리
- 오이따현 姫島村漁協의 어기제한 및 자원조성
- 치바현 夷偶東部漁協의 닭새우 생산관리와 소비확대
- 에히메현 東豫市漁協 청년어업자 단체의 꽃게관리
- 카나가와현 横兵市漁協의 어가조절
- 북해도 歯舞漁協의 소득균등화
- 카고시마현 野間池漁協의 재배어업
- 시즈오까현 坂井平田漁協의 대황, 감태관리

참고자료·문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7.22), 자율관리어업 10년, 어촌발전을 선도하다
- 수산정보포털(2013), 자율관리어업 홍보책자
- 한국수산경제신문(2013.9.16), 자율관이어업 선진화방안
-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http://www.jayul.go.kr)

작성자 : 장효천 원장(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1.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생성배경 한국의 농업은 지난 60년 동안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의 악화를 경험해 왔으며, 농업·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중앙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농업 부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별 시·군의 창의적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간 차별화 전략을 활용하는 지역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농업 측면에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지역농업특성화 지원사업과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의 시행은 실질적인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시·군 단위의 지역농업은 품목 개발, 조직화, 산업화의 중요한 사업단위이며, 농산업 및 농촌 활력화의 근간이 되어 왔다. 농산업의 융·복합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재발견과, 특성화된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리더 주체 육성, 그리고 핵심 사업주체 역량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의 혁신과 미래성장을 이끌어가는 지역농업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며, 거세지는 수입개방의 파고와 지역 간 경쟁 심화를 극복하는 데 중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자원의 투입과 관리를 핵심 작목과 특성화된 사업 아이템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용어설명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년간 약 10억 원을 지원해 시·군 여건에 맞는 주도 사업에 기술-교육-예산을 집중해 육성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품목을 발굴해 기술, 교육, 예산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1] 목적 달성을 위해 1센터 1유형을 선택하여 특성화를 집중 추구하며, 지역간 경쟁 개념을 도입하여 ①선정 평가 시행 ②사업비 차등 지원 ③사업성과 관리(기획, 중간, 결과 평가회 정례화)를 시행한다.

특징은 시행 단계에서 진흥청, 도 기술원, 시·군 센터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역할 분담으로, 특화 연구·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과 시·군 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시·군 센터 중심의 협력체계, 즉 '클러스터 방식'의 추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그림 12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배경 및 목적

출처 : 농촌진흥청(2013), 지역농업특성화 평가운영 및 경제성 분석, p7

1) 자료 :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 매뉴얼], 농촌진흥청

현재 용어의 사용 농촌진흥청은 2001년부터 지도사업 실적이 우수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선정하여 지원해 왔으며, 2007년부터는 12개 특성화 유형을 선정하여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사업유형이 재편되어 12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변경, 사업 운영체계가 강화되었다. 기존 12개의 사업유형은 품목과 특성화 요소 등 분류기준이 혼재되어있어 사업유형 단순화, 품목중심 체계, 전략적 선택방향 제시 등의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식량산업, 원예산업, 특용작물산업, 축산업, 융·복합산업 등 5개 유형이다. 2013년 개편된 사업 유형은 크게 단일산업특화형(식량, 원예, 특용작물, 축산)과 복합산업 특화형(융·복합)으로 구분 가능하다. 단일산업 특화형은 지역의 사업자원과 향토자원의 결합으로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모델, 복합산업 특화형은 지역의 복수산업자원과 향토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해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모델로 볼 수 있다.

평가체계 또한 실질적인 사업효과 검증 및 객관성을 위해 연차별로 다른 평가 및 복수평가자 평가, 사전컨설팅 등을 도입했다.

참고자료·문헌

- 김종안(2014),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의 의미와 성과, 농정연구 Vol.50, 농정연구센터
- 농촌진흥청(2013), 지역농업특성화 평가운영 및 경제성 분석
- 농촌진흥청(2009),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 매뉴얼
- 농촌진흥청(2009), 시군 지역농업특성화 중장기 목표와 전략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4),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기술지원 정책 연구용역

작성자 : 김봉원 연구위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정책용어

22. 친환경농산물 인증(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제도

생성배경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대되면서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정부차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 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지나친 농약사용으로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제규범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용어설명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시초는 1993년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며, 1996년 저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 실시되었다. 이후 1997년 제정된 「친환경농산물 육성법」을 기초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및 표시제도를 시행하였고, 2006년 개정 이후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되었다.

2010년부터는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의 2종류로 단순화되었으나, 저농약농산물의 경우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소비자 및 생산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2년도에 변경된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였으며, 인증마크 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로고사용은 2013년 말까지 병행하여 사용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심사결과통보 → 생산·출하과정 조사 → 시판품 조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인증방법으로는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현재 용어의 사용 현재 친환경농산물 품질기준은 「친환경농업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 2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 정의하고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제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의미하며,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이다. 저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이하, 최종 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의미한다.

해외사례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미국의 NOP(National Organic Program), 일본의 유기 JAS(Japan Agriculture Standard), EU의 EEC No. 2092/91, 호주의 유기 및 바이오 다이나믹 제품에 대한 국가 규정(National Standard for Organic and Bio-Dynamic Produce) 등과 성격이 유사하다.

참고자료·문헌

- 이금호(201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연구
- 양시윤(2011), 친환경농산물 구매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신용광, 황윤재(201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http://www.usda.gov)
-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홈페이지(http://www.ifoam.org)

작성자 : 은희창 이사(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3. 친환경농업직불제

생성배경 친환경농업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홍수조절,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최소화하여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로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 주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농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환경부하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용어설명 우리나라에서 직불제가 도입된 것은 농산물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1997년 경영이양 직불제이며, 이후 농가 소득보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농촌 공동화 방지 등의 목적 아래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됐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들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불제로는 소득보전직불제, 쌀농업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생산조정보상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등이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직불제의 현행 지원 기준은 같은 필지에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무농약·

저농약은 3년(3회), 유기인증은 5년(5회)으로 지원 기간을 한정하고 농가당 지급 면적도 최고 5ha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하도록 하고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사업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대상 :
–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 지급한도 :
– 농가당 0.1~5.0ha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 원/ha 무농약 400천 원/ha 저농약 217천 원/ha
– 밭 : 유기 1,200천 원/ha 무농약 1,000천 원/ha 저농약 524천 원/ha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 원/ha 밭 600천 원/ha

해외사례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등 수출국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수입국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직불제가 실시되고 있다. 국가 여건변화와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응하여 직불제도의 개편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2012년 농업법 제정과정에서 고정직불제(DP), 가격보전직불제(CCP), 수입보전직불제(ACRE)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방식의 경영안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소득보장직불제에서 단일직불제로 전환한 이후 과거의 실적에 근거한 직불제에 대해 지급근거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

되면서 직불제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이나 EU와는 달리 농산물 수입국 입장에서 직불제의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직불제 예산을 농림수산예산의 40%까지 확대하는 등 농정에서 직불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직불제와 관련된 핵심은 경영안전형직불제로서 호별소득보상제도, 공익형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농지물보전관리직불제, 중산간지역직불제 등이 있다.

참고자료·문헌

- 김호석 외 2명(2005), 농업보조금과 수질오염 : 친환경직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세계농업 제149호
- 농림축산식품부(2015),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작성자 : 한광식 교수(김포대학교)

Ⅳ

지역발전정책/제도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 HOPE 프로젝트

생성배경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기조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HOPE는 희망이라는 고유의 단어와 주민 행복 체감(Happiness), 균등한 기회 제공(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Partnership), 어느 곳에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Everywhere)이라는 영문의 첫 글자 조합을 의미한다.

용어설명 지역희망(HOPE)프로젝트는 비전 달성을 위하여 3대 추진전략(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 주도 및 협력강화)을 중심으로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은 도시-읍면-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생활공간으로서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 중소도시 연접지역), 도농연계생활권(도시-인근 농어촌), 농어촌생활권(농어촌-배후마을) 등으로 유형화한다. ②맞춤형·패키지 지원은 주민 행복 및 희망 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소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③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는 사업 기획 및 집행 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림 1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비전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http://www.region.go.kr/policy/vision.php)

6대 중점 추진방향은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생활 속 절실한 과제' 중심으로 ①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②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③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④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⑤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⑥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6대 분야 17개 과제

1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①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②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③ 주민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2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④ 일자리 창출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을 전환 ⑤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⑥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⑦ 농어촌 일자리 확충
3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⑧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⑨ 지방 대학 특성화 ⑩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4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⑪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⑫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⑬ 생태·자연환경 보존 활용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⑭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⑮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6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⑯ 혁신도시·세종시 보완 발전 ⑰ 지역공약 이행 지원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 방향제시(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보도자료 (2013. 7)

참고자료·문헌

- 지역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3.7),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 방향제시(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region.go.kr)

작성자 : 김석중 연구위원(강원발전연구원)

정책용어

2. LEADER(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연대)

생성배경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농촌개발 프로그램 중 가장 혁신적이면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LEADER(Liasons Entre Actions de Dévelopment de l'Economie Rurale) 프로그램은 1991년에 시작되어 LEAER I, LEADER II, LEADER+, LEADER++ 등의 사업 단계로 진화해 왔다.

LEADER 프로그램의 탄생은, 1990년대 들어 유럽연합이 생산주의(productivist) 농업정책에서 탈생산주의(post-productivist) 농촌정책으로 농정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것과 깊이 관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농촌공간의 우선적 기능을 식량생산에 두어 왔다. 그러나 차츰 농촌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내용이 다변화되고, 농촌지역의 인구사회적 구성도 크게 변화했다.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된 지방화, 우루과이 협정 등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기존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로, 1980년대 말에 유럽연합에서는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기 시작했고, 공동농업정책의 토대였던 부문적(sectoral) 접근방법을 탈피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특정 농촌지역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정책개입에 구조정책자금(Structural Funds)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지역적(territorial)[1]

1) 'territorial'이라는 표현은, 'central'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local'이나 상당한 광역의 지리적 경계를 함의하는 'regional'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역적'이라고 표현했으나, 특정 공간의 물질적, 상징적 고유성을 특히 강조하는 뉘앙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접근, 다부문적(multi-sectoral) 접근, 참여적 접근(participatory approach)을 표방하는 내생적(endogenous) 농촌발전 전략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구체화시킨 정책 수단이 바로 LEADER 프로그램이다.

용어설명 LEADER 프로그램은 그 의미를 직역하면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연대'의 프랑스어 표현이다. 지역적, 다부문적, 참여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농촌개발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 걸 맞는 사업의 구조는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로 요약된다. 수직적으로는 지방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s, LAGs), 국가나 지방정부가 위임한 중간조직(Intermediary Body, IO),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의 세 층위에 걸친 파트너십의 구조로 되어 있다. 수평적으로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유럽연합 농업위원회가 기능을 위탁한 민간조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유럽 정보 연합(Association Européene d'Information sur le Dévelopment Local, AEIDL)'이 창설되어 LEADER에 참여하는 모든 기구, 조직들 간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였다.[2] U 농업위원회는 AEIDL 외에도 별도의 '지리적 보고그룹(Geographical rapporteurs)'을 두어 LAGs과 기타 행정기구들이 요청하는 자문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프로젝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였다.

현재 용어의 사용 LEADER는 구조기금의 목표지역 프로그램과 별도로, 소규모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종합발전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자 체계이

2) AEDIL은 농촌개발 관련 연구자들 및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AEDIL은 a) LAG에 대한 기술적 지원, b)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c) 세미나, 포럼 등의 조직, 지원, d) 농업위원회 요구에 따른 공식 문서 및 보고서의 작성, e) 일반 대중들에게 LEADER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출판사업, f) LEADER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그림 2 LEADER 프로그램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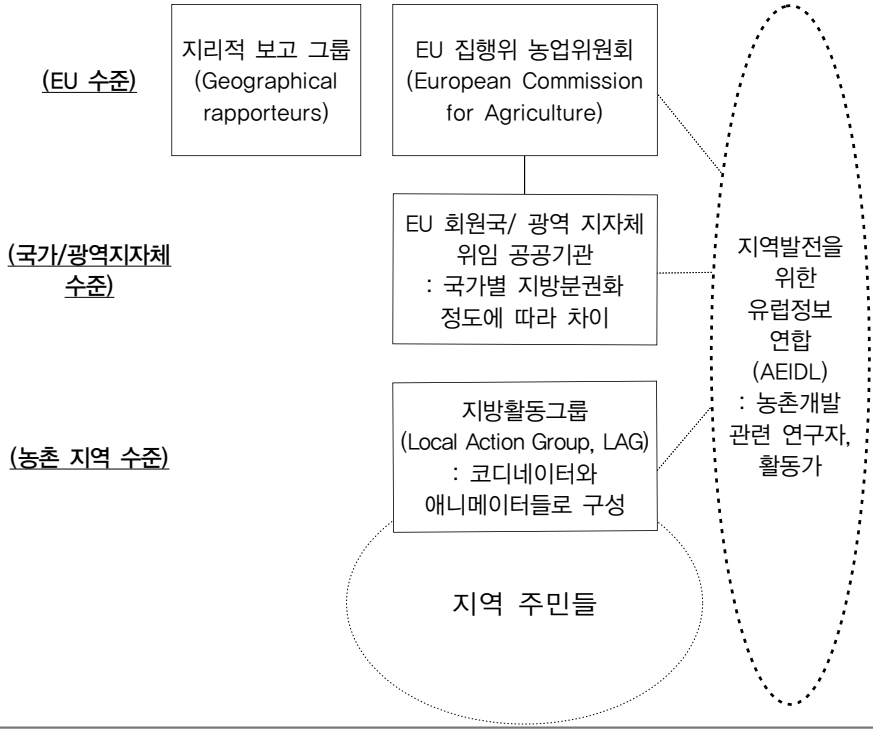

출처: 김정섭(2014.5.2.),

다. LEADER 프로그램의 사업 집행 구조는 지방활동그룹의 사업계획이 중간조직의 검토를 거쳐 EU 농업위원회에 제출되면 1)지역, 2)사업계획의 타당성, 3)지방활동그룹 구성 상태라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 된다[3]. 최종 승인 절차가 끝나면, EU 농업위원회는 구조정책자금[4] 중 LEADER 사업예산의 지출

3) LEADER의 대상 지역은 인구 1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의 유럽의 모든 농촌지역이다.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a) 통합주제와의 일치성, b) 지역사회 내 특정 사회적 범주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 c) 지역 특성과의 일치성, d) 사업의 실험적 성격, e) 방법의 타 지역으로의 전파가능성, f) 농촌개발정책의 주류를 이루는 기타 구조정책들과의 보완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된다. LAGs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a) 인적 구성비, b) 조직의 내부 구조, c) 행정적 / 재정적 역량의 세 측면에서 검토된다.

승인을 중간조직에 통보한다. 중간조직은 재정 관리와 조정을 책임진다.

LEADER의 지원금은 세 차례로 나뉘어 지방활동그룹에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은 전체 지원 금액의 40% 정도를 차지하며, 사업계획 승인 직후에 지급된다. 2차 지원금은 1, 2차 지급액의 합계가 전체 지원 금액의 8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모든 프로젝트들이 2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2차 지급을 받기 위해서 지방활동그룹은 해당 IO에 1차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1차 지급액의 지출명세를 포함한 이 보고서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EU 농업위원회로부터 2차 지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1차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중간조직이 입증해야 한다. 2차 지원금의 지급 결정은 구조정책자금의 각 기금들의 집행지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3차 지원은 EU 공동재정의 국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3차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지방활동그룹에 대한 최종 보고, 각 지방활동그룹의 지출명세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LEADER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3단계의 지급 절차를 두는 등 세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사업 추진의 투명성, 효과성,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최근까지 농촌개발정책(EU Rural Development Policy) 전체에 LEADER 프로그램의 상향적이고 내발적인 정책 특성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왔다. 동 정책에서 유럽연합은 지역개발 정책의 네 가지 축을 설정하였다. 제1축은 '농림업 경쟁력 향상', 제2축은 '환경과 토지관리', 제3축은 '경제적 다양성 및 삶의 질'로

4) 구조정책자금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그리고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으로 조성된다. LEADER를 통해 집행되는 지원금은 EAGGF의 지도부문(Guidance Section), ESF, 그리고 ERDF 중 하나 이상에서 출연된 것이다. ESF, ERDF, 그리고 EAGGF의 조성목적과 운영지침은 각각 EU 규칙 2084/93, 2083/93, 그리고 2085/93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ESF의 경우 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ERDF는 중소기업 및 환경 관련 분야에의 인프라 투자, EAGGF의 지도부문 기금은 농촌 인프라의 개발과 개선, 농촌 문화유산의 보호, 관광의 촉진 등에 사용된다.

규정하였고, 제4축을 'LEADER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LEADER 프로그램의 지속을 의미함은 물론, 다른 세 가지 축에도 그간 추진하여 온 LADER 프로그램의 추진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문헌

- 김정섭(2001), EU 농촌개발 프로그램: EU의 국가 간 협력사업 성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 김정섭(2002), "유럽의 농촌발전 전략과 LEADER 프로그램" 〈농정연구〉, 농정연구센터
- 김정섭·권인혜(2010),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강화 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제3호
- 김태연(2007), "EU 및 영국의 농촌과 농촌정책." 송미령·박주영 편, 〈선진국 농촌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경 외(2002), 〈상향식 농촌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농정연구센터
- 송미령 외(2010), 〈농어촌 통합형 지역개발 모델 정립 및 실행계획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현석 외(2006), 〈유럽연합 농촌정책 발전과정 연구〉, 지역아카데미
- 최정섭·권오복·김성용(1994),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1997), CAP 2000: rural development. Brussels: DG Ⅵ
- European Observatory(March 2001), "LEADER II – Lessons from the past, tools for the future", Rural Innovation, Dossier no.11

작성자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생성배경 영국의 보수당 연정이 지역정책의 새로운 거버넌스로 지역기업협의회를 설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RDA 광역권은 인위적·정치적으로 설정되어 개별 지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기능적 경제권의 설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RDA의 하향식(top-down) 정책추진과 관료제적 운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결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분권화의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셋째, RDA 설립 이후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RDA 성과가 대체로 공공부문의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성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RDA를 폐지하고 LEP를 설립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국가재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목적[1]과 함께 신노동당 집권기간 동안 해체된 대도시 지역의 부활과 RDA 권역 내 도시지역 간의 갈등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용어설명 영국은 2010년 5월 보수당 연정(보수당+자유민주당)이 들어서면서

1) 기존 RDA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 주도의 LEP로 전환하면서, LEP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자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지역성장기금(RGF)은 기존의 RDA에 비해 예산규모가 1/4로 축소되었다.

지역정책의 공간 단위가 기존 광역단위에서 로컬단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신노동당 정부가 광역단위로 설립·운영하던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2]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할 로컬단위의 지역기업협의회(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지역기업협의회는 지자체와 지역기업계의 협력기구(joint body)로서 산업계가 주도하고 있다[3]. 이러한 지역기업협의회의 설립은 영국의 지역정책이 공적 영역 및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에 기능적·경제적 차원에서 시장 중심의 민간주도 정책으로 급선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LEP는 지자체와 산업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LEP는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교통, 인프라, 산업 등), 지역성장기금(RGF) 제안서의 조정 및 신청, 기업성장 지원, 지역 차원에서 규제 개선, 생활·주거 여건 개선, 지역 고용주와 협력,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조정,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디지털 인프라 사업의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수당 연정이 2010년 6월 LEP 설립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이후 62개의 LEP가 제출되었고, 이 중에서 2010년 10월 24개의 LEP가 최초 승인된 이후 계속 확대되어 2012년 5월 기준 39개 LEP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LEP의 규모는 인구 기준으로 최소 50만 명(Cumbria LEP)에서 최대 780만 명(London LEP)까지 매우 다양하

2) RDA에 대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니즈를 전체적으로 통합·조정하여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準정부기관(Quangos)으로서 예산 효율성, 자율성 및 공공책무성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3) LEP의 운영위원회를 지역기업인 중심으로 구성하고 기업인을 의장으로 선출하게 하는 등 지역 산업계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고[4], 공간범위 기준으로도 2~3개의 지자체(District/Unitary)로 구성된 LEP가 있는가 하면, 32~33개 지자체로 구성된 LEP(런던, 남동부)도 있다. 한편, LEP의 운영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지역성장기금(RGF)을 신청·지원받을 수 있지만, 민간 프로젝트 내지 민간·공공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RGF를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3 영국 LEP의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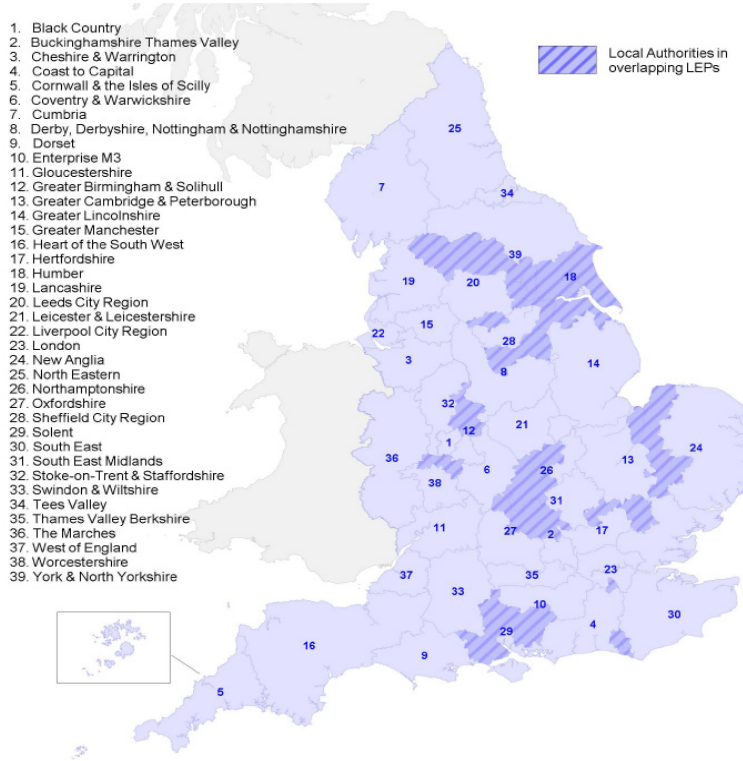

출처 : 박재곤, 영국 지역기업협의회(LEP)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KIAT(지역정책연구회), 2013

4) 39개 LEP의 평균 인구는 약 150만 명이다.

참고자료·문헌

- 박재곤(2013), 영국 지역기업협의회 (LEP) 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김재홍(2011), 잉글랜드 광역경제권 정책의 전환 : RDA 의 폐지와 LEP 창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1호
- 정준호(2011), 영국 보수당 연정 지역정책의 중앙집권화, 지역경제(통권 제23호)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4. TDPC(지역개발정책위원회)

생성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의 지역개발정책위원회(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는 1999년 1월에 설치되었다. 설립 목적은 지역 경쟁력 향상과 거버넌스 증진, 정책 지표 개발에 중점을 두어 도시와 농촌 지역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회원국 간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데에 있다.

한국은 회원국으로서 매년 개최되는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초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역정책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농촌 지역정책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12월 회의부터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용어설명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정책 포럼과 지역 정책 리뷰, 정책 보고서 발간 등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정책 논의 기조(paradigm)는 보조금 위주(subsidies)의 지역정책보다는 지역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지역에 대한 투자(investment)에 중점을 두면서, 분야별 연계 및 지역에 기반한(multi-sectoral place-based) 정책과 지역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 지역, 민간 등의 다차원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를 형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지역개발정책위원회는 위원회 및 산하 3개 실무단(지원 사무국

조직 : GOV)으로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 의장단은 8개 국가(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미국)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 산하에는 지역지표실무단(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농촌정책실무단(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Rural Areas), 도시정책실무단(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Urban Areas) 등 3개 실무단을 두고 있으며, 각각의 관심영역별로 구분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의 조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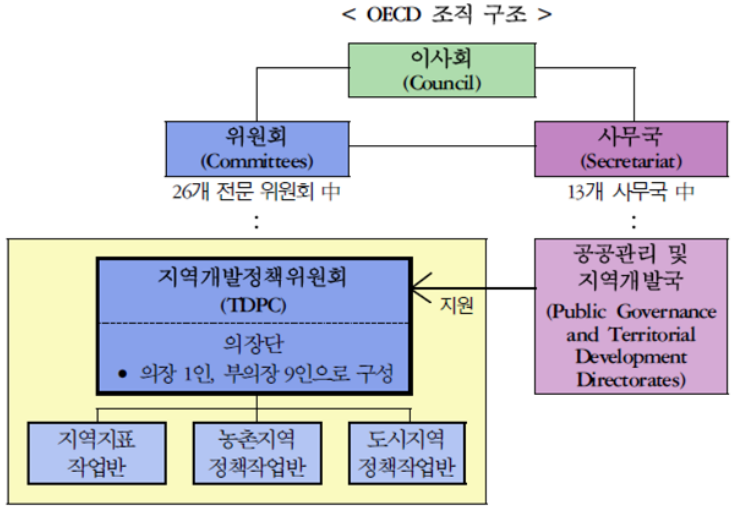

출처 : 권인혜,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개황과 농촌지역정책작업반의 최근 활동, 농촌경제연구원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자료실), 2011

위원회는 OECD 사무국 소관국(공공관리 및 지역개발국 ; GOV)의 지역정책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고위급 정책결정자가 참여하는 지역개발정책 국제포럼

에 참여하고, 또한 지역 경쟁력 제고,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 協治)의 증진, 성과측정 정책지표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정책 연구활동, 정책 이슈 논의, 각 나라의 정책 리뷰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책성과의 개선(best policy practice 등)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기후변화에 대응한 '공공투자의 효과성 최대화', '녹색경제의 도시와 농촌 발전기회 활용'이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즉, 최근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공공투자가 일관성 있고 전략적으로 실행되어 지속가능한 장기적 지역성장을 도모하도록 하는 정책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녹색성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도시와 농촌의 발전기회로 활용하는 지역정책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OECD(2013), 29th meeting of the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meeting
- OECD 대한민국 대표부(2010), 지역개발정책위원회 2011～2012년도 사업계획
- 권인혜(2011),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개황과 농촌지역정책작업반의 최근 활동
- 외교부(20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작성자 : 장효천 원장(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정책용어

5. 계획계약

생성배경 계획계약(Contrats de plan)이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및 투자분담에 대해 상호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계약은 1982년 프랑스가 지방분권 실시와 더불어 계획의 분권화, 민주화를 위하여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의 관계를 지배·종속이 아니라 보완·협력의 개념에 바탕을 둔 새로운 계획수단으로서 도입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핵심은 기존의 집권화 및 분산화 된 각종 지역발전계획을 대체하여 국가계획, 지역(레지옹)계획, 지방계획, 기업계획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계획계약은 1984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13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계약이 체결되었다.[1] 프랑스에서는 지방분권화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계약 제도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 지역적 차원에서 우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조화롭게 연계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토발전의 전반적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 간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지자체는 계약에 의해 안정적으로 확보된 재원을 이용하여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1) 제1차(1984~1988), 제2차(1989~1993), 제3차(1994~1999), 제4차(2000~2006), 제5차(2007~2013)

용어설명 국가 차원에서 계획계약의 수립은 CIADT(국토개발 및 정비에 관한 부처간 위원회)와 DATAR(국토 및 지역개발 기획단)[2]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IADT는 국토계획 및 발전에 관한 정책과 우선 사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계획계약의 수립에서 관련 중앙부처의 장관이 CIADT에 참여하여 각 부처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DATAR는 CIADT의 사무국이며, 주요 정책을 입안·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레지옹의 국가지사[3]는 수상과 각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DATAR의 위임을 받아 레지옹과 계획계약에 대해 협상하고, 레지옹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조정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의 투자기금에 대한 사용권과 배분권을 가진다.

레지옹[4] 차원에서는 레지옹 의회가 주축이 되어 레지옹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레지옹 의회 의장이 레지옹 국가지사와 함께 계획계약에 대한 협의 및 결정권을 가진다.

현재 용어의 사용 제5차 계획계약(2007~2013)에서는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레지옹 수준(volet régional)이다. 둘째,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 도농권연합체(pays), 레지옹 자연공원, 도시망 등과 같은 사업계획을 위한 특정 지역 수준(volet terrítorial)이다. 셋째, 해안이나 강의 관리나 산악지대와 같이 하나의 레지옹을 초월한 사업계획을 위한 레지옹 수준(volet interrégional)이다.

---

2) DATAR는 수상의 직속기관으로서 CIADT에서 논의할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레지옹 간의 협력과 부처 간의 국토계획에 관련된 업무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레지옹 국가지사는 레지옹에 파견된 국가의 대표로서 수상과 각 장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레지옹 국가지사는 레지옹에 파견된 각 부처 특별행정기관의 대표이며, 지역발전과 국토정비에 관한 국가정책을 집행한다.

4) DATAR는 수상의 직속기관으로서 CIADT에서 논의할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레지옹 간의 협력과 부처 간의 국토계획에 관련된 업무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 2〉 계획계약제도 유형

제도	특징	대상공간	주체	재원
레지옹 계획계약	국가와 레지옹 간 통합적 사업 추진	레지옹	국가, 레지옹, 데파르뜨망, 코뮌 및 협력체, Pays	• 국가와 레지옹 간 동등부담 원칙
레지옹간 계획계약	레지옹 간 통합적 사업 추진	산악지역 연안지역	국가, 레지옹, 데파르뜨망, 공공기관	• 국가와 레지옹 간 동등부담 원칙, 기타 지자체 • 유럽연합지역개발기금
특정지역 계획계약	코뮌 간 통합적 사업 추진	도농지역 도시권지역	코뮌 및 협력체, Pays	• 지방세, 교부금, 단일 사업세 등 • 상호부담

출처 : 국토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2010)

계획계약은 DATAR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국가와 레지옹이 계획계약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부처 간 협의, CIADT의 심사·승인, 레지옹 의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참고자료·문헌

- 국토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2010),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배준구(2010), 프랑스 광역발전계획, 지역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승준(2004), 프랑스의 지방분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6. 광역도시계획/MPO

생성배경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추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광역도시권에 거주하게 되면서 도시공간의 외연적 확산 및 연담화와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 도시를 광역단위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나, 기존의 개별 도시 또는 지자체만으로는 광역적 도시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규제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졌다.

광역화된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가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1991년「도시계획법」개정시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고 제도도입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광역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2000년「도시계획법」개정시 새로이 구성하였고 이후 2001년 1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계승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시의 광역화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증대시킬 우려가 크고, 광역도시계획이 도시 상호간 공동계획이므로 함께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지자체간 권한 및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책의 효율화와 지자체간 분쟁 및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거나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설명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즉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시간 공간구조 및 기능의 상호 연계로 적절한 성장관리를 도모하며 광역시설의 중복 및 비효율적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장래 20년을 목표로 수립하는 장기적인 전략계획이며, 도시·군계획체계에서 최상위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담아야 될 내용으로는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한편,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17조의2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협의·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광역도

시계획협의회는 권한과 역할에서 낮은 수준의 도시간 협의체라고 본다면, 보다 강화된 형태의 조직체로는 광역계획기구(MPO;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가 있다. MPO는 광역도시권에 속한 다수의 지자체들이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개선, 경제개발 등 광역적인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는 계획기구이다. MPO는 계획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지자체간 협의, 상호교류, 공동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협동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내 여러 지자체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광역도시계획은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2013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1개 도시권에서 수립되었다. 이 중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창진권, 청주권의 7개 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목적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여수·순천·광양의 광양만권, 전주권, 제주권, 전남 서남권 등 4개 도시권은 대도시권 관리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고자료·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국토교통부(2011), 토지이용 용어사전

작성자 : 윤정중 연구기획실장(토지주택연구원)

정책용어

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생성배경 거점중심의 지역정책에서 탈피하여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 초기에 입법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에 인구와 지역 총생산이 집중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4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용어설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제1조)에서는 동법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법은 총 5장(제1장 총칙, 제2장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 제3장 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제5장 지역발전특별회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림 5 201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목표	• 지역경쟁력 강화	➪	• 지역경재력 강화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체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법정기구)	➪	• 시·도 –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 (임의기구)
정책 공간	• 기초생활권 • 광역경제권	➪ ➪	• 지역생활권 • 경제협력권
계획 체계	법정계획: 지역발전5개년계획 → 부문별 발전계획,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임의계획: 기초생활권계획, 시·도 발전계획, 초광역 개발권 구상	➪	법정계획: 지역발전5개년계획 → 부문별 발전계획, 시·도 발전계획 임의계획: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시·군·구)
주요 시책	• 지역발전역량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인력 양성 • 문화·관광 육성 〈신설〉	➪ ➪ ➪ ➪ ➪	• 지역발전역량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 지역교육여건 개선 (인력 양성포함) • 문화 관광 육성 + 환경 보전 •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회계명 회계내 계정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지역발전특별회계 •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사업집행잔액 사용	• 전용절차를 거친 후 사용	➪	• 전용절차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1. 27)

* 2015. 1. 1. 시행

참고자료·문헌

- 강현수(200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쟁점과 과제, 공간과 사회(20), 공간환경학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200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첫걸음'
- 한표환(200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상생적 국토발전전략, 국토(269)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작성자 : 오승은 교수(제주대학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8. 국가지도집

생성배경 일찍이 근대국가 형성 이후 국토와 국가의 발전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 홍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지도집을 발간해 왔으며, 특히 국가 간 영토분쟁이 최근 첨예화되면서 영토 주권을 공식화하는 수단으로서도 적극 편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선언할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국토 공간 정책 및 국토교육의 기초자료와 국토공간정보의 통합의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7년 이후 국가지도집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간해 오고 있다.

용어설명 국가지도집(National Atlas)은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의 영토 및 자연환경, 경제, 인구, 문화, 역사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지리학 및 지도학 관련 학회와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고 그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지도집은 중앙정부가 발간의 주체가 되어 자국을 대상으로 특정시기의 자연·인문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지도집 혹은 지도를 포함시킨 일종의 종합적인 지리서를 말한다. 이는 한 국가의 중요한 국토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영토나 지명 문제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대다수의 유럽 및 북미 국가를 포함하여 중국·일본·호주 등 70여 개국에서

국가지도집을 발간하고 있다. 특히 국가지도집 제작에는 지도제작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해당 국가의 지리학회와 지리학자의 역량을 총집결시켜 국가적 사업의 명분과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지도집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나라는 2007년 처음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현대적인 체제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발간한 바 있다. 국내외 배포를 목적으로 국문판과 영문판을 동시에 발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축소형의 영문판 국가지도집인 'The National Atlas of Korea'를 편집, 발간하였다. 2007년 지도집의 시간적 범위는 1990년대 이후부터 2005년 까지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문화 및 산업구조 등을 포함하며, 특히 영토표기 문제와 관련해 특정 연대의 역사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남북한)의 영토를 범위로 하며, 주제에 따라 일부 지역 및 국가를 포함하며,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과거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포함한 지역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내용 범위는 국토의 영역과 국경선, 자연현상, 역사, 경제현상, 인구와 도시, 정치·사회문화 등의 공간적 분포와 변화과정에 관한 주제도 포함하고 있다.

〈표 3〉 국가지도집의 구성 체계

대분류	세부주제	페이지 수
영토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도, 영토와 해양, 강역과 행정구역, 고지도, 1:5만 지도	32
자연지리	지형, 지질, 토양, 기후, 수문, 환경, 자연재해, 식물상과 식생, 야생동물, 해양	54
인구 및 정주	인구분포와 인구성장, 인구동태와 인구이동, 인구구조, 가구와 주택, 문화와 관광, 도시와 촌락	34
경제	경제지표, 산업기반시설 및 에너지 부문, 1차 산업 및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교통·통신	36
사회 및 정치	노동, 보건·복지, 여성, 교육, 정치, 세계속의 한국	36
지도설명문	개별 지도 설명문	46
1:5만 색인	1:5만 색인	40

출처 : 국토포털 홈페이지(www.land.go.kr)

현재 용어의 사용 2007년 국가지도집 발간 이후, 급변하는 국토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한 국가지도집 갱신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국가지도집 발간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2014년부터 5년 계획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즉, 2014년부터 3년 동안 각기 다른 주제의 국가지도집을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동시에 발간하고, 이어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용 판과 보급판 등 국가지도집 제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국가지도집은 3권1집 형식의 선진형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신의 디지털 지도제작 기법을 활용하고 정보 전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인포그래픽 시각화기법을 활용하면서 국가적 기록물의 위상에 맞는 제작 품질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림 6 새로운 국가지도집 발간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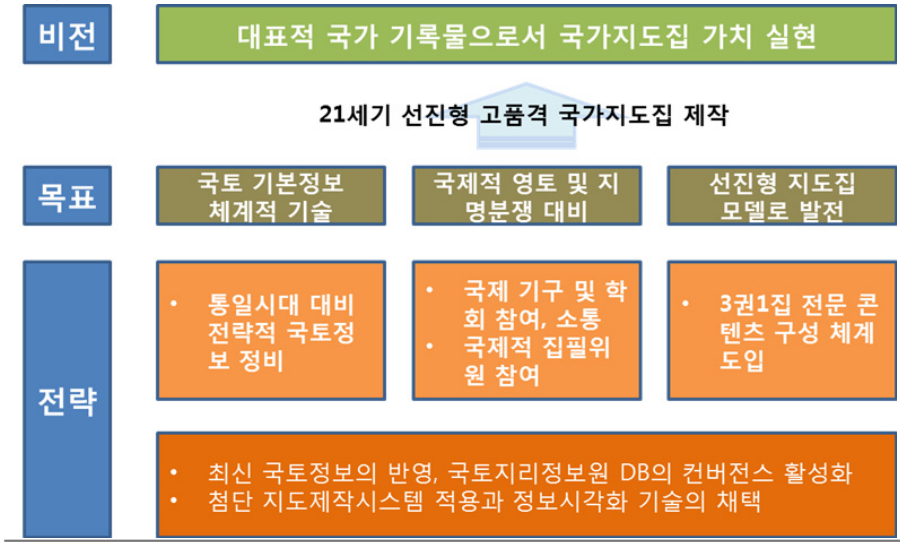

우선, 2014년 12월에 완성된 국가지도집 제1권은 총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영토)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역사적 관점에서 지도로 정확하게 표현하였고, 제2장(정부와 지방자치)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지방자치 모습을 지도와 함께 포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제3장(국토의 변화와 발전)은 국토의 변화 과정, 국가 및 지역 계획, 경제와 산업 활동, 그리고 정주체계 등을 기술하고, 끝으로 제4장(세계 속의 한국)은 우리나라 외교 및 국제통상 활동, 국제개발 협력, 그리고 최근의 한류 등을 서술하였다.

2015년부터 2년간 지속되어 온 제2권 및 제3권 작업은 각각 국토의 자연 및 인문환경을 하위 세부주제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국가지도집 제2권 '자연환경'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우리가 사는 땅, 더불어 사는 생명, 공기와 물, 인간과 자연환경 등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관한 항목을 구성하였고, 국가지도집 제3권 '인문환경'에서는 '국토와 삶의 변동 및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국토와 삶터, 인구와 삶, 산업과 생산기반, 사회와 문화 등 삶의 본질적 요소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복합적으로 고찰하는 항목구성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국가지도집의 발간을 통해 우선, 대내적으로 21세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방화, 분권화 등의 심화 속에서 국토와 그 속의 다양한 장소에 대한 지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료로서 국가지도집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특히 2015년부터 개정 예정된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 사회과부도, 그리고 지리부도에 최적의 자료원으로 널리 이용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교육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영어로 제작되는 국가지도집은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서술이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영토와 지명에 관련된 논쟁에서 우리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국제사회에 기능할 것이다. 특히 UN지명회의,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세계지리학연합(IGU), 지도제작사협회(ACM) 회의, 세계지도학

연합회(ICA) 등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교적 문제없이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최적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국제통상 및 국제개발협력, 문화자원,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 등 각종 부문에서 변화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소개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참고자료·문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1세기의 대동여지도”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발간하다, 2015년 3월 9일
- 국토지리정보원, 2012, 국가지도집 갱신 발간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국토포털 홈페이지(http://www.land.go.kr)

작성자 : 이원호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정책용어

9.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

생성배경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은 1963년 프랑스에서 드골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 잠재력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총리 직속기관이다. 초기 DATAR의 정식 명칭은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으로 지역정책의 실천(l'action régionale)을 강조한 것이다.

DATAR은 국토정비, 주택 및 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의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운용해 왔으며 프랑스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 DATAR는 최근에 CGET로 변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발전정책론(율곡출판사, 2015)의 제11장 프랑스의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배준구) 참고.

용어설명 DATAR은 2005년 명칭이 DIACT(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et à la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로 변경되었으나, 2009년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후 국토발전정책 기조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DATAR(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ttractivité régionale)로 복원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DATAR은 지역매력(l'attractivité régionale)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DATAR과는 개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DATAR의 명칭 변화 및 특징

구분	DATAR 탄생기	DATAR 변화기	DATAR 재출범기
기간	1963~2005	2005~2009	2009~현재
명칭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et à la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ttractivité régionale
특징	국토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역활동(l'action régionale) 중심	유럽연합 등 세계화에 대응한 국토경쟁력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 중심	지역특화발전 및 도시재생정책 등의 추진을 통한 지역매력(l'attractivité régionale) 중심

출처 : 김광익, 프랑스 범정부 국토정책 담당조직, DATAR가 새롭게 재출범, 국토정책 제300호, 2010

현재 용어의 사용 재출범한 DATAR은 경쟁거점, 농촌우수거점, 도시 재생, 그랑파리(Grand Paris) 등의 지역특화발전정책 및 도시발전정책을 통해 지역 매력(l'attractivité régionale)을 증진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국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총리 산하 범부처 성격을 가진 DATAR은 지식국토국, 범부처협력국, 경제조정국 등을 주요 골격으로 하면서 국토조사팀, 국토전망연구팀, 국제협력팀 등 10개 실무조직을 배치하고 있다.

DATAR은 정부 부처내, 부처간 지역개발정책의 조정 및 시행, 중앙정부와 지역간 계획 계약의 체결 및 주요개발사업의 조정, 국토계획정책 투자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의 운용, 행정, 교육, 문화, 기술 등 산업 입지요소의 지방분산 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성공의 벤치마킹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최근 DATAR은 '국토 2040'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지역매력 창조와 국토재활성화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림 7 DATAR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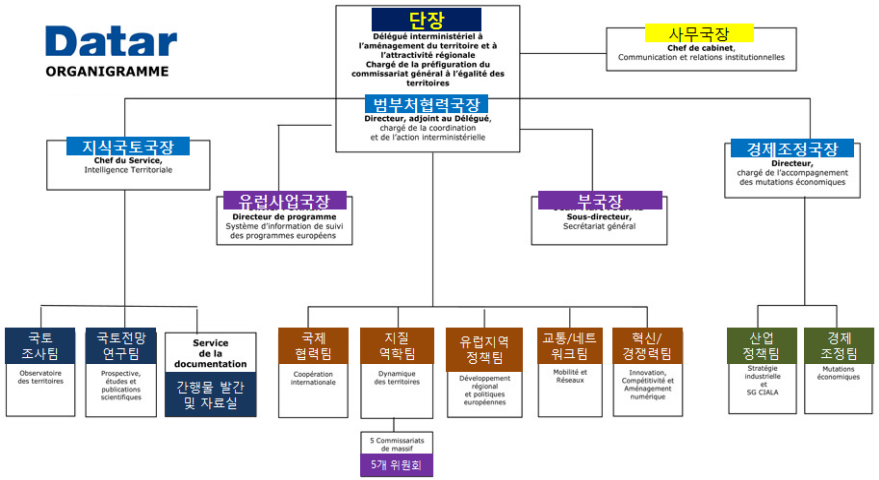

출처 : DATAR 홈페이지(www.datar.gouv.fr/organigramme), DATAR organigramme, 2015년 1월

참고자료·문헌

- DATAR 홈페이지 www.datar.gouv.fr/organigramme(2015), DATAR organigramme
- Jean-Benoît Albertini(2006), De la DATAR à la nouvelle DIACT : la place des questions économiques dans la politiqu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Revue française d'administration publique.
- 안석교(2013),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 김광익(2010), 프랑스 범정부 국토정책 담당조직, DATAR가 새롭게 재출범, 국토정책 제 300호.

작성자 : 장효천 원장(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0. 규제프리존

생성배경 '규제프리존'이란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2015.10.7.)에서 산업연구원·국토연구원의 공동보고(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를 통해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그간의 각종 특구[1] 조성사업이 역량분산 및 각종 규제로 인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진단하고,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서 '규제프리존' 도입을 제안하였다.[2]

규제프리존의 개념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전략산업에 대해 (국민의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철폐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2013년부터 도쿄, 간사이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의 규제특례 허용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전략특구'와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1) 기업도시, 혁신도시(10개), 경제자유구역(8개), 자유무역지역(13개), 외국인투자지역(9개), 첨단의료복합단지(2개), 연구개발특구(5개) 등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임.

2) 규제프리존 도입과 더불어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집중, 인재유입 환경 조성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음.

그림 8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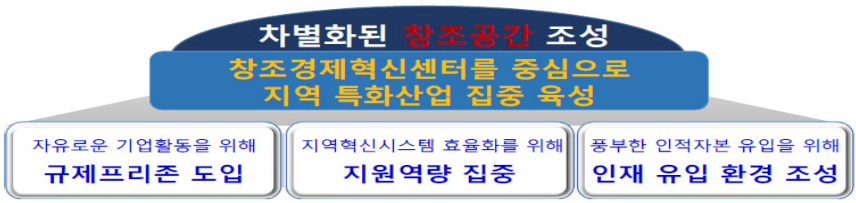

출처 :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2015.10.7)

용어설명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 보고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급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구성하여 제안된 내용을 정책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시·도경제협의회(10.29), 지자체 통합설명회(11.2), 지자체 실무자 통합설명회(11.11), 권역별 설명회(11.13~18),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기업 간담회(11.27)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별 전략산업의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중앙→시·도) → 지자체 신청(시·도→중앙) → 최종 선정(지역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2015.12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각 2개(세종시는 1개)의 전략산업 선정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전략산업 선정과 더불어 기업수요에 기반한 과감한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민간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림 9 14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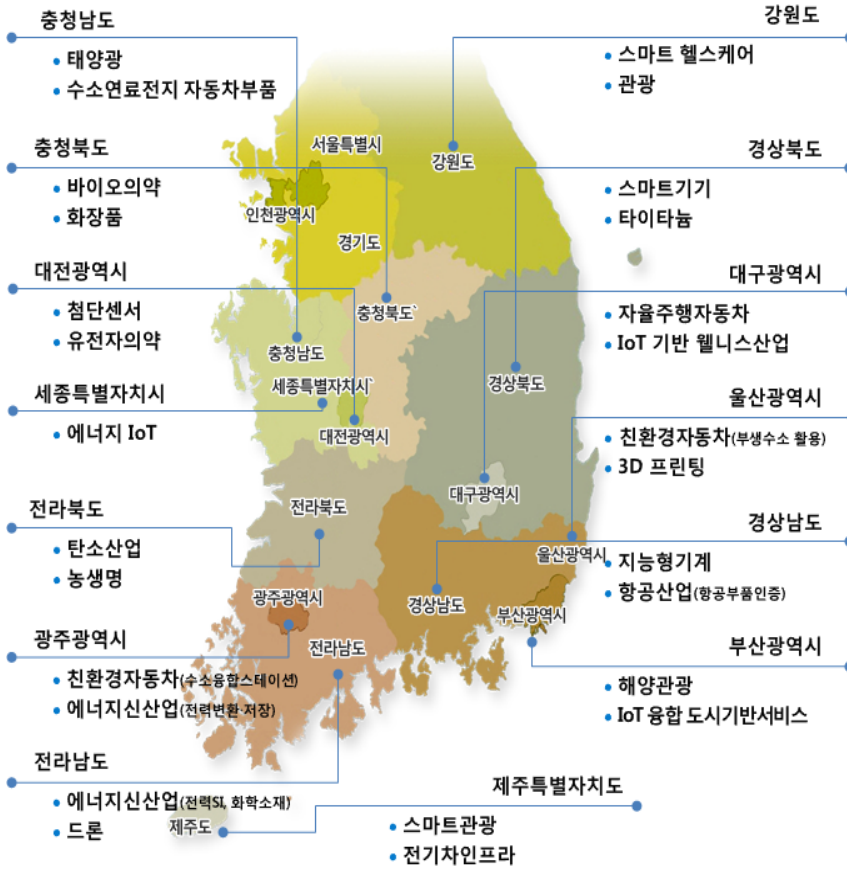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5.12.),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주는 규제프리존의 공간 범위 및 규제 특례사항은 각 시·도가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

산업기반, 규제의 성격 및 구체적인 투자프로젝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규제프리존에서 적용될 규제특례 사항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제출 가능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칭)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3]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특별법 통과 즉시 규제프리존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신기술·융복합 분야에 특화된 규제특례로서 첫 번째, (그레이존 해소) 기존 규제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경우 기업이 소관부처에 규제 적용여부를 문의하면 소관부처는 규제부처와 협의하여 규제 적용여부를 조속히(예: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기업실증특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화 또는 시장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경우 기업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하여 규제특례를 요구할 경우 정부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시범사업 규제특례)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예: 5년 이내) 시범사업을 허용해줄 계획이다.

3) 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특별위원회(규제프리존 정책의 총괄·운영기구)의 심의·의결, 규제프리존 지정 및 운영, 규제특례 사항(Positive방식), 규제특례의 제안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0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규제특례제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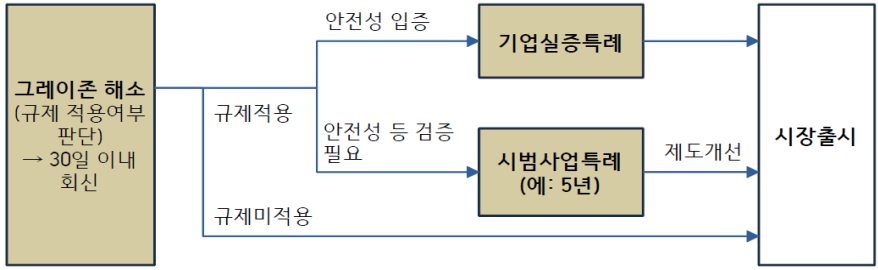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5.12.),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참고자료·문헌

- 국민경제자문회의(2015.10),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 산업통상자원부(2015.12),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선정(안)
- 관계부처 합동(2015.12),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생성배경 그동안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기관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저마다 열심히 만들었지만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 지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여 일과 고용을 통한 복지 향상이라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용어설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일명 “고용복지+센터”)는 실업 급여, 복지 상담, 신용회복 상담 등의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과거에는 취업 상담이나 실업 급여는 고용센터, 복지 상담은 지방자치단체, 신용회복 상담은 서민금융센터로 흩어져 있었으나, 2013년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협의하면서 이들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정부 3.0’ 사업의 대표적인 협업모델로 정부가 공을 들이는 사업이기도 하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등 다양한 참여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조직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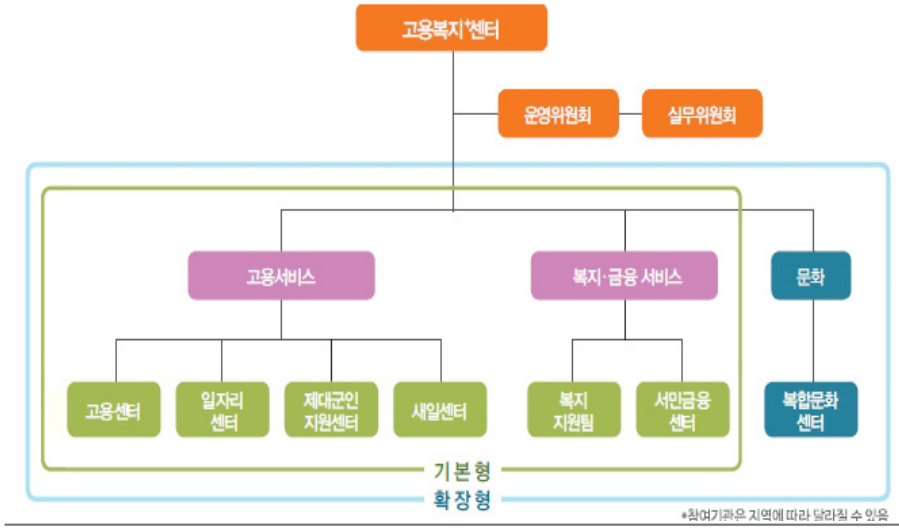

출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workplus.go.kr)

2014년 10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 정착되었으며, ’15년도에는 40곳, ‘16년에는 서울청 소속 9곳, 부산청 소속 10곳, 제주 2곳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30개소가 새로이 설치되어 70곳에 이르렀으며, ‘1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절차는 한 장소에서 고용과 복지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해당창구에서 상담을 받다가 다른 부처나 기관 등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창구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 합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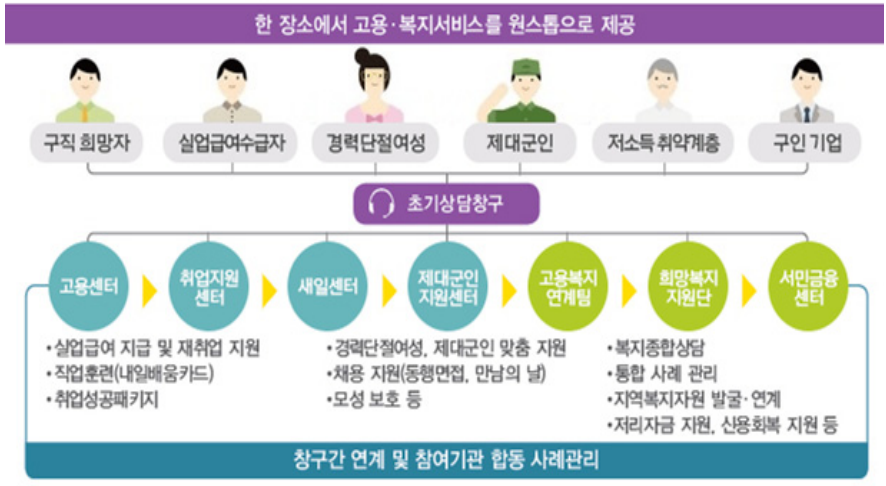

출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workplus.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사례**
A씨는 남편과의 이혼과 3회에 걸친 뇌수술로 인해 우울증을 겪으며 아이와 차고에서 생활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해비타트의 집수리, 적십자의 지원 등의 도움을 주었고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현재는 시책이 발전되어 관할 시군구 외 업무협약이 체결된 인근 타 시군구 주민까지 읍면동 수준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있다.

〈표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 이용

지역	수탁 시군구	위탁 시군구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수원시	화성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인천구	인천서구	강화군
대구	대구 달성군	(경북)고령군
부산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광주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남구, 동구, 담양군, 나주시, 곡성군, 장성군, 구례군, 화순군
	광주 광산구	영광군, 함평군
경북	구미시	칠곡군
	칠곡군	성주군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충북	제천시	단양군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흥성군, 청양군
전남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강원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가평군
	원주시	횡성군

출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workplus.go.kr)

참고자료·문헌

- 전국 고용복지플러스 홈페이지(http://workplus.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한 과제
- 환경부 보도자료(2015, 2016)

작성자 : 김현호 연구기획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2. 도시권/다지역협약

생성배경 투자, 노동 및 주택시장이 행정구역을 넘어서 작동되기 때문에 기능적 경제지역이 중요해지면서 핵심적인 경제개발 이슈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다지역협약(MAA: Multi Area Agreements)이 탄생하였다. MAA는 영국의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시스템 내에서 2008년에 도입된 지역(region)간 또는 소지역(sub-region)간 협력체로서 총 15개가 구성되었으나, 2010년 신보수당 정권이 RDA 시스템을 폐기하고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동 시스템에 흡수되었다.

용어설명 MAA는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컨소시엄 간에 집단적인 목표와 성과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체결하는 자발적 협약이다. 이 협약의 목적은 개별 지방정부의 행정적 범위를 넘어선 경제개발, 교통, 토지이용계획, 실업대처, 자본투자 및 기반시설 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 MA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간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하며, 3년에 걸쳐 지방정부 그룹, 유관기관 그리고 중앙정부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각 주체 등이 공유된 목표와 성과지표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주체들은 기존의 자원을 연계하여 도시재생, 교통, 기술 등과 관련하여 공유된 목표와 정해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책임을 공유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MAA는 2006년 '강하고 번영하는 지역사회(Strong and Prosperous Community)'란 백서에서 처음 언급된 이래 지방정부간 협업(joint working)을 통한 도시권 거버넌스(city-region governance)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해왔다. 2007년 가을 13개 지역이 MAA를 협의하기 시작하여 2008년 7월 최초로 7개 지역(Tyne & Wear; Tees Valley; South Hampshire; South Yorkshire; Bournemouth, Poole and Dorset; Leeds; Greater Manchester)이 MAA를 체결하였고 2010년 3월 까지 15개 MAA가 체결되었으며 5개 지역이 협의 중이다. 이후 노동당 정부가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를 제정하면서 보다 강화된 MAA가 도입되어 Leeds와 Greater Manchester의 2개 지역에 법정도시권(statutory city-region)이 시범적으로 출범하였으며 북부의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8개 도시권이 구성되어 있다.

해외사례 다지역협약은 영국에서 탄생하여 도시권(city-region)정책으로 발전하였고, 2009년 보수당과 자유당 연합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다른 하위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인 지방기업파트너십(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으로 교체되어 2012년 9월 기준 39개 지역에서 LEP를 체결되었다. 또 다른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약으로는 일본의 정주자립권협정을 꼽을 수 있으며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간 자율적 협정을 통하여 협력에 기반한 정주여건 개선이 목적이며 2013년 3월까지 74개 권역이 협정을 체결하였다.

참고자료·문헌

- 김선기(2011), “영국 지방정부간 협력과 상생”, 「자치행정」 11호 10-14
- 김동주 외(2010),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Ⅰ)」, 국토연구원
- Pemberton, S(2011), “Cooporation and Win-win Approaches between Local Governments: Lessons from Multi-Area Agreements(MAA) in the United Kingdom”, 「2011 지역발전 컨퍼런스」 자료집.
- Mark Stanford(2013), “Local Area Agreements(LAAs) and Multi-Area Agreements(MAAs)”
- Hilary Russell(2010), “Research into multi-area agreements : Long-term evaluation of LAAs and LSPs”, European Institute for Urban Affairs,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HM Treasury, (2007).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and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Review of Sub-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작성자 : 김선기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용어

13. 보조금, 교부금, 출연금

생성배경 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보조금의 범위를 다양하게 해석하여 장려적 보조금과 지방재정보전보조금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명칭은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 이란 통칭을 사용하였다.

교부금 :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해소, 일정한 행정수준 유지재원의 보장, 국가·지역 시책사업의 구현 유도, 천재지변 등 각종 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 하나가 지방교부세이다.

출연금 : 정부출연금은 민간에 대한 이전 지출에 해당한다.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직접 집행해야 하지만 정황 상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데 문제나 어려움이 있거나 민간 기업이 이를 대신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 국가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용어설명 보조금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자금으로 정부가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한다. 보조금의 기능으로는 행정유지를 위한 자금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는 것이다.

교부금 : 정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자금을 통합적으로 내포한다. 교부세로 불리기도 한다. 교부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특정사업을 자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지방교부금은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적 지원이다.

출연금 :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은 민간에 대한 이전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정부관리기금에 대한 기금 전출금이나 기업회계,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경상 전출금, 자본 전출금과는 구분된다.

현재 용어의 사용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보조금	320,482	341,732	376,595
교부금	292,159	314,600	316.006
출연금	199,464	20,314	27,960

참고자료·문헌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8.3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김필헌 외 3인)
- 광주발전연구원, 2012.9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합리적 배분방안 연구 (민현경 외 4인)
- 대영문화사, 2009.1.15. 행정학사전 (이종수)
- 한구행정DB센터, 2014.2.25. 지방재정론 (라휘문)
-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 2010.11.23.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유동해, 하동석)

작성자 : 신두섭 수석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4.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생성배경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일상생활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에서의 신뢰가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부터이다. 한 사회의 문화, 특히 그 사회의 신뢰 수준과 사회규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이 경제 효율성이나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자고 사회학자들이 제안하면서 발전해오고 있다.(Coleman, 1988; Putnam, 1995; Fukuyama, 1995; 유석춘 외, 2003).

Schultz 등은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자본(physic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근로자의 숙련 수준, 지식, 건강 등 개인적으로 체득하여 내화한 생산요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Schultz, 1961).

용어설명 사회적 자본은 그 개념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대체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말한다.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 부문에서 사회적 자본을 "일정 지역 내 주민 상호간 이익을 위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 및 협동 등을 총칭하는 집단적 지능"으로 정의한다(국토연구원, 2008). 이는 인간간의 신뢰관계, 사람들 간의 공유되는 규범, 사

람들 간의 네트워크와 관계로서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고, 사람들 간의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것 개념이다. 퍼트남(Putnam, 1995)은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과는 별개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나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화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콜만(Coleman, 1988)은 사회적 자본은 개인 내부에 체화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특이한 자본,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며, 사회구조(사회규범, 신뢰, 연결망)로부터 온다고 하였다. 신뢰와 사회적 자본과 연결망의 긴밀한 관계성은 은행과 은행원, 이발소와 면도사 등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 축적은 어민조합 공동체를 통한 어장공동관리 성공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림 13 사회적 자본의 정의

- 신뢰(Trust):가족과 이웃에 대한 신뢰, 공공에 대한 신뢰와 같은 공통기반 확보 요소로 개인적 신뢰와 공적 신뢰로 구성
- 참여(Civic Engagement):공동의 목표정립 요소로 사회적·정치적 참여로 구성
- 네트워크(Network):동네에서의 연계성,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같은 이웃과 지역사회 유지 요소로 개인적 네트워크와 공적 네트워크로 구성

출처 : 김선희·소진광·한경원 외(2008)

현재 용어의 사용 사회적 자본 용어는 개인적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지역공동체, 거시적 차원(도시, 지역, 국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와 기능은 〈표 6〉와 같다.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 가이드는 〈표 7〉 과 같다.

〈표 6〉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와 기능

개념요소	구성항목	표현인자	기능
신뢰 참여	개인적 신뢰	·가족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직작동료에 대한 신뢰 ·상인 등에 대한 신뢰	공통기반 확보
	공적 신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참여	사회적참여	·각종 사회단체 참여 ·지역사회행사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반상회 참여	공동의 목표정립
	공적 참여	·정부 정책결정과정 참여 ·각종 투표참여	
네트워크	개인적 네트워크	·평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비상연락망 확보	이웃과 지역사회 유지
	공적 네트워크	·정당가입 여부 ·공공기관 전자소식 수신여부	

출처 : 김선희·소진광·한경원 외(2008)

〈표 7〉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 가이드

·개인적 혹은 미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
·가족의 의미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및 지원 ·멘토링 ·잠재적 범죄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 ·자원봉사의 확대 ·Relationship support
·지역공동체 혹은 중간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
·동네 거버넌스 형성 ·지역공동체 기반의 복지체계 확립 ·민간과 지역공동체 연계

·지역공동체 정보 네트워크 확립
·물리적 환경과 계획의 새로운 접근 마련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분산
·고용의 네트워크화
·독서 혹은 학습 그룹의 확대
·거시적(도시, 지역,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
·시민의식의 교육
·지역공동체 서비스 크레딧 계획
·도덕성 확립을 위한 공공의 노력 강화
·상호존중과 이해의 확대 및 강화
·예술, 문화, 스포츠 영역의 확대
·Collective missions

출처 : Halpern, D. 2005. Social Capital. Cambridge: Polity

[사회적 자본의 측정]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물적 자본처럼 한 개인이나 집단, 사회적 자본의 총량을 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간접적으로 행위와 태도를 통한 행위 측정법과 태도 측정법이 있다.

① 행위 측정법: 시민사회의 활성화, 시민 참여활동, 범죄율, 이혼율 등 통계치, 실험에서의 신뢰와 행동 등 행위를 중심으로 재는 것

② 태도 측정법: 설문 문항 등으로 태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측정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 측정에 대해서는 퍼트남의 '혼자 하는 볼링', 교사학부모조합(PTA) 가입수 등(Putnam, 1995),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한 후쿠야마 대혼란(Great Disruption, Fukuyama, 1999), 신뢰와 협동에 관한 실험(Yamagishi, 1986b;1988) 등이 있으나 논쟁과 비판이 존재한다.

참고자료·문헌

- 김선희·소진광·한경원 외(2008),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자본 확충방안(Ⅰ). 경기: 국토연구원
- 김용학(2007), 사회연결망 분석. 서울:박영사
- 소진광(1999),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여사회개발논리. 지역사회개발연구. 24(1)
- Haplern, D(2005), Social Capital. Cambridge: Polity

작성자 : 김선희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정책용어

15. 새마을운동 세계화/지구촌 새마을운동

생성배경 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 모델로서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UN은 아프리카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하나로 새마을운동을 선택할 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과 농촌부흥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시작되어 의식전환, 소득증대, 농촌빈곤퇴치 등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고,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통해 이런 경험을 원조에 활용하여 개도국의 자립역량을 배양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원조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원조의 덫에 빠지는 수원국의 문제와 원조피로가 누적되는 공여국의 문제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UN의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용어설명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는 ODA(공적개발원조)사업과 연계한 지구촌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지구촌 새마을운동**

먼저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1970년에 시작된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여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이는 2010년 10월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개발협력모델을 개발키로 하였고, 기관별로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새

마을운동 ODA TF 출범 이후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을 살려 추진 중이며, 각 기관은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 및 새마을운동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지도자 양성,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촌경제발전
- 사업범위 : 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마을 단위로 추진
- 사업방식 : 마을별 자발적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자생능력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사업확대 : 자생능력 제고 후 지역전체 발전을 위한 통합형 개발협력사업을 추진

○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 지도자 양성을 위한 새마을운동 교육 및 체험 실시 :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개도국의 마을지도자 및 주민대표(여성포함), 중앙지방공무원, 사회고위층 인사 등을 한국 국내로 초청하여 새마을운동 연수 실시
- 자립역량 배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ODA 사업 추진 : 국내 초청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마을별 자발적 협의체를 구성토록 지원하고 마을별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여 협의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사업발굴부터 완료 시까지 관리
-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통합형 개발협력 추진 : 1단계와 2단계 사업의 성공적 시행 이후 이를 인근 마을로 확산하고 지역 단위로 새마을운동을 파급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ODA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비교적 규모가 있는 통합형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자국 발전을 위한 모델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벤치

마킹에 나서고 있다. 2005년부터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전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북도와 새마을세계화 재단이 주축이 되어 이러한 국제적인 수요에 부응해 대한민국의 성공모델인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사업을 추진해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국제개발원조의 부작용 및 낮은 효과성에 대한 대안모델이며,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핵심이자 여타 ODA사업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현지 주민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대표적 유형**

- 물적 지원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상국가(지역)에 식량, 식료품, 의료, 의약품, 농기구 등 물자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유형을 의미하며 일회성 또는 시혜성이 짙은 사업
- 인적 교류 : 대상 국가(지역)의 공무원, 의회 의원, 마을 대표 등을 초청하여 새마을연수를 실시하거나 자원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실시되는 모든 인적교류 사업
- 상호협력 : 한국과 대상 국가(지역)의 물적·인적 요인이 상호 결합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대상 국가(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 구축, 생활환경 및 주거시설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농촌개발) 등이 중심

○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성과**

개발도상국은 물론 UN, UNDP, UNGC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시대적 적실성을 인정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새마을운동 중앙회, 지부지회, 회원단체, 기타 단체 등 다양한 사업주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새마을 지도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내부역량 제고, 조직적 일체감 증진

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개발의 성공모델로서 개발도상국에 안정적으로 접목됨으로써 새마을운동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현황

정부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착수한 지는 8년째다. 경상북도는 2005년부터, 행정자치부는 2009년부터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외 사업을 벌여왔다. 경상북도는 2011년까지 262억 원을 들여 49개국 2천 467명을 초청해 새마을운동을 전수했고, 5개국 13개 마을에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보건의료사업을 진행했다.

행정자치부는 2009년부터 71억 원을 들여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해 38개국 794명을 초청해 연수를 시켰고 13개국 31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전수시범사업을 벌였다. 또한 2011년엔 총리실과 행정자치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부, 경상북도 등이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라오스, 르완다, 미얀마 등 3개국을 상대로 초청연수와 시범 사업을 해왔다.

대표적인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경상북도는 2010년부터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최초 시작된 5개 마을은 마무리 되었고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2015년 12월 현재 9개국 22개 마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남미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참고자료·문헌

- 권령민(2012), 경상북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활용 방안,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연구보고서
- 임한성(2012), 경상북도의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연구보고서
- 임형백(2012),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 적용을 위한 과제, 한국지방자치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14(1), pp. 131-150
- 노은주(2016),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시군 참여 활성화 방안,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연구보고서

작성자 : 이재훈 원장(경북테크노파크)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6.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생성배경 20세기 들어서 인류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천연자원 고갈 위기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경험하게 되었고, 환경오염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 등의 국제환경협약이 성사되었지만 각국의 산업에 직·간접적인 규제와 경제·통상활동 제한 등이 발생되어 새로운 형태의 산업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착안된 것은 1990년대 성립된 산업생태학(Industrial ecology)이다. 산업생태학은 자연생태계처럼 에너지와 물질이 잉여 되거나 모자람 없이 순환되는 시스템을 산업에 적용시킨 것으로 한 기업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에서 원료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환경보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1990년대 미국에서 산업단지개발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생태산업단지라는 용어는 1993년 미국의 인디고개발(Indigo Development)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1995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통령위원회(PCSD: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생태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실천적 개념으로 발전·정착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지난 40여년 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였던 산업단지가 환경오염원이 되어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적지 않았고, 국제협약 등의 영향으로 2002년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뒤 2003년에

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용어설명 생태산업단지란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산업단지 내의 기업과 기업, 공장과 공장을 서로 연결시켜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여 산업단지 내의 부산물이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산업단지를 말한다.

그림 14 생태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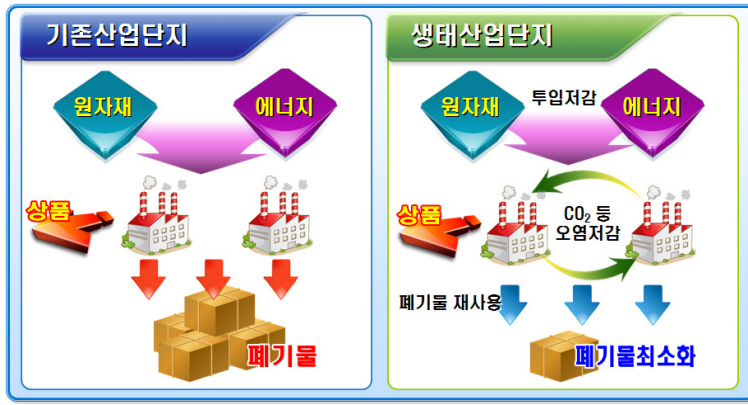

출처 : 세종데일리 기사(2012년04월24일)(http://sj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6)

생태산업단지는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보전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조 및 서비스업체의 공동체라 할 수 있으며, 단일 부산물 교환 패턴이나 네트워크, 재활용 기업체, 환경기술회사, 그린상품 제조업체, 단일의 환경목적으로 설계된 산업단지, 환경친화적인 하부구조나 환경친화적으로 건설된 단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2002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 200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산업지원센터(KBNCPC)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20년간 추진된다. 1단계(2005~2009)는 오염물 무배출(Zero-emission)을 목표로 산업단지 내 기업과 기업 또는 주변지역의 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총 5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2006년 항구적인 사업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해 사업전담기관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이전하였다. 2단계(2010~2014)에서는 각 지자체에 허브단지와 스포크단지를 구축하여 자원순환 네트워크의 광역적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5개 지역에 3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8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단계(2015~2025)는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15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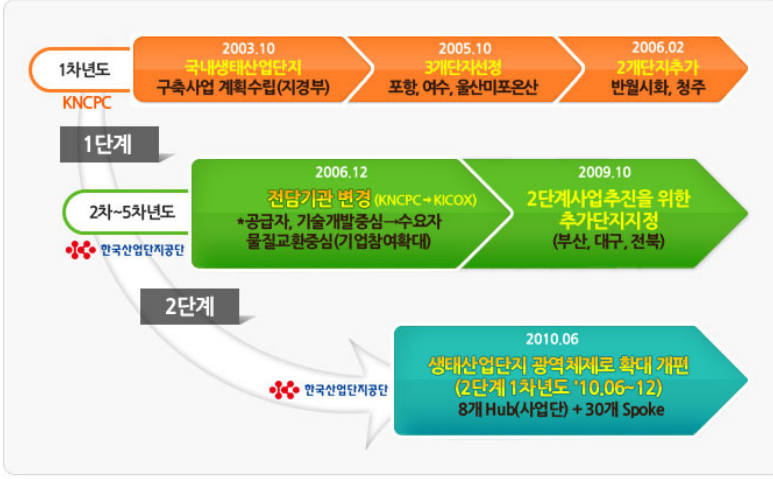

출처 : EIP생태산업단지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해외사례 일본에서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1유형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순수한 생태산업단지, 제2유형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코타운 프로젝트, 제3유형은 무배출(Zero-Emission)을 지향하는 산업군집형태로 구성된다.

그림 16 일본의 지역 차원의 생태산업도시 개념도

- 제1유형 사례 : 코쿠보 생태산업단지, 에바라 생태산업단지
- 제2유형 사례 : 기타규슈 에코타운
- 제3유형 사례 : 시멘트공장 군집(타이헤이요 지역의 13개 공장), 맥주공장 군집 (아사히맥주회사의 37개 생산 공정상의 공장단지)

출처 : EIP생태산업단지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참고자료·문헌

- 생태산업단지 홈페이지(https://www.eip.or.kr)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icox.or.kr)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2004), 생태산업단지의 이해
- 한국산업단지공단(2010),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 5차년도 연차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03.10.16),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착수키로 – 시화, 울산, 충주등 3개 산업공단을 시범단지로 추진 –
- 이재준 외(2003), 생태산업단지 개발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3)
- 공형옥(2012), 국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사논문

작성자 : 장미아 전문위원(사단법인 생명의숲)

정책용어

17. 예비타당성조사

생성배경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 이전,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국가재정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절차적으로 사업 시행부처가 예산을 일단 편성한 이후 기술성 위주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일단 사업이 착수되면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또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우선순위, 재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부재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부실화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5월「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를 개정하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기존의 타당성조사가 기술적 항목 위주로 검토된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부처가 직접 주관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용어설명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국가재정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타당성조사비, 설계

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①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SOC)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②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예비타당성조사는 도입 초기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SOC)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 법률이 「국가재정법」으로 개편되면서 조사대상의 범위가 정보화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기반조성사업에 한함)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로, 2008년 7월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조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매년 7월·11월 2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화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각각 국가정

보화전략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미래부)에 함께 제출하여 사전검토(기술성 평가 등)에서 적합 의견을 받은 사업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①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②사업계획의 구체성, ③사업 추진의 시급성, ④국고지원의 요건, ⑤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1999~2015년 기간 동안 총 631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SOC)사업이 426개(6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전체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1999~2015년 기간 동안 334.7조원 규모이며, 도로 및 철도 부문사업의 총사업비가 전체의 약 68.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와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총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조사 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한 일반지침(제5판, 2008년)과 도로·철도·공항·항만·수자원·정보화·R&D·기타 재정 등 사업부문별로 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부문별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 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1999~2015년) (단위 :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1999	11	2	1	4	1	1	20
2000	11	7	5	2	1	4	30
2001	20	14	1	5	–	1	41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02	9	8	2	2	5	4	30
2003	10	7	3	5	5	2	32
2004	24	13	1	2	3	12	55
2005	11	6	2	1	3	7	30
2006	27	10	5	5	1	4	52
2007	30	5	1	2	1	7	46
2008	12	2	4	3	2	15	38
2009	22	5	2	2	12	20	63
2010	7	14	2	1	2	22	48
2011	6	5	2	11	5	14	43
2012	7	7	5	6	5	5	35
2013	5	–	1	2	1	4	13
2014	8	4	2	12	2	8	36
2015	3	4	2	7	0	3	19
계	223	113	41	72	49	133	631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16)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주 : 1. 2015년 12월 말까지 조사 완료된 사업 기준임.
2. 기타부문에는 공항, 정보화, R&D 부문, 기타재정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3. 건축부문은 2011년부터 별도 구분되며 기존 사업은 기타 실적으로 구분됨.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간이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 실적에서 제외함.

예비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하며,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생략), 기술성 분석(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한함)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종합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2016.7.5.)」 등을 통해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융복합 산업 등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또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해서는 수시 예타를 도입하고 기술성 평가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선정기간을 축소[1]할 계획이다.

참고자료·문헌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관리투자센터,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2012),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수정·보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1판)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1) 현행 '예타신청(年 2회, 7월·11월) → 예타대상 선정(4개월) → 예타수행'을 '예타신청(연중, 1~12월) → 예타대상 선정(2개월) → 예타수행'으로 변경함.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18. 자치경찰제

생성배경 지방분권이 발달하고 지방자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육자치와 함께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날이 복잡해져 가는 사회구조와 더불어 민생치안문제도 심각해져 감에 따라 지역 스스로가 생활안전을 책임지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시범도입 전 단계까지 갔다가 무산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됐다가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에만 자치경찰제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용어설명 자치경찰이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전시·사변 등 국

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현재 용어의 사용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중심으로 지구상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2012년 기준 대략 50여 개 국가에 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대한민국, 독일, 멕시코, 벨기에,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체코, 캐나다, 폴란드, 핀란드 등이다.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하고,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주요역할, 기구의 위상과 성격, 재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 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정당 소속 지자체 장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정치인들의 선거 목적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고, 범국가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자치단체별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 등의 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한민국형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연구 및 발전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문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4),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 김원중(2013),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나아갈 방향, 자치발전 19권 9호
- 이상열(2013),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Legislation & Policy, 제4호
- 원소연(2012),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작성자 : 장효천 원장(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정책용어

19. 재정자립도 (Financial Independence Rate)

용어설명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 = \frac{(지방세 + 세외수입) \times 100}{일반회계\ 예산규모}$$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예산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세입기준)

재정자립도 산출 시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순계예산 규모로 산출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총계예산 규모로 산출한다. 여기서 순계예산이란 총계예산 규모에서 회계 간 거래(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등)나 동일회계 내 계정 간 거래금액(재정융자특별회계 내 차관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등) 등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산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의미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서 재정자립도가 이용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율이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큰 경우 재정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 있다.

자치단체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3년 평균 56.3%에서 2015년 45.1%로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17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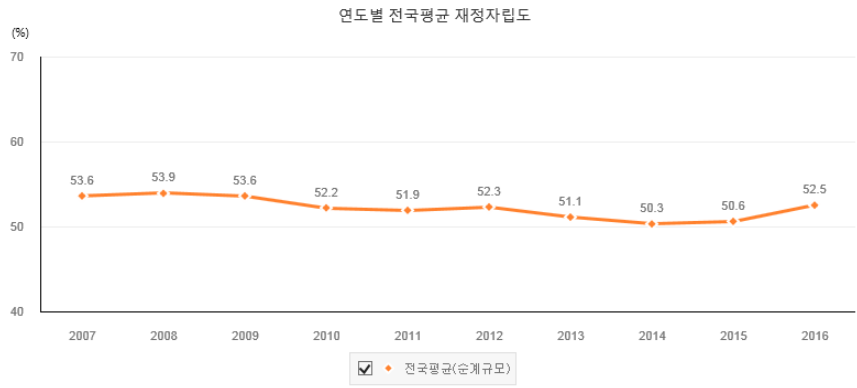

출처 : e-나라지표(http://index.go.kr)

〈표 9〉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2015년 기준)

구 분	합 계	구성비	시·도	시	군	자치구
합 계	243	100	17	75	82	69
10%미만	2	0.8	–	–	2	–
10–30%미만	153	63	4	32	74	43
30–50%미만	65	26.7	6	32	6	21
50–70%미만	22	9.1	6	11	–	5
70–90%미만	1	0.4	1	–	–	–
90%이상	–	–	–	–	–	–

출처 : e–나라지표(http://index.go.kr)

〈표 10〉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2015년 기준)

시 도 별	평 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평균	**52.5(46.6)**	**66.6(62.3)**	**35.9(31.9)**	**37.4(32.1)**	**18(12)**	**29.7(26)**
서울	84.7(80.7)	83(80.7)				35.5(31.7)
부산	60.1(50.9)	55.4(47)			36.7(31.5)	24.2(20.5)
대구	57.1(50.6)	51.6(47.1)			42.7(26.8)	22.9(20.1)
인천	67(62.5)	63.1(60.7)			16.9(10.6)	31.5(26.7)
광주	51.5(46.7)	45.8(41.3)				17.9(16.5)
대전	55(50.3)	48.3(45)				23(19.5)
울산	72.2(62.3)	63.8(56.5)			44.8(34.6)	31.6(26.5)
세종	59(44.2)	59(44.1)				
경기	67.4(61.6)		55.2(52.2)	50.6(44.5)	23.3(20.1)	
강원	27.1(22.4)		21.4(18.2)	25(20.6)	17.2(12.1)	
충북	35.2(28.8)		28.9(24.6)	29.1(24.6)	20.2(14)	
충남	38.7(33.5)		32.8(30.8)	32.9(27.5)	16.3(11.8)	
전북	29.7(23.6)		22.5(18.5)	22.2(19.4)	18.9(10.8)	
전남	23.8(19.3)		18.4(16)	26.9(22.6)	13.5(8.7)	
경북	33.3(26.1)		30.3(22.5)	26.8(21.9)	14.9(9.4)	
경남	43.5(36.6)		38.1(33.8)	36.2(30.2)	16.1(9.6)	
제주	38.2(31.5)		37.8(31.2)			

출처 : e–나라지표(http://index.go.kr)

참고자료·문헌

- 지방재정의 창고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e-나라지표 홈페이지(http://index.go.kr)

작성자 : 임경은 통계사무관(통계청)

정책용어 20.

재정자주도
(Financial Autonomy Rate, degree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생성배경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의 비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text{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 \times 100}{\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을,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나타낸다.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정자주도 산출 시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은 순계예산 규모로 산출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평균은 총계예산 규모로 산출한다. 여기서 순계예산이란 총계예산 규모에서 회계 간 거래(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등)나 동일회계 내 계정 간

거래금액(재정융자특별회계 내 차관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등) 등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산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의미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재정자주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측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 측면에서의 자주권(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치단체별 평균 재정자주도는 지난 2003년 평균 76.5%에서 2005년 81.6%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경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락한 후 점차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시와 자치구의 재정자주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이는 사회복지 등 복지 관련 국가시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시의 재정자주도 72.0%(2008년) → 60.1%(2015년)
자치구의 재정자주도 63.1%(2008년) → 42.5%(2015년)

그림 18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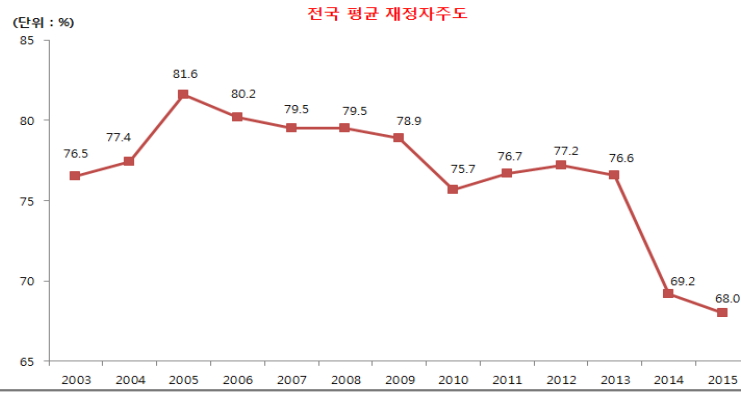

출처 : e-나라지표(http://index.go.kr)

〈표 11〉 재정자주도 분포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단체수,%)

구분	합계	구성비(%)	시·도	시	군	자치구
합 계	243	100	17	75	82	69
10%미만	-	-	-	-	-	-
10-30%미만	4	1.6	-	-	-	4
30-50%미만	53	21.8	7	1	2	43
50-70%미만	182	74.9	9	72	79	22
70-90%미만	4	1.6	1	2	1	-
90%이상	-	-	-	-	-	-

출처 : e-나라지표(http://index.go.kr)

〈표 12〉 시·도별 재정자주도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

시도별	시도별평균	특별시 ·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단체별평균	68.0	69.6	42.3	60.1	57.5	42.5
서울	81.4	81.0	-	-	-	51.9
부산	65.1	60.8	-	-	59.1	35.2
대구	65.7	61.7	-	-	53.3	32.8
인천	68.4	63.8	-	-	51.8	39.9
광주	62.0	57.4	-	-	-	30.3
대전	66.2	61.4	-	-	-	32.1
울산	71.1	60.8	-	-	65.0	43.9
세종	67.2	67.1	-	-	-	-
경기	70.0	-	51.4	63.5	65.1	-
강원	64.6	-	35.3	62.4	63.2	-
충북	65.6	-	40.4	57.9	58.4	-
충남	65.5	-	39.8	58.6	56.1	-
전북	61.1	-	32.9	53.2	53.8	-
전남	60.5	-	31.0	57.9	54.1	-
경북	65.4	-	36.6	58.6	59.4	-
경남	66.1	-	41.5	58.3	57.1	-
제주	63.4	-	62.5	-	-	-

출처 : e-나라지표(http://index.go.kr)

참고자료·문헌

- 지방재정의 창고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e-나라지표 홈페이지(http://index.go.kr)

작성자 : 임경은 통계사무관(통계청)

정책용어

21. 저성장시대

생성배경 우리사회가 60~70년대의 고도 성장기, 안정적 성장기를 지나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성장동력 창출의 지체 및 미흡, 고령화, 저출산 등은 저성상시대의 지속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저성장시대는 가계와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용어설명 저성장시대는 경제성장률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를 지칭한다. 경제성장률(rate of economic growth)은 한 나라의 일정기간(통상 1년간)의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즉 일정기간 동안 생산산 재화나 용역 총량의 증가속도를 나타낸다. 경상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명목 경제성장률과 기준년도의 불변가격을 반영한 실질 경제성장률이 있는데, 이중 실질 경제성장률이 경제성장의 속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GDP−전년도 실질GDP)÷전년도 실질GDP]×100

경제성장률이 어느 수준일 때 저성장시대인가에 대해서는 합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처럼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와 최근의 한국의 성장률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로 한국에서는 경제성장률이 5%대 이하로 떨어진 시기를 저성장시대로 보는 듯하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시대에 진입해 있다. 1963년~1991년까지는 평균 9.5% 성장률을 달성했으나, 1992년~2011년까지는 평균 5.1%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다 2012년부터는 2~3%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저성장시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경제전반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정책에도 연쇄, 파급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가계는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 정부부문의 세수입은 줄어드는 대신 실업증가 등으로 복지지출 등은 증가하게 된다.

국가의 경제규모나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률이 1% 하락할 때, 취업자수는 약 7.65만명이 줄어들고 가계소득은 약 3.0조원이 감소한다. 아울러 법인세 수입은 0.45조원, 근로소득세 수입은 0.35조원이 줄어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신규투자를 줄이게 되어 고용이 그만큼 줄어들어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저성장시대는 지역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경제가 저성장에 빠져 있어 신규 투자의 여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핵심지역 위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으며, 특히 저발전, 고령화 지역은 지역발전의 활력이 부족해서 쇠퇴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개발 수단에도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시대의 산물인 신도시 개발이나 신시가지 개발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산업단지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림 19 경제성장률 하락의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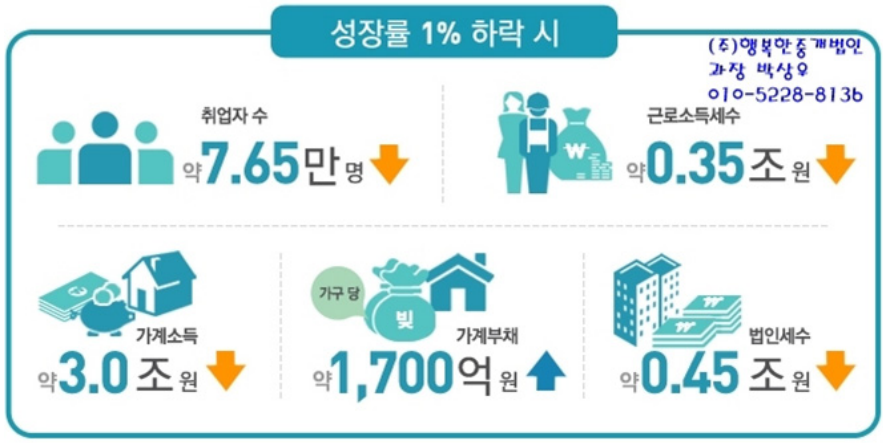

출처 : MBC스페셜, "저성장시대의 살아남기." 2016년 8월

해외사례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저성장시대에 빠져 있는데, 대략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부터 1950~1970년대까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대를 유지하는 호황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버블과 1990년대의 버블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응에 있어 오류가 있었으며, 이때의 경제성장률은 4%였고, 그 이후로 제로(zero) 성장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 아베정부는 양적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저성장시기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신도시나 산업개발이 거의 중단되고 있으며 신도시의 경우 노인 등 경제적 약자의 수용소가 되고 있다. 소비 형태에 있어서도 소유보다는 임대, 저축 확대 등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이준구·이창용, 경제학 원론, 문우사, 2015
• MBC 스페셜, “저성장시대의 살아남기,” 2016년 8월

작성자 : 김현호 연구기획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용어

22. 정부3.0과 지방3.0

생성배경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일방향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모바일·SNS 확산에 따른 정책과정에의 참여,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의 현주소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정책의 투명성·수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정부 내 칸막이로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정부운영에도 한계를 가져왔다. 이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과감하게 허용하고 이를 민간부문에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시점이며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정부3.0을 선포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용어설명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이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구현코자 한다.

〈표 13〉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구 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
운영방향	정부중심	국민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 동원방식	제한된 공개, 참여	능동적 공개, 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행정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인터넷, 모바일

출처 : 정부3.0추진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현재 용어의 사용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3.0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그림 20 정부3.0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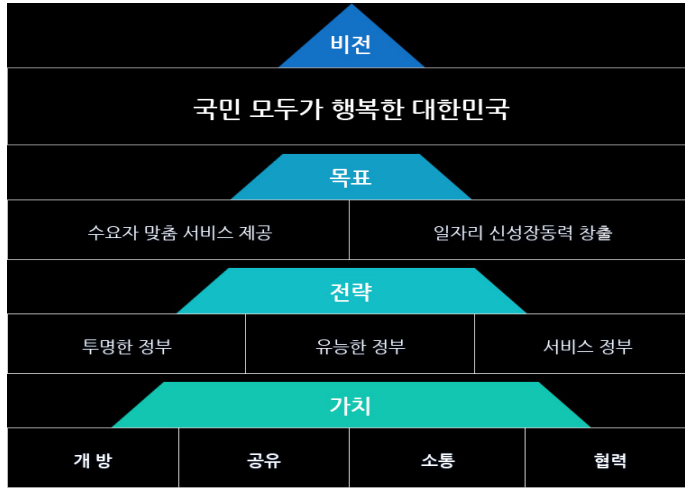

출처 : 정부3.0추진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그림 21 정부3.0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5)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출처 : 정부3.0추진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행정자치부는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 정부3.0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동 위원회는 정부 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방3.0은 이러한 정부3.0의 4대 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3.0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인데 반해 지방3.0은 지방자치단체에 추진해 나갈 실천과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사례

■ EU :

2003년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정보를 재활용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 영국 :

'정보자유법' 마련으로 "정부가 소유한 모든 형식의 기록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인 권리"로 규정해 공공정보 활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공공정보 공개 사이트(data.gov.uk)를 구축하였고 OGL(Open Government License)을 도입해 사용자들이 어떤 절차와 허가를 받고 공공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안내

■ 미국 :

연방정부 차원의 데이터 통합 웹사이트 'data.gov'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이 웹사이트에서는 데이터 성격에 따라 원천 데이터, 활용 데이터, 지리정보로 구분해 제공. 2011년까지 약 39만여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172개 주무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해 공공정보를 공개

참고자료·문헌

- 정부3.0홈페이지(http://www.gov30.go.kr)
- 관계부처 합동(2013),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 행정자치부(2013), 지방3.0 추진 기본계획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정부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작성자 : 이여진 책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책용어

23. 주민결연제도

생성배경 주민결연제도는 지역발전위원회가 2013년 7월에 발표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의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 중 '(분야)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 (실천과제)지역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의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로서 최초 제안되었다.

동 제도는 미국 보스톤시의 '소화전 입양(Adopt-A-Hydrant)[1]', 호놀룰루의 '쓰나미경보기 입양(Adopt-A-Siren)',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공원벤치 입양(Adopt-A-Park Bench)', 과천시의 '도로 입양[2]' 등의 사례에서 착안한 것이다. 즉, 주민결연제도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평적 소통에 기반한 민·관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의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 실현하고, 이처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의 발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1) 미국 보스턴시의 소방공무원들은 겨울마다 애를 먹었다. 거리의 소화전(hydrant)들이 눈에 파묻혀 그 주변을 청소하느라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fA(Code for America)의 펠로 한 명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소화전 입양(Adopt-A-Hydrant)'이란 스마트폰의 앱(App)을 만든 것이다. 이 앱을 깔면 자기 집이나 사무실 주변의 소화전 위치를 알 수 있다. 그중 하나에 자신 또는 회사나 단체의 이름을 걸어놓고, 눈이 오면 '입양'한 소화전 주위의 눈을 치우도록 한 것이다. 누군가 이름만 건 채 일을 제대로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치우고 들어갈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도입해 시민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냈다.

2) 과천시는 이면도로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입양시켜 도로 환경정비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용어설명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에서 주민결연제도가 시행 가능한 분야로서 ‘공공시설 관리’와 ‘취약계층 돌봄’ 분야를 제시하였다.

‘공공시설 관리’ 결연제도의 경우 소화전(의용소방대), CCTV(자율방범대), 동네공원(주민자치위원회), 이면도로(시민단체), 축대·옹벽·공원벤치(이·통·반장)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안전 관리, 고장수리·신고, 환경정비 등을 주민 참여를 통해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돌봄’ 목적의 주민결연제도는 일본의 ‘산파 파견제도[3]’, 청주시의 ‘실버행복드리미 사업(독거노인 결연)’ 등의 사례에서 착안하여 독거노인(새마을부녀회), 소년소녀가장(아파트부녀회), 쪽방촌(주민자치위원회), 결식아동(녹색어머니회), 결혼이민여성(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1일1회 안부전화, 정기방문, 생활지원 등을 주민 참여를 통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지역 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주민결연제도는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된 이후, 소관부처 결정, 관련 예산 확보 등이 실현되지 못하여 2016년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014년 12월에 확정·공표된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에 지역이 주도하는 협력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Ⅰ-1.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의 ‘향후 추진과제(Ⅰ-1-4)’로 반영되어 있어 조만간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

3) 산모가 자택에서 출산할 경우 마을의 산파(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등)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의안)
- 지역발전위원회(2014), 지역발전 5개년계획(부문별 계획)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4. 지리적 표시제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생성배경 19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하여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향상,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용어설명 지리적 표시제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의 법적 근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며, 동법의 제2조 제1항 제8호에는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정의가, 제32조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유명성**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야 하고
② **역사성** :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어야 하며
③ **지역성** :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과정이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④ **지리적 특성** : 해당 품목의 특성이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적(지리적, 인적) 요인에 기인하며
⑤ **생산자의 조직화** : 해당 상품의 생산자들이 모여 하나의 법인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현재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지리적 표시제를 실시하여 2016년 8월에 이르기까지 총 103호의 농산물이 등록되어 있다. 제1호는 2002년 1월에 등록된 보성녹차이며, 뒤를 이어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추, 순창전통고추장 등 종류와 숫자에 있어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2월 93번째 지리적 표시제로 고령감자가 등록되었다. (상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참조: http://www.naqs.go.kr, 농산품인증>지리적표시)

해외사례 유럽연합(EU)에서는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로서 원산지 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와 지리적 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AOC'나 이탈리아의 'DOC', 스페인의 'denomination de origen'은 모두 원산지 명칭보호(PDO)를 의미한다.
(상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참조: http://www.naqs.go.kr)

■ PDO와 PGI의 차이점 :

원산지 명칭보호(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 표시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원료를 외지에서 가져오더라도 어느 지역의 특수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면 PGI에 해당되며 보호수준은 PDO와 동일하다.

- **등록현황 :**
  2000년 3월 기준 527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PDO 326개, PGI 201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 112, 이탈리아 101, 그리스·포르투갈 각각 76, 독일 60, 스페인 48개 등이, 품목별로는 치즈 139, 과일·채소 109, 육류·육가공 133, 광천수 31개 등이 등록되어 있다.
- **보호내용 :**
  다음의 표시에 의해 보호상품의 명칭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 처벌을 가하고 있다.
  ① 지리적 표시에 대한 유사·허위표시, 번역이 되어 사용되는 경우
  ② '양식', '유형', '방식', '어느 산', '모조품', 및 '유사한'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모든 표시
  ③ 내·외부포장, 광고물 또는 관계서류, 용기의 포장 등에 잘못된 또는 오인케 하는 표시

■ 프랑스의 지리적 표시제도

○ 도입배경 : 프랑스에서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외국산 포도 및 포도주에 밀려 자국산 포도 관련 산업이 위기(품질하락, 가격폭락, 표시문란)를 맞자 포도주산업의 부흥을 위해 AOC(원산지명칭보호)제도를 도입하였고, 1935년에 '포도주 및 증류주 국가위원회'를 설치, 1947년에 INAO(국립원산지명칭관리소)를 설치하면서 AOC제도가 본격화되었다. 1955년에는 치즈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1990년에 기타의 모든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해 확대 적용하여 프랑스의 AOC(원산지명칭보호)제도는 품질관리, 농가소득보장, 소비자보호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 등록현황 : 현재 와인, 증류주, 치즈 기타 버터, 농축우유, 건포도, 당근, 간, 천연수 등이 PDO(원산지명칭표시, 약 550개) 혹은 PGI(지리적표시, 약 150개) 보호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다.

○ 등록 및 관리운영 : INAO(Institute National les Appellation d'Origine)이 등록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데 생산자단체(가공 및 유통업체 포함)들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한 후 INAO에 제출하고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품목별 규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다음 농무성에 제출하면, 농무성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 **벨기에 Bel'Ardenne 회사의 지리적 표시 사례**

○ 회사개요 : 1902년에 설립한 DETRY라는 육가공업체의 방계공장으로 Wallon 지방 Bastonge군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목은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11종류의 돈육가공품으로 주당 약 20톤씩을 생산한다. 원료는 현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가져오지만 지역의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지리적 표시 내용 : 1991년 벨기에 정부로부터 'Jambon d'Ardenne'라는 지리적 표시 사용을 허가받고, 그 후 1996년 7월 EU규정에 의해 지리적 표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로 등록되었다. 햄이 지리적 표시 품목으로 선정된 이유는 너도밤나무와 참나무 톱밥에 향신료를 첨가한 약한 불에 8주 이상 서서히 그을리는 지역의 고유한 제조방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햄만이 지리적 표시 품목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제조하는 돈육가공품인 소시지나 베이컨 등은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없다. 생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는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타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된다.

○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품질확인 및 검사 : 'PPOMAG'란 검사기관이 정부와 계약에 의해 생산량을 확인, Stamp를 공급하고 수시로 표본을 추출하여 지리적표시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생산업체는 생산계획과 실제 생산량을 PROMAG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량에 따라 15～30일간 사용할 Stamp를 미리 판매하는데 Stamp 당 10BF(약 250원)이다.

참고자료·문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 농림축산식품부(2009), 지리적 표시제의 농식품 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분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2009), 지리적 표시 제도의 운영현황, Foodsafety 전문정보 10
- 김태곤(2002), 'EU, 지리적 표시제 논의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작성자 : 황지욱 교수(전북대학교)

정책용어

25. 지방소득세

생성배경 세계적 추세인 지방화와 분권화에 부응하면서 복지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5년 45.1%로 18.4%p 오히려 낮아지고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만 고착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재정수요 증가에 비해 세입의 증가가 미미했음을 의미하며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제가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세수 신장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재원의 핵심 재원인 지방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해 소득과세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과세 자주권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용어설명 지방소득세는 2009년까지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2010년에 신설하였다. 이로써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성된 사업소세의 경우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각각 편입되고 사업소세는 폐지되었으며 자치구의 재정을 고려하여 종전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남겨두었다. 지방소득세는 단순한 세목의 변경일 뿐 과세대상, 세율 등 세제상 변화는 없으며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세액을 과표로 10% 세율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과세하기 때문에 국세의 세수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2013년 9월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다.

〈표 14〉 지방소득세의 구조

출처 : GRI 정책연구(2014),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현재 용어의 사용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로 구분된다.

2014년부터 국세(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하였으며 국세(소득세·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개편하였다. 세율은 국세의 10% 수준에서 소득별 누진세율 방식을 적용하고 특별징수는 종전과 동일한 부가세율 10%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부가세 구조는 종전 부가세율 10%에서 독립세 전환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율 0.6~3.8%,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율 1.0~2.2%, 특별징수 부가세율 10%로 적용하고 있다.

그림 22 지방소득세 과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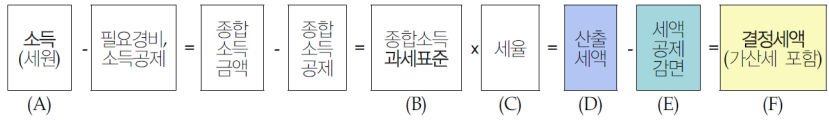

* **현행**: 국세부가세 구조 : 국세 **결정세액(F)**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 **개편** 독립세 전환 : 국세 **과세표준(B)** × **독립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출처 : GRI 정책연구(2014),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해외사례 OECD 국가들의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을 비교하여 보면 과표를 별도로 산정하는 완전독립세방식(예 : 스웨덴)과 과표를 국세와 공유하는 일반독립세방식(예 : 스페인), 국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방식(예 : 한국, 이탈리아), 국세와 지방세가 공동으로 과세하는 공동세방식(예 : 독일)으로 나누어진다(배진환, 2013).

참고자료·문헌

- GRI 정책연구(2014),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 배진환(2013),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
- 이영희, 김대영, 하능식(201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황욱, 이재은, 김성태(2010),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세원이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작성자 : 김선기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6. 지방소비세 제도

생성배경 의존재원과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로 인해 재정자립도의 지속적 하락, 지역경제와 지방세의 연계 부족 등이 초래되면서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 보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내국세의 감소, 종합부동산세제의 정상화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부동산 교부세 규모, '08년 2.9조 원, '09년 1.5조 원, '10년 1.0조 원)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

용어설명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기존 5%→11% 인상, '13.12.26 개정)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것은 광역세인 시·도세의 성격을 가지며, 교육재정 자연감소분은 교부금 교부율 인상(20%→20.27%)으로 보전하게 된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각 시·도의 민간 최종 소비지출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며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는데 지역별로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기타 300%의 가중치를 두게 된다.

• **도의 지방소비세액 =**
지방소비세 총액 × 〖(해당도의 소비지수×가중치)/각도의 소비지수에 가중치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현재 용어의 사용 지방세법 제6장에서는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하게 하고 있으며, 납세지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액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 지방세관련 통계

〈표 15〉 지방세 성질별 비중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득과세	15.8	15.4	16.2	16.6	17.2	17.3
소비과세	17.0	17.9	16.7	20.4	19.9	19.0
재산과세	47.6	46.7	46.6	45.0	46.0	47.0
기타과세	19.6	20.0	20.5	18.1	16.9	18.1

* 2006~2010년 결산 기준, 2011~2012년 예산 기준
출처 : 행정자치부(2012)

〈표 16〉 OECD 국가 지방세 성질별 비중('08년) (단위 : %)

구 분	연방제국가						단일국가			
	미 국		독 일		평 균		영 국	프랑스	일 본	평 균
	주 정부	지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소득과세	41.7	5.4	52.2	–	42.6	9.1	–	–	55.2	39.9
소비과세	56.0	23.2	42.7	37.2	46.7	20.6	–	20.2	17.2	19.8
재산과세	2.3	71.4	5.1	72.3	6.5	69.4	100.0	50.5	26.7	35.8
기타과세	–	–	–	0.6	4.3	0.9	–	29.3	0.9	4.5

* OECD, Revenue Statistics(2010), 연방제 8개국, 단일 24개국
출처 : 행정자치부(2012)

〈표 17〉 자치단체 수입 중 지방세 비중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 방 세	30.1	30.4	29.3	27.4	32.2	34.3

*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최종예산액, 2015년은 당초예산액 기준
출처 : 행정자치부(2015)

해외사례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보통세 중 간접세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세법상 국세인 소비세와 지방소비세를 총칭하여 '소비세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소비세 4%와 지방소비세 1%가 부과된다.

〈표 18〉 일본의 소비세 인상 과정 및 향후 계획 (단위 : %)

적용개시일 / 구분	~ 2014년 3월 31일	2014년 4월 1일	2015년 10월 1일
소비세율	4.0	6.3	7.8
지방소비세율	1.0 (소비세액의 25/100)	1.7	2.2
합계	5.0	8.0	10.0

출처 : 일본 국세청(2013)(www.nata.go.jp)

일본에서도 지방소비세를 2단계로 나누어 2014년도에 소비세 6.3%, 지방소비세 1.7% 등 합계 8%의 인상을 하였으며. 2015년도 10월 1일부터 소비세 7.8%, 지방소비세 2.2%의 합계 10%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신두섭(2012), 지방소비세 개선 과제, 지역발전위원회 토론회 자료
- 행정자치부(2012), 지방소비세·소득세 확대발전방안
- 행정자치부(2015),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a.go.jp)

작성자 : 신두섭 수석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7.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생성배경 지방의회 구성(1991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1995년) 등 1900년대 들어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공약 남발과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공약 이행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기 위주의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 및 재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1992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제30조제2항)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정(내무부령제570호)을 통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용어설명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투·융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투·융자심사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사업우선순위 등을 사전 검토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다.

그림 23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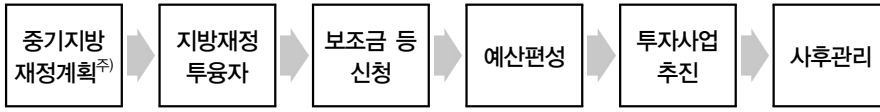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 2013.6

주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 함은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또는 연도 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업 등을 의미함)

현재 용어의 사용 일반투자사업(부동산의 취득, 시설물의 설치 등), 행사성사업(공연·축제·문화행사, 체육대회행사, 공청회·설명회·보고회 등), 홍보관 건립사업,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의 사업유형에 대하여 일정규모[1] 이상의 신규 투자·융자사업은 모두 심사 대상이다. 투·융자심사는 사업기획·구상을 위한 사전용역 또는 기본계획 용역 등을 통해 사업목적, 규모,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이후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를 의뢰해야 하며, 심사는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이루어진다.[2]

총사업비 규모, 사업성격 등에 따라 자체심사(시·도, 시·군·구)와 의뢰심사(시·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로 구분되는데, 시·도의뢰심사(시·군·구 → 시·도)는 ①총사업비 40~100억 원의 시·군·구 사업, ②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시·군·구의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③총사업비 40~100억 원의 2개 이상 시·군·구와 관

1) (시·도) ①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사업, ②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외국차관도입사업, 해외투자사업 또는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 ③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 또는 홍보관 사업, (시·군·구) ①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②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외국차관도입사업, 해외투자사업 또는 다른 시·군·구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 ③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 또는 홍보관 사업

2) 다만,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야 함.

련되는 사업, ④총사업비 5~30억 원의 시·군·구 행사성·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앙의뢰심사(시·도→중앙, 시·군·구→중앙)는 ①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시·도 사업 또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시·군·구 사업, ②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시·도의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③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2개 이상의 시·도와 관련된 사업 또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2개 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된 사업, ④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시·도 또는 시·군·구 행사성·홍보관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에 따라 ①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②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③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④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⑤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실시된다. 2011년 기준으로 자체심사를 제외한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의 전국평균은 67.1%로 전년대비 양호한 실적(100%에 근접할수록 양호)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년대비 정체 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의 추이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평균	70.2	66.6	61.9	61.6	58.1	67.1
특별·광역시평균	117.7	68.8	73.1	77.0	58.7	70.8
도평균	141.2	76.0	57.7	83.4	75.8	47.8
시평균	57.8	61.9	62.9	55.3	64.2	65.6
군평균	65.2	62.5	67.2	60.7	68.6	69.1
자치구평균	65.1	75.2	53.6	45.5	72.4	30.6

출처 : 2012년도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고자료·문헌

- 행정자치부(2013),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
- 한국지방재정학회(2010),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제도개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지방재정분석 통계자료
-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2013년도 지방재정분석편람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28. 지방재정조정제도

생성배경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제공하는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마다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또는 자치단체 간 재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정적 연계 고리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 이유는 크게 정부 간 존재하는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거나,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국가와 지방이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용어설명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scal Equalization Scheme)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등이나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재정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으로는 사용조건에 따라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과 특정보조금(categorical grants)으로 구분된다. 이는 다시 배분방법에 따라 공식과 사업별, 그리고 매칭 방식에 따라 정액보조, 정율보조, 정액교부, 조건교부 등으로 구분한다. 정율보조의 경우 보조규모 제한에 따라 폐쇄형 정율보조금과 개방형 정율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적 성격

을 지닌 포괄보조금(block grant)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는 크게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로 구분된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입 간 재원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제도이며, 국고보조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특정사업에 대한 장려 목적의 조건부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그림 24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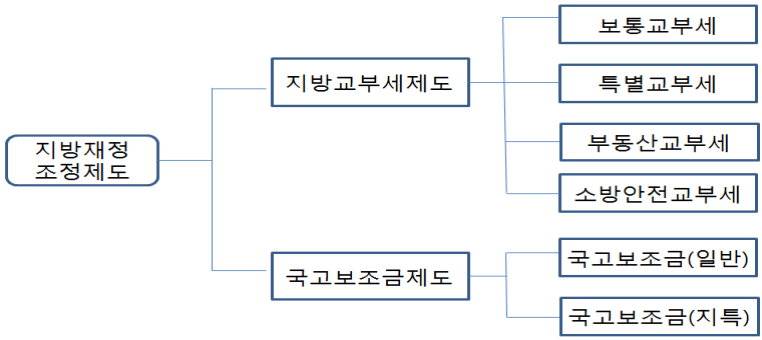

* 분권교부세 제도는 2014년까지 한시적 운영 후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으며,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됨

출처 : 저자 작성

현재 용어의 사용 지방재정법 제4조 제1항에는 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부세와 보조금 관련 업무 추진 시에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활용 등에 이 용어를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

해외사례 해외 많은 국가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일 국가인 일본, 영국, 프랑스의 경우 수직적 조정을 위한 일반보조금을,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평형교부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국가인 독일에서도 평형교부금을 운영하고 있다.

〈표 20〉 지방자치단체 회계별·연도별 세입순계예산 규모 추이 (단위 : 억 원)

회계·재원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수입	500,799	523,001	539,381	537,789	581,842	594,523
세외수입	505,825	491,671	553,003	620,437	221,162	202,489
지방교부세	281,990	319,377	352,063	355,750	352,272	315,849
조정교부금	–	439	583	466	–	–
보조금	320,333	322,947	351,046	368,379	392,392	417,917
지방채	55,337	65,386	44,359	83,272	49,120	48,20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	–	–	211,966	153,605
계	**1,664,284**	**1,722,822**	**1,840,436**	**1,966,093**	**1,808,754**	**1,732,590**

*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최종예산액, 2015년은 당초예산액임. 회계 및 재원별에서 '지방채'는 2013년까지는 종전 세입구조에 따라 '지방채및예치금회수(600)'과목에 편성된 금액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과목은 기존 세외수입 과목 등을 개편하여 '14년부터 신설한 과목임

출처 : 행정자치부(2015)

참고자료·문헌

- 서정섭, 조기현(200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용환, 박충훈(2005), 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합리적 재원배분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행정자치부(2015),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하):예산개요 및 기금운용개요

작성자 : 신두섭 수석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용어

29. 지역개발사업구역

생성배경 광역개발권,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는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유사·중복적인 사업내용과 복잡한 추진체계에 따라 민간투자가 부진하여 실제 지역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기존 지역개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4년 6월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운 지역개발제도는 기존의 산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여 실행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였다. 또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권한을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구역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및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타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사전검증을 강화하도록 명시화 하였다.

그림 2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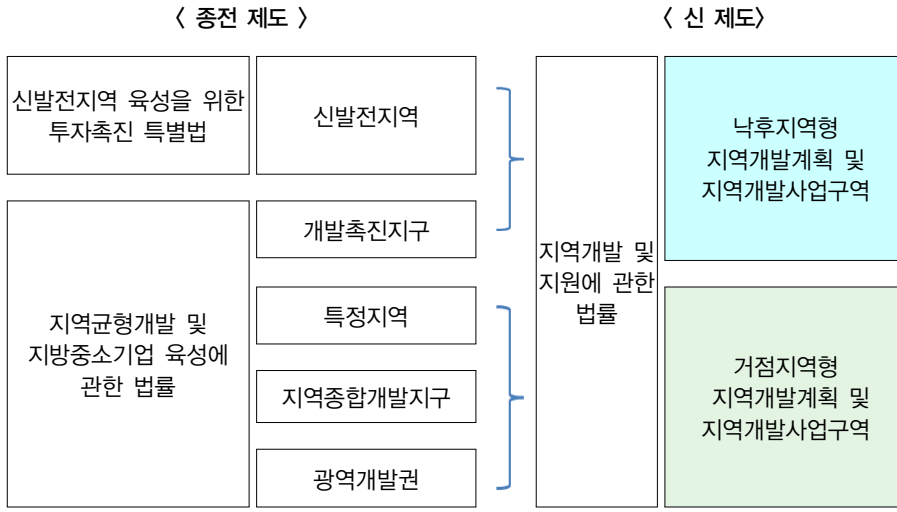

용어설명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단의 구역을 의미한다.

지역개발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둘째,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셋째,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고속철도와 그 주변지역,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또는 설치될 지역의 주변지역 등이 해당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지역이나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3만㎡ 미만)에 입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첫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둘째, 지역개발사업이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셋째,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넷째, 지역개발사업이 해당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다섯째,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여섯 째,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등이다.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한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재산세의 감면비율·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은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시행자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감면비율은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시행자는 3년간 50%, 3년간 25%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충청북도는 2015년 11월 17일 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낙후지역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도내 3개 산업, 물류단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단지는 단양일반산업단지와 제천 금성양화농공단지, 영동 황간물류단지 등 3곳이다. 이들 단지는 현재 조성이 완료돼 분양이 진행 중이지만 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남북부권에 위치해 20~40%대의 낮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을 비롯해 인허가 일괄처리 지원,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용지매입비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지역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사업간 유사·중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자료·문헌

- 국토교통부(2015), 지역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예규 제98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노컷뉴스(2015), “충북도, 지역개발사업구역 3개소 지정” (http://www.nocutnews.co.kr/news/4505547)

작성자 : 채성주 연구위원(충북연구원)

정책용어

30. 지역낙후도

생성배경 지역 간의 격차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허용 가능한 지역 간 격차의 수준 또는 낙후도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개발 또는 지역낙후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낙후 정도에 대한 최소한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존재해야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집행 대상 지역(target area)을 설정하고, 정책 집행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에서는 다양한 낙후지역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오지, 도서지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을 낙후지역으로 규정하였고,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감소율, 재정상황,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낙후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이후 2009년 「균특법」 개정을 통해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을 낙후지역[1]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도 지역낙후도를 중요

1)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으로 분류하여 시군구 단위의 자율편성이 가능한 포괄보조금을 지원하였음.

한 기준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1999년부터 대규모 사업[2]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의 경제성·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지역낙후도를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어설명 지역낙후도는 법적 용어정의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타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주민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인구가 감소하면서, 문화·경제·SOC 등의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정도를 의미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거나 현재의 낙후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낙후도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지역'이란 국가라는 공간의 하위 단위로서 통상적으로 어떤 공통적 또는 상호보완적 특성(예: 역사성, 문화성 등)을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범위를 지칭한다. 하지만 지역정책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그 대상 범위가 설정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낙후지역개발정책의 경우 시·도 또는 시·군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낙후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지역 간의 격차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크게 생산요소의 차이와 생산기술의 차이에 있다. 생산요소의 차이는 주로 부존자원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인구, 자본, 자연자원, 지리적 접근성 등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의 양과 질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생산기술의 차이란 지역별로 생산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의 차이로, 혁신의 발생과 파급 정도, 공간적 집적의 정도에 따라 동일한 생산요소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생산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낙후지역은 생산요소가 원래 부족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가 경제적 효율성을 따라 성장지역으로 유

2) ①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SOC)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재정사업

출됨으로써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즉 낙후도가 확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등 현행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낙후도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후지역으로서 성장촉진지역은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시·군을 대상으로 ①연평균 인구변화율, ②소득수준, ③재정 상황, ④지역 접근성 등의 지표를 지역발전위원회가 5년마다 종합평가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둘째, 낙후지역으로서 특수상황지역 중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연접한 시·군(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지역(경기도 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도 춘천시)을 말한다.

셋째, 낙후지역으로서 특수상황지역 중 도서지역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는 도서의 기준은 10인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3조).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의 상대적 지역낙후도를 나타내기 위해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경제성 분석의 결과가 낮게 평가되어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낙후도지수는 ①인구증가율, ②제조업 종사자 비율, ③도로율, ④승용차 등록대수, ⑤인구

당 의사수, ⑥노령화 지수, ⑦재정자립도, ⑧도시적 토지이용비율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8개 지표의 척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표준화하고 있고, 지표별 가중치는 관련 학회, 연구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산출한 결과[3]를 적용하고 있다.

〈표 21〉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개요

부 문	지 표	측정 방법	자료 출처
인 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통계청 홈페이지
산 업	제조업 종사자비율	(제조업 종사자 수/인구)×100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지 역 기반시설	도로율	(법정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100	각 시도 통계연보
교 통	승용차 등록대수	(승용차 등록대수/인구)×100	각 시도 통계연보
보 건· 사회보장	인구당 의사수	(의사 수/ 인구)×100	각 시도 통계연보
	노령화 지수	(65세 이상/0~14세 인구)×100	통계청 홈페이지
행·재정 ·기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100 ※ 3년간 평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 면적×100	각 시도 통계연보

출처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5판)(2008), KDI

3) 지표별 가중치(%) : ① 인구증가율(8.9), ② 제조업 종사자 비율(13.1), ③ 도로율(11.7), ④ 승용차 등록대수(12.4), ⑤ 인구당 의사수(6.3), ⑥ 노령화 지수(4.4), ⑦ 재정자립도(29.1), ⑧ 도시적 토지이용비율(14.2)

참고자료·문헌

- 한국개발연구원(2000),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2012),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 한국개발연구원(2008),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5판)
- 정책분석평가학회(2005), 지역간 낙후도 연구
- 행정자치부(2004), 낙후지역 선정지표 개발
- 기획재정부(2008),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1. 지역발전 5개년계획 (부문별계획안, 시도발전계획)

생성배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조)에 의거,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09~'13년)이 수립되었다. '13년 종료되는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이어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14~'18년)에서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6 지역발전 5개년계획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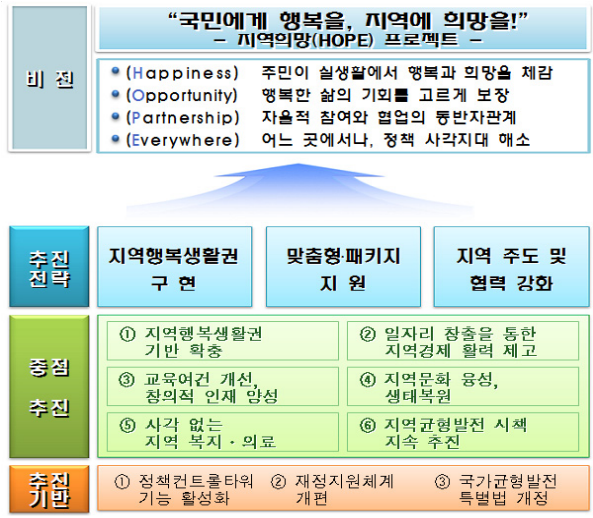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안), 2014. 3.

용어설명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균특법 제4조)으로 정부는 복지·의료·교육·문화·환경·일자리 등 주민체감형 정책 강화와 함께 지자체 주도의 시·도 및 지역생활권계획에 기반한 상향식 계획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부문별 계획안과 시·도발전계획(지역생활권발전계획 포함)을 기초로 하여 5년 단위로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표 22〉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계획 체계	• 부문별 계획 + 광역발전계획	• 부문별 계획 + 시·도 계획 (지역생활권발전계획 포함)
내용	• 광역선도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	• 복지·의료·교육·문화·환경·일자리 등 주민체감형 정책 강화
성격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중심의 하향식 계획	• 지자체 주도의 시·도 및 지역생활권 계획에 기반한 상향식 계획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안), 2014. 3.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데 중심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첫째,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부문별 발전계획안은 중앙부처의 종합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계획이면서, 시·도별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리고 시·도별 발전계획은 시·도별 발전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둘째, 지역발전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부처간·지역간 유사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사업간 조정·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셋째, 시·도간 발전 비전의 공유와 시·도별 계획 수립시 지역생활권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시·도와 생활권간, 시·군·구간 비전의 공유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 것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단계는 3단계로 구분되어지며,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발전위원회,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등이 참여하게 된다. 1단계는 기초지자체단위에서의 지역생활권계획 수립단계이며, 2단계에서는 지역생활권계획을 반영한 시도단위의 시도발전계획 및 중앙부처단위의 부문별 발전계획안이 수립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비로소 확정되게 된다.

그림 27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절차(법 개정안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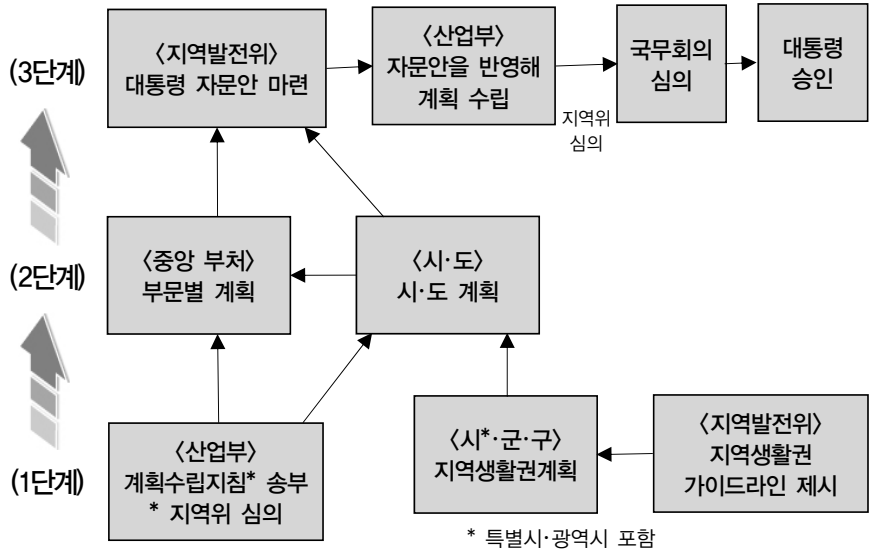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안), 2014. 3.

참고자료·문헌

- 기획재정부(2013), 광특회계지침 설명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4),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안)
- 아시아뉴스통신(2013.9.22), 국가균형발전특별, 전면 개정
-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2009), 지역발전 5개년계획안

작성자 : 장효천 원장(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2. 지역발전지수 (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

생성배경 지역별 발전정도 및 잠재역량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지역 내 특정 부문별로도 진단·평가가 가능한 실용적 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역발전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전국 160개 시·군을 분석 단위로 삼았다.[1] 이 지표를 통해서 시·군의 상대적인 현황 진단, 지역발전정책의 목표 설정, 정책의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등에 합리적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는 2007년, 2008년 2년간의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를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연구를 통해 개발하였다. 개발된 RDI를 활용하여 2009년 12월 지역발전위원회 및 동아일보와 함께 지면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2010년에는 기존의 지역발전지수(RDI)를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기초생활권 종합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역시 동아일보를 통해 지역경쟁력 지수로 발표하게 되었다. 그 이후 2012년, 2014년 격년으로 지역발전지수는 동아일보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용어설명 지역발전지수는 시·군 지역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서 개념화하고 각 영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1) 2014년부터 연기군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하여 제외되었고,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이 모두 포함된다.

한다. 각 영역별로 발전 정도를 공식적,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지수를 구성해 지역별 진단 및 상호 비교를 시도한다. 따라서 종합진단지표로서 지역발전지수(RDI)는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 여유 공간 지수, 주민활력 지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는 네 개의 세부 지수들이 기초생활권 내의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를 의미한다.

* 종합진단지표 지역발전지수(RDI) = 부문별 지수의 합(생활서비스 지수 + 지역경제력 지수 + 삶의 여유 공간 지수 + 주민활력 지수)
* 삶터: 생활서비스 지수, 일터: 지역경제력 지수, 쉼터: 삶의 여유 공간 지수, 공동체의 터: 주민활력 지수

그림 28 지역발전지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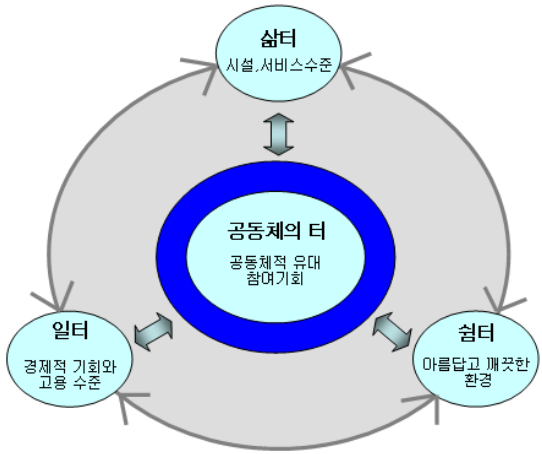

출처 : 송미령 외(2007,2008)

각 부문별 지수는 객관적 통계자료만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수행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매년 가중치를 조정하게 된다. 가장 최근의 분석 결과는, 생활서비스 지수는 0.359,

지역경제력 지수는 0.246, 삶의 여유 공간 지수는 0.179, 주민활력 지수는 0.217를 적용하였다.

그림 29 지역발전지수(RDI)의 부문별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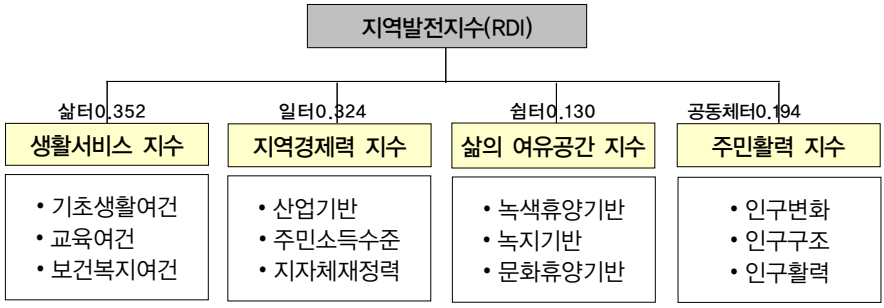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2014)

현재 용어의 사용 가장 최근의 지역발전지수인 2014 RDI에 따르면,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 남부와 그에 인접한 충청권 북부지역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에 주로 분포한다. 상위 50개 지역 중 도농복합시가 27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시가 18개, 군이 5개 포함된다. 일반시는 22개 중 18개가 상위권인 반면 군은 84개 중 5개만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여전히 우리 사회의 도농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는 변수 목록

영역별 지수	부문	지표	부호
삶터: 생활 서비스	기초생활 여건	– 노후주택비율: 준공 30년 초과 주택 비율 – 식수보급 및 하수처리 현대화: 상하수도 보급률	(–) +
	교육 여건	– 공교육 기반: 1㎢당 학교 수(초·중·고) – 사교육 기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 +
	보건·복지 여건	– 의료서비스 질: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 의료시설기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 아동복지기반: 영유아(6세 미만)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노인복지기반: 1㎢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 + +
일터: 지역 경제력	산업기반	– 사업체 기반: 총 사업체 수 경제활동력: 지난 5년간 연평균 사업체 증감률 –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 수 비율 (사업체 종사자 수 + 농업종사자 수)	+ + +
	주민소득 수준	– 소득수준: 1인당 지방소득세	+
	지자체 재정력	–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
쉼터: 삶의 여유 공간	녹색 휴양 기반	–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
	녹지 기반	– 녹지확보율: 녹지율 (녹지: 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
	문화휴양 기반	– 문화시설: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 체육시설: 인구 천 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마을체육시설: 체육공원, 고수부지, 마을공터, 아파트 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공원, 기타)	+
공동체의 터: 주민 활력	인구변화	– 인구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06–13년)	+
	인구구조	– 고령화율: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인구활력	– 조출생률: 연앙인구 천 명 대비 출생자 비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2014)

참고자료·문헌

- 송미령 외(2007, 2008),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외(2012), 2012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농어촌 실태 분석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헌 외(2014), 2014 지역발전지수(RDI)를 통해서 본 농어촌 삶의 질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수, 박형진, 전창욱, 문정호, 송미령, 류정아(2010), 광역경제권 모니터링 지표 및 기초생활권 창조 지표 개발 연구, 용역 보고서

작성자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용어

33.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생성배경 대형 국책 사업의 입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의 과도한 경쟁과 갈등, 국론 분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이 자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는 국책 사업의 투자재원 부담과 사업의 성패 등에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추진 방식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되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지역개발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책 사업 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이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예산 편성 등 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20조 제2항)"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도 협약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

행자와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38조7)"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정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125조)"고 규정하고 있다.

용어설명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분담, 성과 관리 등에 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반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더불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시·군에서 시·도지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지역발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실제 활발히 집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외사례 프랑스에서는 1984년부터 5차에 걸쳐 계획계약(Plan Contract)을 체결하여 왔으며, 국가경쟁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에 계획계약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따라서 야기되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에도 지방간협력법(Interlocal Cooperation Act)을 통한 지방정부 상호간의 협력 및 지원 관련 협약 체결 규정이 있다.

참고자료·문헌

-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2001), 지역발전협약제도: 실천모형정리방안
- 김동주(2011), 해외의 도시권 정책사례와 시사점, 국토정책브리프 제325
- 박양호(2003),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를 벤치마킹한 한국형「지역발전협약제도 필요, 국토정책브리프 제13호
- 박양호, 이원섭(2000), 지역개발 투자협약제도 도입방안, 국토연구원
- 배준구(2004), 프랑스 계획계약의 운영 메카니즘과 함의, 사회과학연구 제20집 1호, 35-77
- 안영훈(2007),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재정립을 위한 계약방식도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와 프랑스 계획계약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섭(2005),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 방안 연구(Ⅲ): 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이원섭(2011),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실천 방안, 국토정책브리프 제319호
- 산업통상자원부(2004), 지역발전투자협약 해외조사,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과(편)

작성자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4. 지역발전특별회계

생성배경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 제30조에 의해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법 제31조), 회계는 경제발전 계정(부처편성), 생활기반 계정(지자체편성),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법 제32조).

용어설명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균특회계는 예산을 일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기존의 지방양여금을 폐지하면서 각 중앙부처가 분산 추진하던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이었다.

2005년 도입 당시에는 지역개발 계정, 지역혁신 계정, 제주 계정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구성도 광역 계정, 지역 계정, 제주 계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별·부처별 칸막이, 단위사업 중심 지원의 한계가 지적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포괄보조금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시·도 간 연계사업을 중점지원하려 하였다. 박근혜정부에 들어 지역

생활권이 도입됨에 따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 폐지되고 지역발전 계획체제로 개편되면서, 광특회계도 지역발전회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015년 1월 1일 시행).

현재 용어의 사용 「국가균형발전법」 제30조 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제31조 회계의 관리·운용, 제32조 계정의 구분 등 제48조까지 규정 및 동법 시행령

〈표 2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광역계정	58946	58252	55538	59046	51521	49333
지역계정	36282	36332	34707	34737	32074	42158
제주계정	3782	3942	3840	3531	3442	3695
세종계정	–	–	–	–	–	1022
합계	99010	98526	94085	97314	93612	103389

출처 : 기획재정부 나라살림(각 년도)에서 작성.

〈표 25〉 지특회계 편성체계

<table>
<tr><th colspan="2">계정
편성방식</th><th>생활기반계정</th><th>경제발전계정</th><th>세종특별
자치시계정</th><th>제주특별
자치도계정</th></tr>
<tr><td rowspan="2">지자체
자율
편성</td><td>시·
도</td><td>①시·도
자율편성사업</td><td>–</td><td rowspan="2">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td><td rowspan="2">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특별지방행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td></tr>
<tr><td>시·
군·
구</td><td>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td><td>–</td></tr>
<tr><td colspan="2">부처
직접편성</td><td>–</td><td>⑥부처직접
편성사업</td><td>⑦부처직접
편성사업</td><td>⑧부처직접
편성사업</td></tr>
</table>

출처 : 기획재정부,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p.38.

참고자료·문헌

- 신두섭(2012), 2012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과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희, 권혁준(201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집행실태 및 사례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기획재정부, 2010-2015 나라살림(예산)

작성자 : 오승은 교수(제주대학교)

정책용어

35. 지역발전포털(REDIS)

생성배경 2009년 당시 지경부 산하에 있던 지역경제종합정보망(ReNet)과 행정자치부 정보망인 E-eye 시스템을 통합해 지역발전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지역발전포털(REDIS)을 개통하였다. REgional Development Information Service의 약자인 REDIS는 신(新)지역발전 정책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중앙-지역 간 지역발전 정책 공감·소통의 기회 확대 차원에서 포털 형태로 개편되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화하였다.

용어설명 지역발전포털(REDIS)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3조5항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를 말한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발전포털 레디스의 기본 운영방향은 지역경제, 산업, 문화관광 등 기초 통계 및 지역발전사업을 DB 구축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포털의 비전과 목표는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종합평가 온라인 시스템 지원을 통한 평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정보 교류기능을 강화한 소통 및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역발전포털 시스템은 크게 온라인 평가지원시스템(경제발전계정,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지역행복생활권), 지역

발전사업 3대DB(지역발전사업DB, 지역발전네트워크DB-지원기관DB, 지역현황정보DB-지역통계DB), 지역발전콘텐츠(지역뉴스, 컬럼·기고문, 일자리정보, 지역행사, 리더 인터뷰, 우수사례, 정책자료, 북리뷰, 영상자료 등) 3개로 구분된다.

그림 30 지역발전포털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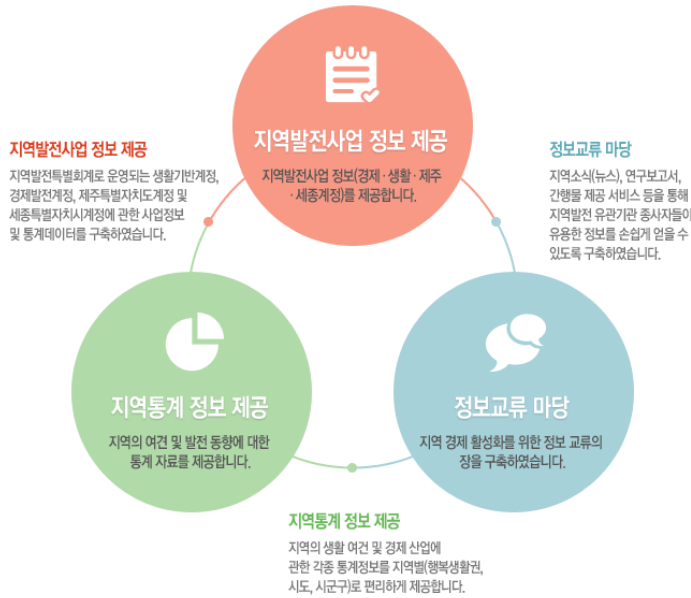

출처 : 지역발전포털(REDIS) 홈페이지

현재 용어의 사용 지역발전포털 레디스는 2,000개가 넘는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소, 유관기관 등에 산재하는 지역발전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은 지역정보 내비게이터이다. 특히 2015년도부터 본격 서비스 중인 「한눈에 보는 지역정보」는 지역발전사업(지특회계사업)현황, 지역발전 지원기관, 일자리 정보, 지역통계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통합 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

심인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평가지원시스템 및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레디스는 지역발전포털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문화, 산업, 명소,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지역관련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발전사업 관련 정보 포털의 허브로서 정책관련 정보 접근의 편리성 제고 및 종합적 자료 구축을 통하여 관심 있는 지자체 및 일반인들에게 차별화된 지역 발전 종합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림 31 「한눈에 보는 지역정보」 시스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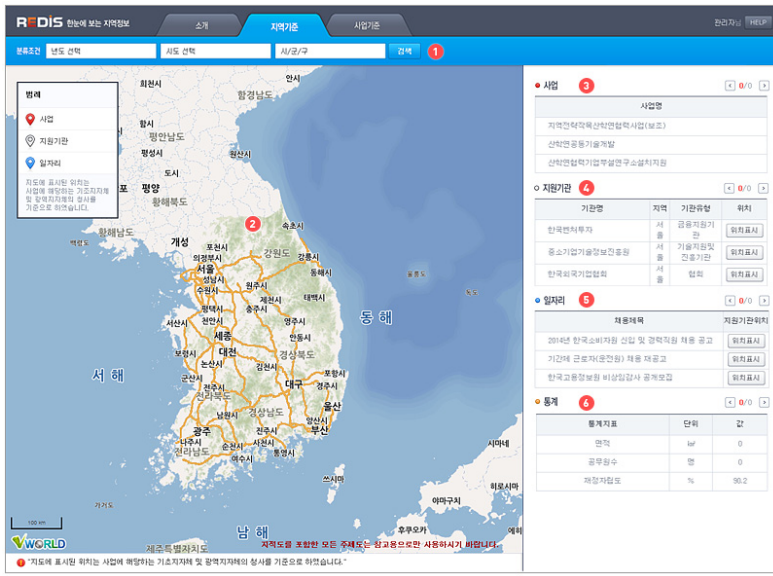

1 **검색 영역** : 년도, 시도, 시군구를 검색 조건으로 하여 해당 정보를 2번 지도 영역에 범례 형태로 표현
2 **지도 영역** : 검색 결과 값을 지도의 해당 좌표에 표현
3 **사업목록 영역** : 조건의 사업목록을 리스트 형태로 표현
4 **지원기관 정보 영역** : 조건에 따라 지원기관 목록을 리스트 형태로 표현
5 **일자리 정보 영역** : 현재 채용 공고 중인 지원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표현
6 **통계 정보 영역** : 조건의 지역에 대한 기본 통계 정보를 통계지표 별로 표현

출처 : 지역발전포털(REDIS) 홈페이지

해외사례 우리나라 지역발전포털과 같이 평가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사 사이트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는 eurostat, inforegio, IEG 월드뱅크 등으로 성공사례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소통과 협력 플랫폼으로서 정책 활용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지속가능한 개발포털 홈페이지(http://www.sustenn.com)
- 지역발전포털 홈페이지(http://www.redis.go.kr)
- IEG 월드뱅크 홈페이지(http://ieg.worldbankgroup.org)

작성자 : 윤태웅 전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책용어

36.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생성배경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중소건설업체가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전체의 30%도 안 되는 실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간 균형발전 및 대중소 건설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이다.

용어설명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일정 비율(40~49%)을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충남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서울업체가 최소 51%, 충남업체가 최대 49%의 비율로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적용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시공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원활한 경영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대상에서 금액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동일한 입찰에 대해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하였다.

한편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함께 지역제한, 지역가점 등의 제도가 있다. 지역제한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지역가점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입찰심사 취득점수의 일정비율 가산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운용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26〉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개요 및 적용대상

구 분	제 도 개 요	적 용 대 상
지역제한	•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 지방 : 100억 원 미만 • 국가 : 87억 원 미만
지역의무 공동도급	•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와 일정 비율 이상 공동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	• 지방 : 15개 시·도 262억 원 미만 (울산시, 세종시, 시·군·구 금액제한 없음) ※ 지방계약법 개정('13.5.22)으로 시행일('13.11.23) 이후 금액제한 없음(15개 시·도) • 국가 : 87억 원 미만 * 지역업체 참여비율 – 지자체 : 40%~49% – 국가 : 30%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시 취득점수에 일정 비율 가산	• 지방 : 40%~45%시 12% 가산 *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된 공사는 적용 제외

출처 : 행정자치부

참고자료·문헌

- Newsis(2013.7.1), 모든 지자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제한 없앤다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3.7.1),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 제한 철폐
- 정보통신신문(2013.4.30), 지역의무공동도급, 모든 지자체 공사에 적용
- 한국자치경제연구원(2013.7),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작성자 : 장효천 원장(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7.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생성배경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및 고용 여건의 편차가 커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대책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인식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그 추진 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중앙-지방 간 일자리 협력 사업이다.

기본방향은 ①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 지원, ②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③ 자치단체와 지역고용 관련주체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이다.

첫째,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일자리 관련 사업 발굴 및 정책

을 추진하고, 구호 수준의 일자리공약을 넘어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모델을 구축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자치단체장이 일자리에 깊은 관심을 두고 일자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중앙정부는 컨설팅,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자치단체와 지역고용 관련주체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의 다양한 고용 관련 주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역고용심의회(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지역고용포럼 등과 연계하여 효과성을 제고한다.

공시내용은 일자리목표와 일자리대책으로 구분하되, 일자리목표는 공통목표와 개별목표로, 부문별 사업계획은 정부부문(직접일자리창출 외 5개 부문)과 민간부문(기업 등 유치 외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일자리목표에서 공통목표는 임기 중 달성코자 하는 연차별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가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와 상용근로자 증가 목표이다. 그리고 개별목표는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대책의 개별 사업목표로서 정부부문은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 기타이며, 민간부문은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 기타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한다.

일자리대책에서는 다양한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대책을 발굴·공시하도록 하였고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자치단체장 임기 동안의 종합계획과 매년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해외사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역 고용정책의 세계적 동향을 고려하더라도 타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며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정책이다. 공시제 사례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공시, 대학공시제도(www.academyinfo.go.kr), 학교알리미사이트(www.schoolinfo.go.kr)의 학교정보공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통합공시시스템(알리오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공시, 성과공시제도, 지식자산공시제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이 있다.

관련용어 및 개념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사업비를 민간 경상보조에서 지자체 경상보조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지자체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처럼 지자체의 지역 일자리창출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노사단체, 지역 고용센터, 지역 교육훈련기관, 시민단체 등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의 고용인적자원 개발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또는 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특화사업과 이와 관련된 지역고용 포럼사업과 연구사업을 말한다. 사업유형은 「특화사업」(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과 「포럼사업」(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시키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연구사업」(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패키지사업」(위의 특화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프로젝트사업」으로 구분한다.

사업선정단계에서는 광역 자치단체 지원사업과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소속 기초 자치단체가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또는 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광역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광역 자치단체가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문헌

-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http://www.reis.or.kr)
- 고용노동부(2010, 2011),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방안
- 고용노동부(2015),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2010), 지역일자리공시제 매뉴얼
- 고용노동부(2011), 지역일자리공시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도출
- 고용노동부(2010, 2011, 201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 김대성(2011), 전남지역 일자리공시제 내실화 방안, 리전인포 제239호
- 남병탁(2011), 경북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 및 과제, 한국지역경제연구, 19집
- 남병탁(201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지역경제연구, 22집
- 모성은(2011), 지역 일자리공시제 발전방안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20집

작성자 : 김봉원 연구위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8.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생성배경 박근혜정부는 이전 정부의 기능 분산형 균형발전정책(세종시 건설,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과 광역경제권 정책(30대 선도프로젝트,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등 지역 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HOPE프로젝트(2013.7월)을 통해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6대 중점 추진방향[1]을 중심으로 17개 실천과제가 확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이 어디서나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 즉, 인접한 기초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구성한 생활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14.3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중추도시권 20개, 도농연계권 14개, 농어촌권 21개, 수도권시범생활권 8개 등 63개 지역

1) ①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②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③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④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⑥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지속 추진

행복생활권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종전 '5+2 광역경제권'처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즉 시·군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지역 및 시·도 협의를 거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2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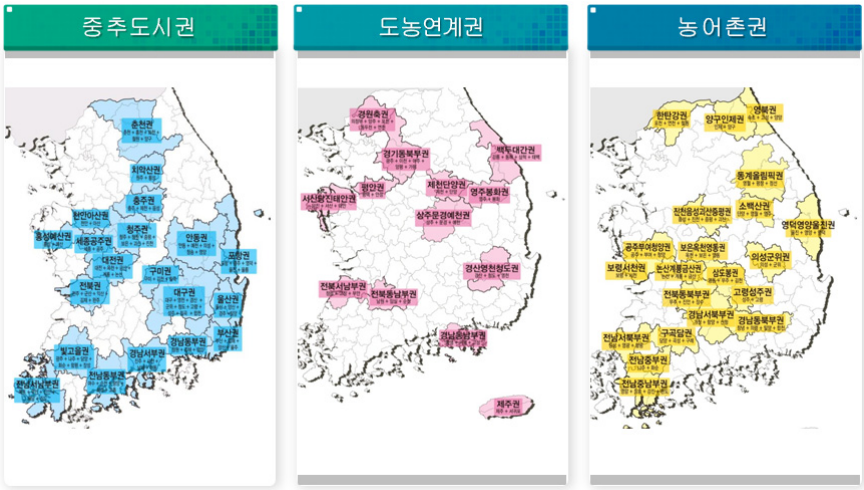

출처 : 지역위(2014), '15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계획

용어설명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기초지자체가 발굴한 주민 불편해소 과제를 중점 지원함에 있어서 기존의 개별 부처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통해 각종 사업을 조정, 패키지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주체 또는 지원내용에 따라 ①지역생활권과제(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기초지자체 단독사업), ②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③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생활권과제’는 생활권내 주민들의 불편 없는 생활을 위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들로서 관계 부처 관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 부처가 (지역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지원하며, (지역행복생활권에 속하는 시·군 간의 공동 추진 여부에 따라) 생활권을 구성한 시·군들이 협업을 통해 각종 시설물, 서비스(상하수도, 의료서비스연계, 도농간 일자리 연계 등)를 생활권 내 연계 및 공동활용토록 하는 연계·협력사업과 주민생활 밀착형으로 주민 불편해소 및 삶의 질 개선(슬레이트 지붕철거, 가축분뇨처리 등)과 직결되는 단독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선정 및 지원을 직접 수행하며, 5대 중점분야[2]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서비스연계, 지역자원의 공동 개발·관리 등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새뜰마을 사업)’는 위험잠재지역(건물, 축대 등의 노후붕괴 위험지역, 산사태,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 우려지역),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지역, 생활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상하수도, 소방도로, 급경사, 재래식 화장실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 NIMBY 해소, 응급의료, 주민안전, 일자리 연계, 생활인프라(상하수도, 가스 등)

참고자료·문헌

- 지역발전위원회(2015), 보도자료 2건(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신규 42개 선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 85개소 선정)
- 지역발전위원회(2014), '15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계획
- 지역발전위원회(2014), 지역행복생활권·특화발전프로젝트(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의안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4), 보도자료(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 지역발전위원회(2014), 지역행복생활권사업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생활권협력사업 사례자료집
- 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해설집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39. 지역화폐

생성배경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걸친 불황과 공동체 내 자산 유출 현상의 심화, 공동체 경제의 확충 등의 논의과정에서 지역통화 혹은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지역화폐를 통해 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많은 지방정부들이 직접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용어설명 지역화폐란 국가의 공식화폐와 달리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만 쓰이는 화폐이며, 일반적으로 지역교환 거래체계(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의 줄임말인 레츠(LETS)로 널리 알려졌고, 지역통화와 품앗이 등의 표현으로도 사용한다.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에만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또 하나의 지불수단으로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화폐는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지역통화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역 내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주

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안에서 화폐화하지 못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역활성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지역화폐(통화)는 첫째, 이자는 축적수단으로 변질되어 소수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둘째 특징 집단(회원)이나 지역사회에서 통용되고, 셋째 회원이나 지역사회에 의해 자유 발행되며, 넷째 자발적 가입(수용)과 상호부조로, 다섯째 경제적 측면(지역경제활성화)과 사회적측면(공동체활성화)이 공존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지역화폐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 및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생적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첫째, 지역의 경제주체를 활성화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 둘째, 지역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내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 셋째, 개별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더 지역적이고,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지역내 경제주체, 지역내 교환 지역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국내에는 1996년 '녹색평론'을 통해 개념이 소개된 뒤 1998년 3월 처음으로 신과학운동 조직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미래화폐'라는 지역화폐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경기 안양의 '고잔 품앗이', 경남 진주의 '상봉레츠', 서울 송파구의 '송파품앗이' 등 30여개의 지역화폐가 생겨났다. 각 지역이나 단체의 사정에 따라 시스템 운영의 부침이 심하여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곳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송파품앗이'와 대전의 '한밭레츠'를 비롯한 극소수의 지역과 단체에 국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 소규모 단위로 시도돼 왔는데, 최근에는 지방자치

단체들까지 나서 지역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지역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며,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간 4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수원에서도 100여명의 시민들이 '수원시민화폐 추진모임'을 꾸리고 10만원씩을 내 2014년 9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하였다. 현금을 전자화폐형 시민화폐로 바꾼 뒤 농산물매장, 음식점, 생활용품점 등 지역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서는 '돌', '뜰', '잎'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구상하는 모임을 매주 금요일 마다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강화군이 도입한 지역화폐 '강화사랑상품권'이 발행 1개월 만에 약 3억 원어치 팔리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강화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영세 상가, 골목상권 등을 살리려고 발행한 지역화폐로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강화농협에서 3%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식당, 미용실, 전통시장 등 지역 1천30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해외사례 지역화폐는 1983년 캐나다의 작은 마을 코목스밸리에서 처음 탄생했다. 당시 코목스밸리는 공군기지 이전과 목재산업 침체로 실업자가 넘쳐났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마이클 린턴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통화시스템인 '레츠'(LETS'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를 만들어 주민들끼리 노동력과 물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3천개 이상의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경우 500개, 프랑스는 250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개 이상의 지역화폐를 갖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 회원 2천명으로 1990년대 세계 최대 규모

의 지역화폐로 분류된 '블루마운틴 레츠'가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300개 이상의 지역화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미와 아시아에서도 지역화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 지구촌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역화폐는 크게 실물화폐, 전표·수표, 가상화폐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실물화폐 형태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6년부터 미국 매사추세츠주 버크셔 카운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버크셰어'다. 5개 은행 13개 지점에서 95달러를 내면 100버크셰어를 환전 받을 수 있다. 버크셰어를 사용하면 5% 할인을 받는 셈이다. 버크셰어는 주유소, 식품점 등 400여개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규모는 23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전표·수표 형태는 영국, 헝가리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통장, 적립카드 등을 통해 관리되는 가상화폐 형태에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돼 시카고를 비롯해 미국 몇몇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임달러시스템 등이 있다.

지역화폐의 변화시기를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세대는 LETS, SEL, 타임뱅크로 대표된다. 1980년대에 레츠(프랑스 SEL)와 타임뱅크 실험으로 1983년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점차적으로 성장했다. 제2세대는 이타카, 팔마스, 레기오 등이 대표적이며, 1991년 이타가 아우어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에 제2의 바람이 확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Regio(킴카우어), 브라질의 공동체은행, 영국의 Transition Towns(석유위기 대응 친환경도시운동 시민단체)이다. 제3세대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이루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출현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로테르담 실험으로 2002년에 시작하여 NU로 알려진 Dutch 프로젝트이다.

참고자료·문헌

- 니시베 마코토, (2002), 지역통화 LETS에 대하여, 〈녹색평론〉 2002년 7-8월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2014), 지역화폐와 지역경제발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2014).『지역화폐 A to Z』,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이창우(2015). “지역화폐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공동체”,『KDI 경제교육』2014년 7월호. KDI
- 충남연구원(2015).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웹진』제82호, 충남연구원
- 한성일(2014),『지역화폐운동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작성자 : 김봉원 연구위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정책용어

40. 지역희망박람회

생성배경 지역희망박람회는 개최연도별로 지역발전정책의 전략·방향에 따라 행사명, 행사내용의 주안점 등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및 협력방안 논의, 성과 점검, 지역별·부문별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행사의 기본적인 골격은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2004~2007년)에는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적 지방화'의 전략을 정부와 지역이 함께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이명박정부 시기(2008~2012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촉진,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정책방향 논의 및 성과(지역투자, 수출, 고용 등) 홍보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표 27〉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현황(2004~2015년)

	참여정부 (2004~2007)				이명박정부 (2008~2012)					박근혜정부 (2014~2015)		
명칭	지역혁신 박람회				지역투자 박람회		지역발전 주간			지역희망 박람회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장소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서울	서울	대구	광주	창원	부산	광주	인천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추진계획(안), 2015.8

용어설명 지역희망박람회(행사명칭의 변화 과정: 지역혁신박람회→지역투자박람회→지역발전주간→지역희망박람회)는 지역발전정책의 철학과 추진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역발전 정책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범부처 종합행사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와 2013년에 개최된 지역희망박람회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다양한 정책들을 공유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17개 시·도, 관계부처[1]의 공동 주최로 부산 벡스코(BEXCO)에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개최되었다. 2013년 지역희망박람회는 박근혜정부의 원년임을 감안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공유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 이 행사에서는 ①정부부처와 시·도의 정책과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 ②주민행복시대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③지역발전 성공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 ④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주민참여마당, ⑤지역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표 28〉 2013년 지역희망박람회의 주요 행사

주요 행사	행사 취지 및 내용
전시회 (11.27~30)	• 정부부처와 시·도가 주민행복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할 주요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소개 ※ 지역위, 8개 부처, 17개 시·도(총 27개 전시관)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주요 행사		행사 취지 및 내용
컨퍼런스 (11.27~29)		• 학술단체, 지역발전 유관기관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주민행복시대 실현 방안을 논의 ※ 학술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개 컨퍼런스
우수사례발표회 (11.28)		•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타 지역에 성공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발표
주민 참여 마당	희망이음토크쇼 (11.27)	• 희망이음 참여기업 CEO와 학생 간 대화를 통해 지역기업과 청년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함께 설계해 보는 시간을 마련
	체험관 (11.27~30)	• 주민·학생이 지역사업 우수성과에 대해 직접 경험해보고 느낌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관 운영 ※ 고추장, 한지, 천연염색, 카누, 황칠
	지식콘서트 (11.28~30)	• 개인 삶의 재발견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이웃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꿈꾸다, 함께하다, 희망하다(TED식 강연)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 (11.27~28)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 ※ 중국, 일본, 유럽 등 10여 개국 40개사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추진계획(안), 2013.11

2014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지역희망박람회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인력채용기업, 10~60대 구직자,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매칭관, 취업컨설팅, 취업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었다.

2015년 지역희망박람회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개최되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지역발전정책들이 각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회(정책존, 지역존, 체험존), 우수사례발표회, 컨퍼런스(학술컨퍼런스, 지역발전워크숍 등), 토크콘서트(주제: 희망을 Dream니다!), 지역나눔마켓(인천 우수시장박람회, 지역특화상품전, 학교기업상품전, 송도굿마켓), 부대행사(일자리박람회, 기타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현재 용어의 사용 2016년 지역희망박람회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9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개최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자자체 주민이 하나 되어 추진해 온 지역발전 정책의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지역정책인 '규제프리존'이 펼치는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나는 자리로 박람회 주행사인 개막식과 전시회뿐만 아니라, 일자리 박람회, 컨퍼런스, 지역나눔마켓, 토크콘서트, 가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17개 시.도 전시관도 따로 마련되어 개최될 계획이다.

참고자료·문헌

- 산업통상자원부(2015),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추진계획(안)
- 산업통상자원부(2014),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추진계획(안)
- 산업통상자원부(2013),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추진계획(안)
-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각년도), 지역발전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책용어

41. 창조경제

생성배경 선진국은 수년 전부터 기술과 지식에 의한 효율성과 생산성 증가를 통해 부를 축적해 온 그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지식경제)이 한계[1]에 도달함에 따라 종전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조경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첨단기술, 문화, 예술 등 각국의 강점에 기반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0여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노동·자본 요소투입형 산업경제 → 추격형 기술·지식에 기반한 지식경제)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용어설명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란 용어는 뉴스위크(2000년 8월 27일)가 미국 기업이 21세기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한편, 영국의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2001년 「The Creative Economy」란 저서를 통해 '창조경제란 창조적 인간,

1) 기술·지식의 일반화, 이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하락 등

창조적 산업, 창조적 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로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활동이 결합되어 뛰어난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창조경제 개념과 관련하여 ①창조산업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2], ②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창조화[3] 또는 모든 영역에 걸친 창조성의 산업화로 보는 관점, ③기존 추격형(모방형) 경제시스템에서 창조형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즉,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는 관점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을 뿐,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2013년 초반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경제부흥, 일자리 창출 등의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2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후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2013.6.4)함으로써 국가정책 차원에서의 창조경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정부는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①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②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③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과 24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

2) 대표적인 논의로 UNCTAD는 2008년 연차보고서(Creative Economy, 2008)에서 창조경제를 디자인, 출판·인쇄·미디어, 시각예술, 문화유적, 전통문화, 공연예술, 시청각산업, 뉴미디어, 창조적 서비스 등의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와 국제적 차원에서 점차 진화되고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3) 과학기술계에서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IT 간의 융합을 통한 창조화나 BT, NT, 브레인웨어, 서비스 등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조화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그림 33 창조경제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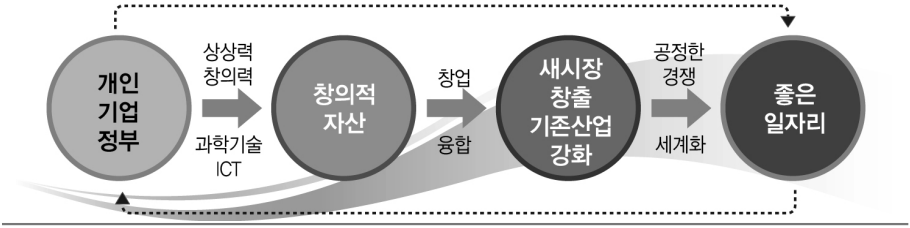

출처 : 창조경제 실현계획 보도자료(2013.6)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전략으로 ①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②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③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④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⑤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⑥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을 제시하고, 각 전략별로 3~5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산업연구원(2013), 산업연구원 학술세미나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3.4),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3),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선순환 : 관점 및 사례
- 관계부처 합동(2013.6), 창조경제 실현계획 보도자료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정책용어

42.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제도

생성배경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른 칸막이와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약, 유사사업의 중복투자, 지역간 과당경쟁 등 국고보조금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유사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자치계획권의 신장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0년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용어설명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용도제한의 범위, 재원의 교부기준, 지방비 부담의 유무, 재원규모의 제한성 여부 등으로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은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용도를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일정한 공식에 근거하여 교부액을 산정한다. 특정보조금(categorical grants)은 해당 사업에만 지출하도록 용도를 제한한다(국고보조금이 대표적).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은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의 중간 형태로, 특정보조금에서 출발하되, 용도제한과 중앙정부의 정책재량에 의한 교부기준의 자의성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보조금으로 일정한 공식으로 산정하여 교부하며 유사사업을 통한 하나의 사업군(block)은 자치단체에 예산편성권 및 사업선택권을 부여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여 개에 달하는 사업을 24개의 포괄보조사업(19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5개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군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단위에서 생활기반계정사업의 한도액(ceiling)을 설정하면, 시·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관할 시·군에 대한 한도액을 산정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박근혜정부에서는 행복생활권 사업 등을 추가하여 36개의 포괄보조금 사업(30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6개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추진 여건 미성숙, 집행지연, 실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포괄보조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해외사례 우리나라 포괄보조금 제도는 미국의 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영국 RDA의 지역개발보조금(Single Pot 등), 일본의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 등과 성격이 유사하다.

그림 34 포괄보조금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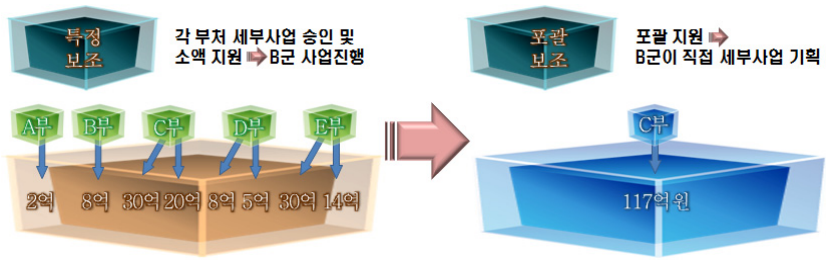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내부자료.

참고자료·문헌

-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09), 지역발전을 향한 행복한 동행(지역의 민관 자율형 협력체계 구축모델과 사례)
- 신두섭(2011), 포괄보조금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제, 지역발전위원회
- 조기현(2011),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용실태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7권
- 지역발전위원회(2011), 2012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설명회 발표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송미령, 권인혜(2011),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 주택도시 개발청 CDBG 프로그램
- 영국통상산업부(DTI) 홈페이지(http://www.dti.gov.uk)
- 기획재정부(2014),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작성자 : 민선정 책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책용어

43. 희망이음 프로젝트

생성배경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지역에도 일하기 좋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청년인재들이 수도권 및 대기업을 선호하여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지역의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청년 인재의 기업 탐방을 통해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지역 내 일자리의 미스매치 완화 및 취업연계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용어설명 희망이음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도 지자체에서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 우수기업과 지역 청년(대학생·고등학생)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 구직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대국민 프로젝트이다.

희망이음프로젝트는 교육부가 주도하는 전국 51개 산학협력의 LINC대학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전국 1천 개의 지역 우수 기업 간 소통창구를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 우수기업 선정 및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②희망탐방과 이음탐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기업탐방 기회 제공, ③'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현판 수여 등을 통해 기업의 대외신임도 제고 및 재직자들의 자긍심 고취, 지역 우수기업 특전 제공

현재 용어의 사용 2016년 사업 5년 차를 맞은 희망이음프로젝트는 기업인력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탐방과 실습 위주로 재편하였다. 탐방 횟수와 실습 인원 등 외형적 사업목표는 축소하고 취업 건수, 타 사업과 연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즉시 기업 핵심인력으로 일할 수 있게 기업이 요구하는 필수 역량을 취업 전에 갖도록 지원하는 고교기술인재지원사업과 통합하였다.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수는 2012년 9,010명에서 2013년 9,983명, 2014년 1만 명으로 늘었으며, 1만 명 중 대학생이 83%(8,313명), 고등학생이 17%(1,670명)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 수는 2012년 461개, 2013년 450개, 2014년 411개에 달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 참여 이후 기업 탐방 만족도는 2012년 91%, 2013년 92%, 2014년 93%로 평균 93%로 나타났다.

그림 35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정보소통 프로세스

출처 : 희망이음프로젝트 홈페이지(www.hopelink.kr)

참고자료·문헌

- 희망이음프로젝트 홈페이지(www.hopelink.kr)
- 산업통상자원부, KIAT, ITP(2014), 지역기업·대학생 교류활성화사업 기업참가 및 탐방 안내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KIAT(2015), 보도자료(2015 희망이음 프로젝트 발대식 안내)

작성자 : 강영주 책임연구위원(대전발전연구원)

표 목 차

Ⅰ. 지역산업과학

〈표 1〉 분야별 지원방향 및 중점 지원분야 ····· 4
〈표 2〉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현황 ····· 5
〈표 3〉 시·도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 ····· 10
〈표 4〉 16개 협력산업 별 유망품목 ····· 11
〈표 5〉 사업유형 및 내용 ····· 14
〈표 6〉 주요 산업분야의 TRL 단계별 평가지표 ····· 29
〈표 7〉 도시첨단산업단지현황 ····· 32
〈표 8〉 주요 국가 및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및 순위 ····· 42
〈표 9〉 마이스터고 운영 현황 ····· 46
〈표 10〉 미니복합타운 사업지역 개요 ····· 51
〈표 11〉 국내 뿌리기업 분포도(’12년) ····· 58
〈표 12〉 산업단지의 유형과 지정 목적 ····· 60
〈표 13〉 산업단지 캠퍼스 주요시설 및 내용 ····· 63
〈표 14〉 연도별 산업단지 캠퍼스 선정 및 운영 현황 ····· 64
〈표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내용 ····· 72
〈표 16〉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관련계획의 비교 ····· 73
〈표 17〉 성장유망산업의 분류 ····· 74
〈표 18〉 지역별 주력산업 ····· 75
〈표 19〉 지역 간 협력산업 ····· 76
〈표 20〉 유형별 수행 내용 ····· 82
〈표 21〉 대학별 사업수행내용 ····· 83
〈표 22〉 산학협력단 설립, 운영근거 ····· 86
〈표 23〉 산학협력단의 주요업무 ····· 86
〈표 24〉 연구개발지원단 지정·운영 현황(2015년 말 기준) ····· 91
〈표 25〉 연구개발지원단의 주요 기능 ····· 92

표 목 차

〈표 26〉 연구개발지원단의 위상 ····· 93
〈표 27〉 지자체별 R&D전담조직 지정 현황 ····· 94
〈표 28〉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의 보고서 및 과제화 실적(2015년 기준) ····· 94
〈표 29〉 특구별 주요현황 ····· 97
〈표 30〉 해외 주요특구 현황비교 ····· 98
〈표 31〉 제3회 전국새마을기술지도 사례발표회 致辭(과학기술처 장관, 1978.8) ····· 104
〈표 32〉 권역별, 유형별 선정 현황 ····· 112
〈표 3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2014년 1월 기준) ····· 116
〈표 34〉 전국 지식산업센터 현황 ····· 120
〈표 35〉 지식산업센터 공급주체별 현황 ····· 121
〈표 36〉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R&D사업(2014년 기준) ····· 123
〈표 37〉 지역산업기술 로드맵(RTRM)의 역할 ····· 125
〈표 38〉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생활기반계정)의 내역사업(2014년 기준) ····· 130
〈표 39〉 2013~2015 지역산업진흥계획 비교 ····· 133
〈표 40〉 시·도별 주력·협력·풀뿌리산업 선정결과 ····· 135
〈표 41〉 지역혁신센터 지정현황(2016년) ····· 153
〈표 42〉 연도별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1998~2011) ····· 155
〈표 43〉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경과 ····· 165
〈표 44〉 부처 자체평가 지표(1) ····· 176
〈표 45〉 부처 자체평가 지표(2) ····· 177
〈표 46〉 프라임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186
〈표 47〉 프라임사업의 선정 대학 현황 ····· 187

Ⅱ. 지역개발문화관광

〈표 1〉 BRT와 대중교통수단 간 건설비 및 수송능력 비교 ····· 195

〈표 2〉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2013년 말 기준) ····· 201
〈표 3〉 경제자유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 202
〈표 4〉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추진성과 ····· 206
〈표 5〉 외국의 국가지리정보체계 부문별 현황 ····· 208
〈표 6〉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내용 범위 ····· 212
〈표 7〉 관광특구 지정 현황(2014년 3월) ····· 222
〈표 8〉 국토종합계획 수립 경과 ····· 230
〈표 9〉 녹색건축인증기준 평가체계 비교 ····· 243
〈표 10〉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내역 ····· 263
〈표 11〉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비교 ····· 266
〈표 12〉 문화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지정현황(2012년 10월 기준) ····· 284
〈표 13〉 개별평가의 평가지표(2015년) ····· 288
〈표 14〉 종합평가의 평가지표(2015년) ····· 288
〈표 15〉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 296
〈표 1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2015년 사업대상지 ····· 301
〈표 17〉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2016년 사업대상지 ····· 302
〈표 18〉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역별 개요 ····· 304
〈표 19〉 전원도시, 생태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개요 ····· 309
〈표 20〉 저탄소 녹색도시 7대 추진요소 ····· 310
〈표 21〉 유비쿼터스 관련 용어정의 ····· 341
〈표 22〉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지정 현황 ····· 346
〈표 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내용 ····· 351
〈표 24〉「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작은 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 361
〈표 25〉 연도별 작은 도서관의 분포 현황 ····· 361
〈표 26〉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 ····· 361
〈표 27〉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376
〈표 28〉 주택바우처 제도의 기준임대료 ····· 377

표 목 차

〈표 29〉 임차가구 지원기준 ····· 377
〈표 30〉 개편제도 요약 비교 ····· 378
〈표 31〉 주요 국가별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 현황 ····· 379
〈표 32〉 지역문화지표 ····· 393
〈표 33〉 지역특구 신규 지정 현황 ····· 404
〈표 34〉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현황 ····· 410
〈표 35〉 창조지역 선정사업(2015년) ····· 412
〈표 36〉 창조지역사업의 주요유형 ····· 416
〈표 37〉 창조지역사업 성공사례 예시(2014년 말 기준) ····· 419
〈표 38〉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주요사업 ····· 421
〈표 39〉 공공기관별 이전 현황('16.4.30준) ····· 431
〈표 40〉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 439
〈표 41〉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교 ····· 440
〈표 42〉 협동조합의 유형 ····· 441

Ⅲ. 농어촌진흥

〈표 1〉 경관직불금 대상 작물(예시) ····· 447
〈표 2〉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 470
〈표 3〉 프랑스 SAFER의 주요 기능 ····· 485
〈표 4〉 도농교류의 종류 ····· 495
〈표 5〉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기능 ····· 507
〈표 6〉 자원순환 도시농업의 기본체계 ····· 510
〈표 7〉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역할 및 기능 ····· 513

Ⅳ. 지역발전정책/제도

〈표 1〉 6대 분야 17개 과제 ····· 529
〈표 2〉 계획계약제도 유형 ····· 544
〈표 3〉 국가지도집의 구성 체계 ····· 552
〈표 4〉 DATAR의 명칭 변화 및 특징 ····· 557
〈표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 이용 ····· 567
〈표 6〉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와 기능 ····· 577
〈표 7〉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 가이드 ····· 577
〈표 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1999~2015년 ····· 592
〈표 9〉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2015년 기준) ····· 600
〈표 10〉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2015년 기준) ····· 600
〈표 11〉 재정자주도 분포 현황(2015년 기준) ····· 604
〈표 12〉 시·도별 재정자주도 현황(2015년 기준) ····· 604
〈표 13〉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 611
〈표 14〉 지방소득세의 구조 ····· 623
〈표 15〉 지방세 성질별 비중 ····· 626
〈표 16〉 OECD 국가 지방세 성질별 비중('08년) ····· 626
〈표 17〉 자치단체 수입 중 지방세 비중 ····· 627
〈표 18〉 일본의 소비세 인상 과정 및 향후 계획 ····· 627
〈표 19〉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의 추이 ····· 631
〈표 20〉 지방자치단체 회계별·연도별 세입순계예산 규모 추이 ····· 635
〈표 21〉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개요 ····· 643
〈표 22〉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 646
〈표 23〉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는 변수 목록 ····· 652
〈표 2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 ····· 658

표 목 차

〈표 25〉 지특회계 편성체계 ····· 658
〈표 26〉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개요 및 적용대상 ····· 665
〈표 27〉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현황(2004~2015년) ····· 680
〈표 28〉 2013년 지역희망박람회의 주요 행사 ····· 681

그림목차

Ⅰ. 지역산업과학

〈그림 1〉 BK21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 4
〈그림 2〉 협력산업 및 경제협력권사업 배치도 ····· 15
〈그림 3〉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발전단계 ····· 17
〈그림 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개념도 ····· 18
〈그림 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주요 서비스 ····· 19
〈그림 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 ····· 23
〈그림 7〉 TRL 단계별 정의 ····· 27
〈그림 8〉 지역별 전력자립도(생산/소비)(2013년 기준) ····· 36
〈그림 9〉 MICE산업의 범위 ····· 40
〈그림 10〉 MICE산업 중 국제회의 시장 구조 ····· 40
〈그림 11〉 전국 시도별 MICE 개최건수(2014년 기준) ····· 42
〈그림 12〉 마이스터고 학생의 성장경로 ····· 45
〈그림 13〉 미니복합타운 개념도 ····· 50
〈그림 14〉 복합시설의 예 ····· 54
〈그림 15〉 6대 뿌리산업 ····· 57
〈그림 16〉 산업단지캠퍼스 개념 ····· 63
〈그림 17〉 지역산업생태계의 기본구조 ····· 67
〈그림 18〉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비전 및 전략 ····· 82
〈그림 19〉 연구개발지원단사업 추진체계 ····· 90
〈그림 20〉 일학습병행제 프로세스 ····· 101
〈그림 21〉 대표산업 기술로드맵 작성(예시) ····· 127
〈그림 22〉 지역전략산업의 현황 ····· 140
〈그림 23〉 중견기업의 정의 및 범위 ····· 143
〈그림 24〉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변화과정 ····· 144
〈그림 25〉 중견기업 수의 연도별 추이 ····· 145

그림목차

〈그림 26〉 시도별 중견기업 현황(2014년 기준) ····· 146
〈그림 2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특징 ····· 149
〈그림 28〉 지역혁신센터 사업범위 ····· 152
〈그림 29〉 창업보육센터 개념도 ····· 156
〈그림 30〉 지역별 기업현황 ····· 159
〈그림 31〉 지역별 창조적 일자리 ····· 161
〈그림 3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모형 ····· 166
〈그림 33〉 국내 테크노파크 현황 ····· 171
〈그림 34〉 통합 재정사업 평가 ····· 174
〈그림 35〉 메타(상위)평가 방식 ····· 178
〈그림 36〉 특화발전 프로젝트 선정현황(2014.9월 기준) ····· 181
〈그림 36〉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전략 ····· 182
〈그림 37〉 프라임사업 추진방향 ····· 185

Ⅳ. 지역발전정책/제도

〈그림 1〉 BRT 구성요소 ····· 195
〈그림 2〉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 197
〈그림 3〉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FDI) 유치실적 추이 ····· 200
〈그림 4〉 공간정보를 활용한 21세기 지도체계 ····· 204
〈그림 5〉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 205
〈그림 6〉 관광개발 정책영역의 확장 ····· 213
〈그림 7〉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214
〈그림 8〉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관광권역 계획 설정 ····· 215
〈그림 9〉 관광두레 개념도 ····· 218
〈그림 10〉 국가식품클러스터 역할 및 효과 ····· 225

〈그림 11〉 국가식품클러스터 현황 ····· 226
〈그림 12〉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 230
〈그림 13〉 계획의 기본 틀 ····· 231
〈그림 14〉 국토계획-환경계획 연동제 체계화의 방향 ····· 234
〈그림 15〉 전국 기업도시 현황 ····· 237
〈그림 16〉 녹색건축인증마크 ····· 240
〈그림 17〉 예비 인증절차 ····· 241
〈그림 18〉 본 인증 절차 ····· 242
〈그림 19〉 녹색기후기금(GCF) 운용 프로세스 ····· 246
〈그림 20〉 인천 송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 ····· 247
〈그림 21〉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동체계도 ····· 249
〈그림 22〉 도시숲 녹색거버넌스의 개념도 ····· 252
〈그림 23〉 개별적·산발적 사업 추진→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한 종합계획 ····· 255
〈그림 2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구분도 ····· 261
〈그림 25〉 마을기업 ····· 266
〈그림 26〉 인구 규모로 구분된 거대 도시(Mega City) 현황(UN, 2002년) ····· 279
〈그림 27〉 사회적기업의 개념 ····· 295
〈그림 28〉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흐름 ····· 295
〈그림 29〉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도 ····· 309
〈그림 30〉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구분도 ····· 321
〈그림 31〉 슬로시티 구성요소 ····· 323
〈그림 32〉 유비쿼터스도시 개념도 ····· 343
〈그림 33〉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현황 ····· 350
〈그림 3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 352
〈그림 35〉 자활사업 경로 ····· 354
〈그림 36〉 자활사업을 통한 창업 단계(자활근로사업 → 자활기업) ····· 355
〈그림 37〉 자활기업 현황 ····· 357

그림목차

〈그림 38〉 연간 문화예술 관람횟수 ····· 364
〈그림 39〉 문화로 행복한 삶 ····· 365
〈그림 40〉 전북 장수군 한누리 시네마 ····· 366
〈그림 41〉 정주자립권의 이미지 ····· 373
〈그림 42〉 정주자립권 구상 추진의 3단계 ····· 373
〈그림 43〉 주거급여 지원절차 ····· 375
〈그림 44〉 국내 세목별 조세제도 ····· 382
〈그림 45〉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사업추진체계 ····· 387
〈그림 46〉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 ····· 397
〈그림 47〉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 398
〈그림 48〉 지역브랜드 ····· 400
〈그림 49〉 창조경제타운 메인화면 ····· 407
〈그림 50〉 창조지역사업의 추진배경 ····· 415
〈그림 51〉 창조지역사업의 선정 및 예산 반영 프로세스 ····· 417
〈그림 52〉 평생학습도시 전국현황 ····· 423
〈그림 53〉 행복학습센터 전국현황 ····· 424
〈그림 54〉 2015년 행복주택 추진현황 ····· 428

Ⅲ. 농어촌진흥

〈그림 1〉 경관농업과 지역 축제 ····· 446
〈그림 2〉 경관농업 사례 : 고창군 청보리밭 ····· 446
〈그림 3〉 고향희망심기사업의 단계별 추진 ····· 454
〈그림 4〉 유럽연합 농정 추진의 중점과 과제 ····· 458
〈그림 5〉 공동농업정책 목표 ····· 458
〈그림 6〉 미국의 소득안정직불제의 구조 ····· 461

〈그림 7〉 농산어촌에서 퍼져가는 6차 산업화 ····· 467
〈그림 8〉 청양 칠갑산 알프스마을의 6차 산업화 사례 ····· 467
〈그림 9〉 도농교류의 구성 요소 ····· 494
〈그림 10〉 로컬푸드의 개념 ····· 503
〈그림 11〉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 512
〈그림 12〉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배경 및 목적 ····· 516

Ⅳ. 지역발전정책/제도

〈그림 1〉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비전 ····· 528
〈그림 2〉 LEADER 프로그램의 추진체계 ····· 532
〈그림 3〉 영국 LEP의 위치도 ····· 537
〈그림 4〉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의 조직구조 ····· 540
〈그림 5〉 201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549
〈그림 6〉 새로운 국가지도집 발간사업 개요 ····· 553
〈그림 7〉 DATAR의 조직도 ····· 558
〈그림 8〉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기본방향 ····· 560
〈그림 9〉 14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 561
〈그림 10〉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규제특례제도 흐름도 ····· 563
〈그림 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조직 및 운영 ····· 565
〈그림 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절차 ····· 566
〈그림 13〉 사회적 자본의 정의 ····· 576
〈그림 14〉 생태산업단지 ····· 586
〈그림 15〉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 587
〈그림 16〉 일본의 지역 차원의 생태산업도시 개념도 ····· 588
〈그림 17〉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변동추이 ····· 599

그림목차

〈그림 18〉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변동 추이 ····· 603
〈그림 19〉 경제성장률 하락의 파급효과 ····· 608
〈그림 20〉 정부3.0 비전과 전략 ····· 611
〈그림 21〉 정부3.0 중점 추진과제 ····· 612
〈그림 22〉 지방소득세 과세 구조 ····· 624
〈그림 23〉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추진절차 ····· 630
〈그림 24〉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 ····· 634
〈그림 2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도 변경 ····· 637
〈그림 26〉 지역발전 5개년계획 체계도 ····· 645
〈그림 27〉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절차(법 개정안 반영) ····· 647
〈그림 28〉 지역발전지수 개념도 ····· 650
〈그림 29〉 지역발전지수(RDI)의 부문별 가중치 ····· 651
〈그림 30〉 지역발전포털 주요내용 ····· 661
〈그림 31〉「한눈에 보는 지역정보」 시스템 화면 ····· 662
〈그림 32〉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구성 현황 ····· 672
〈그림 33〉 창조경제 생태계 ····· 686
〈그림 34〉 포괄보조금의 특징 ····· 688
〈그림 35〉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정보소통 프로세스 ····· 691

전체(가나다순)

1. BID/TOD특정지구,계획지구 ····· 191
2. BK(두뇌한국)21 플러스 ····· 3
3. BRT(간선급행버스체계) ····· 194
4. BTO/BTL ····· 197
5. HOPE 프로젝트 ····· 527
6. LEADER(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연대) ····· 530
7.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 535
8. TDPC(지역개발정책위원회) ····· 539
9. U턴기업(reshoring)지원제도 ····· 7
10. 경관농업 ····· 445
11. 경관보전직불제(Direct Payment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 450
12. 경제자유구역 ····· 199
13. 경제협력권사업 ····· 9
14. 계획계약 ····· 542
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564
16. 고향희망심기사업 ····· 453
17. 공간정보사업(Spacial Data Project) ····· 203
18.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456
19. 관광개발기본계획 ····· 211
20. 관광두레 ····· 217
21. 관광특구 ····· 220
22. 광역도시계획/MPO ····· 545
23.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16
2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548
25.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 225

전체(가나다순)

2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 21
27. 국가지도집 ····· 551
28.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 ····· 556
29. 국토종합계획 ····· 229
30.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 233
31. 규제프리존 ····· 559
32. 기술성숙도/기술준비수준(TRL) ····· 26
33. 기업도시 ····· 236
34. 녹색건축인증제(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 239
35.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 245
36. 농가소득안정직불제 ····· 460
37. 농공단지 ····· 463
38. 농어촌 6차 산업 ····· 466
39. 농어촌 유산(Rural Heritage) ····· 474
40. 농어촌서비스 기준(Rural Services Standard) ····· 469
41. 농어촌자원복합산업 ····· 478
42. 농어촌특별세 ····· 481
43. 농지관리기금 ····· 484
44. 농지은행 ····· 487
45. 농촌 공동체 회사 ····· 490
46. 닥터헬기 서비스 ····· 248
47. 도농교류 ····· 494
48. 도시권/다지역협약 ····· 569
49. 도시녹화운동 ····· 251
50. 도시농업 ····· 498

51.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선도지역) ····· 254
52. 도시첨단산업단지 ····· 31
53. 도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CB, community business) ····· 257
5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260
55. 로컬에너지 ····· 34
56. 로컬푸드(Local food) ····· 501
57. 마을기업 ····· 264
58. 마을리더 ····· 268
59. 마을만들기 ····· 270
60. 마을협정(마을협약) 제도 ····· 274
61. 마이스(MICE)산업 ····· 38
62. 마이스터고 ····· 44
63. 메가시티(Mega-city) ····· 277
64. 문화관광 축제 ····· 280
65. 문화산업지구 ····· 282
66. 문화영향평가 ····· 286
67. 미니복합타운 ····· 49
68. 보조금, 교부금, 출연금 ····· 572
69.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생활문화센터) ····· 290
70. 복합시설 ····· 53
71. 뿌리산업 ····· 56
7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575
73. 사회적기업 ····· 293
74. 산업단지 캠퍼스 ····· 62
75. 산업단지 ····· 59

전체(가나다순)

76. 산업생태계 ····· 66
77.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 ····· 69
78.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 71
79. 산업클러스터 ····· 78
80. 산지유통센터(APC) ····· 505
81. 산학협력 선도대학 ····· 81
82. 산학협력단 ····· 85
83.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 299
84. 새마을운동 세계화/지구촌 새마을운동 ····· 580
85. 생태관광지역 ····· 303
86. 생태도시 ····· 308
87.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 585
88.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nalysis Assessment) ····· 313
89. 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 316
90.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 319
91. 슬로시티(Slow City) ····· 322
92.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325
93. 시·도 자율편성사업 ····· 327
94. 시가화조정구역 ····· 330
95. 아동친화도시 ····· 334
96. 여성친화도시(Women-friendly City) ····· 337
97. 연구개발지원단 ····· 89
98. 연구개발특구 ····· 96
99. 예비타당성조사 ····· 590
100. 유비쿼터스도시(U-City) ····· 340

101.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 345
10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349
103. 일학습병행제 ····· 100
104. 자원순환 도시농업(도시농업 지원센터) ····· 509
105. 자율관리어업 ····· 511
106. 자치경찰제 ····· 595
107. 자활기업 ····· 354
108. 작은 도서관 ····· 360
109. 작은 영화관 ····· 364
110. 재정자립도(Financial Independence Rate) ····· 598
111. 재정자주도(Financial Autonomy Rate, degree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 602
112. 저성장시대 ····· 606
113. 적정기술 ····· 102
114. 전통시장 ····· 368
115. 정부3.0과 지방3.0 ····· 610
116. 정주자립권(定住自立圈) 제도 ····· 372
117. 주민결연제도 ····· 614
118. 주택바우처 제도(Housing Voucher Program) ····· 375
119.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 617
120. 지방 자주재원 ····· 381
12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108
122. 지방대학특성화 ····· 111
123. 지방소득세 ····· 622
124. 지방소비세 제도 ····· 625

전체(가나다순)

125.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629
126. 지방재정조정제도 ····· 633
127.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114
128.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 118
129. 지역R&D ····· 122
130.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 384
131. 지역개발사업구역 ····· 636
132. 지역공동체/공동체복원 ····· 389
133. 지역낙후도 ····· 640
134. 지역농업특성화사업 ····· 515
135. 지역문화지표 ····· 392
136. 지역문화진흥법 ····· 396
137. 지역발전 5개년계획(부문별계획안, 시도발전계획) ····· 645
138.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 ····· 649
139.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 654
140. 지역발전특별회계 ····· 657
141. 지역발전포털(REDIS) ····· 660
142. 지역브랜드 ····· 400
143. 지역산업기술 로드맵(RTRM) ····· 125
144.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 129
145. 지역산업진흥계획 ····· 132
146.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 664
147.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667
148. 지역전략산업 ····· 138
149. 지역중견·강소기업(스타기업) ····· 142
150. 지역특구 ····· 403

151. 지역특화산업 ····· 148
152. 지역행복생활권사업 ····· 671
153. 지역혁신센터(RIC) ····· 151
154. 지역화폐 ····· 675
155. 지역희망박람회 ····· 680
156. 창업보육센터 ····· 154
157. 창조경제 ····· 684
158. 창조경제타운 ····· 406
159. 창조경제혁신센터 ····· 158
160. 창조도시 ····· 411
161. 창조지역사업 ····· 414
162. 첨단의료복합단지 ····· 164
163. 친환경농산물 인증(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제도 ··· 518
164. 친환경농업직불제 ····· 521
165. 테크노파크 ····· 169
166. 통합 재정사업 평가 ····· 173
167.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 420
168. 특화발전프로젝트 ····· 180
169. 평생학습도시/행복학습센터 ····· 422
170.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제도 ····· 687
171. 프라임(Prime)사업 ····· 184
172. 행복주택 ····· 426
173. 혁신도시 ····· 430
174. 협동조합 ····· 438
175. 희망이음 프로젝트 ····· 690

총괄기획

한경원 정책연구관(지역발전위원회)
강기원 단장(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집필진(가나다순)

강영주 책임연구위원(대전발전연구원)
권영섭 센터장(국토연구원)
김봉원 연구위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김석중 연구위원(강원발전연구위원)
김선기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선희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김성훈 센터장(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김영준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향자 선임연구귀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호 연구기획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효정 대표이사(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류세선 센터장(한국금형산업진흥회)
민선정 책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주영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태준 선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우경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송용준 팀장(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신두섭 수석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광주전남연구원)

오승은 교수(제주대학교)
윤정중 연구기획실장(토지주택연구원)
윤칠석 정책기획단장(경북테크노파크)
윤태웅 전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은희창 이사(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이경미 단장(충북지역사업평가단)
이봉구 교수(동의대학교)
이여진 책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원호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이재훈 원장(경북테크노파크)
이정록 교수(전남대학교)
이희정 교수(한양대학교)
임경은 통계사무관(통계청)
장미아 전문위원(사단법인 생명의숲)
장효천 원장(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전용진 부장(㈜비디)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정택영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채성주 연구위원(충북연구원)
채종현 부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최재홍 교수(경북대학교)
한광식 교수(김포대학교)
홍미영 선임연구위원(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진기 연구위원(산업연구원)
황지욱 교수(전북대학교)

감수자(가나다순)

류정아 선임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용찬 대표이사(인터젠컨설팅)
신용석 부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유직 교수(부산대학교)
장재홍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황한철 교수(국립한경대학교)

구성편집

김성훈 센터장(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송하남 선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최미순 차장(㈜비디)
이정현 사원(㈜비디)

자주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